

정책보고서 2006-04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최미영
계훈방 권선진 이선우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 문 위 원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완호	국립재활원 근골격재활과 과장
	김창민	국립암센터 암연구소 소장
	박성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안과 교수
	박철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박현정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 통계주무관
	송동호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
	안동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신과 교수
	오승택	강남성모병원 외과 교수
	유규형	건국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이태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장학과 교수
	홍인표	국립의료원 성형외과 과장

머 리 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특수교육의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확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움직임,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장애인복지 분야 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각종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수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장애인 생활실태와 이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매 5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는 여섯 번째에 해당한다. 더구나 2003년 7월부터 2단계 장애범주가 확대된 바 있다. 따라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이처럼 신규로 확대된 장애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즉,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새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장애유형의 출현율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수와 출현율을 추정하였고, 장애인의 장애특성,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취업 및 직업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부분이 추가되었고, 장애인의 폭력이나 차별 등에 대한 문항이 보완되었다.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의 변용찬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성희 책임연구원, 윤상용 주임연구원, 최미영 주임연구원, 그리고 이선우 인제대학교 교수, 권선진 평택대학교 교수와 계훈방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들은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준 보건복지부 노길상 장애인정책관, 왕진호 팀장, 김강립 팀장, 은성호 서기관, 유주현 사무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조사항목을 검토 및 자문해 주신 분야별 전문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복지시설의 장애인조사가 가능하도록 도와준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아동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협회, 여성복지시설협회, 부랑인시설연합회, 정신요양원협회, 한센병시설 등의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 표본가구 응답자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제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준 본원의 도세록 책임연구원과 김유경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으며, 자료처리를 도와주신 정보통계협력팀의 이연희 책임연구원과 보고서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 준 손숙자 주임연구조원과 연구진행과정에서 성실하게 도와준 김유진 자료정리요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가 장애인복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2006년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39
제1장 서 론	71
제1절 조사의 배경	71
제2절 조사의 목적	73
제3절 조사의 설계	74
제4절 보고서의 구성	84
제2장 가구부문조사 표본설계 개요	85
제1절 조사의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사항	85
제2절 표본조사구의 추출	87
제3절 현지조사	90
제4절 추정방법	93
제5절 표본오차	96
제3장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	98
제1절 조사표 개발	98
제2절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100
제3절 조사의 실제	108
제4절 현지조사	113
제4장 장애의 범위 및 정의	124
제1절 장애의 범위	124
제2절 장애의 정의, 분류, 판별준거	126
제3절 장애원인 분류	155
제5장 조사결과 I : 장애출현율 및 장애인구수	157
제1절 장애인구의 추정	157
제2절 장애인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166

제6장 조사결과 II: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173
제 1절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173
제 2절 일상생활 지원	187
제 3절 재활보조기구	200
제 4절 보육·교육	209
제 5절 취업 및 직업재활	222
제 6절 경제상태	235
제 7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240
제 8절 여가 및 사회활동	264
제 9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278
제10절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312
제7장 조사결과 III: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345
제 1절 지체장애	345
제 2절 뇌병변장애	353
제 3절 시각장애	362
제 4절 청각장애	368
제 5절 언어장애	375
제 6절 정신지체	381
제 7절 발달장애(자폐증)	386
제 8절 정신장애	391
제 9절 신장장애	397
제10절 심장장애	401
제11절 호흡기장애	405
제12절 간장애	409
제13절 안면장애	414
제14절 장루·요루장애	417
제15절 간질장애	422
참고문헌	426
부 록	427

표 목 차

〈표 1-3- 1〉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본규모	75
〈표 2-2- 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층화 결과	87
〈표 2-2- 2〉	층별 표본조사구수 산출 내역	89
〈표 2-2- 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통합한 187개 표본조사구의 가구수 분포	89
〈표 2-2- 4〉	조사결과 층별 가구수 및 조사완료율	92
〈표 2-2- 5〉	층별 조사구 경계선 조정 및 기초자료 가구수 수정 내용	92
〈표 2-2- 6〉	조사구 경계선 조정 전후의 조사구 내의 기초자료상의 가구수 비율	93
〈표 3-2- 1〉	장애유형별 특성 조사항목의 구성	103
〈표 3-2- 2〉	장애공통 조사항목의 구성	106
〈표 3-2- 3〉	시설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108
〈표 3-3- 1〉	장애유형별 외부강사(전문의) 명단	113
〈표 3-4- 1〉	재가장애인 조사 완료율	120
〈표 3-4- 2〉	시설장애인 조사대상 및 조사완료율	121
〈표 4-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125
〈표 4-2- 1〉	장애인 실태조사의 법정장애 및 향후 범주확대장애 관련 변경사항 대비표	154
〈표 5-1- 1〉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157
〈표 5-1- 2〉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추이	158
〈표 5-1- 3〉	성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159
〈표 5-1- 4〉	성별·연령별 시설장애인 구성비	160
〈표 5-1- 5〉	지역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161
〈표 5-1- 6〉	장애종류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163
〈표 5-1- 7〉	주된 장애유형별·성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164
〈표 5-1- 8〉	장애유형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및 추정 장애건수 비교	165
〈표 5-1- 9〉	중복장애의 구성	166

〈표 5-2- 1〉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세대구성	167
〈표 5-2- 2〉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규모	168
〈표 5-2- 3〉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169
〈표 5-2- 4〉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	169
〈표 5-2- 5〉 장애인 가구의 주택형태 및 소유형태	170
〈표 5-2- 6〉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171
〈표 5-2- 7〉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여부	171
〈표 5-2- 8〉 거주지역별 장애인 가구의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	172
〈표 6-1- 1〉 장애유형별 장애 원인	174
〈표 6-1- 2〉 장애 발생시기	174
〈표 6-1- 3〉 장애 발생시기 - 돌 이후(연령별)	176
〈표 6-1- 4〉 주된 장애의 원인 진단여부	177
〈표 6-1- 5〉 주된 장애 원인 최초 진단시기	178
〈표 6-1- 6〉 주된 장애 원인 진단장소	178
〈표 6-1- 7〉 주된 장애 진단여부	179
〈표 6-1- 8〉 주된 장애 최초 진단시기	180
〈표 6-1- 9〉 주된 장애 최초 진단장소	180
〈표 6-1-10〉 최초 치료시기	181
〈표 6-1-11〉 진단 직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182
〈표 6-1-12〉 주된 장애 진단(발견) 후 최초 치료장소	183
〈표 6-1-13〉 치료받은 장애인이 느끼는 치료의 충분도	183
〈표 6-1-14〉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184
〈표 6-1-15〉 현재 치료여부	185
〈표 6-1-16〉 현재 치료받고 있는 치료장소	185
〈표 6-1-17〉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이유	186
〈표 6-1-18〉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187
〈표 6-2- 1〉 Barthel index에 따른 장애정도	188
〈표 6-2- 2〉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189

〈표 6-2- 3〉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192
〈표 6-2- 4〉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193
〈표 6-2- 5〉	도와주는 사람 유무	194
〈표 6-2- 6〉	도움 주는 사람과의 관계	194
〈표 6-2- 7〉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195
〈표 6-2- 8〉	동거인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195
〈표 6-2- 9〉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건강	196
〈표 6-2-10〉	도움 주는 사람의 소득활동 지장여부	196
〈표 6-2-11〉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197
〈표 6-2-12〉	도움대가 지불여부	197
〈표 6-2-13〉	월 평균 도움 일수	198
〈표 6-2-14〉	일일 평균 도움 시간	198
〈표 6-2-15〉	월평균 지불액	199
〈표 6-2-16〉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199
〈표 6-3- 1〉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200
〈표 6-3- 2〉	소지 재활보조기구 종류	201
〈표 6-3- 3〉	재활보조기구 현재 사용정도	202
〈표 6-3- 4〉	재활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203
〈표 6-3- 5〉	필요 재활보조기구 종류	204
〈표 6-3- 6〉	필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205
〈표 6-3- 7〉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206
〈표 6-3- 8〉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206
〈표 6-3- 9〉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사용 계획	208
〈표 6-4- 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209
〈표 6-4- 2〉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하루 평균 이용시간 및 월평균 비용	210
〈표 6-4- 3〉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210
〈표 6-4- 4〉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211
〈표 6-4- 5〉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하루 평균 이용시간 및 월평균 비용	212

〈표 6-4- 6〉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212
〈표 6-4- 7〉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	213
〈표 6-4- 8〉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의 평균 이용 시간	213
〈표 6-4- 9〉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의 평균 비용	214
〈표 6-4-10〉	현재 조기교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214
〈표 6-4-11〉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초등학교	215
〈표 6-4-12〉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중학교	216
〈표 6-4-13〉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고등학교	217
〈표 6-4-14〉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217
〈표 6-4-15〉	학교생활 적응도(보육시설/유치원 포함)	218
〈표 6-4-16〉	학교생활의 문제점(보육시설/유치원 포함)	219
〈표 6-4-17〉	통학방법(보육시설/유치원 포함)	220
〈표 6-4-18〉	집→학교까지 걸리는 시간(보육시설/유치원 포함)	220
〈표 6-4-19〉	낮 시간/방과 후의 시간사용	221
〈표 6-4-20〉	도우미 가정방문 학습서비스가 있을시 이용여부	222
〈표 6-5- 1〉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222
〈표 6-5- 2〉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223
〈표 6-5- 3〉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224
〈표 6-5- 4〉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224
〈표 6-5- 5〉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225
〈표 6-5- 6〉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226
〈표 6-5- 7〉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227
〈표 6-5- 8〉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227
〈표 6-5- 9〉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228
〈표 6-5-10〉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	228
〈표 6-5-11〉	취업장애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229
〈표 6-5-12〉	미취업 또는 구직하지 않는 주된 이유	230
〈표 6-5-13〉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232

〈표 6-5-14〉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232
〈표 6-5-15〉	향후 직업훈련 희망여부	233
〈표 6-5-16〉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233
〈표 6-5-17〉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234
〈표 6-6- 1〉	재가장애인이 느끼는 주관적 소속 계층	235
〈표 6-6- 2〉	개인 소득의 수입원	236
〈표 6-6- 3〉	연금 가입 여부	237
〈표 6-6- 4〉	장애로 인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혜 여부	238
〈표 6-6- 5〉	차량소유 여부	238
〈표 6-6- 6〉	차량소유·연료·표지발급 여부	239
〈표 6-6- 7〉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239
〈표 6-6- 8〉	노후생활 대책	240
〈표 6-7- 1〉	결혼 여부	241
〈표 6-7- 2〉	결혼 연령	242
〈표 6-7- 3〉	결혼하지 않은 이유	243
〈표 6-7- 4〉	배우자의 장애 여부	243
〈표 6-7- 5〉	배우자의 장애유형	244
〈표 6-7- 6〉	배우자의 장애등급	245
〈표 6-7- 7〉	자녀의 유무	245
〈표 6-7- 8〉	자녀의 수	246
〈표 6-7- 9〉	장애자녀의 유무	246
〈표 6-7-10〉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247
〈표 6-7-1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248
〈표 6-7-12〉	자녀가 없는 이유	249
〈표 6-7-13〉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250
〈표 6-7-14〉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250
〈표 6-7-15〉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251
〈표 6-7-16〉	집안에서의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참여 여부	252

〈표 6-7-17〉	장애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인지의 여부	252
〈표 6-7-18〉	임신시 본인의 장애여부	253
〈표 6-7-19〉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	254
〈표 6-7-20〉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254
〈표 6-7-21〉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255
〈표 6-7-22〉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256
〈표 6-7-23〉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256
〈표 6-7-24〉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257
〈표 6-7-25〉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258
〈표 6-7-26〉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필요성	258
〈표 6-7-2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의 필요성	259
〈표 6-7-28〉	출산비용 지원의 필요성	260
〈표 6-7-29〉	산후조리 서비스의 필요성	260
〈표 6-7-30〉	육아용품 대여의 필요성	261
〈표 6-7-31〉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262
〈표 6-7-32〉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필요성	262
〈표 6-7-33〉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263
〈표 6-7-34〉	기타서비스의 필요성	264
〈표 6-8- 1〉	혼자 외출 여부	264
〈표 6-8- 2〉	외출 빈도	265
〈표 6-8- 3〉	외출의 주된 목적	266
〈표 6-8- 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266
〈표 6-8- 5〉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267
〈표 6-8- 6〉	집밖 활동시 불편이유	268
〈표 6-8- 7〉	주요 교통수단	268
〈표 6-8- 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269
〈표 6-8- 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270
〈표 6-8-10〉	현재 집구조의 생활편리도	270

〈표 6-8-11〉 주택개조 의사	271
〈표 6-8-12〉 주택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 - 1순위	271
〈표 6-8-13〉 주택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 - 2순위	272
〈표 6-8-14〉 종교 분포	273
〈표 6-8-15〉 문화 및 여가활동 항목	274
〈표 6-8-16〉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275
〈표 6-8-17〉 문화 및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	275
〈표 6-8-18〉 지난 1년 동안 관광목적의 국내여행 경험여부	276
〈표 6-8-19〉 국내여행 형태	277
〈표 6-8-20〉 지난 해 4월 국회의원선거 투표여부	277
〈표 6-8-21〉 투표하지 않은 이유	278
〈표 6-9- 1〉 건강상태	279
〈표 6-9- 2〉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279
〈표 6-9- 3〉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280
〈표 6-9- 4〉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280
〈표 6-9- 5〉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281
〈표 6-9- 6〉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282
〈표 6-9- 7〉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282
〈표 6-9- 8〉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283
〈표 6-9- 9〉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283
〈표 6-9-10〉 전반적인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284
〈표 6-9-11〉 주 상담자	285
〈표 6-9-12〉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 정도	285
〈표 6-9-13〉 가족내 차별·폭력의 유형	286
〈표 6-9-14〉 가족내에서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287
〈표 6-9-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	287
〈표 6-9-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288
〈표 6-9-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289

〈표 6-9-18〉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289
〈표 6-9-19〉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유치원	290
〈표 6-9-2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유치원	291
〈표 6-9-21〉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초등학교	291
〈표 6-9-2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초등학교	292
〈표 6-9-23〉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중학교	292
〈표 6-9-2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중학교	293
〈표 6-9-25〉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고등학교	294
〈표 6-9-2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고등학교	294
〈표 6-9-27〉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대학교	295
〈표 6-9-2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대학교	295
〈표 6-9-29〉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296
〈표 6-9-3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교사로부터	297
〈표 6-9-31〉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297
〈표 6-9-3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298
〈표 6-9-33〉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298
〈표 6-9-3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299
〈표 6-9-35〉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300
〈표 6-9-3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결혼	300
〈표 6-9-37〉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시	301
〈표 6-9-3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업시	301
〈표 6-9-39〉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302
〈표 6-9-4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소득(임금)	303
〈표 6-9-41〉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303
〈표 6-9-4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304
〈표 6-9-43〉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304
〈표 6-9-4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승진	305
〈표 6-9-4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305

〈표 6- 9-4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306
〈표 6- 9-47〉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307
〈표 6- 9-4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보험제도상(계약시)	307
〈표 6- 9-49〉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이용시	308
〈표 6- 9-5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의료기관 이용시	308
〈표 6- 9-51〉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309
〈표 6- 9-5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310
〈표 6- 9-53〉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310
〈표 6- 9-5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	311
〈표 6- 9-55〉 장애인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311
〈표 6- 9-5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312
〈표 6-10- 1〉 장애인등록 여부	313
〈표 6-10- 2〉 등록 장애등급	313
〈표 6-10- 3〉 장애등록 시기	314
〈표 6-10- 4〉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315
〈표 6-10- 5〉 장애등록하지 않은 이유	316
〈표 6-10- 6〉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318
〈표 6-10- 7〉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320
〈표 6-10- 8〉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322
〈표 6-10- 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 여부	327
〈표 6-10-1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328
〈표 6-10-11〉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330
〈표 6-10-12〉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 희망	334
〈표 6-10-13〉 희망하는 동거 형태	336
〈표 6-10-14〉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1순위)	337
〈표 6-10-15〉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2순위)	338
〈표 6-10-16〉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3순위)	339
〈표 6-10-17〉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340

〈표 6-10-18〉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2순위)	340
〈표 6-10-19〉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3순위)	341
〈표 6-10-20〉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342
〈표 6-10-21〉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2순위)	343
〈표 6-10-22〉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3순위)	344
〈표 7- 1- 1〉 성별·연령별 지체장애 출현율	346
〈표 7- 1- 2〉 지체장애인의 장애부위 - 성별	347
〈표 7- 1- 3〉 지체장애인의 장애형태 - 성별	347
〈표 7- 1- 4〉 지체장애의 장애형태 - 손상부위별	348
〈표 7- 1- 5〉 지체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49
〈표 7- 1- 6〉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350
〈표 7- 1- 7〉 지체장애의 주된 질환명	351
〈표 7- 1- 8〉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351
〈표 7- 1- 9〉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352
〈표 7- 2- 1〉 성별·연령별 뇌병변장애 출현율	354
〈표 7- 2- 2〉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 - 성별	355
〈표 7- 2- 3〉 뇌병변장애의 마비정도 - 성별	356
〈표 7- 2- 4〉 뇌성마비의 동반증상	356
〈표 7- 2- 5〉 뇌성마비의 동반장애	357
〈표 7- 2- 6〉 뇌병변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57
〈표 7- 2- 7〉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58
〈표 7- 2- 8〉 뇌병변장애의 주된 질환명 - 연령별	359
〈표 7- 2- 9〉 뇌성마비장애의 출산장소 - 성별	359
〈표 7- 2-10〉 뇌성마비장애의 출산방법 - 성별	360
〈표 7- 2-11〉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360
〈표 7- 2-12〉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361
〈표 7- 3- 1〉 성별·연령별 시각장애 출현율	362
〈표 7- 3- 2〉 시각장애의 시력인지 여부	363

〈표 7- 3- 3〉	시각장애의 좌안 시력 - 성별	364
〈표 7- 3- 4〉	시각장애의 우안 시력 - 성별	364
〈표 7- 3- 5〉	시각장애의 점자해독 여부 - 성별	365
〈표 7- 3- 6〉	시각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66
〈표 7- 3- 7〉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66
〈표 7- 3- 8〉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367
〈표 7- 3- 9〉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368
〈표 7- 4- 1〉	성별·연령별 청각장애 출현율	369
〈표 7- 4- 2〉	보청기 사용유무	370
〈표 7- 4- 3〉	청각장애의 정도 구분 - 왼쪽	370
〈표 7- 4- 4〉	청각장애의 정도 구분 - 오른쪽	371
〈표 7- 4- 5〉	청각장애의 의사소통방법 - 성별	372
〈표 7- 4- 6〉	청각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 성별	372
〈표 7- 4- 7〉	청각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73
〈표 7- 4- 8〉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373
〈표 7- 4- 9〉	청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374
〈표 7- 4-10〉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375
〈표 7- 5- 1〉	성별·연령별 언어장애 출현율	376
〈표 7- 5- 2〉	언어장애의 장애형태 - 성별	377
〈표 7- 5- 3〉	언어장애의 의사소통방법 - 성별	377
〈표 7- 5- 4〉	언어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 성별	378
〈표 7- 5- 5〉	언어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78
〈표 7- 5- 6〉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79
〈표 7- 5- 7〉	언어장애의 원인 - 성별	380
〈표 7- 5- 8〉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380
〈표 7- 6- 1〉	성별·연령별 정신지체인 출현율	381
〈표 7- 6- 2〉	정신지체의 언어능력	382
〈표 7- 6- 3〉	정신지체의 학습능력	382

〈표 7- 6- 4〉 정신지체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83
〈표 7- 6- 5〉 정신지체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연령별	384
〈표 7- 6- 6〉 정신지체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384
〈표 7- 6- 7〉 정신지체의 선천적 장애원인 - 성별	385
〈표 7- 6- 8〉 정신지체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386
〈표 7- 7- 1〉 성별·연령별 발달장애(자폐증) 출현율	387
〈표 7- 7- 2〉 발달장애(자폐증)의 정신지체 또는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387
〈표 7- 7- 3〉 발달장애(자폐증)의 발달상의 특성 - 성별	388
〈표 7- 7- 4〉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 발생(발견)시기 - 성별	389
〈표 7- 7- 5〉 발달장애(자폐증)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89
〈표 7- 7- 6〉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390
〈표 7- 7- 7〉 발달장애의 선천적 장애원인 - 성별	390
〈표 7- 7- 8〉 발달장애(자폐증)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391
〈표 7- 8- 1〉 성별·연령별 정신장애 출현율	392
〈표 7- 8- 2〉 정신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392
〈표 7- 8- 3〉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393
〈표 7- 8- 4〉 정신장애의 주된 질환명	394
〈표 7- 8- 5〉 어려움의 정도	395
〈표 7- 8- 6〉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396
〈표 7- 8- 7〉 정신장애의 선천적 장애원인 - 성별	396
〈표 7- 8- 8〉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397
〈표 7- 9- 1〉 성별·연령별 신장장애 출현율	398
〈표 7- 9- 2〉 신장장애의 투석/신장이식 현황	398
〈표 7- 9- 3〉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399
〈표 7- 9- 4〉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시기	399
〈표 7- 9- 5〉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시기	400
〈표 7- 9- 6〉 신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400
〈표 7- 9- 7〉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401

〈표 7-10- 1〉	성별·연령별 심장장애 출현율	402
〈표 7-10- 2〉	심장장애의 장애정도	403
〈표 7-10- 3〉	심장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403
〈표 7-10- 4〉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404
〈표 7-10- 5〉	심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404
〈표 7-10- 6〉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405
〈표 7-11- 1〉	성별·연령별 호흡기장애 출현율	406
〈표 7-11- 2〉	호흡기장애의 장애정도	407
〈표 7-11- 3〉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407
〈표 7-11- 4〉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408
〈표 7-11- 5〉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409
〈표 7-12- 1〉	성별·연령별 간장애 출현율	410
〈표 7-12- 2〉	간장애의 장애정도	410
〈표 7-12- 3〉	간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411
〈표 7-12- 4〉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411
〈표 7-12- 5〉	간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412
〈표 7-12- 6〉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413
〈표 7-13- 1〉	성별·연령별 안면장애 출현율	414
〈표 7-13- 2〉	안면장애의 장애정도	415
〈표 7-13- 3〉	안면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415
〈표 7-13- 4〉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416
〈표 7-13- 5〉	안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416
〈표 7-13- 6〉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417
〈표 7-14- 1〉	성별·연령별 장루·요루장애 출현율	418
〈표 7-14- 2〉	장루·요루장애의 장애정도	418
〈표 7-14- 3〉	장루·요루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419
〈표 7-14- 4〉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419
〈표 7-14- 5〉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420

〈표 7-14- 6〉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421
〈표 7-15- 1〉	성별·연령별 간질장애 출현율	422
〈표 7-15- 2〉	간질장애의 장애정도	423
〈표 7-15- 3〉	간질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423
〈표 7-15- 4〉	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424
〈표 7-15- 5〉	간질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424
〈표 7-15- 6〉	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425

부표목차

〈부표 2-1- 1〉	재가장애인의 성별·연령별 장애인 출현율	432
〈부표 2-1- 2〉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중복장애)	432
〈부표 2-1- 3〉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연령별 출현율(주된 장애)	433
〈부표 2-1- 4〉	성별·연령별 재가 지체장애인 출현율	434
〈부표 2-1- 5〉	성별·연령별 재가 뇌병변장애인 출현율	435
〈부표 2-1- 6〉	성별·연령별 재가 시각장애인 출현율	435
〈부표 2-1- 7〉	성별·연령별 재가 청각장애인 출현율	436
〈부표 2-1- 8〉	성별·연령별 재가 언어장애인 출현율	436
〈부표 2-1- 9〉	성별·연령별 재가 정신지체인 출현율	437
〈부표 2-1-10〉	성별·연령별 재가 발달장애인 출현율	437
〈부표 2-1-11〉	성별·연령별 재가 정신장애인 출현율	438
〈부표 2-1-12〉	성별·연령별 재가 신장장애인 출현율	438
〈부표 2-1-13〉	성별·연령별 재가 심장장애인 출현율	439
〈부표 2-1-14〉	성별·연령별 재가 호흡기장애인 출현율	439
〈부표 2-1-15〉	성별·연령별 재가 간장애인 출현율	440
〈부표 2-1-16〉	성별·연령별 재가 안면장애인 출현율	440
〈부표 2-1-17〉	성별·연령별 재가 장루·요루장애인 출현율	441
〈부표 2-1-18〉	성별·연령별 재가 간질장애인 출현율	441
〈부표 3-1- 1〉	주된 장애의 원인 진단여부 - 성별	442
〈부표 3-1- 2〉	주된 장애의 원인 진단여부 - 연령별	442
〈부표 3-1- 3〉	주된 장애관련 최초 치료시기 - 성별	443
〈부표 3-1- 4〉	주된 장애관련 최초 치료시기 - 연령별	443
〈부표 3-1- 5〉	진단 직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 성별	444
〈부표 3-1- 6〉	진단 직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 연령별	444

〈부표 3-1- 7〉	주된 장애 진단(발견) 직후 치료처 - 성별	445
〈부표 3-1- 8〉	주된 장애 진단(발견) 직후 치료처 - 연령별	445
〈부표 3-1- 9〉	치료받은 장애인이 느끼는 치료의 충분정도 - 성별	446
〈부표 3-1-10〉	치료받은 장애인이 느끼는 치료의 충분도 - 연령별	446
〈부표 3-1-11〉	주된 장애에 대한 현재 치료여부 - 성별	446
〈부표 3-1-12〉	주된 장애에 대한 현재 치료여부 - 연령별	447
〈부표 3-1-13〉	현재 치료받고 있는 치료처 - 성별	447
〈부표 3-1-14〉	현재 치료받고 있는 치료처 - 연령별	448
〈부표 3-1-15〉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이유 - 성별	448
〈부표 3-1-16〉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이유 - 연령별	449
〈부표 3-1-17〉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 성별	449
〈부표 3-1-18〉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 연령별 ...	450
〈부표 3-2- 1〉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 성별	450
〈부표 3-2- 2〉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 연령별	450
〈부표 3-2- 3〉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 성별	451
〈부표 3-2- 4〉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 연령별	452
〈부표 3-2- 5〉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 성별	454
〈부표 3-2- 6〉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 연령별	454
〈부표 3-2- 7〉	스스로 생활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수발인 유무 - 성별	454
〈부표 3-2- 8〉	스스로 생활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수발인 유무 - 연령별	455
〈부표 3-2- 9〉	보호수발인이 있는 경우 보호수발인과의 관계 - 성별	455
〈부표 3-2-10〉	보호수발인이 있는 경우 보호수발인과의 관계 - 연령별	456
〈부표 3-2-11〉	보호수발인이 있는 경우 소득활동의 지장 여부 - 성별	456
〈부표 3-2-12〉	보호수발인이 있는 경우 소득활동의 지장 여부 - 연령별	457
〈부표 3-2-13〉	보호수발의 충분정도 - 성별	457
〈부표 3-2-14〉	보호수발의 충분정도 - 연령별	457
〈부표 3-2-15〉	보호수발인에 대한 요지불 여부 - 성별	458
〈부표 3-2-16〉	보호수발인에 대한 요지불 여부 - 연령별	458

〈부표 3-2-17〉	보호수발인 고용의향 - 성별	458
〈부표 3-2-18〉	보호수발인 고용의향 - 연령별	459
〈부표 3-3- 1〉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 성별	459
〈부표 3-3- 2〉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 연령별	459
〈부표 3-3- 3〉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한 경우 재활보조기구 사용정도-성별	460
〈부표 3-3- 4〉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한 경우 재활보조기구 사용정도-연령별	460
〈부표 3-3- 5〉	소지한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성별	460
〈부표 3-3- 6〉	소지한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 연령별	461
〈부표 3-3- 7〉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유무 - 성별	461
〈부표 3-3- 8〉	재가장애인의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유무 - 연령별	461
〈부표 3-3- 9〉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 성별	462
〈부표 3-3-10〉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 연령별	462
〈부표 3-3-11〉	정보통신기 보유율 및 사용율 - 성별	463
〈부표 3-3-12〉	정보통신기 보유율 및 사용율 - 연령별	463
〈부표 3-3-13〉	정보통신기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 성별	463
〈부표 3-3-14〉	정보통신기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 연령별	464
〈부표 3-3-15〉	정보통신기 향후 보유·사용 계획 - 성별	465
〈부표 3-3-16〉	정보통신기 향후 보유·사용 계획 - 연령별	465
〈부표 3-4- 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 성별	466
〈부표 3-4- 2〉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466
〈부표 3-4- 3〉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 성별	466
〈부표 3-4- 4〉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467
〈부표 3-4- 5〉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 - 성별	467
〈부표 3-4- 6〉	현재 조기교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467
〈부표 3-4- 7〉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초등학교 - 성별	468
〈부표 3-4- 8〉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중학교 - 성별	468
〈부표 3-4- 9〉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고등학교 - 성별	469
〈부표 3-4-10〉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 성별	469

〈부표 3-4-11〉	학교생활 적응도(보육시설/유치원 포함) - 성별	470
〈부표 3-4-12〉	학교생활의 문제점(보육시설/유치원 포함) - 성별	470
〈부표 3-4-13〉	통학방법(보육시설/유치원 포함) - 성별	471
〈부표 3-4-14〉	낮 시간/방과 후의 시간사용 - 성별	471
〈부표 3-4-15〉	도우미 가정방문 학습서비스가 있을시 이용여부 - 성별	472
〈부표 3-5- 1〉	지난 1주일간의 활동 - 성별	472
〈부표 3-5- 2〉	지난 1주일간의 활동 - 연령별	473
〈부표 3-5- 3〉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 또는 무급으로 가구원의 근로 - 성별	473
〈부표 3-5- 4〉	지난 1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근로 또는 무급으로 가구원의 근로 - 연령별	474
〈부표 3-5- 5〉	지난 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의 존재 여부 - 성별	474
〈부표 3-5- 6〉	지난 주에 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일)의 존재 여부 - 연령별	474
〈부표 3-5- 7〉	지난 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 - 성별	475
〈부표 3-5- 8〉	지난 주에 일하지 않은 이유 - 연령별	475
〈부표 3-5- 9〉	지난주 구직여부 - 성별	475
〈부표 3-5-10〉	지난주 구직여부 - 연령별	476
〈부표 3-5-11〉	지난 4주내 구직여부 - 성별	476
〈부표 3-5-12〉	지난 4주내 구직여부 - 연령별	476
〈부표 3-5-13〉	취업자의 지난 주 근무시간 - 성별	476
〈부표 3-5-14〉	취업자의 지난 주 근무시간 - 연령별	477
〈부표 3-5-15〉	취업자의 직장 유형 - 성별	477
〈부표 3-5-16〉	취업자의 직장 유형 - 연령별	477
〈부표 3-5-17〉	취업자의 평균 취업기간 - 성별	478
〈부표 3-5-18〉	취업자의 평균 취업기간 - 연령별	478
〈부표 3-5-19〉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 - 성별	478
〈부표 3-5-20〉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 - 연령별	478
〈부표 3-5-21〉	취업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 - 성별	479

〈부표 3-5-22〉	취업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 - 연령별	479
〈부표 3-5-23〉	취업자의 월평균 수입 - 성별	479
〈부표 3-5-24〉	취업자의 월평균 수입 - 연령별	479
〈부표 3-5-25〉	직장에서의 지위 - 성별	480
〈부표 3-5-26〉	직장에서의 지위 - 연령별	480
〈부표 3-5-27〉	취업자의 직장생활 애로사항 - 성별	481
〈부표 3-5-28〉	취업자의 직장생활 애로사항 - 연령별	481
〈부표 3-5-29〉	취업자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 성별	482
〈부표 3-5-30〉	취업자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482
〈부표 3-5-31〉	실업자의 지난주에 일이 있었을 시 근무 가능여부 - 성별	482
〈부표 3-5-32〉	실업자의 지난주에 일이 있었을 시 근무 가능여부 - 연령별	483
〈부표 3-5-33〉	실업자의 구직방법 - 성별	483
〈부표 3-5-34〉	실업자의 구직방법 - 연령별	484
〈부표 3-5-35〉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한 경우 형태 - 성별	484
〈부표 3-5-36〉	공공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한 경우 형태 - 연령별	484
〈부표 3-5-37〉	비경제활동자의 지난 4주간 구직하지 않은 이유 - 성별	485
〈부표 3-5-38〉	비경제활동자의 지난 4주간 구직하지 않은 이유 - 연령별	485
〈부표 3-5-39〉	비경제활동자 및 실업자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성별	486
〈부표 3-5-40〉	비경제활동자 및 실업자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연령별	486
〈부표 3-5-41〉	직업훈련 경험 여부 - 성별	487
〈부표 3-5-42〉	직업훈련 경험 여부 - 연령별	487
〈부표 3-5-43〉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성별	487
〈부표 3-5-44〉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 연령별	488
〈부표 3-5-45〉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 성별	488
〈부표 3-5-46〉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 연령별	489
〈부표 3-5-47〉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 성별	489
〈부표 3-5-48〉	장애인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 연령별	490
〈부표 3-6- 1〉	경제활동분야 - 성별	490

〈부표 3-6- 2〉	경제활동분야 - 연령별	491
〈부표 3-6- 3〉	종사상의 지위 - 성별	491
〈부표 3-6- 4〉	재가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 연령별	492
〈부표 3-6- 5〉	주관적 소속 계층 - 성별	492
〈부표 3-6- 6〉	주관적 소속 계층 - 연령별	492
〈부표 3-6- 7〉	수입원의 종류 - 성별	493
〈부표 3-6- 8〉	수입원의 종류 - 연령별	493
〈부표 3-6- 9〉	수입원별 월평균 금액 - 성별	493
〈부표 3-6-10〉	수입원별 월평균 금액 - 연령별	493
〈부표 3-6-11〉	가입한 연금 종류(중복응답) - 성별	494
〈부표 3-6-12〉	가입한 연금 종류(중복응답) - 연령별	494
〈부표 3-6-13〉	국민연금 가입시 가입기간 - 성별	495
〈부표 3-6-14〉	국민연금 가입시 가입기간 - 연령별	495
〈부표 3-6-15〉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미납경험 여부 - 성별	495
〈부표 3-6-16〉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미납경험 여부 - 연령별	495
〈부표 3-6-17〉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미납경험 개월수 - 성별	496
〈부표 3-6-18〉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미납경험 개월수 - 연령별	496
〈부표 3-6-19〉	장애로 인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혜여부 - 성별	496
〈부표 3-6-20〉	장애로 인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혜여부 - 연령별	497
〈부표 3-6-21〉	본인 운전 차량 소유 여부 - 성별	497
〈부표 3-6-22〉	본인 운전 차량 소유 여부 - 연령별	498
〈부표 3-6-23〉	본인 운전 차량 소유: 차종 - 성별	498
〈부표 3-6-24〉	본인 운전 차량 소유: 차종 - 연령별	498
〈부표 3-6-25〉	본인 운전 차량 소유: 배기량 - 성별	499
〈부표 3-6-26〉	본인 운전 차량 소유: 배기량 - 연령별	499
〈부표 3-6-27〉	본인 운전 차량 소유: 연료 - 성별	499
〈부표 3-6-28〉	본인 운전 차량 소유: 연료 - 연령별	500
〈부표 3-6-29〉	본인 운전 차량 소유: 표지발급 - 성별	500

〈부표 3-6-30〉	본인 운전 차량 소유: 표지발급 - 연령별	500
〈부표 3-6-31〉	본인 운전 차량 소유: 표지종류 - 성별	501
〈부표 3-6-32〉	본인 운전 차량 소유: 표지종류 - 연령별	501
〈부표 3-6-33〉	본인 운전 차량 소유: 용도 - 성별	501
〈부표 3-6-34〉	본인 운전 차량 소유: 용도 - 연령별	502
〈부표 3-6-35〉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차종 - 성별	502
〈부표 3-6-36〉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차종 - 연령별	502
〈부표 3-6-37〉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배기량 - 성별	503
〈부표 3-6-38〉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배기량 - 연령별	503
〈부표 3-6-39〉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연료 - 성별	503
〈부표 3-6-40〉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연료 - 연령별	504
〈부표 3-6-41〉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표지발급 - 성별	504
〈부표 3-6-42〉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표지발급 - 연령별	504
〈부표 3-6-43〉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표지종류 - 성별	505
〈부표 3-6-44〉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표지종류 - 연령별	505
〈부표 3-6-45〉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용도 - 성별	505
〈부표 3-6-46〉	보호자 운전 차량 소유: 용도 - 연령별	506
〈부표 3-6-47〉	항목별 현재 지출 중인 추가비용 - 성별	506
〈부표 3-6-48〉	항목별 현재 지출 중인 추가비용 - 연령별	506
〈부표 3-6-49〉	노후 대책 형태(중복응답) - 성별	507
〈부표 3-6-50〉	노후 대책 형태(중복응답) - 연령별	507
〈부표 3-7- 1〉	결혼 여부 - 성별	508
〈부표 3-7- 2〉	결혼 여부 - 연령별	508
〈부표 3-7- 3〉	결혼하지 않은 이유 - 성별	508
〈부표 3-7- 4〉	결혼하지 않은 이유 - 연령별	509
〈부표 3-7- 5〉	배우자의 장애 여부 - 성별	509
〈부표 3-7- 6〉	배우자의 장애 여부 - 연령별	509
〈부표 3-7- 7〉	자녀의 유무 - 성별	510

〈부표 3-7- 8〉	자녀의 유무 - 연령별	510
〈부표 3-7- 9〉	장애자녀의 유무 - 성별	510
〈부표 3-7-10〉	장애자녀의 유무 - 연령별	510
〈부표 3-7-11〉	자녀가 없는 이유 - 성별	511
〈부표 3-7-12〉	자녀가 없는 이유 - 연령별	511
〈부표 3-7-13〉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 성별	512
〈부표 3-7-14〉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 연령별	512
〈부표 3-7-15〉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 성별	512
〈부표 3-7-16〉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 연령별	513
〈부표 3-7-17〉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 성별	513
〈부표 3-7-18〉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 연령별	514
〈부표 3-7-19〉	집안에서의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참여 여부 - 성별	514
〈부표 3-7-20〉	집안에서의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참여 여부 - 연령별	514
〈부표 3-7-21〉	임신 시 본인의 장애여부 - 연령별	515
〈부표 3-7-22〉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 - 연령별	515
〈부표 3-7-23〉	마지막 임신 시 출산 여부 - 연령별	515
〈부표 3-7-24〉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 연령별	516
〈부표 3-7-25〉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 연령별	516
〈부표 3-7-26〉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필요성 - 연령별	516
〈부표 3-7-2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의 필요성 - 연령별	517
〈부표 3-7-28〉	출산비용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 연령별	517
〈부표 3-7-29〉	산후조리 서비스의 필요성 - 연령별	517
〈부표 3-7-30〉	육아용품 대여서비스의 필요성 - 연령별	517
〈부표 3-7-31〉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 연령별	518
〈부표 3-7-32〉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필요성 - 연령별	518
〈부표 3-7-33〉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 연령별	518
〈부표 3-7-34〉	기타서비스의 필요성 - 연령별	518
〈부표 3-8- 1〉	혼자 외출여부 - 성별	519

〈부표 3-8- 2〉	혼자 외출여부 - 연령별	519
〈부표 3-8- 3〉	외출빈도 - 성별	519
〈부표 3-8- 4〉	외출빈도 - 연령별	519
〈부표 3-8- 5〉	외출의 주된 목적 - 성별	520
〈부표 3-8- 6〉	외출의 주된 목적 - 연령별	520
〈부표 3-8- 7〉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 성별	520
〈부표 3-8- 8〉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 연령별	521
〈부표 3-8- 9〉	집밖 활동시 불편이유 - 성별	521
〈부표 3-8-10〉	집밖 활동시 불편이유 - 연령별	521
〈부표 3-8-11〉	주 교통수단 - 성별	522
〈부표 3-8-12〉	주 교통수단 - 연령별	522
〈부표 3-8-13〉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의 정도 - 성별	523
〈부표 3-8-14〉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의 정도 - 연령별	523
〈부표 3-8-15〉	주택개조 의사 - 성별	523
〈부표 3-8-16〉	주택개조 의사 - 연령별	523
〈부표 3-8-17〉	종교 분포 - 성별	524
〈부표 3-8-18〉	종교 분포 - 연령별	524
〈부표 3-8-19〉	지난 1주일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정도 - 성별	524
〈부표 3-8-20〉	지난 1주일간의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정도 - 연령별	525
〈부표 3-8-21〉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25
〈부표 3-8-22〉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25
〈부표 3-8-23〉	지난 1년 동안 관광목적의 국내여행 경험유무 - 성별	526
〈부표 3-8-24〉	지난 1년 동안 관광목적의 국내여행 경험유무 - 연령별	526
〈부표 3-8-25〉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성별	526
〈부표 3-8-26〉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 연령별	526
〈부표 3-9- 1〉	건강상태 - 성별	527
〈부표 3-9- 2〉	건강상태 - 연령별	527
〈부표 3-9- 3〉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 성별	527

〈부표 3-9- 4〉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 연령별	528
〈부표 3-9- 5〉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28
〈부표 3-9- 6〉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28
〈부표 3-9- 7〉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29
〈부표 3-9- 8〉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29
〈부표 3-9- 9〉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29
〈부표 3-9-10〉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30
〈부표 6-9-11〉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30
〈부표 3-9-12〉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30
〈부표 3-9-13〉	한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31
〈부표 3-9-14〉	한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31
〈부표 3-9-15〉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31
〈부표 3-9-16〉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32
〈부표 3-9-17〉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32
〈부표 3-9-18〉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32
〈부표 3-9-19〉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성별	533
〈부표 3-9-20〉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 연령별	533
〈부표 3-9-21〉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 성별	533
〈부표 3-9-22〉	문제발생시 주 상담자 - 연령별	534
〈부표 3-9-23〉	가족 내 차별·폭력 - 성별	534
〈부표 3-9-24〉	가족 내 차별·폭력 - 연령별	534
〈부표 3-9-25〉	가족 내 차별·폭력의 유형 - 성별	535
〈부표 3-9-26〉	가족 내 차별·폭력의 유형 - 연령별	535
〈부표 3-9-27〉	가족 내에서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 성별	535
〈부표 3-9-28〉	가족 내에서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 연령별	536
〈부표 3-9-29〉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 - 성별	536
〈부표 3-9-30〉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 - 연령별	536
〈부표 3-9-31〉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 성별	537

〈부표 3-9-32〉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 연령별	537
〈부표 3-9-33〉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인 또는 시설필요 여부 - 성별	537
〈부표 3-9-34〉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상담인 또는 시설필요 여부 - 연령별	538
〈부표 3-9-3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유치원) - 성별	538
〈부표 3-9-3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유치원) - 연령별	538
〈부표 3-9-3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유치원) - 성별	538
〈부표 3-9-3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유치원) - 연령별	539
〈부표 3-9-3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초등학교) - 성별	539
〈부표 3-9-4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초등학교) - 연령별	539
〈부표 3-9-4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초등학교) - 성별	540
〈부표 3-9-4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초등학교) - 연령별	540
〈부표 3-9-4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중학교) - 성별	540
〈부표 3-9-4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중학교) - 연령별	541
〈부표 3-9-4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중학교) - 성별	541
〈부표 3-9-4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중학교) - 연령별	541
〈부표 3-9-4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고등학교) - 성별	542
〈부표 3-9-4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고등학교) - 연령별	542
〈부표 3-9-4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고등학교) - 성별	542
〈부표 3-9-5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고등학교) - 연령별	543
〈부표 3-9-5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대학교) - 성별	543
〈부표 3-9-5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학(대학교) - 연령별	543
〈부표 3-9-5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대학교) - 성별	543
〈부표 3-9-5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학(대학교) - 연령별	544
〈부표 3-9-5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 성별	544
〈부표 3-9-5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 연령별	544
〈부표 3-9-5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교사로부터) - 성별 ..	545
〈부표 3-9-5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교사로부터) - 연령별 ..	545
〈부표 3-9-5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 성별 ...	545

〈부표 3-9-6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 연령별	546
〈부표 3-9-6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 성별	546
〈부표 3-9-6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 연령별	546
〈부표 3-9-6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 성별	547
〈부표 3-9-6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 연령별	547
〈부표 3-9-6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 성별	547
〈부표 3-9-6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 연령별	547
〈부표 3-9-6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 성별	548
〈부표 3-9-6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 연령별	548
〈부표 3-9-6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결혼 - 성별	548
〈부표 3-9-7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결혼 - 연령별	548
〈부표 3-9-7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시 - 성별	549
〈부표 3-9-7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시 - 연령별	549
〈부표 3-9-7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업시 - 성별	549
〈부표 3-9-7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업시 - 연령별	549
〈부표 3-9-7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임금) - 성별	550
〈부표 3-9-7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임금) - 연령별	550
〈부표 3-9-7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임금) - 성별	550
〈부표 3-9-7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임금) - 연령별	550
〈부표 3-9-7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 성별	551
〈부표 3-9-8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 연령별	551
〈부표 3-9-8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 성별	551
〈부표 3-9-8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 연령별	551
〈부표 3-9-8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 성별	552
〈부표 3-9-8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 연령별	552
〈부표 3-9-8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승진) - 성별	552
〈부표 3-9-8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승진) - 연령별	552
〈부표 3-9-8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 성별	553

〈부표 3-9- 8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 연령별	553
〈부표 3-9- 8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 성별	553
〈부표 3-9- 9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 연령별	553
〈부표 3-9- 9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 성별	554
〈부표 3-9- 9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 연령별	554
〈부표 3-9- 9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보험제도상(계약시) - 성별	554
〈부표 3-9- 9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보험제도상(계약시) - 연령별	554
〈부표 3-9- 9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 이용시 - 성별	555
〈부표 3-9- 9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 이용시 - 연령별	555
〈부표 3-9- 97〉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의료기관이용시 - 성별	555
〈부표 3-9- 98〉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의료기관이용시 - 연령별	555
〈부표 3-9- 99〉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 성별	556
〈부표 3-9-100〉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 연령별	556
〈부표 3-9-10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 성별	556
〈부표 3-9-1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 연령별	556
〈부표 3-9-10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 성별	557
〈부표 3-9-10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 연령별	557
〈부표 3-9-10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지역사회생활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 성별	557
〈부표 3-9-106〉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지역사회생활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 연령별	558
〈부표 3-9-107〉	장애란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 성별	558
〈부표 3-9-108〉	장애란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 연령별	558
〈부표 3-9-109〉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성별	559
〈부표 3-9-110〉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연령별	559
〈부표 3-10- 1〉	장애인등록 여부 - 성별	559

〈부표 3-10- 2〉	장애인등록 여부 - 연령별	560
〈부표 3-10- 3〉	재가장애인의 등록장애등급 - 성별	560
〈부표 3-10- 4〉	재가장애인의 등록장애등급 - 연령별	560
〈부표 3-10- 5〉	재가장애인의 등록장애 시기 - 성별	561
〈부표 3-10- 6〉	재가장애인의 등록장애 시기 - 연령별	561
〈부표 3-10- 7〉	장애인등록 이후의 혜택 - 성별	561
〈부표 3-10- 8〉	장애인등록 이후의 혜택 - 연령별	562
〈부표 3-10- 9〉	장애인등록하지 않은 이유 - 성별	562
〈부표 3-10-10〉	장애인등록하지 않은 이유 - 연령별	563
〈부표 3-10-11〉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 성별	564
〈부표 3-10-12〉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 연령별	565
〈부표 3-10-1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성별	566
〈부표 3-10-14〉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 연령별	567
〈부표 3-10-15〉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성별	569
〈부표 3-10-16〉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 연령별	570
〈부표 3-10-17〉	장애인복지관련사업 실시기관 인지 여부 - 성별	573
〈부표 3-10-18〉	장애인복지관련사업 실시기관 인지 여부 - 연령별	574
〈부표 3-10-19〉	장애인복지관련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성별	576
〈부표 3-10-20〉	장애인복지관련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 연령별	577
〈부표 3-10-21〉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 성별	579
〈부표 3-10-22〉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 연령별	580
〈부표 3-10-23〉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이용 희망 - 성별	583
〈부표 3-10-24〉	장애인복지관련기관 이용 희망 - 연령별	584
〈부표 3-10-25〉	향후 동거 형태 - 성별	585
〈부표 3-10-26〉	향후 동거 형태 - 연령별	585
〈부표 3-10-27〉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1순위) - 성별	586
〈부표 3-10-28〉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1순위) - 연령별	587
〈부표 3-10-29〉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2순위) - 성별	588

〈부표 3-10-30〉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2순위) - 연령별	589
〈부표 3-10-31〉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3순위) - 성별	590
〈부표 3-10-32〉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3순위) - 연령별	591
〈부표 3-10-33〉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 성별	592
〈부표 3-10-34〉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 연령별	592
〈부표 3-10-35〉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2순위) - 성별	593
〈부표 3-10-36〉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2순위) - 연령별	593
〈부표 3-10-37〉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3순위) - 성별	594
〈부표 3-10-38〉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3순위) - 연령별	594
〈부표 3-10-39〉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순위(1순위) - 성별	595
〈부표 3-10-40〉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순위(1순위) - 연령별	596
〈부표 3-10-41〉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순위(2순위) - 성별	597
〈부표 3-10-42〉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순위(2순위) - 연령별	598
〈부표 3-10-43〉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순위(3순위) - 성별	599
〈부표 3-10-44〉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순위(3순위) - 연령별	600
〈부표 4- 1- 1〉	장애출현율 표본오차	601
〈부표 4- 1- 2〉	장애인수 표본오차	601

요 약

I . 조사개요

1. 조사의 근거 및 목적

- ☐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동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출현율 파악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2005년도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는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에 이
은 제6차 조사임.

2. 조사 내용

가. 조사 내용 I : 가구 및 장애 판별 조사

☐ 가구조사

-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소득 및 지출수준, 가구규모, 세대구성, 주택형태 등

☐ 장애 판별조사

- 법정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
애(15개 유형)
- 향후 범주확대 장애: 만성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9개 유형)

나. 조사 내용Ⅱ: 장애인 개별 조사

- ☐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부위, 질환명 등
- ☐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진단여부, 진단시기, 치료시기, 치료, 향후 필요한 건강 및 재활 관련 의료기관 등
- ☐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정도(ADL), 수단적 일상생활정도(IADL), 일상생활의 타인의존도, 도움제공자유형, 유료보호자 고용의향 등
- ☐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및 종류,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종류 등
- ☐ 보육·교육: 재학중인 보육시설·유치원·조기교육시설 유형, 이용시간, 비용,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불편도, 통학거리 및 시간 등
- ☐ 취업 및 직업생활: 취업상태, 직업훈련, 미취업상태, 미취업 이유, 정부에 바라는 점 등
- ☐ 경제상태: 경제적 어려움 정도, 개인 소득의 수입원, 가입된 연금유형, 차량소유, 장애로 인한 비목별 추가소요 비용 등
- ☐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여부, 배우자의 장애유무, 자녀수, 자녀의 장애유무, 자녀 양육 및 교육시 어려운 점, 출산·임신·육아의 어려운 점,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필요정도 등
- ☐ 여가 및 사회활동: 외출정도, 집밖 활동시 불편한 점, 이용하는 교통수단, 종교유무, 문화·여가활동 영역별 참여빈도, 국내여행 경험 유무,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유무 등
- ☐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가족폭력·성폭력 경험, 사회적 차별의 경험 및 대처방법 등
-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등록 여부 및 장애등급, 장애등록으로 인한 혜택,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도, 가장 원하는 서비스,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시설입소 의향,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도 및 인지경로, 사회나 국가에 바라는 점 등

다. 조사 내용Ⅲ: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무호적자 여부 등을 조사함.

3. 조사 방법

가. 가구부문조사: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한 조사원 가구방문 면접조사

- ☐ 조사모집단: 각 시도의 섬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및 가구원
- ☐ 표본의 크기: 200개 표본조사구의 약 45,000가구(조사구당 평균 225가구)
- ☐ 표본조사구 추출: 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를 이용하여 220가구 이상이 되도록 3~5조사구가 통합된 187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2004년 10월 말까지의 신축아파트 중에서 220~229가구가 포함되는 13개 표본조사구를 추출 ② 각 표본조사구에서는 평균 225가구가 되도록 220~229가구를 조사

나. 사회복지시설 조사: 우편설문조사

- ☐ 조사대상 : 1,063개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모자·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시설) 거주자(약 85천여 명) 전수 조사

II. 조사현황

- ☐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총 200개 조사지역의 방문가구수는 45,285가구이고, 이 중 40,556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 본 조사의 완료율은 89.6%로서 2000년 조사 완료율 89.3%보다 약간 상승함.
- ☐ 조사완료가구 40,556가구의 가구원 수는 119,306명으로서 2000년 조사완료 가구원 수 123,721명에 비해 4,415명이 감소함.
 - 이는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2000년 3.14명에서 2005년 2.94명으로 감소한 결과임.
 - ※ 참고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한 국 ¹⁾				일 본 ²⁾			
	2000	2005	2010	2015	2000	2005	2010	2015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3.12명	2.99명	2.89명	2.81명	2.70명	2.61명	2.55명	2.52명

자료: 1) 통계청, 『Household Projec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2000~2020』, 2002.

2)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ousehold Projections for Japan by Prefectures: 1995~2020
Reported on March 2000』, 2000.

- 이들 가구원 중 장애인은 모두 5,466명인 것으로 나타나 2000년에 조사된 장애인 수 4,125명에 비해 1,341명 증가하였음.
- 이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장애범주가 기존의 10개 범주에서 15개 범주로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1〉 2000년도와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현황 비교

구분	조사지역수	대상가구수	완료가구수	조사완료율	조사완료 가구원수	조사 장애인수
2005년도	200지역	45,285가구	40,556가구	89.6%	119,306명 (2.94명/가구)	5,466명
2000년도	200지역	44,128가구	39,411가구	89.3%	123,721명 (3.14명/가구)	4,125명
비교	-	-	-	-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감소	1,341명 증가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조사는 총 1,063개 시설 중 1,052개 시설(99.0%) 거주자 84,52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장애인은 전체 거주자의 56.4%인 47,629명인 것으로 나타남.

〈표 2〉 2005년도 장애인 시설조사 실태조사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시설수	회수 시설수	미회수 시설수	전체 입소자수	총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무호적자수
장애인	274	274	-	19,291	18,910	18,596	5,382
아동	249	247	2	17,734	497	365	744
노인	396	388	8	22,389	10,236	2,929	639
여성	41	41	-	2,714	46	45	-
부랑인	42	42	-	9,186	6,651	1,966	2,434
정신요양	56	55	1	12,471	10,838	3,954	1,928
한센병	5	5	-	735	451	429	-
총계	1,063	1,052	11	84,520	47,629	28,284	11,127

Ⅲ. 주요 조사 결과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가. 2005년도 장애인구 및 출현율

□ 전국의 장애인은 2,148.7천명으로 추정되어, 2000년의 1,449.5천명에 비해 699.2천명이 증가함.

— 이 중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가장애인은 2,101.1천명이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47.6천명임.

〈표 3〉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 천명)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05년	장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4.50	-	4.59
2000년	장애인수	1,398,177	51,319	1,449,496
	출현율	2.98	-	3.09

-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은 4.59%로서 2000년의 3.09%에 비해서는 1.50% 포인트 증가함.

나. 장애인 출현율의 국제 비교

-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장애의 범주 및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일본 4.7%, 독일 10.2%, 미국 19.3%, 영국 19.7%로서 2005년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 4.59%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4〉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단위: %)

구분	한국(2000)	한국(2005)	일본(2000)	독일(2003)	미국(2000)	영국(2004)
출현율	3.09	4.59	4.70	10.20	19.30	19.70

자료: 1) 영국: www.statistics.gov.uk,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Improving the Life Chances of the Disabled People, 2005.

2) 미국: U.S. Census Bureau, Disability Status: 2000, 2003.

3) 일본: Cabinet Office of Government of Japan, "White Paper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3, 2003.

4) 독일: <http://www.destatis.de/presse/englisch/pm2004/p5140085.htm>

다. 장애 유형별 추정 장애인 수

- 재가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은 1,005,618명, 뇌병변장애인은 270,853명의 순으로 많고, 안면장애인이 4,394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2000년과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수 비교

(단위: %, 명)

구분	2000년 실태조사	등록 장애인수 ¹⁾	2005년 실태조사	등록률 ²⁾
계	1,449,496명	1,669,329	2,148,686	77.7
지체장애	605,127명	923,183	1,005,618	91.8
뇌병변장애	223,246명	154,614	270,853	57.1
시각장애	181,881명	180,526	221,166	81.6
청각장애	148,707명	151,184	229,159	66.0
언어장애	26,871명	13,874	20,947	66.2
정신지체	108,678명	123,868	125,563	98.7
주된 발달장애	13,481명	8,754	23,478	37.3
장애유형별 정신장애	71,797명	59,223	91,253	64.9
장애인수 신장장애	25,284명	40,288	40,355	99.8
심장장애	44,424명	12,226	42,007	29.1
호흡기장애	-	10,815	30,186	35.8
간장애	-	4,583	13,443	34.1
안면장애	-	1,311	4,394	29.8
장루·요루장애	-	8,848	15,508	57.1
간질장애	-	6,032	14,756	40.9

주: 1) 기존 장애유형(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정신, 신장, 심장): 2,070,399명

2) 신규 장애유형(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78,287명

자료: 1) 2005년 2/4분기 현재 장애등록자 수(보건복지부)

2) 등록률 =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인수 / 등록 장애인수) × 100

□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중복 장애유형을 ‘간’으로 환산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출현율을 구해보면,

- 인구 100명 중 지체장애가 있는 인구는 2.24명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음.
- 다음은 뇌병변장애로서 인구 100명당 0.64명 수준임.

〈표 6〉 개별 장애유형별 장애 출현율

(단위: 천명,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장애인 수	1,048	301	280	302	237	164	35	105	41	59	37	16	5	17	27
출현율	2.24	0.64	0.60	0.65	0.51	0.35	0.07	0.22	0.09	0.13	0.08	0.03	0.01	0.04	0.06

라. 장애인 가구 출현율

□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1,944,791가구로 추정되어 전체 조사대상 15,864,809 가구의 12.3%로 나타남.

〈표 7〉 2005년도 전국 지역별 장애인 가구 출현율

(단위: 가구, %)

구분	동 지역			읍·면 지역	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전체가구수	3,295,283	4,117,639	5,275,660	3,176,227	15,864,809
장애인 가구수	373,355	459,409	575,898	536,129	1,944,791
출현율	11.3	11.2	10.9	16.9	12.3

2. 재가장애인의 신체적 특성

가. 장애 발생원인과 치료

□ 대부분의 장애는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0%)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사고(36.6%)보다 질환(52.4%)이 더 높게 나타남.

〈표 8〉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 원인	1.6	2.2	5.4	3.7	22.8	23.2	13.2	0.9	1.9	10.1	-	-	19.3	-	8.8	4.0
출산시 원인	0.1	2.3	0.3	0.3	-	3.9	7.3	-	-	-	-	-	-	-	-	0.7
후천적 원인	질환	38.3	82.1	49.8	68.2	52.8	20.8	12.3	82.4	92.5	88.1	93.0	100.0	9.6	100.0	52.4
	사고	58.8	11.5	36.5	18.1	10.1	12.5	1.7	7.3	3.8	0.9	4.1	-	63.9	-	23.7
원인불명	1.2	1.9	8.0	9.7	14.3	39.6	65.5	9.4	1.7	0.9	2.9	-	7.2	-	33.9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70)	(687)	(566)	(593)	(50)	(289)	(58)	(201)	(106)	(108)	(76)	(34)	(11)	(38)	(38)	(5,425)
전국 추정수	987,129	264,536	218,460	227,513	19,433	110,530	22,836	77,180	40,286	41,684	29,568	13,012	3,965	14,634	14,555	2,085,311

주: 무응답 41건 제외

- 이러한 장애에 대하여 발견이나 진단 직후 1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경우는 78.5%에 불과하고, 나머지 21.5%는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즉시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3.0%),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21.8%),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 때문에(1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9〉 장애진단 후 즉시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33.1	20.9	44.1	37.6	-	23.1	-	20.2	14.9	85.0	69.6	31.7	-	-	30.9	33.0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24.8	35.1	9.4	22.8	17.9	14.3	46.0	25.2	34.1	15.0	30.4	36.8	-	100.0	-	21.8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9.1	6.3	8.0	4.6	-	8.4	-	3.9	-	-	-	-	-	-	13.4	6.9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4.5	-	7.8	9.3	-	9.0	-	-	-	-	-	-	-	-	-	5.4
치료받기 싫어서	0.7	-	-	1.3	-	-	-	8.1	34.9	-	-	-	-	-	-	1.6
주위의 시선 때문에	-	-	-	-	-	3.0	-	5.1	-	-	-	-	-	-	13.8	0.8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5.0	-	3.2	3.6	20.4	-	9.7	-	-	-	-	-	-	-	-	3.5
시간이 없어서	2.2	-	-	1.2	-	4.7	-	-	-	-	-	-	-	-	-	1.5
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	12.9	30.6	24.2	16.9	16.9	31.3	11.6	37.4	16.2	-	-	31.6	-	-	41.9	19.5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2.0	-	-	-	-	-	12.2	-	-	-	-	-	-	-	-	1.0
기타	5.9	7.0	3.4	2.6	44.8	6.2	20.5	-	-	-	-	-	100.0	-	-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51)	(14)	(61)	(82)	(5)	(35)	(9)	(24)	(6)	(6)	(3)	(3)	(1)	(1)	(7)	(408)
전국추정수	57,611	5,601	23,333	31,164	1,937	13,893	3,400	9,420	2,525	2,290	1,265	1,156	382	382	2,640	156,999

주: 비혜당(진단 직후 치료 받거나, 치료받지 않은 경우) 5,056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 일상생활동작의 측정도구 체크리스트인 Modified Barthel Index(Granger 등, 1979)를 모 든 장애유형에 적용하여 80~100점을 경도로, 43~79점을 중등도로, 0~42점까지를 중도로 구분하였음.

- 그 결과 경도가 90.3%였고, 중등도가 5.2%, 중도가 4.5%였음.
- 장애유형별로도 전반적으로 경도의 비율이 높았고, 다만 뇌병변장애가 중등도 및 중도의 비율이 각각 17.0%, 22.1%로 중증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음.

〈표 10〉 Barthel index에 따른 장애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도	94.5	60.8	97.3	98.6	95.8	87.4	82.1	98.6	90.3	93.4	85.1	74.4	100.0	94.9	98.0	90.3
중등도	3.1	17.0	2.3	0.9	2.1	8.4	14.6	1.4	7.9	3.9	12.2	8.5	-	5.1	-	5.2
중도	2.4	22.1	0.3	0.5	2.1	4.2	3.3	-	1.8	2.6	2.7	17.0	-	-	2.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 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서는 전반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의 응답률이 높았음.

- 항목별로 대변 조절(참기)하기(92.6%), 식사하기(92.4%), 의자⇔침상으로 옮겨앉기(92.4%), 소변 조절(참기)하기(92.2%)가 ‘스스로 할 수 있다’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욕하기’와 ‘계단 오르내리기’가 각각 80.2%, 76.9%로 가장 낮았음.

〈표 11〉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정도

(단위: %)

구분	전혀 할 수 없다	대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하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스스로 할 수 있다	계
개인위생(양치질, 머리빗기, 세면 등)	3.2	2.0	2.1	4.2	88.4	100.0
목욕하기	4.9	3.6	4.3	7.1	80.2	100.0
식사하기	2.1	1.3	1.3	2.9	92.4	100.0
화장실 사용하기	3.5	1.7	1.4	2.5	91.0	100.0
계단 오르내리기	6.3	3.2	4.8	8.8	76.9	100.0
옷 입고 벗기	4.3	3.2	4.0	7.7	80.7	100.0
배변(대변) 조절하기(참기)	3.4	1.1	0.9	2.1	92.6	100.0
배변(소변) 조절하기(참기)	3.1	1.1	1.2	2.4	92.2	100.0
보행하기	4.8	2.7	2.9	7.1	82.5	100.0
의자 ⇔ 침상으로 옮겨 앉기	3.2	1.3	1.1	2.1	92.4	100.0

□ 재가장애인의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서는 전반적으로 ‘완전자립’의 응답률이 높았음.

- 항목별로 약채겨먹기(85.6%), 몸단장하기(81.7%), 상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사기(78.3%), 근거리 외출(교통수단 없이)하기(77.7%)는 ‘완전 자립’의 비율이 높았고, 빨래하기, 식사준비, 집안일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는 ‘완전 도움’의 비율이 높았음.

〈표 12〉 재가장애인의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정도

(단위: %)

구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
몸단장하기	81.7	13.0	5.3	100.0
집안일(일상적인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설거지) 하기	65.6	21.3	13.1	100.0
식사준비(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하기	65.2	20.8	14.0	100.0
빨래(손으로 빨든 세탁기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하기	68.1	17.5	14.3	100.0
근거리 외출하기(교통수단 없이)	77.7	13.1	9.2	100.0
교통수단 이용하기	68.0	19.1	12.9	100.0
상점이나 가게에서 사고 싶은 물건 사기	78.3	12.2	9.5	100.0
금전관리하기	72.3	15.3	12.4	100.0
전화사용하기	76.7	13.4	9.9	100.0
약 채겨먹기	85.6	8.5	5.9	100.0

- 장애인의 약 64.6%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5.4%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다른 장애에 비해 발달장애(91.0%), 정신지체(82.1%), 뇌병변장애(76.1%)를 가진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3〉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시 타인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혼자서 스스로	60.3	14.7	63.2	45.2	43.8	7.1	1.8	35.9	53.0	42.2	39.6	60.2	82.0	50.2	46.0	47.8
대부분 혼자서	17.5	9.2	12.8	28.7	23.1	10.8	7.2	15.3	13.2	26.2	13.8	5.8	-	24.0	31.0	16.8
일부도움 필요	14.8	24.8	15.4	19.5	23.3	37.6	35.8	23.2	19.5	19.4	26.1	8.4	18.0	19.9	15.9	18.8
대부분 필요	4.5	21.6	6.1	5.4	6.0	26.1	29.5	20.2	8.6	6.6	16.3	-	-	6.0	2.6	9.2
거의 남의도움 필요	2.8	29.7	2.5	1.2	3.9	18.4	25.7	5.3	5.8	5.7	4.2	25.6	-	-	4.5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실제로 도움 제공자가 있는 경우는 86.7%이며, 없는 경우는 13.3%임.

〈표 14〉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81.5	96.2	80.9	76.7	86.8	95.3	100.0	91.1	94.1	80.8	89.7	93.2	100.0	84.9	95.3	86.7
없다	18.5	3.8	19.1	23.3	13.2	4.7	-	8.9	5.9	19.2	10.3	6.8	-	15.1	4.7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18)	(588)	(208)	(319)	(28)	(269)	(57)	(130)	(50)	(63)	(47)	(14)	(2)	(20)	(21)	(2,834)
전국 추정수	395,099	226,981	80,713	122,575	10,793	103,043	22,465	49,456	18,946	24,104	18,104	5,331	786	7,707	7,863	1,093,966

주: 비해당(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2,623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 도움 제공자는 배우자 47.1%, 자녀(며느리, 사위) 21.7%, 부모 18.3%, 형제·자매 3.8% 등으로 도움 제공자의 대부분(90.9%)은 가족 구성원인 것으로 나타남.

〈표 15〉 재가장애인의 도움 주는 사람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배우자	59.0	52.8	53.8	44.6	46.7	7.6	-	17.2	56.5	66.9	63.9	60.7	48.6	87.7	26.0	47.1
부모	6.3	9.8	4.5	4.5	33.1	68.7	93.0	52.3	6.6	8.0	9.2	15.2	-	-	59.3	18.3
자녀(며느리, 사위)	23.5	24.8	28.7	41.9	4.1	2.7	-	4.5	30.2	19.2	12.3	24.1	51.4	5.9	-	21.7
형제·자매	3.0	2.8	2.8	1.1	4.0	9.9	4.0	9.6	4.5	-	2.3	-	-	-	9.9	3.8
조부모	0.3	0.2	-	-	3.8	4.5	1.2	-	-	-	-	-	-	-	-	0.7
손자녀	0.7	0.8	1.8	1.6	-	-	-	-	-	-	-	-	-	6.4	-	0.8
기타 가족	0.4	0.4	1.2	0.5	-	2.1	-	1.9	-	-	-	-	-	-	-	0.7
친척	0.6	0.3	-	1.2	3.7	1.6	-	1.5	-	-	2.5	-	-	-	-	0.7
친구	0.6	-	0.7	-	-	0.4	-	-	-	-	-	-	-	-	-	0.3
이웃	1.7	1.0	2.0	2.0	-	1.3	-	1.5	-	2.1	-	-	-	-	-	1.4
유료 가정봉사원, 간병인, 활동보조인	2.2	5.8	0.6	-	4.5	0.4	-	2.5	-	-	-	-	-	-	-	2.4
무료 가정봉사원, 간병인, 활동보조인	1.4	0.6	3.3	1.7	-	-	-	2.1	2.2	3.8	7.0	-	-	-	4.7	1.4
기타	0.2	0.5	0.6	0.9	-	0.8	1.8	6.9	-	-	2.8	-	-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30)	(566)	(168)	(243)	(24)	(257)	(57)	(118)	(47)	(51)	(42)	(13)	(2)	(17)	(20)	(2,455)
전국추정수	322,141	218,423	65,273	93,596	9,364	98,219	22,465	45,070	17,837	19,483	16,236	4,970	786	6,542	7,496	947,901

주: 비해당(모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음 및 일상생활 도우미 없는 경우) 3,010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다. 외출 불편 정도

□ 장애인의 55.2%가 집밖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음.

- 특히 뇌병변장애(85.5%), 호흡기장애(84.5%), 안면장애(79.5%)를 가진 장애인이 집밖 활동의 불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표 16〉 재가장애인의 외출(집밖 활동) 불편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불편	20.2	54.7	22.3	15.2	11.7	27.5	34.7	20.9	26.0	24.8	49.3	30.8	21.7	25.1	22.3	25.2
약간 불편	31.2	28.8	30.2	27.8	26.6	30.0	34.0	24.4	22.6	36.7	24.2	33.6	44.8	29.4	37.5	30.0
불편하지 않은 편	33.3	14.7	29.9	43.1	48.0	30.0	22.6	31.0	38.2	31.7	24.0	23.8	26.7	37.6	27.5	31.4
전혀 불편 하지않음	15.4	1.8	17.6	13.9	13.7	12.5	8.7	23.8	13.2	6.7	2.5	11.9	6.8	7.9	12.8	1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0)	(608)	(567)	(583)	(49)	(286)	(59)	(182)	(106)	(108)	(74)	(33)	(12)	(40)	(37)	(5,304)
전국 추정수	986,201	243,517	219,216	224,246	19,440	109,779	23,259	71,853	40,286	41,684	29,037	13,397	4,369	15,466	14,271	2,056,021

주: 비해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156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 장애인이 집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35.6%),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27.9%), 기타(22.6%),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3.9%)의 순으로 나타남.

〈표 17〉 집밖 활동시 불편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 시설부족	46.2	36.4	33.6	19.4	10.1	10.0	11.5	7.3	27.1	30.9	43.4	25.6	-	25.6	4.7	35.6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15.1	37.5	32.6	38.9	47.8	62.5	47.6	43.7	33.8	25.6	20.2	25.7	-	6.0	40.7	27.9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5.7	9.7	8.8	9.9	31.7	21.9	35.8	28.3	1.5	2.9	3.7	4.1	100.0	22.9	12.6	13.9
기타	23.0	16.4	24.9	31.8	10.5	5.6	5.0	20.7	37.7	40.6	32.6	44.5	-	45.5	42.0	2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11)	(529)	(297)	(248)	(19)	(161)	(41)	(84)	(52)	(67)	(55)	(23)	(8)	(22)	(22)	(2,939)
전국추정수	504,631	203,026	114,817	96,443	7,447	62,774	15,984	32,498	19,580	25,664	21,347	8,622	2,905	8,424	8,531	1,132,693

주: 비해당 2,520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라. 재활보조기구 소유 현황

□ 재활보조기구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45.8%인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재활보조기구 소유율은 장루·요루장애인 97.5%, 시각장애인 68.9%, 청각장애인 63.7%, 뇌병변장애인 63.2%의 순임.

〈표 18〉 재가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43.2	63.2	68.9	63.7	18.1	3.5	5.3	1.5	25.8	19.4	61.4	20.5	18.0	97.5	11.3	45.8
없다	56.8	36.8	31.1	36.3	81.9	96.5	94.7	98.5	74.2	80.6	38.6	79.5	82.0	2.5	88.7	5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 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 재활보조기구 중 전동휠체어를 소지한 장애인은 11,198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지만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49,680명으로 나타남.

-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장애인 중 약 68.3%가 ‘구입비용 때문’에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9〉 전동휠체어 소지 현황

(단위: %,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소지	88.5 (11,198)	11.5 (1,448)	100.0 (12,646)
미소지	3.7 (49,680)	96.3 (1,280,828)	100.0 (1,330,508)
계	4.5 (60,878)	95.5 (1,282,276)	100.0 (1,343,154)

마. 정보통신기기 보유율 및 사용률

-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율은 휴대폰 55.2%, 컴퓨터 50.0%, 인터넷 48.3%의 순으로 나타남.
 — 사용률은 휴대폰 81.2%, 컴퓨터 36.4%, 인터넷 36.0%의 순으로 나타남.

〈표 20〉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대폰	보유율	69.7	30.5	63.2	39.5	39.5	20.9	5.3	32.0	73.2	59.0	58.2	57.3	75.2	53.9	45.9	55.2
	사용률	88.4	56.0	84.2	74.5	83.4	42.7	21.7	63.6	90.6	81.7	81.0	95.5	100.0	95.4	72.1	81.2
컴퓨터 (PC)	보유율	53.9	41.9	50.9	41.3	52.8	50.1	78.0	40.1	58.4	46.1	37.8	49.0	66.2	52.3	56.6	50.0
	사용률	42.3	16.2	35.4	28.4	24.2	46.8	50.5	31.9	44.1	25.5	19.4	24.9	76.4	17.7	49.1	36.4
인터넷	보유율	52.2	41.0	48.6	41.0	50.9	46.7	78.0	37.1	56.4	44.1	36.5	49.0	66.2	47.3	56.6	48.3
	사용률	42.1	16.2	35.1	28.1	25.0	40.6	50.7	31.7	44.8	26.4	17.4	31.6	76.4	19.2	49.1	36.0

3. 재가장애인의 사회적 특성

가. 취학 현황

-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취학형태는 일반보육시설 42.9%, 일반학교내 특수반 8.0%, 장애아 전담학교 49.1%임.

〈표 21〉 장애영유아의 이용 보육시설 형태

(단위: 명, %)

구분	일반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내 특수반	장애아 전담학교	계
보육시설	4,286	804	4,911	10,001
구성비	42.9	8.0	49.1	100.0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취학형태는 일반유치원 76.9%,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23.1%임.

〈표 22〉 장애영유아의 이용 유치원 형태

(단위: 명, %)

구분	일반유치원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계
유치원	2,485	747	3,232
구성비	76.9	23.1	100.0

-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65,375명으로 추정되며, 취학형태는 일반학교 38.8%, 일반학교 특수학급 35.1% 그리고 나머지 26.1%는 특수학교에 취학하고 있음.

〈표 23〉 재가장애학생의 취학 형태

(단위: %, 명)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계
초등학교	40.2(10,620)	41.3(10,919)	18.5(4,894)	100.0(26,433)
중학교	39.8(8,436)	29.0(6,153)	31.2(6,618)	100.0(21,207)
고등학교	35.5(6,298)	33.2(5,884)	31.3(5,553)	100.0(17,735)
구성비	38.8(25,354)	35.1(22,956)	26.1(17,065)	100.0(65,375)

나. 결혼생활·여성장애인

- 20세 이상 재가장애인의 결혼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배우가 62.9%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 사별 17.3%, 미혼 12.3%이었음.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미혼 및 유배우 비율이 높았고, 사별은 여자가 더 높았음.

〈표 24〉 재가장애인의 결혼상태 -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4.9	8.4	12.3
유배우	72.5	48.8	62.9
사별	4.8	35.7	17.3
이혼	6.4	5.7	6.1
별거	1.5	1.4	1.5
계	100.0	100.0	100.0
(N)	(3,108)	(2,115)	(5,223)
전국추정수	1,193,669	811,848	2,005,517

주: 비해당(20세 미만) 243건 제외

- 20세 이상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결혼상태에서는 20대가 미혼(85.2%)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배우 비율은 50대가 가장 높으나 30대 이후로는 유배우가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25〉 재가장애인의 결혼상태 - 연령별

(단위: %, 명)

구분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전체
미혼	85.2	37.9	13.4	3.7	1.7	0.5	12.3
유배우	14.1	53.7	69.4	74.6	74.3	51.6	62.9
사별	-	0.4	3.5	9.1	18.5	46.6	17.3
이혼	-	6.9	11.5	10.3	4.1	0.9	6.1
별거	0.7	1.2	2.3	2.3	1.4	0.4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80)	(523)	(995)	(1,065)	(1,172)	(1,188)	(5,223)
전국추정수	108,539	203,035	383,408	407,853	446,885	455,797	2,005,517

주: 비해당(20세 미만) 243건 제외

- 임신경험이 있는 20세 부터 49세 사이의 여성장애인 중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30.6%, ‘장애인 본인의 건강악화’ 20.1%, ‘집안 일 하기가 힘들어서’ 18.7%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 여성장애인의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계
본인의 건강악화	6.7	19.1	22.0	13.9	20.1
집안일 하기가 힘들어서	26.7	21.3	16.7	28.2	18.7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13.3	9.0	6.1	4.2	7.2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26.7	22.5	35.6	22.2	30.6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	-	4.5	1.5	2.3	2.7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6.7	6.7	6.8	9.7	6.6
가족들의 출산 반대	-	2.2	3.0	1.9	2.6
병원의 시설설치 미비	-	-	-	0.9	0.4
병원내 의사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	-	-	-	-
주위의 시선때문에	6.7	3.4	2.3	2.3	2.7
기타	6.7	2.2	0.8	2.3	1.8
없음	6.7	9.0	5.3	12.0	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15)	(89)	(132)	216	(452)
전국추정수	6,005	33,800	50,718	82,904	173,427

주: 비해당 5,004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 출산 경험이 있는 20세 부터 59세 사이의 여성장애인 중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정도는 ‘별로 또는 전혀 못했음’이 66.6%로 절반 이상이 산후 조리를 잘 못한 것으로 보임.

〈표 27〉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충분히 했음	39.1	25.4	21.9	9.1	17.0
대체로 잘 했음	36.4	28.7	19.7	20.4	22.3
별로 못했음	24.5	39.8	44.0	40.0	40.6
전혀 못했음	-	6.1	14.4	30.5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N)	(14)	(78)	(122)	(197)	(411)
전국추정수	5,587	29,621	46,885	75,739	157,832

주: 비해당 5,052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 20세 이상 결혼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로는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산후조리 서비스’, ‘자녀양육지원 서비스’가 각각 64.6%, 61.8%, 61.3%, 6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표 28〉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별로 필요 안함	전혀 필요 안 함	전체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51.1	37.1	6.4	1.0	100.0
	(431,026)	(312,912)	(53,742)	(8,036)	(805,716)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61.8	31.7	5.4	1.0	100.0
	(497,838)	(255,469)	(43,725)	(8,149)	(805,181)
출산비용 지원	64.6	32.9	1.9	0.6	100.0
	(520,511)	(265,494)	(15,087)	(5,042)	(806,134)
산후조리서비스	61.3	35.4	2.6	0.7	100.0
	(494,218)	(285,576)	(21,275)	(5,463)	(806,532)
육아용품대여	46.2	43.0	9.6	1.2	100.0
	(372,089)	(346,509)	(77,149)	(10,052)	(805,799)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60.6	35.6	3.2	0.5	100.0
	(488,661)	(287,045)	(25,825)	(4,274)	(805,805)
가사도우미	55.0	36.2	7.8	1.0	100.0
	(443,158)	(291,737)	(63,163)	(8,112)	(806,170)
건강관리 프로그램	47.7	42.7	8.4	1.2	100.0
	(384,094)	(343,666)	(67,299)	(9,492)	(804,551)

4.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가. 경제상태

-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2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로써 2000년 당시 46.4%보다 5.7% 포인트 증가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77.5만원, 광역시 162.2만원, 중소도시 168.1만원, 읍·면부 127.5만원으로 각각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8.8%, 53.7%, 55.7%, 42.2% 수준임.
 - 가구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는 53.0만원이고, 2인 102.2만원, 3인 160.8만원, 4인 207.8만원, 5인 248.7만원, 6인 이상 가구 303.4만원 등임.

〈표 29〉 재가장애인의 지역별 장애가구 소득

(단위: 만원, %)

구분	서울시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부	계
가구 소득액	177.5	162.2	168.1	127.5	157.2
가구소득액/도시근로자 가계소득 ¹⁾	58.8	53.7	55.7	42.2	52.1

주: 1) 도시근로자가계소득(301.9천원: 2005년 2/4분기)에 대한 장애인 가구소득의 비율임.
 자료: 1) 통계청, □ 한국통계월보□, 2005. 10.

-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3.1%로써 비장애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비율 6.8%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표 30〉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재가장애인 비율

(단위: %, 가구)

구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수급자				비생활보장 대상자	계
	일반수급가구	조건부수급가구	의료·교육·자활특례			
장애인가구 구성비	11.5	0.7	0.9	86.9	100.0	
(전국 추정수)	223,816	14,201	17,565	1,689,209	1,944,791	
비장애인 가구 구성비 ¹⁾	4.7		2.1	93.2	100.0	

자료: 1) 2003년 국민기초보장생활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DB)

- 재가장애인의 67.4%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5.4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인이 357.0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장장애 343.9천원, 발달장애 323.1천원, 장루·요루장애 283.9천원, 뇌병변장애 272.8천원의 순임.
-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90.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2.9천원임.

〈표 31〉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 장애유형별

(단위: 천원)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계
총 추가비용	120.5	272.8	78.1	55.8	112.0	156.5	323.1	106.3	343.9	121.8	237.6	357.0	279.0	283.9	115.0	155.4
교통비	23.1	33.5	13.9	7.0	13.5	24.2	49.3	11.6	42.9	15.1	19.4	46.9	9.3	18.0	10.6	22.9
의료비	69.1	159.3	39.3	22.5	44.9	30.6	33.6	84.8	280.2	104.5	184.0	267.0	47.7	178.3	56.2	90.2
교육비	0.2	5.9	0.4	2.7	36.5	47.5	177.6	1.3	0.0	0.0	0.0	0.0	0.0	0.0	0.0	6.1
보호·간병인	8.2	44.7	0.0	0.3	0.0	0.0	0.8	0.0	5.7	0.0	13.9	2.4	0.0	3.1	0.0	11.8
재활기관이용료	0.6	3.1	0.0	0.1	5.1	23.9	22.0	0.2	0.0	0.0	0.0	0.0	0.0	0.0	0.0	2.1
통신비	0.6	0.5	2.9	2.7	0.0	5.9	2.4	0.9	0.8	0.3	0.5	0.2	0.0	0.1	0.0	1.2
재활보조기구	5.1	3.2	8.8	17.0	0.1	1.1	0.4	0.0	4.1	0.6	19.6	0.0	1.5	80.7	0.0	6.4
구입·유지비																
부모사후대비비	10.6	4.1	11.4	2.2	7.7	17.8	33.0	4.5	4.3	1.1	0.0	0.0	220.5	0.0	38.9	8.8
기타	3.1	18.5	1.5	1.5	4.3	5.5	4.1	3.0	5.8	0.3	0.2	40.4	0.0	3.8	9.3	6.0

나. 취업상태

-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이며 2000년의 34.2%와 유사한 수준임.
- 실업률은 10.6%로써 전체 실업률(2005년 6월) 3.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임.

〈표 32〉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32,363	2,560	1,728	832	29,803	7.91	67.50	32.50	5.34
20~29세	107,808	51,068	39,923	11,145	56,740	47.37	78.18	21.82	37.03
30~39세	203,035	115,922	99,022	16,900	87,113	57.09	85.42	14.58	48.77
40~49세	383,408	224,166	202,845	21,321	159,242	58.47	90.49	9.51	52.91
50~64세	628,285	275,704	249,580	26,124	352,581	43.88	90.52	9.48	39.72
65세 이상	681,889	107,739	101,857	5,882	574,150	15.80	94.54	5.46	14.94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전국 ¹⁾	38,468,000	23,976,000	23,191,000	785,000	14,511	62.3	96.7	3.3	60.29

자료: 1)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2005. 10.

- 장애인 미취업원인 고려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34.1%임.
-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4%로서 2000년의 47.8%보다 3.4% 포인트 감소함.

〈표 33〉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32,363	3,732	1,728	2,004	28,631	11.53	46.30	53.70	5.34
20~29세	107,808	66,412	39,923	26,489	41,396	61.60	60.11	39.89	37.03
30~39세	203,035	128,822	99,022	29,800	74,213	63.45	76.87	23.13	48.77
40~49세	383,408	252,371	202,845	49,526	131,037	65.82	80.38	19.62	52.91
50~64세	628,285	325,407	249,580	75,827	302,878	51.79	76.70	23.30	39.72
65세 이상	681,889	126,525	101,857	24,668	555,364	18.56	80.50	19.50	14.94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82.2천명임.
-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3.5%이고, 여성장애인은 20.2%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34〉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591,930	528,508	63,422	621,871	48.77	89.29	10.71	43.54
여자	822,987	185,229	166,447	18,782	637,758	22.51	89.86	10.14	20.22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208.3천명임.
- 실업률은 23.1%로서 2000년의 28.4%에 비해 5.3% 포인트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 장애인은 21.1%, 여자는 28.8%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7.7% 포인트 높게 나타남.

〈표 35〉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669,565	528,508	141,057	544,236	55.16	78.93	21.07	43.54
여자	822,987	233,704	166,447	67,257	589,283	28.40	71.22	28.78	20.22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장애인 (46.6%)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심장장애, 신장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6〉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991,111	489,160	437,419	51,741	501,951	49.35	89.42	10.58	44.13
뇌병변장애	255,928	24,497	22,257	2,240	231,431	9.57	90.86	9.14	8.70
시각장애	216,809	96,435	83,770	12,665	120,374	44.48	86.87	13.13	38.64
청각장애	224,079	88,653	81,452	7,201	135,426	39.56	91.88	8.12	36.35
언어장애	17,097	8,798	7,959	839	8,299	51.46	90.46	9.54	46.55
정신지체	90,615	21,774	18,973	2,801	68,841	24.03	87.14	12.86	20.94
발달장애	7,303	421	421	0	6,882	5.76	100.00	0.00	5.76
정신장애	77,180	13,473	12,302	1,171	63,707	17.46	91.31	8.69	15.94
신장장애	40,286	9,556	8,037	1,519	30,730	23.72	84.10	15.90	19.95
심장장애	39,754	7,515	5,954	1,561	32,239	18.90	79.23	20.77	14.98
호흡기장애	29,953	5,912	5,912	0	24,041	19.74	100.00	0.00	19.74
간장애	13,069	1,525	1,525	0	11,544	11.67	100.00	0.00	11.67
안면장애	3,987	1,757	1,757	0	2,230	44.07	100.00	0.00	44.07
장루·요루장애	15,466	5,146	5,146	0	10,320	33.27	100.00	0.00	33.27
간질장애	14,151	2,537	2,071	466	11,614	17.93	81.63	18.37	14.64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장애인 (46.6%)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발달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정신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계	취업	실업					취업자	비율
지체장애	991,111	548,311	437,419	110,892	442,800	55.32	79.78	20.22	44.13	
뇌병변장애	255,928	36,883	22,257	14,626	219,045	14.41	60.34	39.66	8.70	
시각장애	216,809	109,783	83,770	26,013	107,026	50.64	76.31	23.69	38.64	
청각장애	224,079	99,851	81,452	18,399	124,228	44.56	81.57	18.43	36.35	
언어장애	17,097	9,183	7,959	1,224	7,914	53.71	86.67	13.33	46.55	
정신지체	90,615	32,672	18,973	13,699	57,943	36.06	58.07	41.93	20.94	
발달장애	7,303	1,541	421	1,120	5,762	21.10	27.32	72.68	5.76	
정신장애	77,180	20,510	12,302	8,208	56,670	26.57	59.98	40.02	15.94	
신장장애	40,286	12,038	8,037	4,001	28,248	29.88	66.76	33.24	19.95	
심장장애	39,754	10,236	5,954	4,282	29,518	25.75	58.17	41.83	14.98	
호흡기장애	29,953	7,450	5,912	1,538	22,503	24.87	79.36	20.64	19.74	
간장애	13,069	2,338	1,525	813	10,731	17.89	65.23	34.77	11.67	
안면장애	3,987	2,156	1,757	399	1,831	54.08	81.49	18.51	44.07	
장루·요루장애	15,466	6,315	5,146	1,169	9,151	40.83	81.49	18.51	33.27	
간질장애	14,151	4,002	2,071	1,931	10,149	28.28	51.75	48.25	14.64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 비경제활동 및 실업장애인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45.0%가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 24.7%,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0.5%의 순이었음.

〈표 38〉 비경제활동 및 실업 장애인 중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3.6(23,468)	1.5(9,836)	2.5(33,304)
임금이 너무 낮아서	0.2(1,484)	0.1(775)	0.2(2,259)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4.4(94,633)	6.5(42,825)	10.5(137,458)
작업환경(편의시설 등)이 열악해서	0.2(1,100)	0.2(1,121)	0.2(2,221)
출·퇴근이 힘들어서	0.0(285)	0.3(1,933)	0.2(2,218)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47.6(312,812)	42.5(277,964)	45.0(590,776)
다른 질병 때문에	3.3(21,913)	2.5(16,435)	2.9(38,348)
나이가 많아서	20.4(133,869)	29.0(189,795)	24.7(323,664)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0.1(792)	8.9(57,994)	4.5(58,786)
취업정보, 취업방법을 몰라서	0.4(2,358)	0.4(2,761)	0.4(5,119)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1.7(11,127)	0.7(4,637)	1.2(15,764)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2.5(16,743)	5.7(37,429)	4.1(54,172)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	0.3(2,237)	0.1(386)	0.2(2,623)
재학 중이기 때문에	3.4(22,228)	1.3(8,517)	2.3(30,745)
기타	1.9(12,411)	0.3(2,257)	1.1(14,668)
계	100.0(657,460)	100.0(654,665)	100.0(1,312,125)

□ 취업장애인의 취업 분야는 주로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 기능원·관련 기능 근로자(12.3%)에 편중되어 있음.

※ 참고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주로 사무종사자(14.2%), 서비스종사자(12.9%), 판매종사자(11.5%)의 비율이 높음.

〈표 39〉 재가 취업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야

(단위: %)

구분	의회의원·관리자	전문가	기술공·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어업	기능원·관련기능 근로자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단순 노무직	계
장애인 비율	1.0	2.6	5.4	6.3	7.2	8.9	19.0	12.3	9.7	27.6	100.0
전국 비율 ¹⁾	2.6	8.1	10.1	14.2	12.9	11.5	8.1	10.6	11.1	10.8	100.0

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5. 8.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114.9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5년 6월)의 월평균 임금 258.0만원의 44.5%로써, 2000년 당시 43.1%에 비해 약간 상승함.
-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이 176.6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신장장애인 153.8만원 등의 순임.
 - 소득이 낮은 장애유형은 간질장애가 4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은 정신지체 47.5만원임.

〈표 40〉 취업 재가장애인의 월평균 소득

(단위: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계
월평균 소득액	125.5	99.9	115.5	83.8	81.4	47.5	70.0	54.8	153.8	74.1	81.6	176.6	112.2	124.1	43.5	114.9

5.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가. 장애인 등록제도

- 장애인의 79.4%가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됨.
- 신장장애의 등록률이 9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정신지체와 지체장애의 등록률이 각각 92.0%와 87.0%로 높고, 심장장애의 등록률이 3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됨.

〈표 41〉 재가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7.0	76.5	78.4	62.2	76.5	92.0	81.0	68.7	97.2	34.1	51.7	51.3	45.6	61.9	54.9	79.4
아니오	10.8	22.5	20.0	36.9	19.6	7.7	17.3	29.7	1.8	64.1	46.8	46.0	37.0	35.7	43.2	18.8
신청중	0.6	0.5	0.2	0.5	3.9	0.3	1.7	1.0	0.0	1.0	0.0	2.7	0.0	0.0	2.0	0.6
보훈처 등록	1.7	0.6	1.5	0.4	0.0	0.0	0.0	0.5	1.0	0.9	1.4	0.0	17.4	2.3	0.0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89)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570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62

주: 무응답 2건 제외

- 미등록 장애인의 미등록 사유는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32.9%,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28.4%,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2〉 미등록 재가장애인의 미등록 사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지체)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4.3	46.3	27.7	25.4	18.6	18.0	0.0	28.8	100.0	30.0	48.2	43.2	22.9	65.4	18.1	32.9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13.6	12.5	19.9	14.4	29.3	18.3	19.5	6.8	0.0	8.5	5.7	6.4	0.0	11.4	18.7	13.5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1.5	0.7	0.9	1.4	10.3	4.7	0.0	1.7	0.0	1.7	2.7	0.0	0.0	0.0	6.5	1.5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7.5	7.6	3.6	2.7	0.0	17.8	0.0	0.0	0.0	8.8	8.2	0.0	0.0	0.0	5.8	5.5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27.1	19.8	31.4	44.0	9.4	4.3	10.6	12.6	0.0	28.9	24.4	44.1	59.7	16.3	11.8	28.4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5.7	4.5	10.0	5.1	0.0	23.4	31.7	28.4	0.0	3.3	2.5	6.3	0.0	0.0	33.6	7.8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2.8	2.4	3.6	5.1	20.0	3.7	0.0	1.3	0.0	4.0	2.8	0.0	0.0	6.9	0.0	3.4
앞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	1.1	1.9	0.0	0.4	12.4	0.0	38.2	12.0	0.0	4.7	0.0	0.0	0.0	0.0	0.0	2.2
기타	6.4	4.3	3.0	1.4	0.0	9.8	0.0	8.4	0.0	10.1	5.5	0.0	17.4	0.0	5.5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79)	(154)	(112)	(220)	(10)	(22)	(10)	(59)	(2)	(69)	(36)	(16)	(5)	(14)	(16)	(1,024)
전국추정수	107,398	59,755	43,805	84,102	3,886	8,120	4,022	22,539	745	26,707	14,027	6,160	1,617	5,523	6,284	394,690

주: 비해당 4,487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나. 장애인 자동차

- 장애인 가구 중 48.9%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 참고로 2005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3만 4천대임. 전체 자동차수의 71.1%를 차지하는 승용차 등록대수는 1062만 1천대이고,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1027만 4천대이고,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0.66대로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음.

〈표 43〉 차량소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계
있다	53.5	46.1	43.4	44.9	50.7	48.3	82.1	24.2	53.9	49.7	29.6	48.5	71.2	34.9	43.3	48.9
없다	46.5	53.9	56.6	55.1	49.3	51.7	17.9	75.8	46.1	50.3	70.4	51.5	28.8	65.1	56.7	5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5)
전국 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729

주: 무응답 1건 제외

- ☐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56.1%, 장애인 가구 중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66.4%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88.2%,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89.0%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았음.

〈표 44〉 차량소유·연료·표지발급 여부

(단위: %, 대)

구분	자동차 소유	
	본인운전	보호자운전
소유	24.7(416,192)	24.7(318,834)
LPG 차량	56.1(233,279)	66.4(211,605)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88.2(366,969)	89.0(283,757)

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

-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업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9.9%,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79.1%, ‘LPG 연료 사용허용’ 77.5%인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77.3%)’,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시책(67.3%)’ 등의 순임.
 - 이러한 장애인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시책은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으로써 인지장애인의 62.9%가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시책

으로 46.9%의 장애인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5〉 재가장애인의 우리나라 복지사업 내용의 인지율·이용경험률

(단위: %)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률
장애수당 지급	44.2	12.8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12.2	0.4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6.8	2.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4.1	0.6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9	5.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1.1	3.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16.7	2.6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15.8	3.0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79.1	35.5
LPG연료 사용 허용	77.5	25.6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67.3	20.7
세금 공제 및 면제	46.3	17.1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7.3	46.9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9.9	62.9
공공시설 이용시 요금 감면 및 할인	53.0	22.6
주택관련 분양할선 및 가산점 부여	19.3	3.3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실시(만 3세~만 17세)	10.6	2.5

주: 중복응답비율임.

- ☐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기관에 대한 인지율은 장애인복지관이 70.2%로 가장 높고, 다음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63.2%), 재활병·의원(45.1%)의 순임.
- 실제로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3.7%로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이 재활병·의원으로 7.9%임.
 - 한편, 재활병·의원에 대한 이용희망이 가장 높고(40.2%), 다음이 장애인복지관(40.1%)이며,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이용희망률도 31.5%로 높게 나타남.

〈표 46〉 재가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이용경험·이용희망률

(단위: %)

구분	인지율	이용경험률	이용 희망률
장애인복지관	70.2	13.7	40.1
장애인생활시설	31.1	1.7	16.4
중증장애인요양시설	38.6	0.7	18.5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8.0	0.4	0.8
사회복귀시설	18.6	0.2	3.8
그룹홈	11.5	0.8	6.4
주간·단기 보호 시설	12.2	3.5	11.9
재활 병·의원	45.1	7.9	40.2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1.2	2.7	12.7
장애인전용 체육관	17.0	4.3	15.2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63.2	5.9	3.9
특수교육지원센터	19.7	2.9	4.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9	1.8	11.4
점자도서관	28.2	0.9	1.2
수화통역센터	30.0	1.0	1.6
심부름센터	22.4	1.1	24.5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8.4	3.5	31.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6.1	7.2	17.4
장애아동보육시설	25.1	2.1	1.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3.1	6.7	20.1
교통안전공단	18.4	2.5	9.8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8.2	2.6	22.1

주: 중복응답비율임.

라. 복지서비스 욕구

□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소득보장(48.9%)과 의료보장(19.0%)으로 소득 및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사회나 국가에 대해 2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은 의료보장이 35.9%로 가장 높았고, 3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은 주택보장이 14.9%로 가장 높았음.

〈표 47〉 재가장애인의 사회나 국가에 대한 복지욕구(우선순위)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보장	48.9	9.9	7.5
의료보장	19.0	35.9	9.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8	3.2	3.8
세제지원 확대	1.4	3.8	4.5
건물, 도로 등의 편의시설 확대	2.6	3.5	3.6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2.4	5.9	8.0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2.3	3.0	5.4
주택보장	4.0	8.3	14.9
결혼상담 및 알선	0.7	1.1	1.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4	3.2	4.3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보급	1.3	2.5	3.1
특수교육의 확대 및 개선	0.6	1.5	1.2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0.4	1.2	2.4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개선	2.3	4.3	9.7
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0.8	1.6	2.5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3.7	4.3	8.1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2.5	5.2	6.6
없다	0.8	1.5	3.5
기타	0.3	0.1	0.2
계	100.0	100.0	100.0

IV. 정책 건의 및 시사점

1. 장애예방사업 강화

- 2000년에 이어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발생 원인 중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후천적 원인(89.0%)에 의한 장애가 발생 및 증가함에 따른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필요
-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 체계 확립
 - 심혈관질환, 신경계질환, 대사·면역 및 내분비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과 음주·흡연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 특히 장애출현율이 높은 읍·면지역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
 - 교통사고, 화상 등 각종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응급이송차량의 장비보강, 응급처치요원 훈련강화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
-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선천적·출생시 장애예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 및 주산기 응급의료체계 강화

2. 재활보조기구 등 보조공학 산업 육성

- ☐ 보조공학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양질의 재활보조기구 보급
 -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 재활보조기구 산업체에 선진 기술 및 자금 지원

3. 직업재활사업의 강화

- ☐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별로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체계 구축
 -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간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훈련,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등의 체계적인 접근전략 개발

4. 소득보장 강화

- ☐ 장애수당의 상향조정 및 장애유형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원의 차등화 및 내실화
 - 전체 장애인의 월 평균 추가비용 155.4천원에 비해 간장애는 357.0천원, 신장장애는 343.9천원, 발달장애는 323.1천원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비용편차 보전 필요

5. 여성장애인 지원 대책 수립

-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 병원 건립, 산후 조리 서비스, 자녀양육 서비스 지원 필요

6.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 ☐ 장애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소진 예방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강화
-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가정봉사원·간병인·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의 활성화
- ☐ 장애인 생활시설의 확충(입소희망률 16.4%)
- ☐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한 장애인의 인지도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의 홍보 강화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조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전통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 보건·의료,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다. 과거 주로 가족이나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던 장애인 보호와 지원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사회 공동의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경제발전에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기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지대책도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저소득 및 시설수용 장애인을 중심으로 복지의 혜택이 증가되어 왔다.

인구의 노령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 약물남용, 공해, 치료가 곤란한 새로운 질병의 등장 등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구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국민적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복지사회의 건설은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에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당시의 보건사회부 재활과)를 설치한 이래,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즉,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88), 장애인 의무고용제 도입('90),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9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97),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1998~2002년)의 수립 및 시행('97. 12),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장애범주의 확대('99.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99. 12),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수립('03. 2), 제2차 장애범주 확대('03. 7) 등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확대, 특수교육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각종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수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장애인 생활실태와 이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매 5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2003년에 그 동안 10종이던 장애유형이 5종 추가되어 15종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이처럼 신규로 확대된 장애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즉,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 등의 출현율을 파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장애인복지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28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8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하여(시행령 제15조) 실시하되,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며,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 또한 장애인의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을: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유형·장애정도 및 장애발생원인 등 장애특성에 관한 사항
3. 취업·직업훈련, 소득 및 소비, 주거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4. 재활보조기구 사용·복지시설 이용·재활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욕구 등 복지욕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수당·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장애인등록제도 등 복지지원상황에 관한 사항

6. 여가 및 사회활동 등 사회참여상황에 관한 사항
7.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에 대한 태도 등 장애인의 의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 따라서 이러한 모든 내용이 조사 항목에 추가되어 분석되어야 한다.

제 2 절 조사의 목적

장애인 실태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구 및 장애인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장·단기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구수 및 출현율,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경제적 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인의 복지욕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혜 실태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제 3 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방법

장애인 통계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중요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통계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장애인 관련 자료들을 수집 및 작성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관련 통계의 수집방법으로는 크게 인구센서스에 의한 것과 가구표본조사에 의한 것이 있고, 이외에 제3의 방법으로 장애인등록과 같이 행정기관의 기록에 의하여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인구센서스와 가구표본조사는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센서스는 장애인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어 과소추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조사항목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실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전체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가구표본을 추출하여 이들 가구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장애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표본조사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구의 출현율, 장애인구의 특성,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구를 파악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행정기록이 불완전하고 비연속적이며 아직까지는 등록률이 낮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애인 관련 통계로서의 의의가 적다고 하겠다. 다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의 확충으로 우리나라도 장애인 등록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표본조사의 보완조사라는 형태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복지욕구를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조사규모

2005년도에 실시된 장애인 실태조사는 1980년, 1985년, 1990년¹⁾, 1995년, 2000년에 이은 제6차 조사이다. 각 년도별 장애인 실태조사의 규모를 보면, 다음의 <표 1-3-1>과 같다. 1980년의 경우 조사대상지역은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여 표본추출되었고, 1985년에

1) 실제 조사는 1991년에 실시되었으나 조사결과는 「199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에 수록되어 있음.

는 1984년도 상주인구조사를 사용하였다. 1990년에는 1985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구를 이용하였고, 1995년에는 1990년도 인구센서스 조사구, 2000년에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그리고 2005년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이 선정되었다.

〈표 1-3-1〉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표본규모¹⁾

(단위: 가구, 명)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표본가구						
추정가구 수(A)	9,969,201	9,671,361	11,354,540	12,745,280	14,677,637	15,864,809
표본가구 수(B)	29,300	31,905	45,512	39,078	39,411	40,556
B/A(%)	0.37	0.33	0.40	0.31	0.27	0.26
표본인구						
전체인구(C)	37,406,815	40,419,652	43,390,374	44,850,801	46,853,554	46,727,073
표본인구(D)	136,595	130,360	163,522	130,556	123,721	119,306
D/C(%)	0.36	0.32	0.38	0.29	0.26	0.26

주: 1) 전체 가구수 및 인구수는 각 년도 인구센서스 기준이며, 2005년도는 장애인구추계(통계청, KOSIS)를 기준으로 함.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의 표본가구수는 1980년 2만 9천여 가구에서 1990년 4만 6천여 가구로 증가하였고, 1995년도에는 3만 9천여 가구로 다소 감소되었으나, 2000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하여 39,411가구, 그리고 2005년도에는 40,556가구가 조사되었다. 표본가구수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사 초기에 0.31~0.40% 정도였으나, 2000년도에는 소폭 감소하여 0.27% 수준이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0.26%가 되었다. 5년 후에 실시될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표본수의 증가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표본조사는 신고된 복지시설을 제외한 조사구와 군인 및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가구를 조사모집단으로 하여 여기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1980년 당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고, 1985년에는 보건 사회부의 기존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1990년에는 6종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부녀, 부랑인수용시설 및 정신요양원) 677개소를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부녀, 부랑인수용시설 및 정신요양원) 748개소를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유형별 장애인 총수만을 파악하였다. 2000년 조사에서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883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정신의료 시설) 거주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875개소 (99.1%)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2005년도 조사에서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1,063개의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한센병 시설) 거주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1,052개소(99.0%)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 특히 2000년도 및 2005년도 조사에서는 1995년도 조사와는 달리 장애유형 파악 외에 장애인 개인의 성 및 연령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장애인에 대하여 성·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을 모두 조사하였다.

3. 조사내용

1980년, 1985년, 1990, 1995년, 2000년에 실시된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되었던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8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주거형태, 가구주 직업,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 여부 및 직업, 월 평균 가구소득, 장애인 거주여부

2) 장애공통조사

직업, 월수입, 현 활동상태,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의료보호대상자여부, 의료보험 가입여부, 국가지원 수혜여부 및 종류, 교육 수혜여부, 무학 이유, 가족 또는 친척 중 장애인 유무 및 장애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장애유형, 상담 또는 검사여부, 치료여부, 주요 치료처, 미치료 이유, 치료효과, 장애인의 가정경제에의 영향정도, 요망사항, 취업노력 여부 및 미취업 이유, 직업훈련 또는 취업희망분야, 자립가능정도, 보장구 사용여부 및 종류, 보장구 미사용 이유, 지체장애부위, 장애정도

나. 1985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의료보장 종류, 결혼상태, 가구주 직업, 가구주 이외의 취업자여부 및 직업, 생활비 마련방법, 월 평균 가구소득, 장애인 거주여부

2) 장애공통조사

치료여부, 첫 치료처, 첫 치료시기, 첫 치료 이후의 치료여부 및 치료처, 전문치료기관(의사)에서의 치료시기, 가장 오래 이용한 치료기관, 치료 종류, 시각장애인의 훈련 종류, 청각장애인의 청력훈련여부 및 수화·구화여부, 재활치료·상담훈련기관 종류, 지체장애·정신지체·시각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여부 및 사용종류, 보장구 미사용시 필요성여부, 보장구 필요시 미사용 이유, 의사의 진단명, 남의 도움 필요정도, 의사치료를 못 받은 이유, 활동상태, 직업, 취업시기, 무직 이유, 직업훈련 또는 취업희망여부, 희망직업 종류, 개인적 희망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3) 장애유형별 조사

- ① 지체장애: 장애부위, 지체장애 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 ② 시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희망하는 호청
- ③ 청각장애: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장애정도, 보청기 사용여부, 보청기 구입처, 보청기 첫 착용시기, 보청기 미사용 이유
- ④ 언어장애: 언어장애 종류,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 ⑤ 정신지체: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장애발생원인

다. 199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의료보장 종류, 결혼상태, 직업, 종사상 위치(고용 형태), 장애인 거주여부, 주거형태, 월 평균 가구소득, 월 평균 가구지출

2) 장애공통조사²⁾

남의 도움 필요정도, 건강상태, 첫 치료처, 첫 치료시기, 즉시 의사치료를 안받은 이유, 의사방문전 처치방법, 의사의 충분한 치료여부,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향후 치료 시 호전가능성 여부, 보장구 소지 또는 사용여부, 사용보장구 종류, 보장구 소지시 미사용 이유, 필요 보장구여부 및 종류, 필요보장구 미사용 이유, 미취학아동의 치료·교육기관 이용 여부, 미취학아동의 치료·교육기관 불이용 이유, 재학생 이용 학교 종류, 학교생활시 불편사항, 유직자의 직업, 현 직업 취업시기, 장애로 인한 현 직업에서의 지장정도 및 어려움 종류, 월 평균 수입, 수입의 주요 지출처, 현 보수의 적정여부, 복지서비스 수혜여부 및 수혜 기관과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 종류, 직업소개여부 및 소개직장 취업여부, 소개직업에의 만족여부, 복지서비스 희망여부 및 희망서비스 종류, 희망직업훈련 종류³⁾, 무직이유, 취업 희망여부 및 희망 직업 종류, 희망 고용형태, 직업훈련 희망여부 및 희망 직업훈련 종류⁴⁾, 등록제도 인지여부, 등록 희망여부, 등록제도 인지경로, 등록여부, 미등록 이유, 장애인 본인의 필요사항, 수용시설 입소희망 이유, 가족의 필요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여가활용방법

3) 장애유형별 조사

① 지체장애: 장애부위,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 의사진단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② 시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

2) 정신지체는 정신지체인용 조사표에 의해 조사함.

3) '유직자의 직업·희망직업훈련 종류'까지는 14~60세 이하의 유직자 대상 설문임.

4) '무직 이유·희망직업훈련 종류'까지는 14~60세 이하의 무직자 대상 설문임.

원인, 본인 또는 식구 중 눈 수술여부 및 수술종류, 인공수정체 삽입여부

- ③ 청각장애: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 원인, 언어소통방법
- ④ 언어장애: 장애발생시기, 의사진단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언어 소통방법, 언청이 수술여부
- ⑤ 정신지체: 장애발생시기, 장애 인지시기, 장애인지 경로, 의사 진단여부 및 진단명, 본인이 생각하는 장애원인, 남의 도움정도, 첫 치료처, 의사 치료시기, 즉시 의사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의사 치료전 조치종류, 의사의 충분한 치료여부,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추후 치료시 호전 가능성, 보장구 소지 또는 사용여부, 사용보장구 종류, 보장구 사용여부, 보장구 미사용 이유, 필요 보장구여부 및 종류, 필요시 미사용 이유, 장애인 본인의 필요사항, 수용시설 입소희망 이유, 가족의 필요사항, 국가에의 요구사항, 여가활용방법

라. 1995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

- 가)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여부, 총가구원 수, 세대수, 가구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가구의 주된 수입원, 주택형태, 주택소유 유형, 장애(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 나) 장애인 유무: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또는 정신지체인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 장애인 조사

가) 장애종류별 특성

- 지체장애: 장애유무, 장애부위, 장애증상,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일상생활동작 능

력점수(Modified Barthel Index)

- 시각장애: 장애증상, 시력인지 유무, 시력, 점자해독 능력,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청각장애: 장애증상, 보청기 사용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언어장애: 장애유무,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원인
- 정신지체: 정신지체 유무,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사회성숙도검사 점수), 주된 원인

나) 장애공통 사항

- 주된 장애,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장애진단 유무, 치료유무, 진단시기, 진단처, 치료시기, 치료처, 치료받지 않은 이유, 치료의 충분도
- 건강 및 질병: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유무, 의료기관 이용여부, 이용빈도, 급성질환 유무
- 일상생활 및 보장구: 생활불편 정도, 일상생활 자립정도, 보호자 유무, 주보호자, 보호충분도, 보호비용 지불여부, 보호자 고용의향, 보장구 소지여부 및 종류, 보장구 활용정도, 보장구 필요여부 및 종류
-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활동 종류, 사회활동 참여정도, 월 평균 외출빈도, 외부활동시 불편정도, 주요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 경제상태: 연금수혜 여부, 경제적 어려움 정도, 주관적 월 생활비, 추가생활비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생활만족도, 주된 의논 상대, 사회적 차별의 경험, 장애로 인한 정신적 부담정도, 일반인에 대한 인식, 본인의 장애인 자각여부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여부, 인지경로, 등록여부, 장애등급,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 인지도, 복지기관 이용여부, 희망하는 서비스,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주택개조 필요성
- 교육: 재학중인 학교,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어려움
- 고용 및 직업재활: 취업상태, 취업시기, 직업훈련 이수경험, 직업훈련 종류, 직업훈련처, 직업훈련 희망여부, 현직업 취업경로, 월 평균 수입, 장애로 인한 어려움, 미취업 이유, 취업희망여부, 취업희망 직종, 취업희망 형태

마. 2000년 실태조사

1) 가구조사표

조사가구의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연금 및 의료보험 가입여부, 총가구원 수, 가구 월 평균 소득액 및 지출액, 가구의 주된 수입원, 주택형태, 주택소유형태,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유무 등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2000년 실태조사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정보통신기기의 보유여부,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 생활비목별 지출액 등을 새로운 조사항목으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1995년도 실태조사에서 조사되었던 세대수 항목은 2000년 조사에서 삭제하였다.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자폐증),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상에서 제시된 법정장애인 이외에 향후 범주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 즉, 호흡기장애, 만성간질환,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외부기형 및 피부질환, 만성통증, 간질 등 경련장애, 암, 기타의 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 개별조사표

가) 장애유형별 특성

-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주된 장애원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점수(Mofedied Barthel Index)
-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 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 출생장소 및 방법, 주된 장애원인, 일상생활동작 능력점수(Mofedied Barthel Index)

-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 방법, 수화가능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⑥ 정신지체: 정신지체 여부, 장애발생시기, 장애정도(언어능력과 학습능력정도), 주된 장애원인
- ⑦ 발달장애(자폐증): 발달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발달상의 특성, 정신지체 및 경련성 질환 동반여부
-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정신질환명,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여부 및 투석시작연령, 신장이식여부 및 신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발생 시기, 장애정도, 주된 장애원인

나) 장애공통 사항

-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원인의 진단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장애진단 여부, 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의 최초 치료시기 및 즉시 치료받지 않은 이유, 최초 치료기관, 치료의 충분도, 현재 장애치료 여부, 치료기관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 보호여부: 일상생활원조 필요도, 주보호자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의 소득활동지장 여부, 현재 보호의 충분도, 보호비용 지불여부, 월 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 평균 지출비, 외부의 보호인 고용의향
- 보장구: 보장구 소지여부, 보장구 종류별 소지여부, 보장구 활용도, 보장구 미활용의 주된 이유, 필요보장구 유무, 필요보장구의 종류, 필요보장구 미구입 이유
- 여가 및 사회활동: 단독외출 능력, 지난 1년간 외출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교통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현재 거

주주택의 개조 필요성, 용자받을 경우 개조의향 여부, 종교형태, 문화·여가활동 종류
별 지난 1주일 동안 참여 유무

-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연금(일시금)수혜 여부, 차량소유 여부, 장애인
가구의 필수품목 보유 또는 이용실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용비용 유무, 추가소요비용
의 주된 용도, 월 추가소요비용 총액
- 생활만족도 및 생활환경: 주관적인 건강상태, 현재 생활만족도, 주된 상담자, 장애로 인
한 사회적 차별 경험여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본인의 장애인 자각여부
-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제도 인지여부, 등록 희망여부, 인지경로, 등록여
부, 장애종류 및 등급, 등록시기,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도 및 경험여부, 장애인 복지관련기관 인지·경험·이용희망여부, 국가·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여부·미보유(사용) 이유 및 향후 보유(사용)계획
- 교육: 다녔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종류, 취학시기, 학교생활 적응도, 학교생활의 어려
움, 통학방법, 통학시간
- 취업 및 직업재활: 취업여부, 취업형태, 현 직장 취업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액,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현재 취업만족도, 지난 1개월
간 구직경험 여부, 미취업 또는 구직하지 못한 주된 이유, 취업희망여부, 취업희망 근
무형태 및 직종, 취업희망 기관, 희망취업형태, 직업훈련 경험여부, 직업훈련 받지 않
은 이유, 희망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에 대한 국가 요구사항

이상에서 보듯이 이들 장애인 실태조사에 포함되었던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며, 1985년
부터 가구조사와 장애공통조사 이외에 각 장애유형별로 개별조사표가 개발되어 사용되었
다. 이러한 장애인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 통계의 작성과 장애인복지 지표를 포함한
장애인 관련 지표를 생산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기본조사이며, 조사의 내용이 과거 조사
와 비교하여 일관성 있게 짜여져 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조사에 공통적인 조사항목이
포함될 때, 이를 이용한 지속적인 장애인 관련 지표의 작성이 가능하며, 장애인구의 추이
를 파악할 수 있는 종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제 4 절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모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장애인 실태조사의 실시배경을 장애인복지법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와 함께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규모, 내용 등을 정리하였다. 제2장 표본설계 개요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의 표본추출 절차와 조사지역에 따른 가중치의 부여방식, 표본오차 등을 다루었다.

제3장의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에서는 조사표를 개발한 과정과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조사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조사지침, 사전조사, 조사원 선발 및 구성, 현지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조사결과의 회수 및 자료입력, 검토 및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4장의 장애의 범위 및 정의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장애의 범위와 각 장애별 정의, 분류 및 판별준거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장애출현율 및 장애인구수, 재가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으로 구분하였다. 제5장에서는 장애출현율 및 전국 장애인 추정수와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제6장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장애인의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일상생활 지원, 재활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경제상태,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7장 장애유형별 현황에서는 장애유형별로 그 특성에 따라 장애정도, 장애부위, 장애발생시기, 발생원인 등이 분석되었다. 부록에는 조사지역 명단과 통계표 및 조사표를 제시하여, 장애의 특성 및 공통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을 심층적으로 나타내주는 통계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과거의 연구결과와 다른 점은 다양한 조사결과의 제시로 독자의 관심영역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세부적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조사표, 조사의 절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본 연구와 관련해서 조사방법에 관해 명확한 사실을 밝혀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제 2 장 가구부문조사 표본설계 개요

제 1 절 조사의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사항

1. 조사규모

최소한 2000년도 조사와 동일한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사완료 가구수를 기준으로 약 40,000가구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 2000년도 조사의 조사미완율(10.7%), 사생활 보호의식에 따른 조사환경의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규모는 200개 조사구의 약 45,000가구로 결정하였다(조사구당 평균 225가구).

2. 현지조사팀의 업무량

현지조사는 조사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된 25개 조사팀을 편성하여, 각 팀이 8개 조사구씩 담당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팀은 주어진 일정에 따라 정해진 조사구의 조사를 완료하고, 다음 조사구로 이동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각 조사구의 실제 조사 소요기간은 225가구의 조사업무량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정키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구별 조사 가구수는 220~229가구의 범위 내에서 평균 225가구 수준이 되어야 한다.

3. 제외되는 지역

교통이 몹시 불편한 섬지역에서 표본조사구가 추출되면 조사에 애로가 많으며, 특히 1개 표본조사구의 가구수는 적어도 220가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섬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된다.

따라서 각 시·도의 섬지역은 표본조사구 추출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조사

에서 제외되는 섬지역의 인구는 전국 가구부문 인구의 약 0.3%에 불과하며, 제외된 섬지역의 인구만큼 추정과정에서 더 반영하여 보정하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장애출현율 산출 지역

본 조사에서 지역별 전체 장애출현율은 결과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의 지역분류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 1 : (1) 서울	방법 2 : (1) 서울의 동
(2) 광역시	(2) 광역시의 동
(3) 기타 시	(3) 기타 시의 동
(4) 군부	(4) 전국의 읍·면

여기서 방법 1의 경우에 (3)의 기타 시와 (4)의 군부를 통합하면 9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통합한 것이 된다.

5. 표본조사구 추출 기초자료

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는 일차적으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단위 조사구 중에서 각 시·도의 섬지역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의 가구수 자료를 사용키로 하였다. 이 일반조사구수는 248,378개 조사구이며, 조사구당 가구수는 50~69가구가 대부분으로 평균 57가구이다.

그런데 현지 조사팀의 업무량을 결정할 때에 표본조사구의 가구수는 220~229가구를 유지키로 하였으므로, 3~5개의 일반조사구를 통합하여 220가구를 초과토록 하여야 한다.

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의 신축 아파트 자료

표본조사구에서는 모든 가구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택의 신축으로 가구가 많이 증가한 경우는 주어진 조사기간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신축 주택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표본조사구를 추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신축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료수집이 가능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2000년 11월 1일 0시) 이후의 신축 아파트에 대하여도 별도의 표본조사구를 추출기로 하였다. 2000년 11월~2004년 10월까지의 신축 아파트 가구수는 약 100만 가구 정도가 된다.

제 2 절 표본조사구의 추출

1. 기초자료의 정리

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총화 및 조사구의 정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단위 조사구 중 섬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조사구(보통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를 <표 2-2-1>에서와 같이 6개 층으로 총화하여 조사구수와 가구수를 집계하였다.

〈표 2-2-1〉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의 총화 결과

층	조사구수			가구수		
	계	보통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계	보통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1. 서울의 동	55,265	38,484	16,781	3,087,868	2,116,831	971,037
2. 광역시의 동	62,701	36,250	26,451	3,613,137	2,066,105	1,547,032
3. 도의 시의 동	79,413	42,832	36,581	4,627,988	2,473,917	2,154,071
4. 광역시의 읍·면	2,387	1,518	869	132,497	82,606	49,891
5. 도의 시의 읍·면	22,466	17,571	4,895	1,286,864	1,006,869	279,995
6. 도의 군의 읍·면	26,146	23,209	2,937	1,504,666	1,342,116	162,550
계	248,378	159,864	88,514	14,253,020	9,088,444	5,164,576

이 때, 2000. 11. 1~2005. 4. 30의 기간 중에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따랐기 때문에 2005년 4월 30일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라 총화한 결과가 되었다.

각 층에서는 조사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열하여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추출단위 명부의 전산파일을 작성하였다.

- (1) 조사구 종류번호 : 1 = 보통조사구, 2 = 아파트조사구
- (2) 읍·면·동 구분번호 : 1 = 동, 2 = 읍, 3 = 면
- (3) 행정구역번호 및 조사구번호

나. 신축 아파트 자료의 추가

2000년 11월~2004년 10월까지의 신축 아파트 가구수 자료를 정리한 결과의 전국 신축 아파트 가구수는 1,059,866가구가 되었다. 이 자료는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신축 아파트 자료를 수집하여 시·군·구별로 가구수를 집계한 것으로, 4번(2001~2004)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이때의 가구수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총 호수를 뜻하는 것이므로 입주자가 없더라도 1가구로 취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군·구별 신축 아파트 가구수 자료에 2004년 4월말 현재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번호를 부여하고, <표 2-2-1>에서와 같이 6개 층으로 나누어 각각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번호와 자료수집 연도(2001~2004) 순으로 정렬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작성한 기초자료 파일에서 각 층의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이 정리된 신축 아파트 자료를 추가하여 수록하고, 각 층별로 처음 조사구부터 계속하여 가구수를 누적하였다.

따라서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 명부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단위의 가구수 자료와 시·군·구 단위의 신축 아파트 가구수 자료가 수록되었다.

이와 같이 6개 층별로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기초자료 명부를 작성한 결과의 전체 가구수는 15,312,886가구가 되었다.

2. 층별 표본조사구수의 결정

층별 표본조사구수는 200개의 표본조사구를 층별 기초자료 가구수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결정하였다. 이 때, 소수점 이하의 수를 반올림하여 더하면 201개 조사구가 되므로 조사구수가 가장 많이 배분되는 3층에서 66개 조사구를 65개 조사구로 조정하여 200개 조사구가 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2-2>와 같다.

〈표 2-2-2〉 층별 표본조사구수 산출 내역

층	가구수			가구수 백분율 (%)	표본 조사구수	
	계	일반 조사구	신축 아파트		계산 결과	조정
1. 서울의 동	3,274,531	3,087,868	186,663	21.38	42.76	43
2. 광역시의 동	3,878,196	3,613,137	265,059	25.33	50.66	51
3. 기타 시의 동	5,035,295	4,627,988	407,307	32.88	65.76	65
4. 광역시의 읍·면	140,260	132,497	7,763	0.92	1.84	2
5. 도의 시의 읍·면	1,447,141	1,286,864	160,277	9.45	18.90	19
6. 도의 군의 읍·면	1,537,463	1,504,666	32,797	10.04	20.08	20
계	15,312,886	14,253,020	1,059,866	100.00	200	200

3. 표본조사구 추출방법

각 층별로 <표 2-2-2>에서 결정된 수의 표본조사구를 가구수에 비례하는 확률로 계통추출하였다.

이 때, 표본으로 지정된 조사구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인 경우에는 이 조사구부터 차례로 하나의 조사구씩을 추가하여 그 누적 가구수가 220가구를 초과할 때까지의 3~5개의 조사구를 통합하여, 이 통합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된 187개 표본조사구의 기초자료 가구수 분포는 <표 2-2-3>과 같다.

〈표 2-2-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통합한 187개 표본조사구의 가구수 분포

층	계	220 ~229	230 이상							
			계	230 ~239	240 ~249	250 ~259	260 ~269	270 ~279	280 ~289	290 ~299
1. 서울의 동	41	4	37	16	6	7	4	2	1	1
2. 광역시의 동	48	7	41	15	13	3	5	3	1	1
3. 기타 시의 동	61	8	53	23	14	4	9	1	1	1
4. 광역시의 읍·면	2	-	2	1	1	-	-	-	-	-
5. 도의 시의 읍·면	16	4	12	4	4	2	2	-	-	-
6. 도의 군의 읍·면	19	5	14	4	3	2	4	1	-	-
계	187	28	159	63	41	18	24	7	3	3

이 187개 표본조사구에 포함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는 776개 조사구가 되었으며, 이들 조사구에 대하여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작성된 조사구역도와 가구명부를 복사하였다.

그리고 187개 표본조사구 중에서 230가구 이상이 되는 159개 표본조사구의 경우에는 조사구역도와 가구명부를 근거로 220~229가구가 되도록 조사구 내의 경계선에 인접된 하나의 주택을 중심으로 일부분의 구역을 제외하여 220~229가구가 되도록 조사구의 경계선을 축소 조정하였다.

경계선 축소 조정으로 조사구에서 제외된 구역을 예비 조사구역으로 하여, 현지 조사단계에서 가구수가 감소하여 기준 가구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가구수를 이 예비 조사구역에서 보충키로 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가 신축 아파트의 시·군·구 단위인 경우에는 그 시·군·구의 해당 신축 아파트 명부에서 표본 지정 번호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와 같이 추출된 13개 신축 아파트를 실제로 답사하여 220가구 이상이 포함되도록 2개 동 이상의 아파트 전면도를 작성하고 226~229가구분의 조사구를 설정하였으며, 조사구에서 제외된 구역은 예비 조사구역으로 설정하여 가구수 부족에 대비하였다.

이와 같이 표본조사구의 경계선을 설정한 결과의 기초자료상의 총가구수는 45,050가구가 되었다.

제 3 절 현지조사

1. 가구수 감소에 대한 사전조치

조사의 계획단계에서 결정한 조사일정을 그대로 따르려면 조사구별 조사 가구수는 기준 가구수로 설정한 220~229가구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이용하여 추출한 표본조사구의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지 4년 반이 지났으므로 그 동안의 주택의 신축 또는 철거 등으로 가구수 변동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구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220~229가구를 순서대로 조사하고, 나머지 가구는 미조사 가

구로 처리하면 되지만, 가구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지 조사에 앞서 각 조사구의 조사구요도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보내어 가구수 증감 상태의 파악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가구수가 감소되었다고 통보된 조사구의 경우에는 가구수 감소 정도에 따라 1~3개의 인접된 조사구를 예비 조사구로 추가로 추출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에 작성된 조사구요도와 가구명부를 복사하여 제공하고 부족한 가구수를 예비조사구에서 보충기로 하였다.

2. 조사단계에서의 가구수 증감에 대한 조치

현지 조사과정에서 가구수가 증가되어 기준 가구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기준 가구수(220~229가구)만큼만 조사하고 나머지 가구는 조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사구에서 경계선에 인접한 일부의 구역을 제외시켜 조사구 경계선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가구수가 감소하여 기준 가구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가구수만큼 예비 조사구역에서 순서대로 추가하여 조사하였으며, 예비 조사구역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고도 기준 가구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비 조사구에서 보충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사구의 경계선을 확대 조정한 결과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조사구의 경계선을 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때에는 표본설계 담당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처리토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200개 표본조사구 중에서 57개 조사구를 제외한 143개 조사구에서 경계선 조정이 있었다. 경계선이 조정된 143개 조사구 중에서 가구수가 증가되어 조사구 경계선이 축소 조정된 조사구는 32개 조사구이었으며, 가구수가 감소되어 조사구 경계선이 확대 조정된 조사구는 111개 조사구이었다.

3. 조사결과 가구수

200개 표본조사구의 전체 가구수는 45,285가구(조사구당 평균 226.43가구)가 되었으며, 이 중에서 89.56%인 40,556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총별 조사결과 가구수 및 조사완료율은 다음의 <표 2-2-4>와 같다.

〈표 2-2-4〉 조사결과 층별 가구수 및 조사완료율

층	조사구 수	방문 가구수			조사 완료율(%)
		계	조사완료	조사미완	
1. 서울의 동	43	9,764	8,410	1,354	86.14
2. 광역시의 동	51	11,569	10,282	1,287	88.88
3. 기타 시의 동	65	14,732	13,300	1,432	90.28
4. 광역시의 읍·면	2	457	419	38	91.69
5. 도의 시의 읍·면	19	4,263	3,933	330	92.26
6. 도의 군의 읍·면	20	4,500	4,212	288	93.60
계	200	45,285	40,556	4,729	89.56

4. 조사구 경계선 조정의 세부 내용

조사단계에서 가구수의 증감으로 조사구 경계선을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배부되었던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 현지 조사에서 수정·보완한 조사구요도를 비교하여 조정된 경계선 내의 기초자료 상의 가구수(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가구수, 신축 아파트 조사구의 경우 총 호수)를 재집계하였다.

결과적으로 조사 전의 표본조사구 내의 기초자료 상의 가구수는 45,055가구이었으나, 경계선 조정으로 568가구가 제외되고 2,607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47,094가구가 되었으며,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표 2-2-5>와 같다.

〈표 2-2-5〉 층별 조사구 경계선 조정 및 기초자료 가구수 수정 내용

층	조사구수				기초자료 가구수			
	계	경계선 조정내용			조사 전	가구수 조정내용		경계선 조정결과
		축소	확대	비해당		제외	추가	
1. 서울의 동	43	7	23	13	9,693	65	856	10,484
2. 광역시의 동	51	8	28	15	11,490	240	460	11,710
3. 기타 시의 동	65	11	30	24	14,658	221	622	15,059
4. 광역시의 읍·면	2	1	1	-	452	2	3	453
5. 도의 시의 읍·면	19	4	14	1	4,274	34	372	4,612
6. 도의 군의 읍·면	20	1	15	4	4,488	6	294	4,776
계	200	32	111	57	45,055	568	2,607	47,094

결과적으로 경계선 조정으로 표본조사구 내의 기초자료 가구수가 2,039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기초자료 가구수에 대한 표본조사구 내의 기초자료 가구수의 비율은 1/339.9에서 1/325.2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표 2-2-6>과 같다.

<표 2-2-6> 조사구 경계선 조정 전후의 조사구 내의 기초자료상의 가구수 비율

층	표본조사구 추출 기초자료 가구수	표 본				
		조사구 수	기초자료 가구수		기초자료 가구수 비율 ¹⁾	
			경계선 조정 전	경계선 조정 후	경계선 조정 전	경계선 조정 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서울의 동	3,274,531	43	9,693	10,484	1 / 337.8	1 / 312.3
2. 광역시의 동	3,878,196	51	11,490	11,710	1 / 337.5	1 / 331.2
3. 기타 시의 동	5,035,295	65	14,658	15,059	1 / 343.5	1 / 344.4
4. 광역시의 읍·면	140,260	2	452	453	1 / 310.3	1 / 309.6
5. 도의 시의 읍·면	1,447,141	19	4,274	4,612	1 / 338.6	1 / 313.8
6. 도의 군의 읍·면	1,537,463	20	4,488	4,776	1 / 342.6	1 / 321.9
계	15,312,886	200	45,055	47,094	1 / 339.9	1 / 325.2

주: 1) ⑥의 분모 = ② / ④, ⑦의 분모 = ③ / ⑤

제 4 절 추정방법

1. 총수의 추정

이 조사결과에서 어떤 특성 y 에 관한 인구(또는 가구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산출된 조사구별 확대승수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① 각 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의 역수와 각 표본조사구의 가구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조사구별 1단계 확대 승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

$$\textcircled{1} M_{hi} = (S_h / n_h S_{hi}) (A'_{hi} / A_{hi}) \dots\dots\dots (1)$$

이 공식에서

M = 확대 승수

① = 제1단계를 나타내는 첨자

h = 층을 나타내는 첨자(h = 1, 2, 3, 4, 5, 6)

i =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S = 표본조사구 추출용 추출단위 명부의 가구수

n = 표본조사구수

A = 조사 완료 가구수

A' = 조사결과 총가구수(조사완료 + 조사미완)

② 각 조사구별로 조사결과에의 인구에 공식 (1)의 제1단계 확대승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하여 조사모집단 총인구의 1단계 추정치를 산출

$$\textcircled{1} Z' = \sum_h \sum_i \textcircled{1} M_{hi} Z_{hi} \dots\dots\dots (2)$$

이 공식에서

② = 제2단계를 나타내는 첨자

Z' = 조사결과에 의한 조사모집단 총인구 1단계 추정치 (43,993,245명)

Z = 조사된 인구

③ 공식 (2)의 조사모집단 총인구의 1단계 추정치를 기준 인구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공식 (1)의 조사구별 1단계 확대승수를 2단계 확대승수로 조정

$$\textcircled{2} M_{hi} = \textcircled{1} M_{hi} (Z / \textcircled{1} Z') \dots\dots\dots (3)$$

이 공식에서

② = 제2단계를 나타내는 첨자

Z = 조사모집단 기준인구(46,585,000명: 2005년 추계인구에서 외국인, 시설단위 거주인구 및 각 시·도의 섬지역 가구부문 인구 제외)

④ 각 조사구별로 조사결과에의 인구에 공식 (3)의 제2단계 확대승수를 곱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조사모집단의 층별 인구의 2단계 추정치를 산출

$$\textcircled{2} Z'_h = \sum_i \textcircled{2} M_{hi} Z_{hi} \dots\dots\dots (4)$$

⑤ 조사에서 제외된 섬지역의 층별 인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층별 보정계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

$$K_h = ({}^2Z'_h + \text{섬}Z_h) / {}^2Z'_h \quad \dots\dots\dots (5)$$

이 공식에서

K = 보정계수

섬 = 섬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⑥ 공식 (3)의 2단계 확대승수에 공식 (5)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확대승수를 산출

$${}^3M_{hi} = K_h {}^2M_{hi} \quad \dots\dots\dots (6)$$

이 공식에서

③ = 제3단계(최종 단계)를 나타내는 첨자

⑦ 이와 같이 산출된 조사구별 최종 확대승수를 특성 y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인구(또는 가구)에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특성 y 를 갖는 추정 인구(또는 가구수)를 산출

$${}^3Y' = \sum_h \sum_i {}^3M_{hi} y_{hi} \Rightarrow \text{이하 간단히 } Y' \text{로 표시} \quad \dots\dots\dots (7)$$

이 공식에서

Y' = 특성 y 에 대한 인구(또는 가구수)의 추정치

y = 특성 y 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인구(또는 가구수)

2. 비율(또는 평균)의 추정

특성 x 에 대한 특성 y 의 비율(R)에 관한 추정치(R')는 공식 (7)로 산출한 총수(또는 총량)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R' = Y' / X' \quad \dots\dots\dots (8)$$

이 공식에서

X' = 어떤 특성 x 에 대한 인구 추정치

제 5 절 표본오차

1. 표본오차의 개념

이 조사결과의 각종 통계치는 표본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추정치이므로, 이 표본조사에서 사용한 조사표, 조사지침서, 조사원, 훈련방법, 현지조사방법, 자료처리방법, 조사기간 등의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같은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가정할 때에 얻게 되는 통계치와는 차이가 나게 마련인데, 이 차이는 표본오차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다.

표본조사결과에 의한 추정치에는 비표본오차와 표본오차의 두 가지 형태의 오차가 포함된다.

비표본오차는 조사대상의 누락, 용어정의의 불명확, 질문에 대한 이해의 차이, 일부 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에 대한 무능력 또는 고의적인 회피, 조사원의 기입착오, 수집된 자료의 부호기입착오 및 입력착오, 조사누락 및 미상의 처리에 의한 오차 등과 같이 조사표의 설계단계부터 자료처리의 완료단계까지 표본추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생기는 오차로서, 이와 같은 비표본오차는 전수조사에서도 생기게 되는 오차이다.

표본오차는 조사대상이 되는 단위를 전부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오차로서, 표본조사에서는 어느 경우에도 피할 수 없는 오차이며, 전수조사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오차이다. 따라서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치와 전수조사를 했다고 가정할 때의 통계치와의 차이는 표본오차로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수조사결과의 통계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표본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표본오차의 크기를 추정하여 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표본오차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주로 표준오차를 사용하는데, 표준오차가 갖는 뜻은 표본에서 얻은 추정치와 전수조사했다고 가정할 때의 통계치와의 차이가 표준오차보다 작게 되는 확률은 약 68%이며, 표준오차의 2배 이하가 되는 확률은 약 95%라는 뜻이다. 표준오차 이외에 상대표준오차도 사용되는데, 상대표준오차는 표준오차를 추정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2. 표본오차의 산출

가. 총수 추정치의 표본오차

공식(7)에 의하여 산출한 Y' 에 대한 분산(var),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var}(Y') = \sum_h \text{var}(Y'_h) \dots\dots\dots (9)$$

$$\text{var}(Y'_h) = [n_h / \{2(n_h - 1)\}] \sum_i (DY'_{hi})^2 \dots\dots\dots (10)$$

$$DY'_{hi} = Y'_{hi} - Y'_{hi+1} \dots\dots\dots (11)$$

$$\text{se}(Y') = \text{var}(Y')^{1/2} \dots\dots\dots (12)$$

$$\text{rse}(Y') = \text{se}(Y') / Y' \times 100 \dots\dots\dots (13)$$

나. 비율(또는 평균) 추정치의 표본오차

공식(8)에 의하여 산출한 R' 에 대한 분산(var),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var}(R') = \sum_h W_h^2 \text{var}(R'_h) \dots\dots\dots (14)$$

$$W_h = X_h / X \dots\dots\dots (15)$$

$$\text{var}(R'_h) = C_h \sum_i (DY'_{hi} - R'_h DX'_{hi})^2 \dots\dots\dots (16)$$

$$C_h = (1/X')^2 [n_h / \{2(n_h - 1)\}] \dots\dots\dots (17)$$

$$DY'_{hi} = Y'_{hi} - Y'_{hi+1} \dots\dots\dots (18)$$

$$DX'_{hi} = X'_{hi} - X'_{hi+1} \dots\dots\dots (19)$$

$$\text{se}(R') = \text{var}(R')^{1/2} \dots\dots\dots (20)$$

$$\text{rse}(R') = \text{se}(R') / R' \times 100 \dots\dots\dots (21)$$

제 3 장 조사표 개발 및 조사의 실제

제 1 절 조사표 개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 개발은 1981년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더불어 매 5년마다 실시되었던 1985년도, 1990년도, 1995년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를 근간으로 보완·수정되었으며, 기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애인의 욕구증가에 따른 다양한 내용을 신규로 조사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장애 범주와 장애 정의, 그리고 2000년 이후 조사 내용에 있어서의 사회적, 제도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한 1차 장애범주의 확대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시 확대된 장애유형에 대한 새로운 조사표의 개발이 필요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2003년의 2차 장애범주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확대 장애유형에 대한 조사표 개발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표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설계되었다.

첫째,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2003년의 2차 장애범주의 확대에 근거하여 장애 정의 및 범주에 맞게 개정을 하되, 가능한 2000년도의 조사표 체제를 유지하여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신규로 추가된 법정 장애범주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장애판정지침에 확정된 장애의 판정기준에 따라 조사표에 추가한다.

셋째, 확대예상 범주에 포함된 장애는 물론, 확대예상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외국의 장애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범주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장애인 수를 파악하여 향후 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표에 추가한다.

넷째, 새로 장애범주에 포함된 법정 장애인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 개정 이외에 기타 장애인 실태조사표의 항목에서 새로운 법정 장애의 특성에 맞게 추가 또는 변경해야 할 항목을 개정한다.

다섯째, 장애 유무 및 장애 종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는 우선 포괄적인 장애의 정의(「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에 의한 질문을 통해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유형에 따른 실태 및 욕구에 대해서는 가구조사에서 응답된 장애별로 구체적인 추가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표를 작성한다.

특히, 장애인 판별을 위한 가구 및 판별조사표를 작성할 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원은 전문의료인이 아니므로 조사문항에 의해 장애인을 판별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판별을 위한 조사 문항은 판별 기준을 엄격하게 한다.

둘째,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이나 질병기간 그리고 질병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유형 및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애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판정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간’에 적합하게 ‘1년 이상’을 참조기간으로 한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현황과 장애를 판별하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의해 장애인으로 판정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제약자조사표(개별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사의 실시는 첫째,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서 법정장애인이 없는 가구로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만 작성한다. 둘째, 가구 및 판별조사에서 법정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1차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의 작성과 더불어 활동제약자조사표를 모두 작성한다. 셋째,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서 법정장애 이외에 3차 확대예상 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만 작성하고 활동제약자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앞에서 제시된 기본 원칙에 의해 설계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표는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되 사회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많은 조사 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10개 장애범주 이외에 5개의 장애범주(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가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그에 따른 활동제약자조사표에서의 조사항목들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그외 장애인복지사업 내용의 확대와 장애인의 욕구가 다양하게 증가됨에 따른 관련 조사항목들이 추가되었

다. 특히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실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조사하는 공통항목을 확대하였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새로이 개발된 장애인 실태조사표 조사항목들을 가구 및 판별조사표, 활동제약자조사표(장애유형별 특성,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일상생활 지원, 재활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경제상태,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시설장애인 조사표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제 2 절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1. 조사표의 구성

본 조사의 조사표는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서 장애인으로 판별된 경우에 한해 해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제약자조사표(개별조사표)로 구성되었다. 가구 및 판별조사표는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 사항을 질문한 후 가구내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활동제약자조사표는 장애에 관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가구 및 판별조사표

가.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원의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성, 연령,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및 종사상의 지위,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여부 및 형태 등이 포함되었다.

가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는 총 가구원수, 가구유형, 월평균 총가구소득, 가구의 주된 수입원,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 최소한의 월 생활비, 주택형태, 주택 소유형태

등이 포함되었고,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유형 등을 포함시켰다.

2000년도 실태조사와 달라진 점은 가구원 일반 특성에서의 연금가입 형태가 제7장의 경제상태로 보완·확대되어 이전되었고, 가구특성에서의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가 가구원 일반특성으로 포함되었다. 이외 가구특성에서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과 월평균 이자지출액은 삭제되었다.

나. 장애인 유무

조사가구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판정될 가구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법정장애인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는 2000년 조사에서의 10개 법정 장애범주가 2003년 2차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5개의 장애범주가 추가됨에 따라 15개의 법정 장애범주로 확대하여 구성된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법정장애인 이외에 향후 범주확대가 예상되는 장애유형 즉,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기타의 질환에 대해서도 해당 유무를 질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활동제약자조사표

활동제약자조사표는 장애인에 대한 장애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의 공통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유형별 장애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5개의 법정장애 각각의 장애유형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2000년도 조사와 달라진 점은 먼저, 장애유형이 ①~⑩까지 10개의 장애유형에서 ⑪~⑮의 장애유형이 추가되어 모두 15개의 장애유형이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외 세부적으로는 지체와 뇌병변장애의 질문문항에서 일상생활동작능력 점수(Mofedifed Barthel Index)의 문항이 공통항목인 일상생활 지원으로 이동하여 조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①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척수손상의 경우 손상부위), 주된 장애원인
- ②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장소, 출산방법), 주된 장애원인
- ③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④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⑥ 정신지체: 정신지체 여부, 장애정도(언어능력과 학습능력 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⑦ 발달장애(자폐증): 발달장애 여부, 정신지체 및 경련성질환 동반여부, 발달상의 특성,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⑧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정신질환명,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주된 장애원인
- ⑨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여부 및 투석 시작시기,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 연령, 주된 장애원인
- ⑩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⑪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⑫ 간장애: 간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⑬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⑭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 ⑮ 간질장애: 간질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표 3-2-1〉 장애유형별 특성 조사항목의 구성

장애유형	조사항목
지체장애	지체장애 여부, 장애발생 부위 및 종류,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척수손상의 경우 손상부위), 주된 장애원인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종류, 마비 정도, 기타동반장애 유무, 장애발생시기, 주된 질환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장소, 출산방법), 주된 장애원인
시각장애	시각장애 여부,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청각장애	청각장애 여부, 보청기 사용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언어장애	언어장애 여부,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정신지체	정신지체 여부, 장애정도(언어능력과 학습능력 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발달장애 (자폐증)	발달장애 여부, 정신지체 및 경련성질환 동반여부, 발달상의 특성,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정신장애	정신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정신질환명,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 주된 장애원인
신장장애	신장장애 여부, 장애발생시기,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여부 및 투석시작시기,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 연령, 주된 장애원인
심장장애	심장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호흡기장애	호흡기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간장애	간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안면장애	안면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장루·요루장애	장루·요루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간질장애	간질장애 여부,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나. 장애 공통사항

장애 공통사항의 조사항목은 크게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일상생활 지원, 재활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경제상태,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다. 조사항목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종단적 비교를 위하여 2000년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 기존 조사 이후 5년 동안의 기간이 흐르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정책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사항목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후 장애인복지사업의 내용 및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사항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 경제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 현재 미흡한 여성장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조사항목, 장애인 보육·교육관련 조사항목,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욕구 관련 조사항목, 최근 장애인복지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장애인의 차별, 자립생활 및 직업재활 욕구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이 추가되었다. 이외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이에 대한 실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조사하는 공통조사항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2-2>와 같다.

①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원인의 진단 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 진단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의 최초 치료시기 및 즉시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 최초 치료기관, 치료의 충분정도·충분한 치료받지 않은 이유, 현재 주된 장애의 치료여부·치료받은 장소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향후 건강 및 재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②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동작능력점수(Modified Barthel Index),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일상생활원조 필요정도, 주보호자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와의 동거여부 및 계속적인 도움필요 여부, 주보호자의 건강정도, 주보호자의 소득활동지장 여부, 현재 보호(도움)의 충분정도, 보호(도움)비용 지불여부, 월 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평균 지출비, 외부의 보호인 고용의향

③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재활보조기구 종류별 소지여부 및 필요여부, 재활보조기구 사용정도, 재활보조기구 미사용의 주된 이유, 필요 재활보조기구의 미구입 이유,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 여부,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보유·사용계획

④ 보육·교육: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이용시간·월비용·만족도,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이용시간, 월비용, 만족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 유형, 이용시간, 월비용, 만족도, 조기교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다녔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 및 졸업 여부,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 그만둔 이유, 학교생활 적응정도, 학교생활(보육·유치원 포함)에서의 어려운 점, 통학방법, 통학시간(보육·유치원 포함), 낮시간 또는 방과후 교육(보육)형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서비스 이용희망 여부

⑤ 취업 및 직업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의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 및 1일 평균 근무시

간, 월평균수입액, 직장에서의 지위, 현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의 만족정도, (실업자의 경우) 지난 주 일이 있었다면 일할 의사 여부, 구직방법, 공공직업알선기관 형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지난 4주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의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직업훈련받은 경험 여부, 받지 않은 주된 이유, 향후 희망 직업훈련 분야,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할 일

⑥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개인소득의 수입원 및 월평균 수입액, 연금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미납경험 여부, 장애로 인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여부, 차량 소유 여부(차종·배기량·연료사용, 자동차 소유현황, 장애인자동차 표지종류, 용도),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비·자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대비, 기타), 노후대책 마련 여부(사회보험, 개인연금, 저축, 보험, 주택, 부동산, 준비 못함 등)

⑦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결혼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배우자의 장애여부 및 장애유형·등급,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 지장 여부,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 자녀교육시 어려운 점, 집안 가사일 참여 여부,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출산경험 있는 경우)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여부 및 출산연령,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대상 서비스(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여성장애인 전문병원, 출산비용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육아용품 대여,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가사도우미,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타)의 필요정도

⑧ 여가 및 사회활동: 단독 외출여부, 지난 1년간 외출 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이동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현재 거주주택의 생활편리 정도 및 개조 필요성, 주택개조시 가장 고치고 싶은 곳, 종교형태, 지난 1주간 문화·여가활동 종류별 참여 유무, 평소 문화·여가활동의 만족정도 및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주된 이유, 지난 1년간 국내여행(관광) 경험 여부, 선거투표 참여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

⑨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관적인 건강상태, 현재생활 만족도, 주된 상담자,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무시·폭력 경험 여부 및 받은 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가족,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여부, 주된 성폭력 상담자 및 상담하지 못한 이유, 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시설 필요여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본인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⑩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등록 시기, 장애 등록의 혜택정도, 장애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도·경험여부·경험 만족도,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인지도·경험여부·경험 만족도·이용희망여부, 향후 희망하는 삶의 형태, 설치희망 장애인복지시설, 자립위해 필요한 사항, 사회·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표 3-2-2〉 장애공통 조사항목의 구성

장애공통	조사항목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주된 장애, 주된 장애원인의 진단 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 진단여부·최초 진단연령 및 진단장소, 주된 장애의 최초 치료시기 및 즉시 치료받지 않은 주된 이유, 최초 치료기관, 치료의 충분정도·충분한 치료받지 않은 이유, 현재 주된 장애의 치료여부·치료받은 장소 및 치료받지 않은 이유,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동작능력점수(Modified Barthel Index),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일상생활원조 필요정도, 주보호자 유무 및 주보호자, 주보호자와의 동거여부 및 계속적인 도움필요 여부, 주보호자의 건강정도, 주보호자의 소득활동 지장 여부, 현재 보호(도움)의 충분정도, 보호(도움)비용 지불여부, 월평균 보호일수, 1일 평균 보호시간, 보호로 인한 월평균 지출비, 외부의 보호인 고용의향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재활보조기구 종류별 소지여부 및 필요여부, 재활보조기구 사용정도, 재활보조기구 미사용의 주된 이유, 필요 재활보조기구의 미구입 이유,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 여부,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향후 보유·사용계획
보육·교육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이용시간·월비용·만족도, 보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유형·이용시간, 월비용, 만족도,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 유형, 이용시간, 월비용, 만족도, 조기교육시설 다니지 않는 경우 주된 이유, 다녔거나 재학 중인 학교의 형태 및 졸업 여부,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 그만둔 이유, 학교생활 적응정도, 학교생활(보육·유치원 포함)에서의 어려운 점, 통학방법, 통학시간(보육·유치원 포함), 낮시간 또는 방과후 교육(보육)형태, 가정방문 학습도우미 서비스 이용희망 여부
취업 및 직업 생활	지난 1주간 주 활동분야, 지난 1주간 수입목적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일한 경험 여부, 지난 주 일하지 않았지만 직장이 있었는지 여부, 직장이 있는데 일하지 않은 이유, 지난 주 구직 여부, 지난 4주 구직 여부, (취업자의 경우) 지난 1주간 일한 총시간, 현재 일하는 곳, 현 직장 근무기간, 1주일 평균 근무일 및 1일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수입액, 직장에서의 지위, 현 직장생활에서의 애로사항, 현재 하는 일의 만족정도, (실업자의 경우) 지난 주 일이 있었다면 일할 의사 여부, 구직방법, 공공직업알선기관 형태,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지난 4주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의 경우) 현재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직업훈련받은 경험 여부, 받지 않은 주된 이유, 향후 희망 직업 훈련 분야, 직업재활을 위해 국가가 할 일

〈표 3-2-2〉 계속

장애공통	조사항목
경제상태	주관적 소속계층 인식정도, 개인소득의 수입원 및 월평균 수입액, 연금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미납경험 여부, 장애로 인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여부, 차량 소유 여부(차종·배기량·연료사용, 자동차 소유현황, 장애인자동차 표지종류, 용도), 지난 1년간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소요비용(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간병비·자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대비, 기타), 노후대책 마련 여부(사회보험, 개인연금, 저축, 보험, 주택, 부동산, 준비못함 등)
결혼생활/여성장애인	결혼 여부, 결혼 연령, 결혼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배우자의 장애여부 및 장애유형·등급, 자녀 여부 및 자녀수, 장애자녀 여부 및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자녀없는 경우 그 이유, 장애로 인한 자녀성장 지장 여부, 자녀양육시 어려운 점, 자녀교육시 어려운 점, 집안 가사일 참여 여부, (임신경험 있는 경우) 임신당시 장애여부,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 (출산 경험 있는 경우) 마지막 임신에 의한 출산여부 및 출산연령, 출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산후조리해 준 사람, 산후조리 충분정도, 여성장애인대상 서비스(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여성장애인 전문병원, 출산비용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육아용품 대여,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가사도우미,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타)의 필요정도
여가 및 사회활동	단독 외출여부, 지난 1년간 외출 빈도, 외출의 주된 목적,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집밖 활동시 불편정도 및 불편 이유, 주된 이동수단,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현재 거주주택의 생활편리 정도 및 개조 필요성, 주택개조시 가장 고치고 싶은 곳, 종교형태, 지난 1주간 문화·여가활동 종류별 참여 유무, 평소 문화·여가활동의 만족정도 및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주된 이유, 지난 1년간 국내여행(관광) 경험 여부, 선거투표 참여 여부 및 투표하지 않은 이유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주관적인 건강상태, 현재생활 만족도, 주된 상담자, 가족의 장애를 이유로 무시·폭력 경험 여부 및 받은 폭력유형, 무시·폭력하는 가족, 타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경험여부, 주된 성폭력 상담자 및 상담하지 못한 이유, 장애인 가정·성폭력상담시설 필요여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및 대처방법, 본인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차별 인식정도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등록 시기, 장애등록의 혜택정도, 장애미등록 이유, 장애인복지사업의 인지도·경험여부·경험 만족도,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인지도·경험여부·경험 만족도·이용희망여부, 향후 희망하는 삶의 형태, 설치희망 장애인복지시설, 자립위해 필요한 사항, 사회·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4. 시설장애인 조사

2000년도의 시설장애인 조사표는 기존의 조사표에서 시설장애인 수와 전체 장애인 출현율을 제외한 성별이나 연령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장애유형 및 출현율의 파악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보완한 것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더 많은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2005년도의 시설장애인 조사표는 이와 같이 보완되었던 2000년도의 조사표에 시설조사표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장

애인 인권과 관련해서 제시되었던 시설장애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내 장애인의 무호적자 여부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였고, 조사 대상시설이 신고시설 전수가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설 일반사항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2000년 조사에서 시설 일반사항 파악을 위한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던 시설종사자 자격현황 및 총수, 담당업무별 종사자 수는 조사항목에서 삭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표 3-2-3>과 같다.

<표 3-2-3> 시설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시설장애인	조사항목
시설의 일반사항	시설명, 대표자 성명, 법인구분, 시설종류1(신고시설, 미신고시설), 시설종류2(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한센병시설, 혼합시설), 시설 설치년도, 시설소재지, 시설거주자(전체거주자수, 총 장애인수, 등록 장애인수)
시설장애인 특성	성별, 연령, 시설입소 년도, 무호적자 여부, 법정 장애유형 및 장애등록 현황(법정장애 유형, 등록여부, 등급), 향후 범주확대 장애(장애유형, 중증정도)

제 3 절 조사의 실제

1. 조사지침서 개발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사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조사지침서는 모두 8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조사개요, 표본추출, 현지 조사절차,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가구명부의 작성, 조사표의 작성(가구 및 판별조사표·활동제약자조사표), 조사원 및 지도원의 역할, 가구방문시 유의사항이다.

조사지침서의 I. 조사개요에서는 재가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조사의 배경으로 정리한 후, 장애인의 실태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애인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1732호)로서 조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으며,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내용(가구 및 판별조사표, 활동제약자조사표), 조사방법(가구방문 면접조사)등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조사지침서 II. 표본추출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을 조

사대상으로 하여 활동제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적절한 수의 표본지역을 추출하고, 이 표본지역에서 장애인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조사결과를 얻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즉, ‘표본조사에서 발견된 장애인 1인은 총수 추정시 수백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애인 1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빠짐없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구에서 200개 표본조사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개의 활동제약자 실태조사구는 3~5개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로 구성되며, 조사구당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는 225가구로 됨을 설명하였다. 표본조사구는 지역적으로 골고루 산재하도록 하면서 주택특성(일반주택지역, 아파트지역, 연립 및 다세대주택지역, 기타)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추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표본조사구에서는 모든 가구와 가구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가구 및 판별조사표를 작성하고, 여기서 활동제약자로 판별된 사람에 대하여 활동제약자 조사표(개별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침서 III. 현지조사 절차에서는 조사원이 현지조사에서 거쳐야 할 조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조사원이 현지에서 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업무의 내용에는: 1) 조사구 관할 동·읍면사무소의 방문, 2) 통·이장 및 반장 방문, 3) 조사구 경계선 확인, 4) 조사구 요도의 수정·보완, 5) 조사구의 분할, 6) 가구의 확인을 포함시켰다. 실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가구를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지침서 IV.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에서는 일반가구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즉, 일반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가구주를 중심으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1가구, 2가구, 3가구의 다양한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동시에 가구 확인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가구의 개념과 동시에 가구원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개하면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과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⁵⁾도 구체

5)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은 ① 여행·출장 등 국내·외의 다른 곳에 잠시 출타 중인 가구원, ② 병원이거나 기독원 등에 입원(입소)해 있는 사람, ③ 공익근무, 1개월 미만의 가출자, 미결수, ④ 선박, 항공기, 철도 탑승 승무원, ⑤ 식구는 아니지만 같이 살고 있는 하숙인, 또는 3개월 이상 계속 동거 중인 사람임. 조사시 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①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외지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② 형 확정으로 교도소, 소년원, 감호소 등에 살고 있는 사람, ③ 군대 또는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집을 떠나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시설 등에 장기 요양 또는 수용 중인 사람임.

적으로 제시하여 조사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지침서 V. 가구명부의 작성에서는 가구명부란 조사구요도에 표시되어 있는 집(거처)을 방문하여, 각 집(거처)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에 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놓은 표임을 설명하였고, 동시에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는 그 조사구 구역을 담당하는 조사원이 하나의 거처 가구방문조사를 마치고 나서 다음 거처를 방문하기 전에 매번 작성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구명부의 구성 및 작성방법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소개하였다.

지침서 VI. 조사표의 작성에서는 조사대상가구에 법정장애인이 있는 경우와 법정장애인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조사표 작성요령을 설명하였다. 즉, 법정장애인이 없는 가구로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만 작성하도록 하고, 법정장애인이 있는 가구로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활동제약자조사표를 모두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후 범주확대 장애인으로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 및 판별조사표만 작성하고, 활동제약자조사표는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조사표는 직접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각 조사문항의 번호기입란에 응답내용을 조사원이 직접 부호로 기입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특히, 조사시 가구 및 판별조사표의 응답자는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 활동제약자조사표의 응답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을 직접 면접조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단, 청각·언어·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침서 VII. 조사원 및 지도원의 역할에서는 조사원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이 조사의 성공여부가 달려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지도원은 조사원이 조사업무 수행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조사표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원이 교육받은 대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조사원의 조사업무를 검토하고 항상 독려·감독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지도원과 조사원의 기본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지침서 VIII. 가구방문시 유의사항에서는 조사업무의 정확성은 일차적으로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원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가구방문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들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유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사전조사의 실시

장애인 실태조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문항의 개발과 실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추정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는 주로 다음의 내용들이 점검되었다.

가. 표본

- ① 조사구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 ② 조사대상 가구 및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 ③ 장애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나. 접근

- 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가?
- ②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응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③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다. 설문

- ① 조사항목의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 ② 조사표의 형태는 조사하기에 적당한가?
- ③ 조사표에서 표현방법이 잘못된 곳은 없는가?
- ④ 조사표의 문항들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라. 응답

- ① 조사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기의 범위를 벗어난 응답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 ②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응답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 ③ 응답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는 없는가?

마. 자료 처리

- ① 자료를 범주화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 ② 부호화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바. 조사표 작성

- ① 조사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가?
- ② 조사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가?

사. 조사관련 업무

- ① 가구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 ② 장애인조사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 ③ 장애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특별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아. 자료 분석

- ① 빠진 조사항목은 없는가?
- ②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사전조사는 일차적으로 완성된 조사표를 근거로 연구진이 장애유형과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여 약 10명을 선정,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전조사에서 얻어진 조사문항 관련 결과는 조사표 확정시에 반영되었으며, 조사결과에서 얻어진 일반가구 및 장애인 거주 가구당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사원들의 1일 업무량을 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조사원 교육

장애인 조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노출 기피, 장애판정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사회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특히, 각 장애유형별 특성 및 원인, 주요 증상, 일상생활 지원, 재활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재활, 폭력·차별경험, 장애인등

록 및 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사에 있어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한 헌신적 참여의사와 동기유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조사원과 지도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조사의 목적과 조사실시에 있어 요구되는 장애에 대한 기본지식, 동기 유발, 면접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지도원의 경우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7월 4일~5일(2일간), 그리고 7월 6일~9일(4일간)까지 2회에 걸쳐 중복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사원의 경우는 7월 6일~9일(4일간)까지 1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애특성에 대한 교육은 장애유형별로 전문의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들 장애유형별 전문의들은 조사표 개발과정에도 참여하였다(<표 3-3-1> 참조).

교육내용은 주로 조사개요, 표본, 장애판별 방법과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장애공통 조사 항목에 대한 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사 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원내 연구진과 외부의 강사들에 의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사원 교육에 참여한 장애유형별 외부강사(전문의)는 다음과 같다.

〈표 3-3-1〉 장애유형별 외부강사(전문의) 명단

교육 과목	교육 강사
지체장애·뇌병변장애	김완호(국립재활원 근골격재활과 과장)
시각장애	박성희(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안과 교수)
청각·언어장애	박철원(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정신지체·발달장애(자폐증)	송동호(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
정신장애·간질장애	안동현(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정신과 교수)
신장장애	이태원(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신장학과 교수)
심장장애	유규형(건국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호흡기장애	고운석(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간장애	김창민(국립암센터 암연구소 소장)
안면장애	홍인표(국립의료원 성형외과 과장)
장루·요루장애	오승택(강남성모병원 외과 교수)

제 4 절 현지조사

1. 조사기간

현지조사는 2005년 7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약 3개월 동안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조사원 선정 및 조사팀 구성

장애인 실태조사의 조사팀은 지도원(supervisor) 1명과 조사원 3명, 모두 4명이 1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25개의 팀 총 100명이 장애인 실태조사에 동원되었다. 조사원은 표본조사구내의 모든 가구를 전수 방문하여 조사표에 의거,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지도원은 각 조사팀의 조사원에 대한 현지 지도 및 감독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지도원은 현지 조사구내 표본가구의 조사원별 업무할당 및 지정, 조사결과의 점검 및 누락사항의 발견, 재방문 지시 그리고 가구명부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지도원과 조사원은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되었으며, 면접전형을 거쳐서 선발되었다. 지도원과 조사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20~40대의 연령으로 사회조사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기존의 1995년도와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원으로 선발하였으며, 연구진들은 조사감독원으로 편성하여 현지조사 기간 중 각 조사팀을 담당 및 관리하도록 하였다. 감독원들의 주된 임무에는 해당 조사구내 조사협조 요청, 장애 판정에 대한 어려움, 조사내용에서의 의문사항, 조사시 비협조문제 등 조사 진행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 기타 지도원이나 조사원의 개인적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것도 포함시켰다.

3. 현지 조사의 절차

현지 조사는 지도원 1명과 조사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정해진 조사 일정에 따라 1개 조사구의 가구를 전수 조사한 후 다음 조사구로 이동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팀이 해당 조사구에서 조사를 완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가. 조사구 관할 동·읍·면사무소 방문

- 지도원은 조사원과 함께 해당 동·읍·면사무소를 방문함.
- 동·읍·면사무소에서 지도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담당자와 현지 조사에 관한 협의
 - 관내도에서 조사지역 복사, 경계선 표시

- 조사표 및 조사용품 인수(각 조사구에서 사용할 조사표와 각종 물품은 조사본부에서 조사전에 해당 동·읍·면사무소로 우송)
- 기타 지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이때, 조사원은 적당한 장소에서 대기하게 됨(지도원이 동·읍·면사무소에 담당자와 협의를 할 때에는 1명의 조사원을 동석시킬 수도 있음).

나. 통·이장 및 반장 방문

- 동·읍·면사무소에서 협의 후 조사구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숙소를 정함(서울의 경우 제외).
- 지도원은 통·반장(이장)을 방문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를 부탁함.
 - 특히 활동제약자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확인
- 이때, 조사원은 숙소에서 대기하거나 지도원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다. 조사구 경계선 확인

- 조사구 경계선 확인은 원칙적으로 지도원이 하여야 함.
- 조사구에 관한 자료로는 배부되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요도를 사용함.
 - 신축 아파트 조사구의 경우에는 현지 방문하여 새로 작성한 아파트 전면도를 조사구요도로 사용
- 1개 조사구에는 3~5개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가 포함되므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마다 조사구요도가 배부됨.
 - 1개 조사구에서 3~5개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는 거의 대부분 인접되어 있음(인접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요도는 5년 전에 작성된 것임.
 - 조사구요도에 있는 건물이 철거되어 현재는 없을 수도 있음.
 - 조사구요도에는 공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택이 신축되어 있을 수도 있음.
 - 조사구요도에 건물 표시가 없다고 해서(공지로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공지에 신

축된 건물을 조사구에서 제외시켜서는 안됨.

- 조사구 경계선은 무조건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경계선을 따라야 함.
- 부분적으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경계선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경계선과 가장 근접한다고 판단되는 경계선을 선택하여야 함.

라. 조사구 요도의 수정·보완

- 조사구 경계선 확인이 끝나면 조사구요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철거된 건물이 발견되면, 조사구 요도의 해당 건물에 “x” 표시를 함.
 - 신축 건물은 크기에 비례하도록 추가함.
 - 기타 지형지물이 바뀌었을 때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수정·보완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요도가 배부된 경우에 동·읍·면사무소의 관내도가 더 잘 되어 있으면, 이 관내도를 사용하여도 무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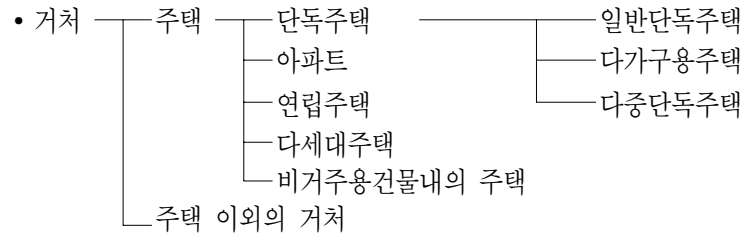
마. 조사구의 분할

- 지도원이 조사구를 3개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조사원에게 각각 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줌.
- 구역수는 조사원수와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현지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여 결정함.
 - 1명의 조사원이 2개의 구역을 담당할 수도 있고, 2명의 조사원이 1개의 구역 또는 3개의 구역을 담당할 수도 있음.

바. 가구의 확인

- 담당 구역이 결정되면 방문하기 쉬운 순서를 정한 다음, 이 순서에 따라 첫 번째 건물부터 차례대로 방문하여 출입문별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람이 살고 있으면 구역번호를 포함한 거쳐번호를 기입함.

- 여기서 거처라 함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함.



- 주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물을 말함.
 - ① 영구적인 성격의 건물
 - ②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 ③ 독립된 출입구
 -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
-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거주목적이 아닌 건물내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함(예: 상업용 건물 내의 주택)
- 주택 이외의 거처: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예: 판자집, 임시 막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점 또는 사무실 등)
-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거처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사선(/)을 칩.
- 출입문별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출입문별로 별개의 거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몇 가구인지를 확인하여 가구별로 가구조사표를 작성한 다음 필요에 따라 활동제약자조사표를 작성함.
- 한 건물이 여러 개의 거처로 구분되어 거처마다 거처번호를 기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음 거처번호와 마지막 거처번호를 연결시켜 기입한 다음에 조사구요도의 적당한 부분에 이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
 - “13~16번”까지 4개 거처의 경우에 “13-16”으로 기입하고, 조사구요도의 적당한 위치에 “13번 거처(지하), 14번 거처(2층 우측), …” 등과 같은 설명을 추가

-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 조사구요도의 여백에 13~16번 거처를 부분 확대하여 그로도 무방함.

사. 면접 및 조사표 작성

조사원은 배당된 구역의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바탕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의 내용을 조사원이 직접 조사표에 기록하였다.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만약 적당한 응답자를 만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방문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하도록 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몸에 이상이 있거나 장기간의 심한 질병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일상 활동이 자유롭게 못한 사람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임명한 조사원 ○○○입니다. 귀댁에 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조사대상자가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 조사는 예산과 시간 관계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다 조사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비뽑는 식으로 200개 지역을 뽑았는데, 이 동네가 뽑혔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댁은 전국을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못하고, 또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면접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실태조사’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제약자 실태조사’란 명칭을 사용했다.

아. 가구명부의 작성

가구명부는 한 거처의 방문이 끝날 때마다 기입하였다. 만약 방문을 하였으나 조사를 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번호까지만 기입하고 재방문하도록 했다. 가구명부에 기록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

- ① 조사구번호
- ② 구역번호
- ③ 지도원 성명
- ④ 행정구역
- ⑤ 대상가구수
- ⑥ 조사가구수

(2) 조사관리 항목

- ① 추가여부: 조사구 요도 내부에서 추가, 외부에서 추가 여부
- ② 거처번호: 조사구 요도의 거처번호
- ③ 가구번호: 거처내의 가구일련번호
- ④ 가구주 성명
- ⑤ 주소 또는 장소명
- ⑥ 가구원수: 가구조사표의 가구원수
- ⑦ 장애인수(법정장애인 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로 판정된 장애인수
- ⑧ 가구조사표 완료 여부: 완료, 미완 등
- ⑨ 활동제약자조사표: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조사완료 여부를 숫자로 표시한다. 만일 한 가구에 지체장애인이 2명인 경우 “2”로 표시한다.
- ⑩ 답례품 확인

4. 현지 조사의 결과

현지 조사시 동·읍·면사무소의 사회담당(장애인담당) 그리고 통·반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특히 동·읍·면사무소 및 통·반장, 지역유지 등을 통해 조사지역 내 장애인 유무에 대한 사전정보를 수집하였다.

동·읍·면사무소에서는 등록장애인 명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부 등에 대한 지원을 받아 장애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거주가구, 장애발견이 어려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지역내 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 이장을 통해서 장애인 조사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는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가구내 응답자는 많은 경우가 주부였지만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본인과 직접 면접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현지 조사의 전 과정은 중앙 및 각 조사팀의 지도원에 의해 통제·지도 감독되었다. 지도원은 현지에서 조사완료된 조사표를 점검하고, 중앙에서는 감독원인 본 연구원 직원이 조사 현지에서 각 조사팀을 직접 순회지도하였다.

이러한 조사절차를 통하여 조사완료된 가구수는 40,556가구였고, 미완가구수는 4,729가구, 조사완료 가구원수는 119,306명이었다. 따라서 조사완료율은 조사대상 가구를 기준으로 8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3-4-1> 참조).

〈표 3-4-1〉 재가장애인 조사 완료율

구분	결과
조사대상 가구수	45,285가구
완료가구수	40,556가구
미완가구수	4,729가구
완료율	89.6%
조사완료 가구원수	119,306명

장애인 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달리 조사진행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유형이 있어, 장애인 본인으로부터 응답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가구내 가족원(주로 배우자 및 부모)을 통해 응답받도록 하였다. 즉,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문자해독 능력이 있을 때는 조사표상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인해 본인이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는 장애인과 장애상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모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대리응답을 받도록 하였다. 이 결과 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76.8%였고, 청각장애나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족원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경우는 전체 장애인의 23.2%였다⁶⁾.

5. 시설조사의 결과

시설조사는 2005년 7월 11일~9월 21일까지 약 40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모자(여성)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한센병시설 등 7개 유형의 신고 사회복지시설이었고, 7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전수를 조사하였다.

시설조사표는 조사표를 시설로 우송하여 시설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간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는데, 전체 대상시설 중 11개의 시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전체 1,063개 시설 중 전체의 99.0%인 1,052개 시설(총 84,520명의 입소자)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표 3-4-2〉 시설장애인 조사대상 및 조사완료율

구분	대상시설수(개소)	입소자(명)	응답시설수(개소)	회수율(%)
장애인복지시설	274	19,291	274	100.0
아동시설	249	17,734	247	99.2
노인시설	396	22,389	388	97.9
모자·여성시설	41	2,714	41	100.0
부랑인시설	42	9,186	42	100.0
정신요양시설	56	12,471	55	98.2
한센병시설	5	735	5	100.0
총계	1,063	84,520	1,052	99.0

6. 자료의 처리

가. 자료의 처리

조사가 완료된 후, 총 25명의 지도원으로 구성된 자료정리요원에 의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와 활동제약자조사표의 기재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조사항목 중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부실 기재된 문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표상에 기입되어 있는 응답자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응답을 받아 조사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특히 가구 및 판별조사

6) 조사결과에 의하면,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의 응답자는 총 5,466명이었는데, 장애인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4,196명(76.8%)이었고, 대리응답한 경우는 1,270명(23.2%)이었음.

표에서 장애로 판정된 가구원에 대해서는 그 가구원에 대한 활동제약자조사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원들이 조사 실시시 장애인인 등과 관련해서 정확한 질병명을 모르기 때문에 응답자의 응답을 그대로 조사표에 기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연구진이 검토하여 분류하였으며, 장애정도, 범위 및 장애인인 분류에 관련해서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 구분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행 법적 장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수에서 제외시켰으며, 조사지역 경계선 이외의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주소와 지역요도를 확인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나.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지침(coding instruction)에 따라 부호화된 후, 전산입력되었다. 그리고 자체 개발된 오류점검(error check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오류를 교정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SPSS통계패키지에 의해 분석되었는데, 본 조사의 일차적 목적이 장애인 실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사결과의 집계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로는 장애출현율 및 장애인구수의 추정과 둘째, 재가장애인의 사회, 경제, 복지, 장애인관련 특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셋째, 각 장애유형별 세부 특성에 관한 통계치이다.

백분율의 분포나 인구 천명당 출현율 등의 통계치들은 표본 실수가 아닌 가중치가 적용된 비율(%) 또는 수치로서 결과해석의 편의와 정책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표상의 합계란에는 전체 조사건수와 전국 추정수의 통계치를 함께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장애인의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일상생활 지원, 재활보조기구, 보육·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경제상태,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 경험,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의 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주된 장애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분석의 단위는 사람(person)으로서 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장애유형별 특성과 현황에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

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15가지 장애를 개별화하여 장애원인, 발생시기, 치료 등 장애와 관련된 세부 특성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장애에 모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건(spell)으로서 각 장애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장 장애의 범위 및 정의

제 1 절 장애의 범위

본 조사에서 장애의 범위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15종류의 장애이다. 이는 2000년도 조사에서 장애범주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의 10종류였던 것에 비해 5종류(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장애가 더 확대된 것으로, 이는 2003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15개의 장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범주의 확대는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으로 1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1999년에 이루어져 장애범주가 5개에서 10개의 유형으로 확대되었고, 2단계 장애범주 확대는 2003년에 이루어져 10개의 유형이 15개의 유형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장애범주의 확대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빠른 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확대예상 장애범주에는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분류는 법 제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분류체계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분류와 확대예정 장애범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확대예상 장애범주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만성통증, 기타 암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뇌증후군, 치매,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기타 정신발달장애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는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여건 및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데,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정립하고, 이 분류법에 의해 장애를 분류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 분류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및 불리(handicap)의 세 가지 단계⁷⁾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장애의 분류로 포함시켰다. 그후 1997년 기존의 ICIDH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ICIDH-2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한 장애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개인이 접하게 되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의 특징은 환경과의 상호적인 관계성 속에서 보다

7) WHO에 의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손상(impairment)은 심신의 구조적·기능적 손상 자체를 의미하고, 불능(disability)은 손상에 의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활동에 나타나는 이차적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한 사회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불이익으로서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함.

포괄적인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는 ICIDH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ICF(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가 발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건강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현하는 체계와 통일된 표준분류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영역’과 ‘건강관련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⁸⁾. 따라서 한 사람의 기능과 장애는 건강조건(질병, 질환, 상해, 외상 등)과 배경요인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배경요인에는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WHO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와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는 하나 점차적으로 손상상태에서 능력장애 상태로 그리고 지금은 참여(환경)의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의 범위 및 분류와 그 판별준거는 다음과 같다.

제 2 절 장애의 정의, 분류, 판별준거

1. 지체장애

가. 정의 및 분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포함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②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③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④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

8) ICF는 ‘건강영역’과 ‘건강관련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영역들은 ① 신체기능 및 구조와 ② 활동과 참여라는 두 가지 기본 목록에 포함된 신체 및 개인과 사회라는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음.

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⑥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⑦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995년 실태조사에서는 1990년 조사시 정의를 수용하여 지체장애를 ‘선천적 결함으로 상지, 하지 및 척추에 마비, 절단, 관절운동제한, 또는 변형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지체장애를 ‘절단, 마비, 관절운동장애, 변형’으로 구분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을 장애인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지체장애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으로 상·하지, 척추, 전신 등에 절단, 마비, 관절장애, 기형 및 변형 등이 있어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불편이 있는 것”, 또는 “원인에 관계없이 상지, 하지, 체간에 일부 또는 전신의 운동기능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며,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을 명시하였다. 장애등급기준 장애항목은 기존에 팔, 다리, 몸통으로 구분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개정법(1999)에 의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팔, 다리, 척추)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그 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왜소증, 척추 후만증, 척추 측만증 등 기존에 누락된 장애항목이 추가되었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지체장애는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의 정의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장애등급 기준 장애항목은 1999년 개정법에 의해 2000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2005년 실태조사에서도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팔, 다리, 척추)기능장애, 변형 및 단축장애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사용되는 절단, 마비, 관절장애, 변형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절단: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
- 마비: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있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약화된 상태
- 관절장애: 원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관절을 정상범위까지 움직일 수 없는 경우
- 변형: 척추나 상·하지의 형태가 변질된 상태로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

이외 기존에 누락되었다가 2000년 실태조사부터 추가된 왜소증이 2005년 조사에서도 지체장애에 포함되었다.

나. 판별 준거

가구 및 판별조사표 조사시 지체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지체장애인의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팔, 다리, 몸통에 마비, 절단, 변형이나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 등으로 일상 생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의 모든 신체적 손상(impairments)을 포함시켰다.
- ② 왜소증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유무 파악을 위해서는 판별 및 가구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키가 145cm 이하(단,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인 자 중)이거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키가 140cm 이하인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다.
- ③ 그리고 활동제약자조사표의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 형태, 부위, 정도, 주된 장애원인 등을 조사하여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였다.

장애형태별로 ‘절단’의 경우, 절단 부위가 법정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조사하였다. ‘마비’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이거나 앞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만성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장애대상에 포함시켰고, 마비가 있더라도 그 증상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장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절장애’의 경우 관절장애로 인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변형’의 경우 여러 가지 변형 및 기형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왜소증’을 포함함과 동시에 ‘마비’된 사람이 오랜 시일의 경과로 변형을 동반하게 된 경우에는 ‘마비’로 분류하였다.

2. 뇌병변장애

가. 정의 및 분류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에서부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뇌병변장애를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운 장애범주로서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도 지체장애와는 별도로 뇌병변장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병변장애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2000년 조사와 동일하다.

보행상의 장애정도는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보행시 파행을 보이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고, 일상생활동작에서의 장애정도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으로 분류된다.

나. 판별 준거

가구 및 판별조사표 조사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병변으로 인해 보행이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의 모든 신체적 손상(impairment)을 포함시켰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의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형태, 부위, 정도, 주된 장애원인 등을 조사하여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였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이때 마비의 정도는 완전마비, 불완전마비, 미상등으로 구분되고, 불수의운동(흔들림)이란 뇌에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의 경직이나 무정의 운동, 운동실조, 협동운동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3. 시각장애

가. 정의 및 분류

시각장애란 “시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지침에서는 시각장애를 시력감퇴에 의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에 의한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시각장애는 눈의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물체의 존재 및 그 형태를 인식하는 눈의 능력을 시력이라고 한다. 시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장애를 정도별로 나누어보면, 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를 전맹(total blindness: 시력 0)이라 하고, 암실에서 장애인의 눈에 광선을 점멸하여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광각(light-perception),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를 수동(hand movement), 자기 앞 1m 전방의 손가락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상태를 지수(finger count: 시력 0.02 이하)로 표현한다.

또한 눈으로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를 시야(visual field)라고 하는데, 시야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도 주변시력의 감퇴로 행동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1995년도 실태조사에서는 교정시력 0.6 이하를 시각장애에 포함시켰고, 시야장애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시야장애로 인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⁹⁾.

2000년 실태조사에서는 1995년 조사에서 교정시력 0.6 이하인 사람을 장애인으로 분류하였던 것과 달리, 개정된 장애인 판정지침에 따라 교정시력 0.2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도 2000년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교정시력 0.2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시행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시각장애 기준은 ①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④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 교정시력 0.2 이하를 시각장애에 포함시켰다.

9) 1995년 조사에서 시야장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시야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나. 판별 준거

시력 즉, 중심시력은 시시력표(test chart)로 측정한다. 본 조사에서 가구 및 판별조사표 조사시 시력장애, 시야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시력장애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두 눈의 시력이 나빠 안경을 끼고서도 잘 안보이는 사람(교정시력 0.2 이하 정도)이나 한 쪽 눈이 실명된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고,
- ② 해당 가구내 시야장애 유무파악을 위해 “가구원 중 두 눈의 시야가 좁아서(두 눈의 시야가 각기 10° 이내 또는 두 눈에 의한 시야의 1/2 이상 상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의 모든 신체적 손상(impairments)을 포함시켰다.
- ③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시력인지 여부 및 시력, 점자해독 여부,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원의 개별방문에 의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응답자가 자신의 시력을 아는 경우에는 그 응답에 따라 분류하고 시력을 모르는 경우에는 3m 약식시력표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직접 측정하도록 한다. 참고로 약식시력표를 이용한 시력검사방법은, 소지하고 있는 ‘E’를 응답자에게 보여주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측정해야 하며 반드시 오른쪽 눈, 왼쪽 눈의 시력을 구별해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손으로 먼저 오른쪽 눈을 가리게 하고 왼쪽 눈의 시력을 측정한 후 반대로 왼쪽 눈을 가리게 하고 오른쪽 눈의 시력을 측정한다. 측정방법은 3m 앞에 약식시력표를 들고 3번째 줄에 있는 작은 ‘E’자를 가리키며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연습용 ‘E’를 같은 방향이 되도록 한다. 방향을 제대로 분별한다면 이 사람의 시력은 0.5 이상이 된다(4번째 줄에 있는 E자와 연습용 E자가 같은 방향이 되도록 지시하여 방향을 제대로 분별하면 0.7 이상임). 이때 방향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두 번째 줄에 있는 E자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지시하고 방향을 제대로 분별하면 0.3에 해당된다.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면 1번 줄의 가장 큰 ‘E’자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도록 한다. 이때 방향을 제대로 구별하면 0.1에 해당하며 0.1을 선택하고 측정을 종결한다. 그러나 3m 거리에서 제일 큰 ‘E’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검사자가 응답자 앞으로 다가가서 1.5m 앞에서 제일 위의 가장 큰 ‘E’자를 구별하도록 한다. 이 때 구별하면 0.05에 해당하고,

1.2m 앞에서 구별이 가능하면 0.04에 해당하며 60cm 앞에서 구별이 가능하면 0.02에 해당된다. 그리고 60cm 앞에서도 'E'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0.02 미만이다. 즉, 0.02, 0.04, 0.05에 해당하는 시표를 볼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따라 시력을 측정·분류하였다.

그리고 시야장애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시각장애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시야장애로 인한 생활의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정장애로 간주하였다.

4. 청각장애

가. 정의 및 분류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된다.

청력장애란 일반적으로 데시벨(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와 같은 크기의 소리라도 어음의 청음명료도를 퍼센트로 표시하여 그 장애정도를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① 농인(deaf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일반적으로는 70 dB ISO 이상)로 청각(청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② 난청인(hard-of-hearing person)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곤란한 정도(일반적으로는 35~69 dB ISO)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평형기능장애란 청력기능의 손상으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생활에 불편이 따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어지럼증으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1995년도 실태조사에서는 어느 한 쪽 귀라도 잘 안들리는 사람을 청각장애로 판별하였던 반면 2000년 실태조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을 청각장애로 판별하였고 평형기능장애가 개정법(1999)에 의해 추가되었다.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도 청각장애는 2000년도 실태조사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을 판별하였다. 즉,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을 청각장애로 판별하였고 아래의 항목들 중 '④'항목이 평형기능장애에 해당된다.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②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③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④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판별 준거

청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대상의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그 대상의 이름을 불러보는 속삭임검사(whisper test)나, 시계를 대상의 각 귀쪽으로 서서히 이동시키면서 똑딱이는 소리가 들리면 말하게 하는 시계검사(watch test)로도 대상이 얼마나 잘 듣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검사는 모두 정확성이 부족하고, 대상의 반응을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준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각사(audiologist)들은 이러한 검사방법들 보다 정확한 청력검사방법을 사용한다. 과학적인 청력검사에는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어린 아동과 검사하기 힘든 장애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검사 등 세 가지의 일반적인 유형이 있다.

본 조사에서는 일반가구 조사시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인에 대한 판별을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행하였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청력장애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거나(인공와우 포함)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는데, 이는 ‘한 귀가 잘 들리고 다른 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을 청각장애로 보지 않은 것이다.
- ② 해당 가구내 평형기능장애 유무파악을 위해 “가구원 중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멈추지 않고 10m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다.
- ③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방법,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의 문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알아보아 청각장애정도를 평가하였다.

- ①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는 9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
- ②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큰 소음만 느낄 뿐이다’는 8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
- ③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다’는 7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
- ④ ‘40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못 듣는 경우’는 6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
- ⑤ ‘작은 말소리 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는 경우’는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장애정도가 ①, ②, ③번 문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제시된 법정장애 ‘①’의 항목에 해당하고, ④번 문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②’의 항목에, ⑤번 문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③’의 항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의 법정장애 ‘④’ 항목인 평형기능장애는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멈추지 않고 10m 이상 걸을 수 없는 경우에 조사대상이 되었다.

5. 언어장애

가. 정의 및 분류

언어장애는 어떤 사람이 의사소통상의 방해를 받아 사회 생활면에서 정상적인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① 말이 불완전하거나, ②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③ 음성이 듣기에 거북하거나, ④ 특정 음성의 변형이 있거나, ⑤ 발성이 어렵거나 말의 리듬, 음조 혹은 고저에 이상이 있거나, ⑥ 말이 말하는 사람의 연령, 성, 신체적인 발달 정도와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즉, 언어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① 조음장애(articulation disorder): 음운장애(phonological disorder)라고도 하며, 말할 때 말소리를 생략, 대치, 왜곡 또는 첨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음성장애(voice disorder): 후두·구강·비강 등에 장애가 있으면 음성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음성장애가 후두 내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발성(phonation)장애, 구강 및

비강통로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으면 공명(resonance)장애라고 한다.

- ③ 유창성장애: 말의 흐름에는 유창성·속도·리듬 등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이상이 있으면 말의 흐름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 이를 ‘말의 흐름장애’ 또는 ‘유창성장애’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말더듬과 속화증(성급하게 말하기)이 있다.

- 말더듬(stuttering)은 말소리, 음절 또는 조음운동을 비정상적으로 반복, 또는 연장하는 것이다.

- 속화증(cluttering)은 말더듬과 유사하나, 말더듬과는 반대로 화자가 자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되고,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④ 기타: 뇌성마비·정신지체·청각장애에 따른 언어장애, 언어발달지체, 실어증 등이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장애인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모든 언어장애 분류는 모두 법정장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①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 ②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이러한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의 언어장애의 정의는 2000년도 조사와 동일하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가구 및 판별조사표 조사시 언어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언어장애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 구원 중 말을 잘 못하거나 발음이 이상하거나 음성이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정도, 주된 의사소통방법, 수화가능 여부, 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의 항목들 중에서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언어장애인으로 간주하였다.

- ①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어 전혀 말을 하지 못한다.

② 말은 하지만 발음이 이상하여 알아듣기 어렵다(조음장애).

(예: 자동차를 ‘자동아’, 사과를 ‘다과’, 선생님을 ‘던탱님’, 학교를 ‘하이교오’라고 말한다)

③ 말을 더듬는다(말더듬).

④ 음의 고저, 강도, 음색이 이상하다(음성장애).

(예: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음성, 단조로운 음성,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음성, 쉼 목소리, 거친 목소리, 후두외상이나 성대수술 등으로 인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 등)

⑤ 말을 잘 못하거나, 잘 하지만 뜻 없는 말을 하거나, 말이 이해되지 않거나, 언어를 회상하지 못한다(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잘 못함), 말은 잘 하나 뜻 없는 말(엉뚱한 말)을 한다(언어(말)장애, 실어증).

이에 덧붙여, 청각장애·정신지체·뇌성마비에 기인하거나 중복되어 나타난 언어장애의 경우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6. 정신지체

가. 정의 및 분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정신지체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즉, 18세 이전에 정신발달이 불완전하여 지능이 평균 이하로 저하되고 또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변관리와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 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정신지체협회(AAMR)에서는 “정신지체란 현재 기능의 근본적인 한계로서 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적 기능에서 의미 있게 낮은 능력(IQ. 70 또는 75 이하)을 보이며, 동시에 ‘의사소통, 자조,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 이용, 자기관리, 건강과 안전, 학습 능력, 여가, 그리고 일’(Schalock, et al., 1994:181~193) 등의 적응기술 영역에서 두 가지 이상 관련된 한계를 갖는 경우”를 정신지체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신지체의 분류에 있어서도, 경도(mild), 중등도(moderate), 중도(severe), 최중도

(profound) 정신지체로 분류해오던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는 1992년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정신지체의 정도를 정신지체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의 강도에 따라 간헐적 지원(intermittent support), 제한적 지원(limited support), 장기적 지원(extensive support), 심층적 지원(pervasive support)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정기원 외, 1995).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신지체의 발병연령은 18세 이전으로 되어 있으며,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소견에서 유의하게 표준 이하의 지적인 기능과 동시에 그와 연관된 적응성, 제한성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실제 적응기술영역들(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효과, 여가, 직업기술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발달기(18세 이전)에 발현되고, 지능의 발달지체(IQ. 75 이하)와 적응행동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한계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정신지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지체의 정의는 2000년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정신지체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정신지체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지능이 떨어지거나 자기 나이에 비해 지적 발달이 늦거나 생활적응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형태(언어능력, 학습능력) 및 정도, 장애발생 시기, 주된 장애원인 등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다음의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의 항목들 중에서 각각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지체인으로 간주하였는데, 각각의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의 항목구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능력의 경우,

- ① 언어발달이 거의 정상적인 수준이다
- ②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언어의 발달이 있으나 아주 늦다

- ③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야 언어의 발달이 일어난다
- ④ 언어의 발달이 거의 없다
학습능력의 경우,
- ⑤ 가, 나, 다 정도의 학습이 가능하다
- ⑥ 덧셈이 가능하다
- ⑦ 곱셈이 가능하다

정신지체의 장애정도는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에서 각각 해당하는 항목들의 조합에 의해 측정되는데, 장애정도를 경도, 중등도, 중도, 최종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합들의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경도는 지능지수 50~70에 해당하는 경우로 언어능력의 ①번 항목과 학습능력의 ⑦번 항목의 조합이 해당된다.

중등도는 지능지수 35~50에 해당하는 경우로 언어능력의 ②번 항목과 학습능력의 ⑥번 항목의 조합이 해당된다.

중도는 지능지수 20~40에 해당하는 경우로 언어능력의 ③번 항목과 학습능력의 ⑤번 항목의 조합이 해당된다.

최종도는 지능지수 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로 언어능력의 ④번 항목에만 해당하면 된다.

7. 발달장애(자폐증)

가. 정의 및 분류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의해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된 발달장애는 1943년 Leo Kanner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다. Kanner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아동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주변 환경에 대하여 관계형성이 어렵고, 언어의 발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행동장애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현재 공식적인 분류체계로는 DSM-IV(1994)와 ICD-10(1992)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전반적인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PDD)라 명명되었고, 기본적으로 유아자폐증(전반적 발달장애)의 정의와 큰 차이는 없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시행령(1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한 6개월이 경과되어야 판정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는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서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첫째, 대인관계의 형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 언어의 발달이 일어나지 않거나 발달의 심각한 지연이 있으며, 셋째, 상동증, 과잉운동증, 공격적인 행동, 자해적인 행동 등의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특징이 있다.

발달장애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르는데, 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발달장애(자폐증) 등급판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발달장애의 정의는 2000년 실태조사에서의 발달장애 정의와 동일하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발달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말이 늦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으며 반복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발생시기, 발달상의 특성, 정신지체 및 경련성질환 동반여부 등을 조사하여 능력장애 상태를 파악하였다.

이때 발달장애로 인한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즉,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라 함은 아래 20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20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불러도 대답이 없다. (2) 독립적으로 적절한 식사가 불가능하다. (3)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4) 또래와 놀지 못한다. (5)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6) 표현언어가 없다. (7) 자기 방어를 하지 못한다. (8)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9) 자해적인

행동을 한다. (10) 한 가지 장난감에 집착한다. (11) 가구의 위치를 옮기면 불안해한다. (12) 같은 길로만 갈려고 한다. (13) TV에서 선전만 보려고 한다. (14) 밖으로 나가면 그냥 마음대로 가버린다. (15) 머리의 크기가 작다. (16) 눈을 맞추지 않는다. (17) 손을 비틀거나 씻는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18) 모든 물건을 입에 집어넣는다. (19) 생후 1~2년 정도는 정상적인 발달을 보인다. (20) 혼자서 말을 하는데 대화를 하지 못한다(보건복지부, 2000).

8. 정신장애

가. 정의 및 분류

1999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새로이 장애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한 정신장애는 시행령(1999)에 의하면,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礙),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장애의 정의는 2000년도 실태조사에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위의 정신장애 정의에서의 제시된 주된 정신질환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신분열증: 주로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이 무너지는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
- ② 양극성 정동장애: 기분 및 감정의 변동이 심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고양되고, 과대망상, 사고비약, 수면장애(잠을 거의 자지 않음)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조증상태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 장애(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자고 싶어도 잠을 못 잠), 식욕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됨

- ③ 반복성 우울장애: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침울하고, 죄책망상,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 부진,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상이 동반된 우울상태가 반복되는 경우
- ④ 분열형정동장애: 정신분열병의 증상과 정동장애(조증 또는 우울증)의 증상이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이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정신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정신질환 또는 신경성 질환(노이로제)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느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발생시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상의 어려움 정도, 주된 정신질환명 등을 조사하여 능력장애상태를 파악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정신장애인을 판별하기 위해 가구원 중 정신분열증, 조울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1년 이상 치료받고 있으며(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포함)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판별하였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이거나 가구원이 구체적인 정신질환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신장애로 의심되는 경우를 파악한 뒤 개별조사표에서 구체적인 병명이나 입원력 등을 확인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즉, 본 조사에서는 해당 가구내에서 정신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정신질환 또는 신경성 질환(노이로제)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느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한 뒤 개별조사표에서 재분류하였다. 이때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수행제한 정도란 아래 6개 항목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6개 항목이란, (1) 적절한 식사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2)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유지를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나 아직 도움이 필요, (3) 적절한 의사 표현이나 협조적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불안정, (4) 자발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이 대체로 가능하지만 아직 도움이 필요, (5) 소지품 및 금전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능력은 있으나 적절한 금전관리와 구매행위에 아직 도움이 필요, (6) 대중교통수단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 도움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9. 신장장애

가. 정의 및 분류

내부기관의 장애 중 신장장애는 통칭 만성신부전을 뜻하는 말로 정상적인 신장은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분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주지만 만일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장장애가 생기면 혈액정화를 목적으로 혈액투석기계를 사용하며, 혈액투석을 하거나 인체의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을 하게 된다. 진료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 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시행령 개정령(1999)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2005년도의 신장장애 정의는 2000년도 실태조사의 정의와 동일하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신장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신장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신장기능이 나빠 한 달 이상 투석을 받고 있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의 모든 신체적 손상(impairments)을 포함시켰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투석여부 및 투석시작 연령, 신장이식 여부 및

신장이식연령, 주된 장애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이때 신장장애의 판별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준거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신장의 기능장애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적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로서 현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두 번째, 신장이식을 한 사람이다.

10. 심장장애

가. 정의 및 분류

진료일수가 길고 의료욕구가 큰 만성심장질환인 심장장애는 신장장애와 더불어 1999년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1차로 내부기관 장애로 장애범주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최근 만성심장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생존률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범주의 확대 요구도가 높아져 포함되게 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1999)에 의하면 심장장애인이란, “심장의 기능 부진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심장기능 장애는 심장수축력의 정도와 운동능력의 정도에 따라 판정하는데, 심장수축력은 심초음파의 박출계수로, 운동능력은 활차를 이용하여 측정하게 되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중증인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2005년도 실태조사에서의 심장장애의 정의는 2000년도 실태조사에서의 심장장애 정의와 동일하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심장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심장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심장(심장이식 포함)이 나빠 1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를 파악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발생시기, 장애 정도, 주된 장애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심장장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하며(환자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진단한다.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 판정 포함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거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받도록 할 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심장장애의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5단계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가 가장 중도에 해당하게 된다.

- ①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높은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하기 등).
- ②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화장실 가기 등).
- ③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 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다.
- ④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진다(숨만 쉬는 경우).
- ⑤ 5단계: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11. 호흡기장애

가. 정의 및 분류

2003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기존의 10개 장애범주가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5개의 장애범주가 추가되어 총 15개의 장애범주로 확대되었다. 이중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는 내부기관의 장애로 분류되고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의 장애로 분류된다.

호흡기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03년)에 의하면,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하며, 호흡곤란 정도, 폐기능검사에 의한 폐환기기능, 동맥혈 가스 검사에 의한 동맥혈산소분압 등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호흡기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호흡기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폐나 기관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를 파악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발생시기, 장애 정도, 주된 장애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호흡기장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호흡기질환에 대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한다(환자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장애진단은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호흡기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수

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하며,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데, 재판정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본 조사에서는 호흡기장애의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4단계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가 가장 중도에 해당하게 된다.

- ① 1단계: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있다.
- ② 2단계: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다.
- ③ 3단계: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있다.
- ④ 4단계: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호흡곤란이 있다.

12. 간장애

가. 정의 및 분류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즉,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임을 확인하여 진단한다. 그리고 간이식을 시술받은 경우도 간장애에 포함된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간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간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간경변, 간암 등 만성적 간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를 파악하였다.
- ② 활동계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발생시기, 장애 정도, 주된 장애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간장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간질환에 대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확인하여야 한다(환자는 치료력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장애진단은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질환의 경우에 간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하며,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는데, 재판정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본 조사에서는 간장애의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만성간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사회생활, 소득활동의 불가능정도를 4개의 단계¹⁰⁾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가 가장 중도에 해당하게 된다.

- ① 1단계: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정도
- ② 2단계: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하게 제한을 받거나, 제한된 환경에서 단순한 소득활동이 가능하며, 소득활동능력은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10% 미만
- ③ 3단계: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수시로 제한을 받거나, 제한된 환경에서 단순한 소득활동이 가능하나 소득활동능력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 비해 30% 미만
- ④ 5단계: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인하여 간이식을 시술받았음.

10) 간장애의 법정장애등급은 4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장애 1급, 2급, 3급, 4급, 5급이 이에 해당됨.

13. 안면장애

가. 정의 및 분류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신체적 장애 중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로 장애범주에 추가된 안면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안면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얼굴전면에 혈관종을 앓고 있거나 화상으로 인한 얼굴변형도 그 정도에 따라 안면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안면장애는 신체기능상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안면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때문이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안면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안면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안면부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를 파악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발생시기, 장애 정도, 주된 장애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안면장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진단한다. 향후

장애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으로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판정시기는 최초 판정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하며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 장애판정을 유보한다.

본 조사에서는 안면장애의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출된 안면부위의 변형과 코의 변형 정도에 의해 중증정도를 5단계¹¹⁾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① 2단계가 가장 중도에 해당하게 된다.

- ① 2단계: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② 3단계: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③ 4단계: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④ 5단계: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코의 변형이 있는 사람
- ⑤ 6단계: 노출된 안면부의 15% 이상~30% 미만의 변형이 있거나 코의 변형이 있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

가. 정의 및 분류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추가된 장루·요루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루는 복부를 통해 결장부위에 수술로 만들어진 개구이다. 장루수술을 받게 되면 대변을 더 이상 항문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결장을 통해 배출되며, 배변활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대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해야 한다. 회장루는 아랫배를 관통하여 소장·소장에 수술로 만든 개구인데, 상처나 질병으로 인해 직장 및 항문과 함께 결장을 수술로 제거할 수도 있다. 회장루에 의한 대변수술 후 대변은 소장·소장에서 직접 나오기

11) 안면장애의 법정장애등급은 3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면장애 2급, 3급, 4급이 이에 해당됨. 그러나 법정장애 등급에는 해당되는 안면장애인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장애 등급상 안면장애의 경증상태로 간주할 수 있는 안면장애인들을 감안하여 4) 5단계, 5) 6단계를 중증정도 추가로 구성하였음.

때문에 피부에 매우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착용한 주머니는 인공항문 주변에 맞는 보호용 피부벽을 가져야 한다.

요루는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주기 위해 아랫배에 수술로 만든 개구이다. 요루수술을 하게 되면 소변은 더 이상 요도를 통해 배출되지 않게 되며, 요루를 통해 배출된다. 요루는 항문괄약근을 가지지 않으므로 요루수술을 한 사람은 언제 소변을 본다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조절능력이 없다. 대신 소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한다.

장루·요루장애에는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 시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장루·요루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장루·요루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1년 이상 지속된 배변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를 파악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발생시기, 장애 정도, 주된 장애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장루·요루장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한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진단한다.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 장루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장루·요루장애는 장애등록 이후 매 3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장루·요루장애의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정도, 장루 이외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장내용물의 치유가능 정도, 구멍 주변에 피부가 혈은 정도 등에 의해 중증정도를 4단계¹²⁾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① 2단계가 가장 중도에 해당하게 된다.

- ① 2단계: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혈은 사람
 -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혈은 경우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손상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혈은 경우
- ② 3단계:
-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혈은 경우
 -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③ 4단계:
- 요루를 가진 사람
 -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혈었기 때문에 장루 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 ④ 5단계:
-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

12) 장루·요루장애의 법정장애등급은 4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루·요루장애 2급, 3급, 4급, 5급이 이에 해당됨.

15. 간질장애

가. 정의 및 분류

2003년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내부기관의 장애로 추가된 마지막 장애유형인 간질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이 있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전기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하게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유발하게 된다. 간질이란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간질의 원인은 다양하며 발작의 양상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간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등의 뇌손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원인에 의해 손상된 부위에서 비정상적인 전기가 방출되어 재발성 경련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별 준거

본 조사에서 일반가구 조사시 간질장애인에 대한 판별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다.

- ① 해당 가구내에서 간질장애인 유무 파악을 위해 가구 및 판별조사표에 설계된 대로 “가구원 중 만성적인 간질 등 경련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의 질문을 해서 현재 장애상태를 파악하였다.
- ② 활동제약자조사표 설문을 진행하면서 장애발생시기, 장애 정도, 주된 장애원인 등을 파악하였다.

간질장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원인질환 등이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 기준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

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장애등록 이후 성인은 매 3년마다 18세 미만은 매 2년마다 장애 등급을 재판정한다.

현재 적극적인 치료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하는데,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하며, 경증발작이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의 의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본 조사에서는 간질장애의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경증발작 정도, 요양관리 필요정도, 보호·관리 필요정도 등에 의해 중증정도를 3단계¹³⁾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① 2단계가 가장 중도에 해당하게 된다.

- ① 2단계: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 중증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 ② 3단계: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10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 ③ 4단계: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 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하다

16. 향후 범주확대장애

1997년에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향후 장애범주로 확대가 예상되는 9개의 장애유형에 대하여 해당 장애 여부, 암 여부 등을 질문하였고, 그 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질문하여 장애의 중증여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인 확대예상 장애유형은 만성알코올·약물중독, 기질성 뇌증후군, 기타 정신발달장애, 소화기장애, 비뇨기장애, 치매, 만성통증, 기타 암 등이 포함되었다.

13) 간질장애의 법정장애등급은 3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질장애 2급, 3급, 4급이 이에 해당됨.

이상에서 제시된 법정장애와 향후 범주확대장애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2000년도와 2005년도의 조사표 내용에서 비교해 보면 <표 4-2-1>과 같다.

〈표 4-2-1〉 장애인 실태조사의 법정장애 및 향후 범주확대장애 관련 변경사항 대비표

구분	조사항목	2000년	2005년	비 고
조사명		활동제한자 실태조사	활동제한자 실태조사	
법정 장애	1) 지체장애	○	동일	- 2000년 활동제한자 실태조사와 동일 (이하 동일) - 장애인복지법 개정(2003)에 의해 장애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법정장애 항목으로 새로이 추 가(이하 동일)
	2) 뇌병변장애	○	동일	
	3) 시각장애	○	동일	
	4) 청각장애	○	동일	
	5) 언어장애	○	동일	
	6) 정신지체	○	동일	
	7) 발달장애(자폐증)	○	동일	
	8) 정신장애	○	동일	
	9) 신장장애	○	동일	
	10) 심장장애	○	동일	
	11) 호흡기장애	○	추가	
	12) 간장애	○	추가	
	13) 안면장애	○	추가	
	14) 장루·요루장애	○	추가	
	15) 간질장애	○	추가	
향후 범주 확대 장애	16) 만성알코올 및 약물중독장애	-	추가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향후 확대예정 장애범주 항목으로 추가 (이하 동일)
	17) 기질성 뇌증후군	-	추가	
	18) 기타정신발달장애	-	추가	
	19) 소화기장애	-	추가	
	20) 비뇨기장애	-	추가	
	21) 치매	-	추가	
	22) 만성통증	-	추가	
	23) 기타 암	-	추가	
	24) 기타	-	추가	

제 3 절 장애인인 분류

장애원인에 대한 분류는 장애발생 및 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질병분류체계를 골격으로 개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주로 질병의 분류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한국표준질병분류를 바탕으로 외국의 장애인인 분류를 참고하여 실태조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장애원인을 분류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 원인불명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선천적 원인의 경우 원인분류는 유전성, 다낭성신증, 다운증후군, 기타염색체이상, 선천성·발육기형, 모체의 만성질환(당뇨, 빈혈, 고혈압, 알코올중독, 약물남용), 모체의 감염(풍진, 매독, 독소플라스마증, 후천성 면역결핍증),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고, 각 장애유형별로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장애주된 원인에 보기항목으로 제시되었다.

출생시 원인은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미상,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

후천적 원인의 경우는 질환과 사고로 분류하였는데, 질환에는 신경계 질환, 정신 질환, 감각기 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소화기계 질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생물(종양) 질환,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미상, 기타 등이 포함되었고, 사고에는 폭력에 의한 사고, 가정내사고, 교통사고(탑승자), 교통사고(보행자),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화상, 약물사고, 기타사고 및 외상, 전상, 미상, 기타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질환이나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보험의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0년 조사와 다른 점은 선천적 원인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하였다는 것으로, 2000년에는 유전성, 염색체 이상, 기타, 미상의 4개의 보기항목이 있었던 것이 2005년에는 16개의 항목으로 더 세분화되어 제시하였다. 출생시 원인의 경우는 2000년 조사와 동일하다. 그리고 후천적 원인의 경우는 2000년 조사와 달리 2005년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질환과 사고로 보기항목을 구분하였고, 제시된 보기항목도 더 세분화하였다. 즉, 2000년 질환의 경우 보기항목이 6개 제시되었는데, 2005년에는 14개가 제시되었고, 사고의 경우는 2000년에 4개의 보기항목이 2005년에는 11개로 더 많은 보기항목이 제시되었

다. 이와 같이 보기항목의 세분화를 통한 확대 제시는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장애원인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며, 최근의 장애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특히 후천적 원인에 있어 사고의 보기항목 확대는 사고에 의한 후천적 장애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2005년에 이러한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된 경우 산재인정여부를 파악하는 문항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특정 질병에 의하지 않는 퇴행성 장애는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어떤 장애(2차 장애)의 원인이 다른 장애(주된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주된 장애를 2차 장애의 원인이거나 중복장애로 간주하였다. 예를 들어, 언어장애의 경우 청각·정신지체·뇌성마비 등에 의한 원인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는 1985년 이후 2000년 조사까지의 실태 조사 분류와 비교하여 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 5 장 조사결과 I : 장애출현율 및 장애인구수

제 1 절 장애인구의 추정

1. 장애인 출현율

전국 장애인 출현율¹⁴⁾은 다음과 같이 가구표본조사와 시설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과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장애인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먼저 가구조사에서 파악된 장애인 수는 5,466명이었으며, 조사구별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추정한 결과 재가장애인수는 약 2,101.1천명으로, 출현율은 인구 100명당 4.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표 5-1-1> 참조). 한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47.6천명이었다. 이러한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을 합한 결과 2005년도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총 2,148.7천명이며, 출현율은 4.59%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출현율 산정을 위하여 분모로 사용한 인구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 결과 자료 중 군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것으로 재가인구(46,727,073명)와 시설인구(84,520명)를 포함한 총 46,811,593명이다.

〈표 5-1-1〉 2005년도 전국 장애인 추정수

(단위: 명, %)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05년	장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4.50	-	4.59
2000년	장애인수	1,398,177	51,319	1,449,496
	출현율	2.98	-	3.09
1995년	장애인수	1,028,837	24,631	1,053,468
	출현율	2.37	-	2.35

이를 2000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은 약 69만 9천명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출현율은 1.5% 포인트 증가하였다. 이처럼 장애인 수와 출현율이 증가한 것은 2003년

14) 제2장. 표본설계 개요 참조

7월 장애범주가 기존의 10종(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에서 15종(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그리고 간질장애 등 5종 추가)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장애에 대한 거부감 감소, 장애인복지시책의 다양화 등으로 장애인 등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고령화 및 각종 사고의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장애발생률 자체도 높아지는 것으로 유추된다.

한편 1995년까지는 시설장애인에 대해서 총수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성·연령, 장애유형 등은 조사되지 않아 재가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출현율을 산출하였으나, 2000년 및 2005년에는 시설장애인에 대해서도 성·연령, 장애유형 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을 합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출현율의 성·연령별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표 5-1-2>는 한 가지 장애를 가진 단일장애와 2가지 이상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약 18.7%의 장애인이 장애를 2개 이상 가진 중복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중복장애인수는 402.1천명으로 2000년의 311.7천명에 비해 약 90.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2〉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추이

(단위: %, 명)

구분	1995년		2000년 ¹⁾		2005년 ¹⁾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출현율	추정수
전 체	2.37	1,028,837	3.09	1,449,496	4.59	2,148,686
지체장애	1.40	608,760	1.19	556,861	1.99	933,553
뇌병변장애	-	-	0.23	109,866	0.32	150,756
시각장애	0.13	57,541	0.35	163,309	0.42	198,456
청각장애	0.26	111,461	0.23	109,503	0.40	185,911
언어장애	0.05	22,264	0.03	12,956	0.02	10,538
정신지체	0.07	32,069	0.12	57,780	0.12	56,268
발달장애(자폐증)	-	-	0.01	4,626	0.01	3,212
정신장애	-	-	0.14	64,953	0.18	82,492
신장장애	-	-	0.05	21,685	0.06	29,720
심장장애	-	-	0.08	36,221	0.08	35,184
호흡기장애	-	-	-	-	0.05	23,484
간장애	-	-	-	-	0.02	9,975
안면장애	-	-	-	-	0.01	3,223
장루·요루장애	-	-	-	-	0.03	12,614
간질장애	-	-	-	-	0.02	11,235
중복장애	0.45	196,742	0.66	311,736	0.86	402,065

주: 1) 시설장애인 포함.

단일장애의 경우 지체장애가 933.6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시각장애인으로서 198.5천명, 청각장애인은 185.9천명, 뇌병변장애인 150.8천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일장애로서의 발달장애인과 안면장애인은 그 수가 3천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성·연령별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성 및 연령별 장애출현율은 남자의 경우 인구 백명당 5.51명, 여자는 3.53명으로서 남자의 장애출현율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도의 조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남자 3.86%, 여자 2.34%). 모든 연령에 있어서 남자의 출현율이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남성장애인은 전체 재가장애인의 59.9%인 1,258.2천명,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40.1%인 842.8천명으로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415.4천명이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출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로 40대 후반 이후부터 출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계층에서는 장애출현율이 청·장년층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장애 노인의 증가 및 이로 인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3〉 성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0~ 4세	5,772	0.5	0.44	4,998	0.6	0.40	10,770	0.5	0.42
5~ 9세	15,229	1.2	0.88	6,160	0.7	0.40	21,389	1.0	0.65
10~14세	23,069	1.8	1.25	7,949	0.9	0.49	31,018	1.5	0.89
15~19세	20,492	1.6	1.37	11,871	1.4	0.82	32,363	1.5	1.10
20~24세	31,337	2.5	2.39	13,674	1.6	0.81	45,011	2.1	1.51
25~29세	45,905	3.6	2.68	17,623	2.1	0.99	63,528	3.0	1.82
30~34세	56,587	4.5	2.71	32,726	3.9	1.58	89,313	4.3	2.15
35~39세	73,276	5.8	3.63	40,446	4.8	2.01	113,722	5.4	2.83
40~44세	108,898	8.7	5.25	55,048	6.5	2.65	163,946	7.8	3.95
45~49세	150,016	11.9	7.66	69,446	8.2	3.50	219,462	10.4	5.57
50~54세	129,088	10.3	9.04	68,926	8.2	4.75	198,014	9.4	6.88
55~59세	134,990	10.7	11.83	74,849	8.9	6.35	209,839	10.0	9.04
60~64세	130,363	10.4	14.09	90,430	10.7	8.55	220,793	10.5	11.14

〈표 5-1-3〉 계속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65~69세	123,898	9.8	15.62	102,194	12.1	10.54	226,092	10.8	12.82
70~74세	96,479	7.7	18.82	93,002	11.0	12.45	189,481	9.0	15.05
75~79세	69,394	5.5	24.14	76,471	9.1	14.81	145,865	6.9	18.15
80세 이상	43,438	3.5	21.61	77,013	9.1	15.80	120,451	5.7	17.50
계	1,258,231	100.0	5.51	842,826	100.0	3.53	2,101,057	100.0	4.50

한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에는 최소한 47.4천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장애인은 24.8천명, 여성장애인은 22.6천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2.2천명이 많은 수준으로 재가장애인만큼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80세 이상인 경우 남성장애인은 740명 정도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3,777명으로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표 5-1-4〉 성별·연령별 시설장애인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0~ 4세	212	0.9	178	0.8	390	0.8
5~ 9세	726	2.9	497	2.2	1,223	2.6
10~14세	1,199	4.8	808	3.6	2,007	4.2
15~19세	1,481	6.0	1,003	4.4	2,484	5.2
20~24세	1,770	7.1	1,197	5.3	2,967	6.3
25~29세	1,777	7.2	1,261	5.6	3,038	6.4
30~34세	1,992	8.0	1,381	6.1	3,373	7.1
35~39세	2,200	8.9	1,616	7.1	3,816	8.0
40~44세	2,330	9.4	1,577	7.0	3,907	8.2
45~49세	2,506	10.1	1,655	7.3	4,161	8.8
50~54세	2,101	8.5	1,234	5.5	3,335	7.0
55~59세	1,605	6.5	969	4.3	2,574	5.4
60~64세	1,401	5.7	935	4.1	2,336	4.9
65~69세	1,260	5.1	1,223	5.4	2,483	5.2
70~74세	923	3.7	1,539	6.8	2,462	5.2
75~79세	566	2.3	1,779	7.9	2,345	4.9
80세 이상	740	3.0	3,777	16.7	4,517	9.5
계	24,789	100.0	22,629	100.0	47,418	100.0

나. 지역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장애인 출현율은 서울 4.13%, 광역시 4.00%, 중소도시 3.84%, 그리고 읍·면지역이 6.88%로 나타나, 장애인 출현율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지역의 경우 도시로의 진입이 어려운 노령계층 및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5-1-5> 참조). 다만, 17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서울시의 출현율은 0.88%, 광역시 0.75%, 중소도시 0.69%, 그리고 읍·면지역은 0.68%로서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기관이 서울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5-1-5> 지역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0~17세	17,579	4.4	0.88	22,763	4.6	0.75	29,042	4.7	0.69	12,793	2.2	0.68	82,177	3.9	0.74
18~29세	21,577	5.4	1.15	32,742	6.6	1.48	35,715	5.8	1.40	31,868	5.4	3.33	121,902	5.8	1.61
30~39세	41,387	10.4	2.43	41,110	8.3	1.92	68,862	11.1	2.26	51,676	8.8	3.98	203,035	9.7	2.48
40~49세	76,259	19.2	4.69	105,453	21.3	4.61	118,784	19.2	4.16	82,912	14.1	6.26	383,408	18.2	4.74
50~64세	127,992	32.2	7.88	148,202	29.9	8.03	185,370	30	8.48	167,082	28.4	10.94	628,646	29.9	8.75
65세 이상	113,280	28.5	13.91	145,538	29.4	16.42	180,965	29.2	14.46	242,106	41.1	15.50	681,889	32.5	15.10
계	398,074	100.0	4.13	495,808	100.0	4.00	618,738	100.0	3.84	588,437	100.0	6.88	2,101,057	100.0	4.50

2. 장애유형별 출현율 및 인구수

가. 장애유형별 추정수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주된 장애에 대해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의 <표 5-1-6>와 같다. 현재 15개 법정장애 중 가장 출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서 996.7천명이 있으며, 출현율은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뇌병변장애로서 약 266.1천명이 있으며, 출현율은 0.57%이었다. 이는 인구 백명당 0.57명의 뇌병변장애인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이 청각장애로서 227.8천명, 시각장애인은 219.6천명이 있었다.

연령별로 보면, 17세까지의 아동기에는 정신지체가 35.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발달장애로서 23.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뇌병변장애 역시 12.8%로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18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기에는 장애유형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연령기

의 총 장애인 추정수는 121.9천명이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서 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정신지체로서 26.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30대 장애인의 경우 203.0천명이 있으며, 가장 출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서 48.0%이고, 다음이 정신장애로서 1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40대 장애인의 경우 역시 지체장애가 59.7%로서 3/5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시각 장애인으로서 7.8%를 차지하고 있었다. 정신장애 역시 7.4%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50대와 60대 초반의 장애인의 경우 역시 지체장애의 출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이 뇌병변장애로서 12.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지체장애의 비율은 41.0%로서 가장 높았으나, 40대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낮아진 반면, 뇌병변장애인은 19.9%로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비중도 17.9%로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루·요루 등 내부 장애인의 비중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현율도 증가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장애는 대체로 50세 이후부터 장애출현율이 두드러지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신지체와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연령증가에 따라 동일한 증가 경향을 보이지는 않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출현율은 0~17세가 0.17%, 20대가 0.04%이며 30대 이후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장애종류별·연령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0~17세			18~29세			30~39세			40~49세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지체장애	7,461	9.1	0.07	43,459	35.7	0.57	97,529	48.0	1.19	228,920	59.7	2.83
뇌병변장애	10,531	12.8	0.09	9,363	7.7	0.12	10,362	5.1	0.13	22,517	5.9	0.28
시각장애	3,925	4.8	0.04	11,630	9.5	0.15	23,627	11.6	0.29	29,737	7.8	0.37
청각장애	4,997	6.1	0.04	7,852	6.4	0.10	9,861	4.9	0.12	26,386	6.9	0.33
언어장애	2,730	3.3	0.02	380	0.3	0.01	2,265	1.1	0.03	3,609	0.9	0.04
정신지체	29,151	35.5	0.26	31,843	26.1	0.42	19,095	9.4	0.23	19,037	5.0	0.24
발달장애(자폐증)	19,106	23.2	0.17	3,345	2.7	0.04	385	0.2	0.00	423	0.1	0.01
정신장애	0	0.0	0.00	7,721	6.3	0.10	24,302	12.0	0.30	28,561	7.4	0.35
신장장애	0	0.0	0.00	1,922	1.6	0.03	5,754	2.8	0.07	9,738	2.5	0.12
심장장애	2,309	2.8	0.02	1,156	0.9	0.02	2,315	1.1	0.03	4,038	1.1	0.05
호흡기장애	0	0.0	0.00	350	0.3	0.00	381	0.2	0.00	2,701	0.7	0.03
간장애	328	0.4	0.00	0	0.0	0.00	1,065	0.5	0.01	3,021	0.8	0.04
안면장애	382	0.5	0.00	371	0.3	0.00	281	0.1	0.00	1,969	0.5	0.02
장루·요루장애	0	0.0	0.00	360	0.3	0.00	382	0.2	0.00	802	0.2	0.01
간질장애	1,257	1.5	0.01	2,150	1.8	0.03	5,431	2.7	0.07	1,949	0.5	0.02
계	82,177	100.0	0.74	121,902	100.0	1.61	203,035	100.0	2.48	383,408	100.0	4.74

주: 중복장애의 경우 건수로 처리

〈표 5-1-6〉 계속

구분	50~64세			65세 이상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지체장애	339,750	54.0	4.73	279,555	41.0	6.19	996,674	47.4	2.13
뇌병변장애	77,905	12.4	1.08	135,392	19.9	3.00	266,070	12.7	0.57
시각장애	71,860	11.4	1.00	78,772	11.6	1.74	219,551	10.4	0.47
청각장애	56,839	9.0	0.79	121,914	17.9	2.70	227,849	10.8	0.49
언어장애	7,066	1.1	0.10	3,777	0.6	0.08	19,827	0.9	0.04
정신지체	8,865	1.4	0.12	2,946	0.4	0.07	110,937	5.3	0.24
발달장애(자폐증)	0	0.0	0.00	0	0.0	0.00	23,259	1.1	0.05
정신장애	13,211	2.1	0.18	3,385	0.5	0.07	77,180	3.7	0.17
신장장애	14,935	2.4	0.21	7,937	1.2	0.18	40,286	1.9	0.09
심장장애	12,899	2.1	0.18	18,967	2.8	0.42	41,684	2.0	0.09
호흡기장애	9,801	1.6	0.14	16,720	2.5	0.37	29,953	1.4	0.06
간장애	7,044	1.1	0.10	1,939	0.3	0.04	13,397	0.6	0.03
안면장애	299	0.0	0.00	1,067	0.2	0.02	4,369	0.2	0.01
장루·요루장애	4,760	0.8	0.07	9,162	1.3	0.20	15,466	0.7	0.03
간질장애	3,412	0.5	0.05	356	0.1	0.01	14,555	0.7	0.03
계	628,646	100.0	8.75	681,889	100.0	15.10	2,101,057	100.0	4.50

한편, 이러한 장애출현율을 성별로 보면 <표 5-1-7>과 같이, 남자의 출현율이 5.50%로서 여자의 3.53%에 비해 1.97%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은 성별로 커다란 차이 없이 지체장애가 가장 많고 다음이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남자의 출현율이 높았지만, 간질만이 여자의 출현율이 0.04%로서 남자의 0.0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5년에 신규로 추가된 호흡기장애의 출현율은 0.06%(인구 만명당 6명), 간장애는 0.03%(인구 만명당 3명), 안면장애는 0.01%(인구 만명당 1명), 그리고 장루·요루장애는 0.03%(인구 만명당 3명), 그리고 간질장애는 0.03%(인구 만명당 3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주된 장애유형별·성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추정수	구성비	출현율
지체장애	612,475	48.7	2.68	384,199	45.6	1.61	996,674	47.4	2.13
뇌병변장애	158,683	12.6	0.69	107,387	12.7	0.45	266,070	12.7	0.57
시각장애	133,408	10.6	0.58	86,143	10.2	0.36	219,551	10.4	0.47
청각장애	121,173	9.6	0.53	106,676	12.7	0.45	227,849	10.8	0.49
언어장애	12,850	1.0	0.06	6,977	0.8	0.03	19,827	0.9	0.04
정신지체	65,790	5.2	0.29	45,147	5.4	0.19	110,937	5.3	0.24
발달장애(자폐증)	19,523	1.6	0.09	3,736	0.4	0.02	23,259	1.1	0.05
정신장애	39,668	3.2	0.17	37,512	4.5	0.16	77,180	3.7	0.17
신장장애	24,560	2.0	0.11	15,726	1.9	0.07	40,286	1.9	0.09
심장장애	20,326	1.6	0.09	21,358	2.5	0.09	41,684	2.0	0.09
호흡기장애	22,527	1.8	0.10	7,426	0.9	0.03	29,953	1.4	0.06
간장애	9,275	0.7	0.04	4,122	0.5	0.02	13,397	0.6	0.03
안면장애	2,248	0.2	0.01	2,121	0.3	0.01	4,369	0.2	0.01
장루·요루장애	10,718	0.9	0.05	4,748	0.6	0.02	15,466	0.7	0.03
간질장애	5,007	0.4	0.02	9,548	1.1	0.04	14,555	0.7	0.03
계	1,258,231	100.0	5.50	842,826	100.0	3.53	2,101,057	100.0	4.50

한편,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의 경우 각각의 장애를 하나의 건(spell)으로 보아 집계해 보면,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의 출현율은 2.22%, 뇌병변장애 0.63%, 청각장애 0.64%, 그리고 시각장애 0.5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장애는 0.50%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장애의 경우 대부분 동반장애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된 장애로 산정

할 경우 전국적으로 19.8천명에 불과하지만, 중복장애를 감안할 경우 233.9천건으로 나타나 중복장애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

중복장애를 감안한 장애유형별 장애인구수를 환산하면 지체장애는 약 1,038.4천명, 뇌병변장애는 294.7천명, 시각장애 277.1천명, 청각장애 300.2천명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지체는 146.6천명, 발달장애인(자폐증)은 33.7천명, 정신장애인 89.2천명, 신장장애 41.1천명, 심장장애 58.1천명, 호흡기장애 36.4천명, 간장애 15.6천명, 안면장애 5.1천명, 장루·요루장애 16.7천명, 간질장애 26.3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장애유형별 장애인수를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한 것이 다음의 <표 5-1-8> 이다. 동 표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1995년도 조사에서는 뇌병변장애를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뇌병변장애가 2000년부터 지체장애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2000년 조사에서는 별도로 집계하고 있으며, 그 수는 2000년이 244.2천명, 2005년이 294.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장애유형별 재가장애인 출현율 및 추정 장애건수 비교

(단위: %, 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출현율	장애건수	출현율	장애건수	출현율	장애건수
지체장애			1.35	635,737	2.22	1,038,392
뇌병변장애	1.69	732,277	0.52	244,230	0.63	294,673
시각장애	0.21	92,594	0.47	222,067	0.59	277,087
청각장애	0.46	199,433	0.42	197,277	0.64	300,223
언어장애	0.34	147,515	0.44	207,906	0.50	233,903
정신지체	0.18	78,673	0.31	143,162	0.31	146,588
발달장애(자폐증)	-	-	0.05	22,121	0.07	33,671
정신장애	-	-	0.17	78,568	0.19	89,199
신장장애	-	-	0.06	27,050	0.09	41,068
심장장애	-	-	0.13	59,055	0.12	58,120
호흡기장애	-	-	-	-	0.08	36,402
간장애	-	-	-	-	0.03	15,557
안면장애	-	-	-	-	0.01	5,116
장루·요루장애	-	-	-	-	0.04	16,653
간질장애	-	-	-	-	0.06	26,264

나. 중복장애

장애인은 1가지 장애만 있는 ‘단일장애’와 장애가 2가지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¹⁵⁾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복장애인이 2005년의 경우 402.1천명으로서 2000년의 311.7천명에 비하여 90.3천명이 증가하였다. 2가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인 가운데 77.7%를 차지하고 있고, 3가지 이상이 중복된 경우는 89.6천명으로서 22.3%를 차지하고 있다.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의 중복비율이 높으며, 뇌병변장애와 언어장애의 중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뇌병변장애와 청각장애 그리고 언어장애가 중복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중복장애의 구성

(단위: 명, %)

구분	2000년		2005년	
	전국 추정수	비율	전국 추정수	비율
중복장애				
(2가지)	246,682	79.1	312,478	77.7
지체장애+시각장애	20,166	6.5	20,277	6.5
지체장애+청각장애	17,057	5.5	25,588	8.2
뇌병변장애+시각장애	9,091	2.9	9,862	3.2
뇌병변장애+언어장애	67,406	21.6	69,707	22.3
기 타	132,962	42.7	187,044	59.9
(3가지 이상)	65,054	20.9	89,587	22.3
뇌병변장애+시각장애+언어장애	3,093	1.0	6,977	7.8
뇌병변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	5,964	1.9	7,468	8.3
기 타	55,997	18.0	75,142	83.9
계	311,736	100.0	402,065	100.0

주: 시설장애인 포함.

제 2 절 장애인 가구의 인구사회적 특성

1. 가구구성 및 가구규모

장애인 가구¹⁶⁾는 조사대상 전체 가구의 약 12.3%로서 8가구당 한 가구에 장애인이 거주

15) 중복장애는 일반적으로 단일한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인 상태를 중복장애라고 말하고 있다(手塚直樹, 1995:56).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의 8.9%에 비해 3.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가구의 가구구성을 알아보면, ‘부부+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 33.4%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비장애인 가구의 47.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은 부부로 구성된 가구로서 22.4%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장애인 가구의 분포인 15.0%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또한 비장애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18.0%로서 높지만,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11.0%로서 낮았다. 그러나 비록 그 비중은 11.0%로 낮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 1인 가구는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2-1〉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세대구성

(단위: 가구, %)

구분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1인 가구	214,669	11.0	2,506,835	18.0	2,721,504	17.2
부부	434,739	22.4	2,088,606	15.0	2,523,345	15.9
기타 1세대(형제·자매 등)	22,384	1.2	223,091	1.6	245,475	1.5
부부 + 미혼자녀	649,647	33.4	6,554,619	47.1	7,204,266	45.4
부부 + 기혼자녀	11,027	0.6	10,348	0.1	21,375	0.1
편부 + 미혼자녀	39,886	2.1	206,299	1.5	246,185	1.6
편모 + 미혼자녀	118,125	6.1	900,936	6.5	1,019,061	6.4
부부 + 양친	2,265	0.1	11,470	0.1	13,735	0.1
부부 + 편부모	44,480	2.3	102,840	0.7	147,320	0.9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10,745	0.6	73,303	0.5	84,048	0.5
조부모 + 손자녀	30,671	1.6	100,299	0.7	130,970	0.8
기타 2세대	51,809	2.7	160,133	1.2	211,942	1.3
부부 + 자녀(미혼·기혼) + 양친	52,582	2.7	108,309	0.8	160,891	1.0
부부 + 자녀(미혼·기혼) + 편부모	146,239	7.5	492,714	3.5	638,953	4.0
기타 3세대 및 4세대 이상	107,522	5.5	275,280	2.0	382,802	2.4
비혈연가구	8,001	0.4	104,936	0.8	112,937	0.7
계	1,944,791	100.0	13,920,018	100.0	15,864,809	100.0
%	12.3		87.7		100.0	

가구규모별 분포에 있어서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아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 29.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3인 가구 22.4%, 4인 가구가 21.6%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3.07명으로 비장애인 가구의 평균 2.93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표 5-2-2〉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가구규모

(단위: 가구, %)

구분	장애인 가구		비장애인 가구		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추정수	구성비
1인 가구	214,669	11.0	2,506,835	18.0	2,721,504	17.2
2인 가구	580,108	29.8	3,067,042	22.0	3,647,150	23.0
3인 가구	436,238	22.4	2,935,235	21.1	3,371,473	21.3
4인 가구	420,170	21.6	4,099,360	29.4	4,519,530	28.5
5인 가구	194,716	10.0	1,024,986	7.4	1,219,702	7.7
6인 가구	71,342	3.7	228,132	1.6	299,474	1.9
7인 이상	27,548	1.4	58,428	0.4	85,976	0.5
계	1,944,791	100.0	13,920,018	100.0	15,864,809	100.0
평균가구원수	3.07		2.93		2.95	
%	12.3		87.7		100.0	

2. 경제상태

장애인 가구의 일반적인 경제상태를 월 평균 가구 총소득과 지출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표 5-2-3> 참조).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분포를 보면, 50~99만원이 22.8%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0~149만원으로서 17.3%를 차지하고 있다. 50만원 미만이 16.2%로서 전체 장애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총소득은 157만 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 분포는 50만원 미만이 13.4%, 50~99만원이 25.8%로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39.2%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은 평균 134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5-2-3〉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단위: %, 만원)

구분	2000년		2005년	
	소득	지출	소득	지출
50만원 미만	25.3	20.7	16.2	13.4
50~99만원	27.2	33.3	22.8	25.8
100~149만원	19.4	23.2	17.3	20.6
150~199만원	12.1	12.3	13.5	15.5
200~249만원	6.6	6.1	10.2	12.1
250~299만원	3.0	2.0	5.9	4.5
300~349만원			5.9	4.7
350~399만원			2.1	1.1
400~449만원	6.2	2.4	1.9	1.3
450~499만원			0.9	0.1
500만원 이상			3.4	1.0
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	108.2	98.9	157.2	134.5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5-2-4>와 같은데, 가구주의 소득이 49.7%로 가장 많고, 가구원의 소득이 18.2%, 기타 가족의 지원이 10.8%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형태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2000년의 경우 생활보호제도)는 2000년 5.8%에서 2005년에는 9.6%로 확대되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제도의 확대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5-2-4〉 장애인 가구의 주된 수입원

(단위: 가구, %)

구분	2000년		2005년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가구주의 소득	691,623	53.0	967,067	49.7
가구주의 가구원의 소득	244,013	18.7	352,930	18.2
연금이나 퇴직금	41,871	3.2	77,636	4.0
재산소득(부동산)	26,343	2.0	55,915	2.9
저축이나 증권수익	59,326	4.5	64,580	3.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75,537	5.8	187,257	9.6
별거가족·친척등 지원	144,269	11.1	209,829	10.8
기타	21,728	1.7	28,804	1.5
계	1,304,710	100.0	1,944,018	100.0

3. 주택형태 및 소유형태

장애인 가구의 주택형태에 있어서는 <표 5-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독주택이 2000년의 63.5%에서 51.9%로 감소하였고, 아파트는 2000년의 22.8%에서 2005년에는 33.7%로 늘어났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이 7.0%로서 연립주택의 4.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의 비율이 2000년의 64.3%에서 2005년에는 64.0%로 유사하였으나, 전세의 비율은 19.3%에서 13.6%로 감소하였고, 보증금있는 월세의 비율은 7.4%에서 14.0%로 늘어났다.

<표 5-2-5> 장애인 가구의 주택형태 및 소유형태

구분	2000		2005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주택형태				
단독주택(다가구용단독주택 포함)	827,939	63.5	1,009,183	51.9
아파트	297,535	22.8	655,304	33.7
연립주택	82,320	6.3	80,648	4.1
다세대주택	32,300	2.5	135,575	7.0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	58,857	4.5	59,185	3.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기타	5,759	0.4	4,896	0.3
소유형태				
자가	839,246	64.3	1,245,420	64.0
전세	251,993	19.3	263,666	13.6
보증금있는 월세	97,041	7.4	272,526	14.0
보증금없는 월세	33,105	2.5	45,249	2.3
사글세	19,124	1.5	24,541	1.3
무상	64,201	4.9	93,389	4.8
계	1,304,710	100.0	1,944,791	100.0

장애인 가구는 99% 이상이 건강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가입가구도 5.8천 가구로서 0.3%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험은 직장건강보험으로서 44.8%이고, 지역건강보험은 40.4%가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급여제도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가구의 비율은 14.5%나 되고 있으며, 이중 9.7%는 의료급여 1종, 4.8%는 의료급여 2종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여부

(단위: 가구/명, %)

구분	장애인 가구		장애인 개인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미가입	5,772	0.3	7,434	0.4
직장건강보험	871,363	44.8	906,405	43.1
지역건강보험	786,392	40.4	809,393	38.5
의료급여1종	188,074	9.7	256,801	12.2
의료급여2종	93,190	4.8	121,024	5.8
계	1,944,791	100.0	2,101,057	100.0

장애인 가구 중 11.5%인 223.8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일반수급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건부 수급가구는 14.2천명, 의료·교육·자활 특례가구는 17.6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장애인 가구 및 개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여부

(단위: 가구/명, %)

구분	장애인 가구		장애인 개인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아니다	1,689,209	86.9	1,752,768	83.4
일반수급가구	223,816	11.5	301,507	14.4
조건부수급가구	14,201	0.7	17,843	0.8
의료·교육·자활특례	17,565	0.9	28,939	1.4
계	1,944,791	100.0	2,101,057	100.0

장애인 가구가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¹⁷⁾는 월 평균 137.8만원으로 추정되며, 서울시의 경우 154.4만원, 읍면지역은 112.2만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157.2만원이고 지출이 134.5만원인 것을 감안해 보면 장애인 가구는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7) ‘최소한 생활비’란 가족이 한 달 동안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말한다.

〈표 5-2-8〉 거주지역별 장애인 가구의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 생활비
(단위: 가구, %, 만원)

구분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전체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추정치	구성비
49만원 이하	36,496	9.9	50,241	11.1	56,701	9.9	115,404	21.7	258,842	13.4
50~ 99만원	90,254	24.4	109,486	24.1	140,177	24.5	157,636	29.6	497,553	25.8
100~149만원	80,499	21.8	91,927	20.2	116,613	20.3	108,665	20.4	397,704	20.6
150~199만원	55,549	15.0	81,788	18.0	87,246	15.2	73,572	13.8	298,155	15.5
200~249만원	41,943	11.3	60,231	13.3	87,069	15.2	44,217	8.3	233,460	12.1
250~299만원	18,271	4.9	27,409	6.0	26,094	4.6	14,330	2.7	86,104	4.5
300~349만원	25,927	7.0	17,404	3.8	36,300	6.3	11,172	2.1	90,803	4.7
350~399만원	7,360	2.0	5,247	1.2	5,660	1.0	3,082	0.6	21,349	1.1
400만원 이상	13,696	3.7	10,428	2.3	17,343	3.0	3,975	0.7	45,442	2.4
계	369,995	100.0	454,161	100.0	573,203	100.0	532,053	100.0	1,929,412	100.0
평균	154.42		140.51		148.77		112.17		137.84	

제 6 장 조사결과 II : 재가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제 1 절 주된 장애의 진단 및 치료

1. 장애의 원인

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 출생시 원인, 후천적 원인(질환 및 사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¹⁸⁾, 주된 법정장애의 장애유형별 원인을 보면 <표 6-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아 89.0%였고, 원인 불명이 6.3%, 선천적 원인이 4.0%, 출산시 원인이 0.7%로 나타나 과거 조사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원인 불명(2000년 3.9%)이 증가하고, 후천적 원인(2000년 89.4%), 선천적 원인(2000년 4.4%), 출산시 원인(2000년 2.3%)이 모두 약간씩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후천적 원인이 높게 나왔는데, 이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질환 및 사고로 인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후천적 원인을 질환 및 사고로 분류하여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질환이 52.4%로 가장 많았고, 사고가 36.6%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 원인 중에 질환과 사고가 많다는 것은 장애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를 장애유형별로 세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는 질환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체장애와 안면장애의 경우에는 사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체장애와 안면장애의 원인이 주로 교통사고, 화상 등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원인은 정신지체가 가장 높아 23.2%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언어장애 22.8%, 안면장애 19.3%의 순이었다. 출산시 원인은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발달장애가 7.3%로 가장 높았다. 원인불명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발달장애로

18) 장애원인의 세 분류에 관해서는 제7장 ‘장애종류별 특성 및 현황’ 참조

전체 장애인의 65.6%가 장애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으며, 간질장애 역시 33.9%가 장애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표 6-1-1〉 장애유형별 장애 원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원인	1.6	2.2	5.4	3.7	22.8	23.2	13.2	0.9	1.9	10.1	-	-	19.3	-	8.8	4.0
출산시원인	0.1	2.3	0.3	0.3	-	3.9	7.3	-	-	-	-	-	-	-	-	0.7
후천적 원인	38.3	82.1	49.8	68.2	52.8	20.8	12.3	82.4	92.5	88.1	93.0	100.0	9.6	100.0	33.6	52.4
사고	58.8	11.5	36.5	18.1	10.1	12.5	1.7	7.3	3.8	0.9	4.1	-	63.9	-	23.7	36.6
원인불명	1.2	1.9	8.0	9.7	14.3	39.6	65.5	9.4	1.7	0.9	2.9	-	7.2	-	33.9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70)	(687)	(566)	(593)	(50)	(289)	(58)	(201)	(106)	(108)	(76)	(34)	(11)	(38)	(38)	(5,425)
전국추정수	987,129	264,536	218,460	227,513	19,433	110,520	22,836	77,180	40,286	41,684	29,568	13,012	3,965	14,634	14,555	2,085,311

주: 무응답 41건 제외

2. 장애 발생시기

재가장애인의 장애 발생시기는 <표 6-1-2>와 같다. 먼저 출생전 또는 출생시, 돌 이전, 돌 이후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재가장애인의 장애 발생시기는 ‘돌 이후’가 95.7%로 가장 많았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 2.2%, ‘돌 이전’ 2.1%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만은 돌 이전에 발생하는 비율이 100.0%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장애유형은 전체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돌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1-2〉 장애 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4	3.6	2.3	0.9	13.1	9.6	-	0.5	-	2.7	-	-	9.9	-	-	2.2
돌 이전	1.4	3.0	1.7	1.8	6.4	7.8	7.4	-	100.0	2.8	-	2.5	-	-	2.6	2.1
돌 이후	97.1	93.4	95.9	97.3	80.5	82.6	92.6	99.5	-	94.5	100.0	97.5	90.1	100.0	97.4	9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71)	(689)	(568)	(593)	(50)	(286)	(57)	(201)	(106)	(108)	(76)	(34)	(11)	(38)	(38)	(5,426)
전국추정수	987,447	265,281	219,172	227,513	19,433	18,186	22,441	77,180	40,286	41,684	29,568	13,012	3,965	14,634	14,555	2,085,559

주: 무응답 40건 제외

돌 이후의 장애발생시기를 연령별로 보면, <표 6-1-3>과 같이, 장애발생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2000년도의 조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발생시기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사고 및 질환에 따른 원인에 의한 장애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장애는 40대 이후 발생 비율이 약 44.2%로 녹내장, 백내장 등 각종 퇴행성 안질환으로 인한 장애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는 장애발생(발견)시기별로 대체로 고령 분포를 보이다가, 60~70대 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의 노인인구에서 각종 귀 질환, 노인성 난청 등에 의한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언어장애의 경우에는 만 1~9세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53.7%에 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지체의 경우는 대부분 만 10세 이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82.1%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달장애(자폐증)는 전체의 85.5%가 만 1~4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신장애는 대부분의 장애가 1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청·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장애에 포함된 구체적 질병인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정동장애(우울증), 분열정동장애 등은 대부분 10대 이후에 발병하고, 아주 드물게 1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0세 이전에 발병했다고 응답한 0.8%의 경우 일부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자폐증)¹⁹⁾ 또는 기타 정신장애(협의의 정신장애)와 혼동하여 정신장애라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신장장애의 경우에는 10세 이후에 발생(투석 또는 신장이식을 시행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에서 60대에 걸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장애의 경우 선천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10세 이전의 발생은 1.0%밖에 되지 않고, 40대 이후에 현저히 장애의 발생이 증가하는 후천적인 심장질환이 심장장애의 대부분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장애는 40세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의 76.2%로 이는 고령 노인인구에서 폐

19) 정신지체와 발달장애(자폐증)도 광의의 정신장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음.

렴이나 기타 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장애는 20세부터 발병하기 시작하나 30세에서 50세 사이에 발생 비율이 현격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장애의 경우 의학계에서도 보고하듯이 30~40대의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 직장인들 중에 술에 의한 B형 간염바이러스, 간경변, 지방간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면장애는 주로 만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10세에서 31.8%로 나타나 아동기 때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외상, 화상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장루·요루장애는 간장애와 마찬가지로 만 40세 이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91.8%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의 식생활 및 삶의 환경이 서구를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대장암(직장암)의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간질장애는 주로 만 19세 이전에 발병하는 비율이 전체의 66.4%로 이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의 동반장애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장애유형의 발생 연령 시기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3〉 장애 발생시기 - 돌 이후(연령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만 1~4세	8.7	3.0	7.7	10.2	41.2	54.2	85.5	0.4	-	1.0	-	-	7.9	-	7.6	10.2
만 5~9세	5.6	0.6	12.0	7.0	12.5	27.9	12.7	0.4	-	-	-	-	31.8	-	16.9	6.5
만 10~19세	8.5	1.5	12.9	9.1	-	9.1	1.3	24.0	7.6	3.9	2.4	-	11.6	-	41.9	8.5
만 20~29세	12.9	3.3	14.2	9.7	-	3.6	-	37.2	17.5	4.7	9.0	3.3	29.7	5.1	22.3	11.6
만 30~39세	15.7	4.1	9.1	5.7	8.0	2.1	-	24.3	14.8	6.8	12.4	24.3	19.1	3.1	8.8	11.6
만 40~49세	16.4	15.2	12.0	10.3	5.3	0.4	-	8.7	20.4	19.0	17.0	16.8	-	13.8	-	13.8
만 50~59세	15.0	23.2	11.7	11.1	8.3	0.9	-	3.6	20.8	22.2	17.3	45.4	-	26.5	2.6	14.5
만 60~69세	11.7	30.0	11.9	14.3	12.7	1.3	-	1.4	15.0	32.5	25.9	4.0	-	27.3	-	14.0
만 70세 이상	5.5	19.1	8.6	22.6	12.1	0.5	-	-	3.9	9.8	16.0	6.3	-	24.2	-	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492)	(644)	(545)	(573)	(39)	(227)	(54)	(198)	(106)	(102)	(76)	(33)	(10)	(38)	(36)	(5,173)
전국추정수	957,323	247,868	210,330	219,810	15,254	86,783	21,173	76,033	40,286	39,391	29,568	12,684	3,572	14,634	13,835	1,988,544

주: 무응답 293건 제외

3. 장애의 원인 및 치료

가. 장애의 원인 진단

장애의 원인에 대한 진단은 장애의 예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장애의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진행을 방지하여 장애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주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 등에 대한 진단여부를 <표 6-1-4>에서 보면, 장애의 원인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경우가 85.5%로 2000년의 82.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진단비율을 주된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가 100%로 가장 높은 진단비율을 보였고,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도 비교적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장애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발달장애, 정신지체, 간질장애 등은 장애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장애원인에서 출생 이전에 선천적인 원인의 비율이 높았거나 원인불명으로 장애의 원인 질병에 대한 진단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표 6-1-4> 주된 장애의 원인 진단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94.5	95.6	79.9	63.7	62.4	41.6	30.0	84.9	98.3	97.2	95.7	100.0	75.8	97.5	45.2	85.5
받지 않았다	5.5	4.4	20.1	36.3	37.6	58.4	70.0	15.1	1.7	2.8	4.3	-	24.2	2.5	54.8	1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3)	(51)	(286)	(59)	(200)	(106)	(108)	(77)	(35)	(12)	(40)	(38)	(5,459)
전국추정수	996,263	266,070	219,551	227,428	19,827	109,549	23,259	76,852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8,509

주: 무응답 7건 제외

주된 장애별 장애 원인의 최초 진단시기는 <표 6-1-5>와 같다. 주된 장애에 대한 장애원인의 최초 진단시기는 앞서 제시된 장애의 발생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즉, 뇌병변장애나 심장장애와 같이 후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인 장애는 장애의 원인 진단시기가 30대 이후가 많고,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발달장애(자폐증)와 같이 선천적인 원인과 출생시 원인이 대부분인 장애는 10세 이전에 장애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5〉 주된 장애 원인 최초 진단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0세	1.7	5.1	1.5	1.0	6.1	21.6	23.7	-	-	6.7	-	2.4	-	-	-	2.7
1~ 4세	6.7	2.0	4.6	9.4	22.1	31.4	65.1	-	-	1.8	1.4	-	8.5	-	4.1	6.3
5~ 9세	4.9	0.6	9.3	9.2	6.0	21.0	11.2	0.6	-	-	1.4	-	22.7	-	24.3	5.1
10~19세	7.9	1.2	13.9	9.1	6.3	11.5	-	21.8	6.5	4.1	5.6	-	12.5	-	37.3	8.0
20~29세	14.6	3.1	14.7	11.0	-	5.9	-	36.6	22.4	4.4	12.2	6.2	32.0	4.9	11.7	12.9
30~39세	16.1	5.5	11.3	6.5	16.1	1.8	-	21.6	22.8	9.7	22.8	29.0	12.1	3.0	17.2	13.2
40~49세	17.8	18.5	14.0	11.6	6.5	-	-	11.2	22.7	19.2	9.4	23.6	-	13.4	-	16.1
50~59세	16.2	24.9	13.0	9.4	10.2	2.7	-	4.8	15.7	24.1	13.5	29.9	-	28.1	5.4	15.9
60~69세	9.9	24.4	10.8	14.4	15.6	1.7	-	2.3	9.1	22.3	24.0	5.8	12.2	26.5	-	12.5
70세 이상	4.3	14.7	6.8	18.3	11.0	2.5	-	1.2	1.0	7.7	9.8	3.0	-	24.1	-	7.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452)	(660)	(455)	(378)	(32)	(117)	(18)	(169)	(104)	(105)	(74)	(35)	(9)	(39)	(17)	(4,664)
전국추정수	941,724	254,268	175,455	144,937	12,379	45,553	6,967	65,218	39,593	40,517	28,659	13,397	3,310	15,082	6,582	1,793,641

주: 비해당 795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장애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은 장소는 <표 6-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유형의 장애가 종합병원 51.2%, 병·의원 43.9%로 95%가 병·의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은 병·의원에서 장애의 원인에 대해 진단받은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이들 장애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장루·요루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발달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의료 인력이나 진단장비가 덜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뇌병변장애는 병·의원 외에 한방병·의원에서 장애의 원인을 진단받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주로 뇌병변장애의 원인이 뇌졸중(뇌경색 또는 뇌출혈)인 경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6〉 주된 장애 원인 진단장소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종합병원	48.7	65.7	43.4	40.5	58.5	58.5	68.6	36.3	69.1	72.3	48.9	58.9	47.3	78.5	54.7	51.2
재활병·의원	0.6	0.1	-	-	-	0.8	-	-	-	-	-	-	-	-	-	0.3
병·의원	46.6	24.4	54.0	55.3	41.5	37.4	31.4	62.4	29.8	25.9	42.9	38.2	41.2	21.5	39.8	43.9
보건소	0.6	1.2	0.2	0.6	-	-	-	-	-	-	6.7	-	-	-	-	0.7
한방병·의원	2.5	8.1	0.4	1.6	-	1.7	-	1.3	-	-	-	3.0	-	-	-	2.7
기타	1.0	0.5	2.0	2.1	-	1.6	-	-	1.1	1.8	1.5	-	11.5	-	5.4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427)	(652)	(455)	(374)	(31)	(116)	(18)	(166)	(102)	(105)	(73)	(34)	(9)	(38)	(17)	(4,617)
전국추정수	931,666	251,250	175,455	143,404	11,992	45,212	6,967	64,081	38,823	40,517	28,238	13,021	3,310	14,739	6,582	1,775,257

주: 비해당 802건 및 무응답 47건 제외

나. 주된 장애의 진단

주된 장애의 진단은 전체 장애인 중 96.9%가 받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는 13% 내외의 장애인이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천적인 원인이 많은 이들 장애의 경우 장애의 원인 발생시기와 장애의 발견시 기간에 시간적 차이가 많이 나서 의학적인 개입을 통한 장애의 예방이 힘들고, 이에 따라 장애의 진단 등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의 이용이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표 6-1-7〉 주된 장애 진단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99.1	98.3	97.9	87.0	86.2	93.7	98.4	97.1	100.0	96.1	92.0	100.0	93.5	100.0	100.0	96.9
받지 않았다	0.9	1.7	2.1	13.0	13.8	6.3	1.6	2.9	-	3.9	8.0	-	6.5	-	-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86)	(59)	(200)	(106)	(108)	(77)	(35)	(12)	(40)	(38)	(5,461)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09,521	23,259	76,852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9,313

주: 무응답 5건 제외

주된 장애의 최초 진단 시기 또한 대체로 장애의 발생시기나 장애의 원인 진단시기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애의 원인에 따라 장애의 진단시기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와 같이 후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인 장애는 장애의 원인 진단시기가 30대 이후가 많고, 정신지체, 발달장애, 언어장애와 같이 선천적인 원인과 출생시 원인이 많은 장애는 10세 이전에 주된 장애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8〉 주된 장애 최초 진단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0세	1.1	4.3	1.1	0.8	7.1	7.7	3.7	-	-	4.8	-	2.4	-	-	-	1.9
1~ 4세	6.0	2.7	2.9	6.7	12.0	21.8	67.6	-	-	1.9	-	-	6.9	-	1.9	6.2
5~ 9세	3.7	1.2	6.0	4.0	4.5	22.6	18.5	0.5	-	-	-	-	18.7	-	13.2	4.5
10~19세	7.6	2.0	13.0	5.7	9.5	15.6	10.1	22.1	4.6	3.9	1.3	-	9.1	-	42.9	8.2
20~29세	13.2	3.1	16.3	9.8	12.1	12.1	-	29.7	11.5	1.8	6.9	6.2	25.9	4.8	18.2	11.9
30~39세	16.1	4.2	10.4	8.5	16.5	9.3	-	29.0	16.1	6.6	8.6	19.6	9.8	2.9	13.6	12.8
40~49세	17.2	13.5	13.0	13.8	7.7	4.7	-	11.0	25.3	18.0	18.6	13.1	19.7	13.0	5.2	14.9
50~59세	15.8	21.8	14.5	13.1	9.8	3.2	-	5.3	20.6	20.8	16.6	46.0	-	25.1	5.1	15.3
60~69세	13.0	28.1	12.3	17.2	14.3	2.6	-	2.5	17.0	31.7	28.0	6.7	-	25.9	-	14.8
70세 이상	6.4	19.0	10.4	20.4	6.5	0.4	-	-	4.9	10.6	20.0	6.0	9.9	28.3	-	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70)	(678)	(557)	(513)	(42)	(265)	(58)	(192)	(106)	(104)	(71)	(35)	(11)	(40)	(38)	(5,280)
전국추정수	987,215	261,072	214,874	196,912	16,464	101,923	22,877	73,847	40,286	40,048	27,562	13,397	4,085	15,466	14,555	2,030,583

주: 비해당 174건 및 무응답 12건 제외

주된 장애의 진단장소는 <표 6-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된 장애의 원인에 대한 진단 장소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장애가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되, 정신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간질장애는 병·의원에서의 진단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의 종류에 따른 전문적 의료 인력과 의료장비의 필요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1-9〉 주된 장애 최초 진단장소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종합병원	57.1	76.6	50.0	51.9	74.2	61.6	64.5	40.7	92.1	90.2	71.2	80.5	74.2	87.1	59.5	60.2
재활 병·의원	1.0	0.6	-	0.2	-	0.8	-	-	-	-	-	-	-	-	-	0.6
병·의원	38.1	13.1	48.3	45.7	23.5	31.2	31.8	57.6	6.9	9.0	26.0	16.7	16.5	12.9	38.1	35.1
보건소	1.0	0.4	0.2	0.6	-	1.3	-	-	-	-	1.3	-	-	-	-	0.7
한방병·의원	1.6	9.1	0.2	0.4	-	-	-	1.1	-	-	-	2.9	-	-	-	2.1
기타	1.1	0.1	1.3	1.2	2.3	5.0	3.7	0.6	1.0	0.8	1.6	-	9.3	-	2.5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49)	(675)	(552)	(505)	(42)	(260)	(58)	(193)	(106)	(104)	(70)	(35)	(11)	(39)	(38)	(5,237)
전국추정수	978,934	259,880	212,936	193,901	16,368	100,050	22,877	74,273	40,286	40,048	27,181	13,397	4,085	15,123	14,555	2,013,894

주: 비해당 135건 및 무응답 94건 제외

다. 과거의 장애 치료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 처음 치료를 받은 시기를 알아보면, <표 6-1-10>과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은 직후’ 처음 치료를 받은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고, ‘장애의 진단 또는 발견 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13.9%, ‘3년 이후’가 4.5%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는 대부분이 장애진단(발견) 직후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선천적인 원인이 많은 언어장애, 정신지체, 청각장애는 장애진단(발견) 직후 치료 비율이 각각 53.9%, 43.8%, 41.2%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치료율이 낮았고,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간질장애는 장애의 진단 직후 치료를 받지 않고 3개월 이후 치료를 받은 경우가 15.7% 정도가 되어 장애의 진단 이후에도 조기치료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10> 최초 치료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진단(발견) 직후(1개월 이내)	86.6	95.2	68.8	41.2	53.9	43.8	72.4	85.4	93.7	92.6	91.3	88.3	67.3	97.5	79.9	78.5
3개월 이내	0.6	0.2	0.7	1.3	1.9	0.4	-	0.5	-	-	-	-	-	2.5	-	0.6
6개월 이내	0.7	0.6	0.5	0.8	-	0.8	1.8	0.5	1.2	0.8	-	-	-	-	-	0.6
12개월 이내	0.4	-	0.4	0.2	-	1.3	5.2	2.6	1.0	0.9	-	3.2	-	-	-	0.5
1~2년 이내	0.6	0.1	0.5	0.9	-	2.1	6.0	2.5	-	1.0	-	-	-	-	-	0.7
2~3년 이내	0.4	0.4	0.5	0.8	-	-	-	1.5	1.0	-	1.6	-	-	-	2.4	0.5
3년 이후	3.1	0.9	8.3	9.6	9.2	8.3	1.7	4.6	3.1	2.8	2.6	5.5	8.7	-	15.7	4.5
치료받지 않았음	7.6	2.6	20.4	45.1	35.0	43.4	13.0	2.3	-	1.8	4.4	3.0	24.0	-	2.0	13.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3)	(691)	(569)	(591)	(51)	(284)	(59)	(199)	(106)	(107)	(77)	(35)	(12)	(40)	(38)	(5,452)
전국추정수	995,801	266,070	219,551	226,730	19,827	108,860	23,259	76,453	40,286	41,303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5,880

주: 무응답 14건 제외

치료를 받은 장애인 중 장애 진단 직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6-1-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3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가 21.8%, ‘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가 19.5% 등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전체 장애의 경향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심장장애

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 치료시 특수 검사비 및 특수 시술비용 지출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올 것 같아서’가 높았고, 간질장애의 경우 ‘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언어장애는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장장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장애진단 직후 치료받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6-1-11〉 진단 직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33.1	20.9	44.1	37.6	-	23.1	-	20.2	14.9	85.0	69.6	31.7	-	-	30.9	33.0
그대로 두어도 괜찮 거나 곧 나올 것 같아서	24.8	35.1	9.4	22.8	17.9	14.3	46.0	25.2	34.1	15.0	30.4	36.8	-	100.0	-	21.8
치료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9.1	6.3	8.0	4.6	-	8.4	-	3.9	-	-	-	-	-	-	13.4	6.9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4.5	-	7.8	9.3	-	9.0	-	-	-	-	-	-	-	-	-	5.4
치료받기 싫어서	0.7	-	-	1.3	-	-	-	8.1	34.9	-	-	-	-	-	-	1.6
주위의 시선때문에	-	-	-	-	-	3.0	-	5.1	-	-	-	-	-	-	13.8	0.8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5.0	-	3.2	3.6	20.4	-	9.7	-	-	-	-	-	-	-	-	3.5
시간이 없어서	2.2	-	-	1.2	-	4.7	-	-	-	-	-	-	-	-	-	1.5
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	12.9	30.6	24.2	16.9	16.9	31.3	11.6	37.4	16.2	-	-	31.6	-	-	41.9	19.5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2.0	-	-	-	-	-	12.2	-	-	-	-	-	-	-	-	1.0
기타	5.9	7.0	3.4	2.6	44.8	6.2	20.5	-	-	-	-	-	100.0	-	-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51)	(14)	(61)	(82)	(5)	(35)	(9)	(24)	(6)	(6)	(3)	(3)	(1)	(1)	(7)	(408)
전국추정수	57,611	5,601	23,333	31,164	1,937	13,893	3,400	9,420	2,525	2,290	1,265	1,156	382	382	2,640	156,999

주: 비해당(진단 직후 치료 받거나, 치료받지 않은 경우) 5,056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최초로 장애의 진단(발견) 후 제일 먼저 치료 받은 곳은 <표 6-1-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의 원인과 장애에 대한 진단장소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종합병원이 가장 많아 58.6%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병·의원으로 35.3%를 차지하였다. 장애유형별로도 전반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장루·요루장애가 8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심장장애 86.7%, 신장장애 85.0%, 간장애 81.9%의 순이

었다. 이와 같은 장애유형의 경우, 특수 검사, 이식 및 수술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 의료인력과 의료장비의 필요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6-1-12〉 주된 장애 진단(발견) 후 최초 치료장소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종합병원	54.8	73.9	47.4	52.7	75.4	64.0	54.6	40.1	85.0	86.7	65.9	81.9	58.7	87.0	54.1	58.6
재활병·의원	1.4	0.7	0.4	0.6	-	2.3	2.9	1.4	-	-	-	-	9.0	-	-	1.1
병의원	39.6	13.8	50.5	43.5	18.5	19.4	34.7	57.4	14.0	13.3	31.5	15.1	20.9	13.0	38.1	35.3
보건소	0.5	0.3	0.2	0.6	-	1.1	-	-	-	-	2.6	-	-	-	-	0.4
한방병·의원	2.9	10.9	0.5	0.9	3.5	2.4	-	0.6	-	-	-	3.0	-	-	5.2	3.4
기타	0.8	0.3	1.1	1.6	2.5	10.8	7.9	0.5	1.0	-	-	-	11.4	-	2.5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96)	(673)	(454)	(323)	(33)	(158)	(51)	(194)	(106)	(105)	(74)	(34)	(9)	(40)	(37)	(4,687)
전국추정수	919,176	259,029	174,732	124,108	12,893	61,224	20,228	74,676	40,286	40,557	28,625	12,990	3,321	15,466	14,271	1,801,582

주: 비해당(치료받지 않았음) 774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치료받은 장애인의 경우 어느 정도 충분한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는 <표 6-1-13>과 같다. 장애에 대한 치료에 대해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전체의 76.9%였으며,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는 23.1%로 대다수의 장애인이 장애에 대해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전체적인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에 대한 받은 치료가 ‘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장루·요루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뇌병변장애는 장애의 특성상 다른 장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더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13〉 치료받은 장애인이 느끼는 치료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충분하다	78.2	84.4	73.9	56.2	69.6	58.0	56.2	79.5	87.6	86.1	84.2	73.1	70.5	97.5	81.6	76.9
충분하지 않다	21.8	15.6	26.1	43.8	30.4	42.0	43.8	20.5	12.4	13.9	15.8	26.9	29.5	2.5	18.4	2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64)	(664)	(449)	(319)	(32)	(156)	(49)	(192)	(105)	(103)	(73)	(33)	(9)	(40)	(37)	(4,625)
전국추정수	906,537	255,513	173,033	122,326	12,464	60,421	19,447	73,944	39,898	39,901	28,246	12,662	3,321	15,466	14,271	1,777,450

주: 비해당(치료받지 않았음) 774건 및 무응답 67건 제외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아본 결과는 <표 6-1-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즉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4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치료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해서’가 17.6%,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가 8.0% 등의 순이었다.

〈표 6-1-14〉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대로 두어도 괜찮 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51.3	68.7	32.7	31.7	21.8	35.3	50.2	46.7	68.5	65.2	64.5	55.4	28.7	-	60.2	47.4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6.3	4.9	4.3	6.8	-	4.4	13.7	7.5	-	13.6	17.5	23.1	-	-	-	6.3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5.3	5.4	9.1	16.9	-	11.6	4.3	12.9	-	14.6	-	-	30.5	100.0	13.4	8.0
치료받기 싫어서	13.2	10.3	39.3	30.8	46.2	18.0	-	2.4	7.5	-	8.9	-	40.8	-	12.5	17.6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1.4	-	-	-	-	1.6	-	25.6	16.3	-	-	-	-	-	-	1.9
시간이 없어서	0.2	-	-	-	-	1.5	-	-	-	-	-	-	-	-	13.9	0.3
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	5.3	3.2	3.4	1.4	11.2	3.0	4.7	-	-	-	-	-	-	-	-	3.8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5.7	1.8	1.7	3.4	10.9	1.3	6.8	-	-	-	-	10.8	-	-	-	4.0
기타	5.2	1.8	6.9	5.6	9.8	14.1	-	2.4	7.7	6.6	9.0	10.7	-	-	-	5.6
계	2.8	3.9	0.8	1.9	-	3.1	8.9	-	-	-	-	-	-	-	-	2.4
(N)	3.4	-	1.9	1.4	-	6.1	11.4	2.6	-	-	-	-	-	-	-	2.7
전국추정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18)	(105)	(116)	(139)	(9)	(68)	(21)	(40)	(13)	(14)	(11)	(9)	(3)	(1)	(7)	(1,074)

주: 비해당 4,388건 및 무응답 4건 제외

라. 현재의 장애치료

현재 장애에 대한 치료여부는 <표 6-1-15>를 보면, 재가장애인의 45.3%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의 종류별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질장애, 정신장애, 호흡기장애 등이 장애에 대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신장장애는 모든 장애인이 투석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반면, 청각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6-1-15〉 현재 치료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38.6	75.0	31.4	14.1	36.2	27.6	58.8	90.8	100.0	97.0	90.1	89.3	18.0	69.1	92.3	45.3
아니오	61.4	25.0	68.6	85.9	63.8	72.4	41.2	9.2	-	3.0	9.9	10.7	82.0	30.9	7.7	5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5)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721

주: 무응답 1건 제외

현재 치료받는 장소는 <표 6-1-16>을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역시 종합병원으로 45.9%였고, 그 다음이 병·의원 43.6%, 한방병·의원 5.4%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는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높았으며, 발달장애와 정신지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받는 비율이 높았다.

〈표 6-1-16〉 현재 치료받고 있는 치료장소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종합병원	35.4	55.7	40.4	35.8	66.2	40.4	18.7	31.5	68.8	85.6	62.7	90.4	48.6	84.3	68.9	45.9
재활병·의원	0.8	1.4	-	-	-	-	-	-	-	-	-	-	-	-	-	0.6
병·의원	53.2	29.0	58.9	63.0	6.9	23.3	14.3	68.2	30.3	14.4	35.9	9.6	51.4	12.1	25.7	43.6
보건소	1.2	2.5	-	-	-	2.1	-	-	1.0	-	1.4	-	-	3.6	-	1.2
한방병·의원	7.8	9.9	0.7	-	-	-	4.2	-	-	-	-	-	-	-	2.7	5.4
장애인복지관	0.6	1.0	-	-	15.0	22.5	37.6	-	-	-	-	-	-	-	-	1.8
기타	1.0	0.6	-	1.2	11.9	11.7	25.3	0.4	-	-	-	-	-	-	2.7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01)	(514)	(180)	(84)	(18)	(78)	(34)	(182)	(106)	(105)	(70)	(31)	(2)	(27)	(35)	(2,467)
전국추정수	383,961	198,800	68,939	32,193	7,182	30,203	13,665	70,092	40,286	40,431	26,997	11,957	786	10,685	13,440	949,617

주: 비해당 2,994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재가장애인 중 현재 치료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6-1-17>과 같다.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가 49.4%로 가장 많아 치료를 하여도 증상과 장애의 정도의 개선이 어려운 고착된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해도 효

과가 없을 것 같아서'로 25.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장애인 스스로 내린 결론에 의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경우도 치료를 받지 않는 장애인의 12.7%에 해당되었는데, 전체 장애인의 약 10%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체로 전체 장애인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간장애는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가 다소 많았고, 간질장애는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가 다소 많았다. 심장장애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6-1-17〉 현재 치료받고 있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대로 두어도 괜찮 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	12.6	30.0	6.4	8.0	9.8	17.9	31.5	11.5	-	70.6	44.5	18.1	37.3	7.8	25.5	12.7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9.8	3.2	0.7	2.1	-	2.9	-	10.7	-	-	-	-	10.6	15.0	-	6.2
치료해도 나을 것 같지 않아서	24.7	21.3	18.5	31.9	26.8	38.8	12.4	25.4	-	-	26.7	-	7.8	26.2	40.7	25.7
치료받기 싫어서	47.9	38.2	72.1	52.2	48.5	27.1	35.8	10.3	-	29.4	28.9	81.9	44.3	51.0	-	49.4
주위의 시선때문에 근처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1.0	2.9	0.8	1.4	6.0	1.8	-	36.6	-	-	-	-	-	-	33.8	1.5
시간이 없어서	-	-	-	-	-	-	4.1	-	-	-	-	-	-	-	-	0.0
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 때문에	0.1	-	-	-	-	-	4.2	-	-	-	-	-	-	-	-	0.1
치료받으러 다니기 불편해서	1.3	0.5	0.5	0.4	3.1	1.5	3.8	-	-	-	-	-	-	-	-	1.0
기타	0.3	0.6	0.8	3.2	5.7	8.3	8.3	5.5	-	-	-	-	-	-	-	1.6
계	1.2	3.4	0.2	0.4	-	0.7	-	-	-	-	-	-	-	-	-	1.0
	1.1	-	-	0.6	-	1.0	-	-	-	-	-	-	-	-	-	0.8
(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589)	(174)	(387)	(506)	(33)	(210)	(25)	(19)	-	(3)	(7)	(4)	(10)	(13)	(3)	(2,983)
	610,926	66,116	149,847	194,124	12,645	79,939	9,594	7,088	-	1,253	2,956	1,440	3,583	4,781	1,115	1,145,407

주: 비례당 2,473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으로 향후 재가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는 <표 6-1-18>과 같다. 전체 재가장

애인의 62.9%가 재활전문 병·의원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재활전문요양원이 18.6%, 여성장애인전문병원이 8.1%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의 경우 재활전문 병·의원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의 경우 재활전문요양원, 간질장애는 여성장애인전문병원, 발달장애는 소아장애인전문병원 및 장애인전문치과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른 전문적 의료시설의 필요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1-18〉 향후 건강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또는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재활전문 병·의원	72.8	55.0	59.9	63.0	56.3	41.3	37.0	30.1	58.6	50.9	51.7	47.0	60.1	63.2	41.2	62.9
재활전문 요양원	12.7	30.9	17.2	18.6	25.4	28.2	6.6	38.4	19.6	18.7	25.2	22.8	18.4	20.9	25.7	18.6
낮병원	4.3	4.4	6.2	5.4	-	5.0	6.8	8.9	4.1	12.5	5.3	17.1	6.5	2.8	4.9	5.1
여성장애인전문병원	6.8	5.5	8.1	8.0	12.2	13.2	6.1	19.3	14.3	14.1	8.0	1.9	14.9	10.6	22.9	8.1
소아장애인전문병원	1.0	1.5	4.3	3.3	-	1.0	11.8	3.4	1.6	1.9	2.6	8.2	-	2.5	5.4	2.2
장애인전문치과	2.2	1.9	4.3	3.3	-	1.0	11.8	3.4	1.6	1.9	6.2	-	-	-	-	2.6
기타	0.2	0.9	1.9	0.2	-	1.4	-	-	1.8	-	1.0	3.0	-	-	-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82)	(686)	(566)	(583)	(50)	(287)	(59)	(198)	(105)	(106)	(76)	(35)	(12)	(39)	(38)	(5,422)
전국추정수	991,810	264,127	218,342	223,796	19,442	109,947	23,259	76,107	39,890	41,021	29,568	13,397	4,369	15,110	14,555	2,084,740

주: 무응답 44건 제외

제 2 절 일상생활 지원

1.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과거 조사에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의 장애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했던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의 측정도구 체크리스트인 Modified Barthel Index(Granger 등, 1979)를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의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Barthel Index의 80~100을 경도로, 43~79를 중등도로, 0~42까지를 중도로 보았다. 그 결과 <표 6-2-1>과 같이 경도가 90.3%였고, 중등도가 5.2%, 중도가 4.5%였다.

장애유형별로도 전반적으로 경도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유형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뇌병변장애가 중등도 및 중도의 비율이 각각 17.0%, 22.1%로 중증의 비율이 다

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다. 이는 뇌병변장애가 장애의 특성상 이동에 불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arthel Index의 특성상 각종 재활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과제를 할 수 있으면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신변처리 및 일상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하지 못하는 중등도 또는 중도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의 기술 향상과 지속적인 보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해지고 있고, 또한 이것이 장애정도가 경증화되어 가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다.

〈표 6-2-1〉 Barthel index에 따른 장애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도	94.5	60.8	97.3	98.6	95.8	87.4	82.1	98.6	90.3	93.4	85.1	74.4	100.0	94.9	98.0	90.3
중등도	3.1	17.0	2.3	0.9	2.1	8.4	14.6	1.4	7.9	3.9	12.2	8.5	-	5.1	-	5.2
중도	2.4	22.1	0.3	0.5	2.1	4.2	3.3	-	1.8	2.6	2.7	17.0	-	-	2.0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 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6-2-2>와 같이 계단 오르내리기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23.1%로 10개 항목 중에 가장 수행능력상에 문제가 많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려운 항목으로 전체 재가장애인의 경우 목욕하기(19.9%), 옷 입고 벗기(19.2%), 보행하기(17.5%), 개인위생(11.5%), 화장실 이용하기(9.1%)로 밝혀졌고, 나머지 항목들은 대략 7.5%(대변 조절·참기)에서 7.8%(소변 조절·참기) 사이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는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옷 입고 벗기, 배뇨(소변) 조절·참기, 보행하기, 의자⇔침상 옮겨 앉기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발달장애는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입고 벗기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호흡기장애와 심장장애는 계단 오르내리기에서, 장루·요루장애는 배변(대변) 조절하기 등으로 장애유형별로 그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특히 15개의 장애유형 중에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는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지원이 필요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6-2-2〉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개인위생																
스스로 할 수 있음	94.9	57.5	97.4	98.1	87.8	71.9	50.0	89.4	91.0	94.3	83.0	76.9	91.3	100.0	92.9	88.4
일부도움 필요	2.1	12.5	1.6	0.9	6.4	10.9	22.1	4.9	5.1	1.0	3.8	6.1	8.7	-	2.6	4.2
중간정도 도움 필요	1.1	6.7	0.5	0.5	2.0	5.8	10.0	2.9	2.9	-	5.1	-	-	-	2.6	2.1
대부분 도움 필요	1.0	6.9	0.2	0.3	1.8	4.7	11.2	2.4	-	1.9	5.5	5.6	-	-	-	2.0
전혀 할 수 없음	0.9	16.4	0.3	0.1	2.1	6.7	6.8	0.4	1.0	2.7	2.5	11.4	-	-	2.0	3.2
목욕하기																
스스로 할 수 있음	88.1	34.9	94.5	94.9	81.8	63.3	35.2	84.3	79.1	85.5	70.3	71.8	91.3	89.2	92.9	80.2
일부도움 필요	5.1	16.3	2.8	3.0	8.3	14.8	27.4	6.5	7.6	7.9	11.5	2.6	8.7	5.3	2.6	7.1
중간정도 도움 필요	2.9	13.6	2.0	1.0	-	6.9	9.8	4.5	5.6	-	5.3	-	-	5.6	2.6	4.3
대부분 도움 필요	1.9	12.5	0.3	0.7	7.9	7.1	13.8	3.7	2.7	2.8	7.5	2.9	-	-	-	3.6
전혀 할 수 없음	1.9	22.7	0.3	0.3	2.1	7.8	13.8	1.0	4.9	3.8	5.4	22.6	-	-	2.0	4.9
식사하기																
스스로 할 수 있음	97.5	68.6	95.9	99.0	95.8	84.8	67.4	93.4	96.2	94.3	93.4	74.3	100.0	100.0	92.9	92.4
일부도움 필요	0.9	10.5	2.1	0.4	2.1	6.6	17.3	5.2	2.8	2.0	1.6	5.8	-	-	2.6	2.9
중간정도 도움 필요	0.7	4.6	0.9	-	-	2.7	1.6	0.9	-	-	2.5	5.7	-	-	2.6	1.3
대부분 도움 필요	0.4	4.6	0.8	-	-	3.6	8.8	0.4	-	3.7	2.5	11.3	-	-	-	1.3
전혀 할 수 없음	0.6	11.7	0.3	0.7	2.1	2.2	5.0	-	1.0	-	-	2.9	-	-	2.0	2.1
화장실이용하기																
스스로 할 수 있음	95.4	65.0	98.5	98.0	95.8	82.5	64.1	96.6	95.2	94.5	91.9	74.4	100.0	100.0	92.9	91.0
일부도움 필요	1.3	6.9	0.5	0.8	2.1	6.3	21.5	2.9	3.0	1.0	2.8	3.2	-	-	2.6	2.5
중간정도 도움 필요	0.6	4.9	0.3	0.7	-	3.3	6.0	-	-	1.8	2.6	-	-	-	2.6	1.4
대부분 도움 필요	1.0	5.9	0.7	0.2	-	3.0	5.1	0.4	-	1.9	2.7	5.6	-	-	-	1.7
전혀 할 수 없음	1.7	17.4	-	0.3	2.1	4.9	3.3	-	1.8	0.8	-	16.8	-	-	2.0	3.5
계단오르내리기																
스스로 할 수 있음	79.0	39.3	85.8	91.8	89.4	89.6	90.8	97.0	75.3	61.5	50.8	68.7	100.0	87.2	95.6	76.9
일부도움 필요	9.3	15.6	7.8	4.6	4.4	3.5	2.5	1.5	10.2	20.0	8.0	5.7	-	8.0	2.5	8.8
중간정도 도움 필요	5.2	9.1	2.8	2.4	2.0	1.3	3.4	1.0	2.8	7.5	14.7	6.1	-	4.8	-	4.8
대부분 도움 필요	2.1	9.1	1.9	0.9	2.1	2.7	-	0.5	4.7	8.2	18.4	2.7	-	-	-	3.2
전혀 할 수 없음	4.3	27.0	1.6	0.6	2.1	2.8	3.3	-	7.1	2.8	8.2	16.7	-	-	2.0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표 6-2-2〉 계속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옷입고 벗기																
스스로 할 수 있음	86.2	37.1	94.7	96.6	86.3	66.7	41.7	91.4	87.5	88.7	84.8	74.7	91.3	94.7	92.7	80.7
일부도움 필요	6.8	19.3	2.7	2.1	5.8	11.8	32.6	6.7	5.9	3.8	1.3	2.6	-	5.3	2.8	7.7
중간정도 도움 필요	3.3	10.2	1.5	0.5	3.7	8.5	9.6	1.1	1.8	1.8	9.8	3.2	8.7	-	2.6	4.0
대부분 도움 필요	1.9	12.0	0.7	0.4	2.1	7.1	6.0	0.8	1.7	4.8	4.1	8.1	-	-	-	3.2
전혀 할 수 없음	1.9	21.4	0.5	0.5	2.1	6.0	10.1	-	3.1	0.8	-	11.4	-	-	2.0	4.3
배변(대변)조절·참기																
스스로 할 수 있음	97.0	71.7	99.5	98.5	97.9	83.4	79.7	95.8	94.4	97.2	98.4	77.1	100.0	28.7	90.1	92.6
일부도움 필요	0.7	7.1	0.4	0.8	-	7.1	7.7	2.6	2.9	-	1.6	8.8	-	-	5.4	2.1
중간정도 도움 필요	0.4	3.5	-	0.2	-	2.0	3.4	1.6	1.0	-	-	2.7	-	-	2.6	0.9
대부분 도움 필요	0.6	3.6	-	0.4	-	2.9	6.0	-	0.9	2.8	-	2.9	-	-	-	1.1
전혀 할 수 없음	1.4	14.2	0.2	0.1	2.1	4.7	3.3	-	0.9	-	-	8.4	-	71.3	2.0	3.4
배뇨(소변)조절·참기																
스스로 할 수 있음	96.4	69.4	99.0	97.5	94.0	84.0	78.1	96.4	93.3	97.2	97.1	79.9	100.0	83.3	92.7	92.2
일부도움 필요	0.9	8.3	0.6	1.2	3.9	6.0	11.7	2.0	1.9	-	1.3	6.1	-	-	5.4	2.4
중간정도 도움 필요	0.5	4.9	-	0.7	-	2.4	3.4	1.6	1.0	-	-	-	-	-	-	1.2
대부분 도움 필요	0.5	3.8	0.2	0.5	-	3.2	3.5	-	2.0	2.8	1.6	2.9	-	-	-	1.1
전혀 할 수 없음	1.7	13.7	0.2	0.1	2.1	4.3	3.3	-	1.8	-	-	11.2	-	16.7	2.0	3.1
보행하기																
스스로 할 수 있음	85.0	49.0	88.5	93.9	89.4	91.8	96.7	98.5	83.5	82.3	66.8	71.1	100.0	89.2	98.0	82.5
일부도움 필요	7.3	12.3	6.2	4.3	6.4	4.4	-	1.1	7.0	12.3	10.6	8.9	-	2.5	-	7.1
중간정도 도움 필요	2.5	8.8	1.6	0.8	2.1	0.3	1.4	0.4	1.9	1.0	12.2	5.6	-	8.3	-	2.9
대부분 도움 필요	1.6	9.0	2.9	0.3	-	2.1	1.9	-	4.7	3.6	10.4	2.7	-	-	-	2.7
전혀 할 수 없음	3.6	20.9	0.8	0.6	2.1	1.5	-	-	2.9	0.8	-	11.6	-	-	2.0	4.8
의자⇔침상 옮겨앉기																
스스로 할 수 있음	95.1	66.7	98.7	98.8	97.9	96.1	96.7	99.6	92.2	94.6	93.1	79.8	100.0	100.0	98.0	92.4
일부도움 필요	1.5	7.6	0.5	0.7	-	1.7	1.4	0.4	4.0	2.0	1.5	3.2	-	-	-	2.1
중간정도 도움 필요	0.7	4.8	0.3	0.2	-	-	-	-	-	-	2.8	5.4	-	-	-	1.1
대부분 도움 필요	1.0	4.1	0.3	-	-	1.0	1.9	-	2.8	3.4	1.3	5.7	-	-	-	1.3
전혀 할 수 없음	1.7	16.9	0.1	0.3	2.1	1.1	-	-	1.0	-	1.3	5.9	-	-	2.0	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외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도 조사하였다. 조사도구는 2004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를 참고하여 모든 항목(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상점에서 물건사기, 금전관리하기, 전화사용하기, 약챙겨먹기)에서 응답유형을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보다 경증인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부분 도움 이상의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다. 또 기존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항목들보다 항목간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항목들은 재가장애인의 기능상태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챙겨먹기와 몸단장하기가 각각 14.4%, 18.3% 정도만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쉬운 항목들로 뽑혔고, 반면 식사준비(34.8%), 집안일하기(34.4%), 교통수단이용하기(32.0%), 빨래하기(31.8%)가 10개 항목 중에서 가장 수행능력상에 문제가 많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장애는 식사준비, 집안일하기, 몸단장하기에서 그리고 발달장애는 금전관리하기, 빨래하기, 상점이나 가게에서 물건사기, 약챙겨먹기, 전화사용하기, 근거리외출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과 마찬가지로 15개의 장애유형 중에 뇌병변장애와 발달장애는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지원이 필요함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6-2-3〉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몸단장하기																
완전자립	90.2	40.4	89.7	96.6	77.4	58.6	40.0	82.6	88.2	92.2	81.2	71.8	91.3	91.7	92.9	81.7
부분도움	7.9	36.2	9.3	2.9	16.5	30.5	38.6	15.7	9.8	4.1	14.9	6.1	8.7	8.3	5.2	13.0
완전도움	1.92	23.4	1.0	0.5	6.1	10.9	21.4	1.8	1.9	3.6	3.9	22.1	-	-	2.0	5.3
집안일하기																
완전자립	73.5	24.5	82.3	84.5	80.1	38.5	17.3	59.9	61.5	60.9	50.8	62.9	82.0	66.6	74.3	65.6
부분도움	20.4	30.9	12.6	11.6	9.7	33.7	32.5	25.8	27.7	28.7	28.1	8.8	18.0	26.1	23.8	21.3
완전도움	6.1	44.6	5.1	3.9	10.2	27.8	50.2	14.3	10.9	10.5	21.1	28.3	-	7.4	2.0	13.1
식사준비하기																
완전자립	76.0	24.0	77.8	82.7	76.3	27.5	7.3	54.8	66.1	66.1	48.4	62.9	73.3	64.9	65.8	65.2
부분도움	17.9	29.7	15.7	12.9	9.5	40.0	37.6	28.6	22.1	23.4	33.0	8.8	26.7	27.6	27.0	20.8
완전도움	6.1	46.3	6.6	4.4	14.3	32.5	55.0	16.6	11.8	10.5	18.7	28.3	-	7.5	7.2	14.0
탈레하기																
완전자립	77.8	28.9	81.0	83.0	80.4	34.5	10.3	64.7	70.5	62.7	55.1	66.0	91.3	69.9	77.5	68.1
부분도움	15.9	23.0	12.8	11.9	9.9	29.6	26.4	21.0	21.7	26.9	27.8	5.7	8.7	22.3	18.0	17.5
완전도움	6.3	48.1	6.2	5.1	9.7	35.9	63.3	14.3	7.8	10.4	17.2	28.3	-	7.8	4.5	14.3
근거리이탈하기																
완전자립	86.5	43.5	82.7	88.8	86.1	54.6	30.3	78.2	81.9	83.2	60.3	71.8	100.0	94.4	87.4	77.7
부분도움	9.2	24.1	12.6	9.6	9.9	26.8	38.7	12.8	10.3	12.0	26.6	2.6	-	5.6	8.1	13.1
완전도움	4.4	32.4	4.8	1.6	4.0	18.6	31.0	9.0	7.8	4.7	13.1	25.6	-	-	4.4	9.2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80.9	29.3	72.9	79.4	74.3	23.6	10.6	60.6	71.8	69.4	59.9	71.8	100.0	81.9	71.8	68.0
부분도움	13.5	29.5	19.2	17.0	15.7	40.1	44.0	25.8	19.5	23.1	22.6	2.6	-	18.1	18.4	19.1
완전도움	5.6	41.2	7.8	3.6	10.0	36.3	45.3	13.6	8.7	7.5	17.5	25.6	-	-	9.8	12.9
물건사기																
완전자립	91.8	47.5	83.0	85.6	74.9	22.5	13.7	60.3	84.5	90.1	82.7	71.8	100.0	94.1	82.6	78.3
부분도움	5.0	20.3	11.6	11.3	13.5	46.0	51.1	27.2	11.4	5.1	10.4	11.6	-	5.9	12.8	12.2
완전도움	3.2	32.3	5.4	3.1	11.6	31.5	35.2	12.6	4.1	4.7	6.9	16.6	-	-	4.5	9.5
금전관리하기																
완전자립	88.7	42.0	75.6	73.8	59.4	9.2	3.5	48.4	85.4	80.5	78.5	77.4	91.3	84.6	73.2	72.3
부분도움	8.4	23.2	18.4	20.8	25.2	31.0	24.7	29.1	8.7	13.7	17.6	2.9	8.7	15.4	16.9	15.3
완전도움	2.9	34.8	6.0	5.4	15.4	59.8	71.8	22.5	5.9	5.7	3.9	19.8	-	-	9.9	12.4
전화사용하기																
완전자립	94.0	52.1	81.6	49.9	60.0	26.2	22.3	70.1	92.3	91.5	89.2	74.4	90.8	90.6	82.4	76.7
부분도움	4.4	20.8	14.5	29.5	17.0	41.7	30.1	20.7	4.8	3.8	10.8	14.4	9.2	5.2	15.7	13.4
완전도움	1.6	27.1	3.9	20.6	23.0	32.2	47.6	9.2	2.9	4.7	-	11.2	-	4.2	2.0	9.9
약쟁겨먹기																
완전자립	96.5	59.2	91.9	93.7	72.4	41.9	21.2	69.6	95.2	92.5	92.4	74.6	100.0	97.3	80.5	85.6
부분도움	2.3	18.7	6.1	5.2	21.8	37.9	30.1	22.5	3.9	3.8	6.6	14.2	-	2.7	17.5	8.5
완전도움	1.3	22.0	2.0	1.2	5.8	20.2	48.7	7.8	1.0	3.7	1.0	11.2	-	-	2.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3. 일상생활에서의 도움필요 정도

재가장애인들이 집안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재가장애인의 47.8%가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대부분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16.8%로 전체의 64.6% 정도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필요로 하는 경우는 35.4%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6-2-4〉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혼자서 스스로	60.3	14.7	63.2	45.2	43.8	7.1	1.8	35.9	53.0	42.2	39.6	60.2	82.0	50.2	46.0	47.8
대부분 혼자서	17.5	9.2	12.8	28.7	23.1	10.8	7.2	15.3	13.2	26.2	13.8	5.8	-	24.0	31.0	16.8
일부도움 필요	14.8	24.8	15.4	19.5	23.3	37.6	35.8	23.2	19.5	19.4	26.1	8.4	18.0	19.9	15.9	18.8
대부분 필요	4.5	21.6	6.1	5.4	6.0	26.1	29.5	20.2	8.6	6.6	16.3	-	-	6.0	2.6	9.2
거의 남의도움 필요	2.8	29.7	2.5	1.2	3.9	18.4	25.7	5.3	5.8	5.7	4.2	25.6	-	-	4.5	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4. 주로 도와주는 사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가장애인 중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표 6-2-5>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86.7%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100.0%), 뇌병변장애(96.2%), 정신지체(95.3%), 간질장애(95.%)의 경우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청각장애(76.7%)의 경우에는 다른 장애에 비해 도움 필요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6-2-5〉 도와주는 사람 유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81.5	96.2	80.9	76.7	86.8	95.3	100.0	91.1	94.1	80.8	89.7	93.2	100.0	84.9	95.3	86.7
없다	18.5	3.8	19.1	23.3	13.2	4.7	-	8.9	5.9	19.2	10.3	6.8	-	15.1	4.7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18)	(588)	(208)	(319)	(28)	(269)	(57)	(130)	(50)	(63)	(47)	(14)	(2)	(20)	(21)	(2,834)
전국추정수	395,099	226,981	80,713	122,575	10,793	103,043	22,465	49,456	18,946	24,104	18,104	5,331	786	7,707	7,863	1,093,966

주: 비해당(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2,623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이 90.9%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은 주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의 부담이 매우 높임을 알 수 있다. 그 외 무료 또는 유료 가정봉사원, 간병인, 활동보조인의 이용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보면, 배우자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유형은 장루·요루장애였고,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로 나타났다.

〈표 6-2-6〉 도움 주는 사람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배우자	59.0	52.8	53.8	44.6	46.7	7.6	-	17.2	56.5	66.9	63.9	60.7	48.6	87.7	26.0	47.1
부모	6.3	9.8	4.5	4.5	33.1	68.7	93.0	52.3	6.6	8.0	9.2	15.2	-	-	59.3	18.3
자녀(며느리, 사위)	23.5	24.8	28.7	41.9	4.1	2.7	-	4.5	30.2	19.2	12.3	24.1	51.4	5.9	-	21.7
형제·자매	3.0	2.8	2.8	1.1	4.0	9.9	4.0	9.6	4.5	-	2.3	-	-	-	9.9	3.8
조부모	0.3	0.2	-	-	3.8	4.5	1.2	-	-	-	-	-	-	-	-	0.7
손자녀	0.7	0.8	1.8	1.6	-	-	-	-	-	-	-	-	-	-	6.4	0.8
기타 가족	0.4	0.4	1.2	0.5	-	2.1	-	1.9	-	-	-	-	-	-	-	0.7
친척	0.6	0.3	-	1.2	3.7	1.6	-	1.5	-	-	2.5	-	-	-	-	0.7
친구	0.6	-	0.7	-	-	0.4	-	-	-	-	-	-	-	-	-	0.3
이웃	1.7	1.0	2.0	2.0	-	1.3	-	1.5	-	2.1	-	-	-	-	-	1.4
유료 가정봉사원, 간병인, 활동보조인	2.2	5.8	0.6	-	4.5	0.4	-	2.5	-	-	-	-	-	-	-	2.4
무료 가정봉사원, 간병인, 활동보조인	1.4	0.6	3.3	1.7	-	-	-	2.1	2.2	3.8	7.0	-	-	-	4.7	1.4
기타	0.2	0.5	0.6	0.9	-	0.8	1.8	6.9	-	-	2.8	-	-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30)	(566)	(168)	(243)	(24)	(257)	(57)	(118)	(47)	(51)	(42)	(13)	(2)	(17)	(20)	(2,455)
전국추정수	322,141	218,423	65,273	93,596	9,364	98,219	22,465	45,070	17,837	19,483	16,236	4,970	786	6,542	7,496	947,901

주: 비해당 3,010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현재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89.3%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봤듯이 동일하게 가족이 주 도움 지원체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6-2-7〉 도와주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8.3	89.3	88.3	86.8	88.3	95.8	100.0	80.0	92.8	90.2	85.1	100.0	100.0	100.0	90.4	89.3
아니오	11.7	10.7	11.7	13.2	11.7	4.2	-	20.0	7.2	9.8	14.9	-	-	-	9.6	1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30)	(566)	(168)	(243)	(24)	(257)	(57)	(118)	(47)	(51)	(42)	(13)	(2)	(17)	(20)	(2,455)
전국추정수	322,141	218,423	65,273	93,596	9,364	98,219	22,465	45,070	17,837	19,483	16,236	4,970	786	6,542	7,496	947,901

주: 비해당 3,010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도와주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물어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99.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유형 별로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동거인들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표 6-2-8〉 동거인들로부터의 지속적인 도움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9.0	99.2	100.0	100.0	100.0	98.8	100.0	98.9	97.7	98.2	100.0	100.0	100.0	100.0	100.0	99.2
아니오	1.0	0.8	-	-	-	1.2	-	1.1	2.3	1.8	-	-	-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32)	(503)	(149)	(209)	(21)	(244)	(57)	(93)	(44)	(46)	(36)	(13)	(2)	(17)	(18)	(2,184)
전국추정수	284,308	194,290	57,631	80,769	8,266	93,337	22,465	36,065	16,553	17,583	13,820	4,970	786	6,542	6,776	844,161

주: 비해당 3,277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재가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주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나 장애인을 돌보는 데는 별로 불편함이 없음’이 42.0%, ‘좋은 편이다’가 41.8%로 대체로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건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좋은 편	44.6	35.8	40.5	43.7	48.1	44.1	68.0	28.5	51.3	49.0	23.8	46.8	48.6	26.2	33.4	41.8
좋은 편은 아니나, 별 불편은 없음	41.4	44.3	46.2	42.2	26.8	40.0	27.1	48.5	39.5	33.7	47.4	37.3	51.4	58.7	21.3	42.0
건강이 나빠 돌보는 데 어려움	14.0	19.9	13.3	14.1	25.1	15.9	5.0	23.0	9.2	17.4	28.9	15.8	-	15.1	45.3	1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96)	(526)	(161)	(237)	(23)	(253)	(56)	(104)	(46)	(49)	(38)	(13)	(2)	(17)	(19)	(2,340)
전국추정수	308,699	202,792	62,357	91,314	8,943	96,658	22,069	39,916	17,441	18,741	14,644	4,970	786	6,542	7,143	903,015

주: 비해당 3,010건 및 무응답 116건 제외

의료 또는 무료 가정봉사원이나 간병인을 제외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들이 장애인을 돌봄으로써 자신의 소득활동에 지장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72.4%가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동이 불편하고, 인지기능이 부족하고, 수술이나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하는 장애유형(뇌병변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은 도와주는 사람의 소득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6%였다. 따라서 장애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2-10〉 도움 주는 사람의 소득활동 지장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지장 있다	21.4	36.6	20.3	15.5	17.5	36.3	56.2	24.9	41.1	31.9	30.0	67.4	-	12.0	24.5	27.6
지장 없다	78.6	63.4	79.7	84.5	82.5	63.7	43.8	75.1	58.9	68.1	70.0	32.6	100.0	88.0	75.5	7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30)	(566)	(168)	(243)	(24)	(256)	(57)	(116)	(47)	(50)	(42)	(13)	(2)	(17)	(20)	(2,451)
전국추정수	322,141	218,423	65,273	93,596	9,364	97,844	22,465	44,319	17,837	19,172	16,236	4,970	786	6,542	7,496	946,464

주: 비해당 3,010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가족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재가장애인의 경우, 현재 제공받는 도움이 충분한지를 알아본 결과 <표 6-2-11>을 보면, 충분과 불충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나 충분이 57.5%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2-11〉 다른 사람 도움의 충분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충분하다	10.9	8.9	8.5	7.2	8.8	6.4	5.2	5.1	13.2	16.6	7.2	-	-	-	3.6	8.9
충분한 편이다	52.9	41.3	54.6	59.6	65.3	42.6	39.7	41.7	48.5	43.4	39.6	38.8	100.0	60.9	35.2	48.6
부족한 편이다	30.4	40.0	31.6	29.5	17.4	41.9	39.9	34.9	27.9	31.4	40.3	61.2	-	39.1	42.4	34.5
매우 부족하다	5.8	9.9	5.2	3.6	8.5	9.1	15.2	18.3	10.3	8.6	12.8	-	-	-	18.7	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29)	(565)	(167)	(243)	(24)	(256)	(57)	(116)	(47)	(51)	(42)	(13)	(2)	(17)	(20)	(2,449)
전국추정수	321,770	218,060	64,874	93,596	9,364	97,844	22,465	44,312	17,837	19,483	16,236	4,970	786	6,542	7,496	945,635

주: 비해당 3,010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5. 유급봉사자 활용 현황

가족이나 외부인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유급의 봉사자나 간병인을 두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세분해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도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2-12〉 도움대가 지불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2.5	6.3	0.6	0.4	-	0.4	-	2.5	-	-	2.5	-	-	-	-	2.6
아니오	97.5	93.7	99.4	99.6	100.0	99.6	100.0	97.5	100.0	100.0	97.5	100.0	100.0	100.0	100.0	97.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28)	(564)	(168)	(241)	(24)	(255)	(56)	(116)	(47)	(51)	(42)	(13)	(2)	(17)	(20)	(2,444)
전국추정수	321,351	217,560	65,273	92,788	9,364	97,479	22,072	44,309	17,837	19,483	16,236	4,970	786	6,542	7,496	943,546

주: 비해당 3,010건 및 무응답 12건 제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유료로 받는 재가장애인에 대해 가족이나 외부인이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 도와주는지 그 일수를 알아보면, 2/3 정도는 25일 이상 즉, 거의 한 달 내내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도움을 주는 경우 월 평균 일수는 24.7일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 호흡기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가 한달 평균 25일 이상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6-2-13〉 월 평균 도움 일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일 이하	5.7	8.1	-	-	-	-	-	-	-	-	-	-	-	-	-	6.5
6-24일	28.9	5.7	100.0	100.0	-	-	-	-	-	-	-	-	-	-	-	16.1
25일 이상	65.4	86.3	-	-	-	-	-	100.0	-	-	100.0	-	-	-	-	77.4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	-	100.0	-	-	-	-	100.0
(N)	(20)	(35)	(1)	(1)	-	-	-	(3)	-	-	(1)	-	-	-	-	(61)
전국추정수	8,045	13,690	388	367	-	-	-	1,118	-	-	402	-	-	-	-	24,010

주: 비해당 5,404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장애인을 유급으로 도와주는 경우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면, 전체적으로 20시간 이상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 시간은 평균적으로 14.9시간을 보이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정신장애, 뇌병변장애의 시간이 길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2-14〉 일일 평균 도움 시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5시간 이하	40.0	18.0	-	100.0	-	-	-	-	-	-	-	-	-	-	-	25.3
6-19시간	34.6	20.2	100.0	-	-	-	-	32.6	-	-	100.0	-	-	-	-	28.1
20시간 이상	25.4	61.9	-	-	-	-	-	67.4	-	-	-	-	-	-	-	46.6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	-	100.0	-	-	-	-	100.0
(N)	(20)	(34)	(1)	(1)	-	-	-	(3)	-	-	(1)	-	-	-	-	(60)
전국추정수	8,045	13,197	388	367	-	-	-	1,118	-	-	402	-	-	-	-	23,517

주: 비해당 5,404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유급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 월 평균 지불액을 알아본 결과, 대체로 3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월 평균 금액은 63만 3천원이었으며, 최저액은 1만원이고 최고액은 월 200만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와 호흡기장애의 금액이 평균 이상이었으며,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는 50만원 이하였다.

〈표 6-2-15〉 월평균 지불액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0만원 이하	5.2	6.1	-	-	-	-	-	-	-	-	-	-	-	-	-	5.2
11~30만원	35.9	27.7	-	100.0	-	-	-	100.0	-	-	-	-	-	-	-	34.2
31~50만원	22.5	15.0	-	-	-	-	-	-	-	-	-	-	-	-	-	17.8
51만원 이상	36.4	51.1	-	-	-	-	-	-	-	-	100.0	-	-	-	-	42.8
계	100.0	100.0	100.0	100.0	-	-	-	100.0	-	-	100.0	-	-	-	-	100.0
(N)	(19)	(33)	(1)	(1)	-	-	-	(3)	-	-	(1)	-	-	-	-	(58)
전국추정수	7,636	12,824	388	367	-	-	-	1,118	-	-	402	-	-	-	-	22,735

주: 비해당 5,404건 및 무응답 4건 제외

6. 도움을 줄 외부인 활용 의사

재가장애인에게 가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 없다’가 62.0%로 가장 많았지만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35.0%로 나타나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에 따르는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유료라도 이용하겠다’고 한 경우는 2.9%로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외부인의 도움에 있어서는 간질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의 욕구가 비교적 높아 장애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유급으로라도 봉사자를 이용할 의사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6-2-16〉 도와줄 외부인 활용 의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료라면 이용하겠다	28.8	50.2	32.4	21.6	40.4	38.3	44.3	34.4	34.4	35.6	43.9	28.3	-	30.0	62.9	35.0
유료라도 이용하겠다	2.1	5.4	1.0	2.6	3.9	2.0	8.1	1.3	2.1	4.5	4.3	6.9	-	-	-	2.9
필요없다	69.1	44.4	66.6	75.8	55.7	59.7	47.6	64.2	63.4	60.0	51.8	64.8	100.0	70.0	37.1	6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15)	(588)	(207)	(317)	(28)	(268)	(57)	(129)	(50)	(63)	(47)	(14)	(2)	(20)	(21)	(2,826)
전국추정수	393,893	226,981	80,220	121,799	10,793	102,668	22,465	49,076	18,946	24,104	18,104	5,331	786	7,707	7,863	1,090,736

주: 비해당 2,623건 및 무응답 17건 제외

제 3 절 재활보조기구

1. 재활보조기구 사용 현황

장애인에게 있어서 재활보조기구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재가장애인이 휠체어나 안경, 보청기 등의 재활보조기구를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45.8%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의 조사결과(39.6%)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등 전통적인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오른데다가, 2000년 이후 호흡기장애 및 장루·요루장애 등 신규 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된 데 따른 상승효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장루·요루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9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의 순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정신지체,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의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해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는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3-1〉 재활보조기구 소지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43.2	63.2	68.9	63.7	18.1	3.5	5.3	1.5	25.8	19.4	61.4	20.5	18.0	97.5	11.3	45.8
없다	56.8	36.8	31.1	36.3	81.9	96.5	94.7	98.5	74.2	80.6	38.6	79.5	82.0	2.5	88.7	5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5)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6)
전국추정수	996,674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1,057

장애유형별로 재가장애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6-3-2>와 같다. 먼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을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지팡이(21.0%)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목발(9.7%), 척추보조기(6.6%), 수동휠체어(4.0%)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이동관련 재활보조기구의 소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5년부터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급여 품목에 포함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의 소지율은 각각 0.9%, 0.8%, 1.2%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보급률이 낮았다.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이고 있는 재활보조기구는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으로 51.0%의 소지율을 보였으며, 그 외에는 의안 13.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5.9%의 순이었다. 또한 청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에 있어서는 보청기가 59.7%로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인공후두(성대)가 2.9%로서 가장 높은 소지율을 보였다.

신장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3.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호흡기가 22.7%, 그리고 기타의 재활보조기구가 40.7%의 소지율을 보였다. 또한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이 가장 높은 장루·요루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3.9%, 피부보호관 7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지저귀매트 1.9%, 욕창방지용 매트 1.7%, 목욕용 의자 0.7%의 소지율을 보였다.

〈표 6-3-2〉 소지 재활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인용	상지의지	2.2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59.7
및	하지의지	2.0		화상전화기	0.3
뇌병변장애인용	척추보조기	6.6		골도전화기	0.7
	상지보조기	0.8		문자전화기	0.5
	하지보조기	3.1		문자송수신기	0.5
	정형외과용 구두	1.2		음성증폭기	0.5
	지팡이	21.0		인공와우	0.3
	목발	9.7		TV 자막수신기	2.8
	보행기	2.2		기타	0.5
	자세보조기구	1.0			(224,091)
	전동휠체어	0.9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2.9
	수동휠체어	4.0		기타	0.0
	전동스쿠터	0.8			(14,938)
	기타	3.3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3.1
		(969,484)		기타	1.2
시각장애인용	안경(콘택트렌즈)	51.0			(33,435)
	저시력보조기	4.3	호흡기장애	산소호흡기	22.7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5.9		기타	40.7
	의안	13.2			(28,100)
	스크린 리더	0.4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3.9
	화면 확대기	1.6		피부보호관	75.4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0.2		기타	18.6
	음성손목/탁상시계	3.5			(14,634)

〈표 6-3-2〉 계속

구 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 분	소지 재활보조기구	비율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0	기타	욕창방지용매트	1.7
	기타	4.7		기저귀매트	1.9
		(214,096)		목욕용 의자	0.7
안면장애	압력웃	0.0		기타	1.6
	기타	0.0			(1,304,117)
		(2,874)			

주: 중복응답비율이며, ()안은 전국 추정수임.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어느 정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비교적 ‘매우 자주 사용한다’가 55.2%,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는 16.8%로 전체적으로 72%의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장 높은 재활보조기구 소지율을 보였던 장루·요루장애를 비롯하여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내부 장애인의 재활보조기구 사용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3〉 재활보조기구 현재 사용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자주 사용	46.6	52.3	72.6	63.0	40.8	38.3	74.6	32.3	70.9	66.4	60.3	14.9	0.0	84.9	21.6	55.2
자주 사용하는 편	19.8	20.3	12.9	8.1	11.0	31.2	0.0	0.0	14.6	14.2	25.2	0.0	100.0	5.8	0.0	16.8
자주 사용안함	15.2	11.0	8.4	10.2	11.1	19.5	0.0	35.2	0.0	9.4	8.36	28.5	0.0	6.4	50.2	12.5
거의 사용않음	17.8	16.4	6.1	6.11	37.1	11.0	25.4	32.5	14.5	10.0	6.2	56.5	0.0	3.0	28.2	1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22)	(437)	(390)	(378)	(9)	(10)	(4)	(3)	(28)	(21)	(46)	(7)	(2)	(39)	(4)	(2,500)
전국추정수	430,654	168,045	151,199	146,132	3,591	3,879	1,660	1,126	10,390	8,098	17,993	2,747	786	15,083	1,651	963,034

주: 비례당 2,965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재활보조기구를 잘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사용이 번거로워서’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25.7%, ‘별 효과가 없어서’ 2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재활보조기구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3-4〉 재활보조기구 사용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사용이 번거로워	35.8	31.8	36.1	31.4	0.0	63.9	100.0	100.0	0.0	25.2	27.5	32.6	-	68.0	0.0	34.0
미관상 흠해서	13.2	12.0	12.3	5.5	0.0	0.0	0.0	0.0	0.0	23.2	14.8	0.0	-	0.0	68.5	11.6
별 효과가 없어	12.3	15.6	44.5	50.2	77.1	36.1	0.0	0.0	53.7	0.0	14.8	67.4	-	32.0	31.5	22.7
사용할 필요가 없어	34.4	32.8	5.1	2.7	0.0	0.0	0.0	0.0	46.3	51.5	29.6	0.0	-	0.0	0.0	25.7
기타	4.8	7.9	1.9	10.3	22.9	0.0	0.0	0.0	0.0	0.0	13.3	0.0	-	0.0	0.0	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N)	(374)	(118)	(56)	(109)	(4)	(3)	(1)	(2)	(4)	(4)	(7)	(6)	-	(3)	(3)	(694)
전국추정수	144,690	45,109	22,014	42,194	1,730	1,183	421	762	1,507	1,570	2,608	2,337	-	1,408	1,295	268,828

주: 비례당 4,769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2. 필요한 재활보조기구

현재 재활보조기구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있다면 그 종류는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는 <표 6-3-5>와 같다.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지팡이에 대한 수요가 전체의 20.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목발(7.3%), 척추보조기(6.4%), 수동휠체어(4.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조사에서 30.7%로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던 전동휠체어는 2005년도 조사에서는 3.2%로 수요가 급감한 것이 특히 할만한 결과이다.

시각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안경(콘택트렌즈)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실명자에게 필요한 의안에 대한 수요도 1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용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재활보조기구라 할 수 있는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아 71.8%를 보이고 있으며, 언어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인 인공후두에 대한 수요는 5.5%였다.

신장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복막투석기구가 13.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호흡기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산소호흡기가 46.7%, 그리고 기타의 재활보조기구가 43.3%의 수요를 나타냈다. 또한 장루·요루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의 경우에는 장루주머니가 93.9%, 피부보호관 8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정 장애 유형과 관계없는 재활보조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품목 중에서는 기저귀매트 2.8%, 목욕용 의자 2.8%, 욕창방지용 매트 2.7%의 수요를 보였다.

〈표 6-3-5〉 필요 재활보조기구 종류

(단위: %, 명)

구분	필요 재활보조기구	비율	구분	필요 재활보조기구	비율
지체장애인용	상지의지	2.3	청각장애용	보청기	71.8
및	하지의지	2.0		화상전화기	5.0
뇌병변장애인용	척추보조기	6.4		골도전화기	2.5
	상지보조기	0.9		문자전화기	6.4
	하지보조기	2.9		문자송수신기	1.9
	정형외과용 구두	3.2		음성증폭기	2.4
	지팡이	20.6		인공와우	3.4
	목발	7.3		TV 자막수신기	10.0
	보행기	2.7		기타	0.9
	자세보조기구	1.7			(224,481)
	전동휠체어	3.2	언어장애	인공후두(성대)	5.5
	수동휠체어	4.7		기타	0.0
	전동스쿠터	2.7			(14,938)
	기타	3.9	신장장애	복막투석기구	13.2
		(969,073)		기타	1.2
시각장애용	안경(콘택트렌즈)	53.4			(33,435)
	저시력보조기	7.0	호흡기장애	산소호흡기	46.7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7.1		기타	43.3
	의안	14.4			(28,100)
	스크린 리더	2.1	장루·요루장애	장루주머니	93.9
	화면 확대기	4.8		피부보호관	81.3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1.7		기타	18.6
	음성손목/탁상시계	9.2			(14,634)
	시각장애인용 안내견	0.9	기타	욕창방지용매트	2.7
	기타	6.6		기저귀매트	2.8
		(215,679)		목욕용 의자	2.8
안면장애	압력웃	0.0		기타	1.9
	기타	0.0			(1,303,371)
		(2,874)			

주: 중복응답비율이며, ()안은 전국 추정수임.

필요한 재활보조기구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파악한 결과 다음의 <표 6-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68.3%로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 가장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적절한 재활보조기구가 없어서’ 6.7%, ‘사용이 불편하여’ 5.8%, ‘미관상 흠해서’ 5.6%, ‘구입처를 몰라서’ 5.6% 등의 순으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결국 장애인이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고가의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따르

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6-3-6〉 필요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구입비용 때문에	70.6	67.2	63.8	64.1	75.2	83.1	100.0	50.6	63.6	77.3	86.9	100.0	-	51.7	-	68.3
구입처를 몰라서	3.7	6.3	7.0	8.1	24.8	0.0	0.0	0.0	9.3	0.0	4.3	0.0	-	0.0	-	5.6
사용이 불편	6.1	4.6	9.9	4.0	0.0	0.0	0.0	26.2	17.0	0.0	4.4	0.0	-	0.0	-	5.8
미관상 흠해서	8.5	6.8	0.8	2.6	0.0	0.0	0.0	0.0	0.0	0.0	0.0	0.0	-	0.0	-	5.6
별 효과가 없어서	3.3	3.4	4.1	6.5	0.0	0.0	0.0	0.0	0.0	0.0	4.4	0.0	-	0.0	-	4.0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1.1	1.0	2.9	2.2	0.0	0.0	0.0	0.0	0.0	22.7	0.0	0.0	-	0.0	-	1.5
적합한 재활보조 기구가 없어서	5.1	6.5	9.5	10.8	0.0	0.0	0.0	0.0	0.0	0.0	0.0	0.0	-	0.0	-	6.7
기타	1.6	4.2	2.0	1.7	0.0	16.9	0.0	23.2	10.1	0.0	0.0	0.0	-	48.3	-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N)	(383)	(201)	(101)	(182)	(4)	(6)	(2)	(4)	(11)	(4)	(24)	(1)	-	(2)	-	(925)
전국추정수	146,250	77,430	40,027	70,499	1,594	2,496	772	1,477	4,099	1,532	9,124	365	-	958	-	356,535

주: 비혜당 4,530건 및 무응답 11건 제외

3. 정보통신기기 사용 현황

장애인은 대표적인 정보화 소외 계층의 한 부류이다. 휴대폰, 컴퓨터(PC) 및 인터넷 등 가장 보편적인 정보통신기기를 재가장애인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3-7>과 같다. 보유율에 있어서는 휴대폰 55.2%, 컴퓨터(PC) 50.0%, 인터넷 48.3%로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사용률에 있어서는 휴대폰이 81.2%로서 컴퓨터(36.4%) 및 인터넷(36.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휴대폰의 경우 보유율은 안면장애와 신장장애가 7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사용률은 안면장애가 100.0%,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신장장애가 90%대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면장애의 휴대폰 보유 및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컴퓨터(PC)의 경우 보유율은 발달장애(78.0%), 안면장애(66.2%)가 높았고, 사용률은 안면장애(76.4%), 발달장애(50.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와 안면장애의 컴퓨터 보유 및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인터넷의 경우 보유율은 발달장애(78.0%), 안면장애(66.2%)가 높았고, 사용률은 안면장애(76.4%), 발달장애(50.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와 동일하게 발달장애와 안면장애의 인터넷 보유 및 사용률도 가장 높았다.

〈표 6-3-7〉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사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대폰	보유율	69.7	30.5	63.2	39.5	39.5	20.9	5.3	32.0	73.2	59.0	58.2	57.3	75.2	53.9	45.9	55.2
	사용률	88.4	56.0	84.2	74.5	83.4	42.7	21.7	63.6	90.6	81.7	81.0	95.5	100.0	95.4	72.1	81.2
컴퓨터(PC)	보유율	53.9	41.9	50.9	41.3	52.8	50.1	78.0	40.1	58.4	46.1	37.8	49.0	66.2	52.3	56.6	50.0
	사용률	42.3	16.2	35.4	28.4	24.2	46.8	50.5	31.9	44.1	25.5	19.4	24.9	76.4	17.7	49.1	36.4
인터넷	보유율	52.2	41.0	48.6	41.0	50.9	46.7	78.0	37.1	56.4	44.1	36.5	49.0	66.2	47.3	56.6	48.3
	사용률	42.1	16.2	35.1	28.1	25.0	40.6	50.7	31.7	44.8	26.4	17.4	31.6	76.4	19.2	49.1	36.0

정보통신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질문해 보았다. 조사 결과 휴대폰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 62.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컴퓨터(PC)와 인터넷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각각 54.6%, 54.4%,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각각 24.7%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정보통신부 및 민간 기관 등에서 정보화 기기 보급 사업 등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에 대한 장애인의 심리적, 기술적 불편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보통신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필요성이 없어서’의 경우, 휴대폰은 안면장애(100.0%)가, 컴퓨터는 청각장애(64.8%), 뇌병변장애(63.4%)가, 인터넷은 청각장애(65.2%), 뇌병변장애(63.0%)가 가장 많았다.

〈표 6-3-8〉 정보통신기기 보유·사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휴대 폰 ¹⁾	PC ²⁾	인 터 넷 ³⁾	휴대 폰	PC	인 터 넷	휴대 폰	PC	인 터 넷	휴대 폰	PC	인 터 넷	휴대 폰	PC	인 터 넷
구입절차가 많이 들어서	10.3	9.4	6.0	7.3	4.3	2.9	7.3	7.4	5.5	5.2	4.2	3.0	0.0	7.8	5.1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9.5	3.2	6.8	13.3	1.6	3.1	22.7	1.1	2.7	8.8	0.7	1.9	14.8	0.0	2.8
복잡하고 어려워서	5.2	27.1	27.0	7.4	19.5	19.3	7.9	24.2	23.6	5.9	19.4	19.3	0.0	25.7	25.7
필요성이 없어서	54.0	50.8	50.6	68.1	63.4	63.0	59.8	57.3	58.1	77.0	64.8	65.2	85.2	52.2	52.2
배우기 싫어서	0.0	3.4	3.4	0.0	2.9	3.4	0.0	2.7	2.6	0.0	2.7	2.5	0.0	2.3	2.3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0.7	4.2	4.3	3.1	7.8	7.8	1.8	5.5	5.4	1.3	7.9	7.9	0.0	9.5	9.5
기타	0.4	1.7	1.8	0.8	0.5	0.5	0.5	1.8	2.0	1.8	0.2	0.2	0.0	2.4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11)	(1,889)	(1,907)	(510)	(629)	(630)	(219)	(444)	(448)	(370)	(503)	(505)	(30)	(43)	(43)
전국추정수	308,495	720,043	726,642	195,690	241,723	242,103	83,873	170,718	172,224	140,976	192,996	193,729	11,732	16,754	16,754

〈표 6-3-8〉 계속

구분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휴 대 폰 ¹⁾	PC ²⁾	인 터 넷 ³⁾	휴 대 폰	PC	인 터 넷	휴 대 폰	PC	인 터 넷	휴 대 폰	PC	인 터 넷	휴 대 폰	PC	인 터 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2.6	4.5	3.6	5.3	9.4	5.8	12.6	9.6	7.6	9.9	9.1	9.1	13.3	6.5	6.5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15.3	1.5	2.9	17.3	8.9	15.0	19.6	1.8	4.2	22.2	4.3	4.3	22.2	2.3	2.3
복잡하고 어려워서	12.7	28.8	31.5	18.1	45.1	42.5	4.0	21.5	22.5	10.9	29.1	29.1	4.4	20.0	19.0
필요성이 없어서	64.3	46.1	43.1	54.2	13.2	13.3	57.6	56.3	55.0	57.0	42.8	42.8	55.3	59.5	60.5
배우기 싫어서	0.0	1.5	1.4	0.0	6.1	6.1	1.4	4.1	4.0	0.0	7.9	7.9	0.0	6.8	6.8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4.8	17.2	16.1	5.1	14.3	14.4	4.7	6.3	6.2	0.0	5.6	5.6	0.0	3.5	3.5
기타	0.4	0.5	1.3	0.0	3.0	3.0	0.0	0.4	0.4	0.0	1.3	1.3	4.9	1.3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	100.0	100.0	100.0
(N)	(239)	(206)	(219)	(56)	(34)	(34)	(139)	(168)	(170)	(28)	(75)	(75)	(45)	(91)	(91)
전국추정수	91,295	78,078	83,498	22,029	13,461	13,422	53,343	64,392	65,225	10,784	28,559	28,559	17,096	35,023	35,023

주: 1) 비 해당 2,924명 및 무응답 1명 제외

2) 비 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 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표 6-3-8〉 계속

(단위: %, 명)

구분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 대 폰 ¹⁾	PC ²⁾	인 터 넷 ³⁾	휴 대 폰	PC	인 터 넷	휴 대 폰	PC	인 터 넷	휴 대 폰	PC	인 터 넷	휴 대 폰	PC	인 터 넷	휴 대 폰	PC	인 터 넷
정보통신기기																		
구입설치가 많이 들어서	18.5	9.3	7.7	7.0	7.2	7.5	0.0	18.2	0.0	20.1	5.1	5.1	24.8	16.1	8.1	8.2	7.5	5.2
사용비가 많이 들어서	24.5	4.2	5.6	40.6	3.5	3.7	0.0	0.0	18.2	20.7	0.0	0.0	20.5	3.7	11.7	19.9	2.3	4.8
복잡하고 어려워서	5.8	27.8	28.9	6.3	36.0	37.7	0.0	31.6	31.6	18.8	23.4	23.4	0.0	27.2	27.2	7.0	24.7	24.7
필요성이 없어서	51.2	54.6	53.8	33.2	30.1	26.9	100	50.1	50.1	40.4	53.8	53.8	54.7	37.5	41.3	62.1	54.6	54.4
배우기 싫어서	0.0	2.6	2.5	0.0	9.9	10.3	0.0	0.0	0.0	0.0	5.6	5.6	0.0	3.8	3.8	0.1	3.3	3.3
어디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0.0	0.0	0.0	7.1	6.9	7.2	0.0	0.0	0.0	0.0	9.0	9.0	0.0	7.6	3.9	2.0	6.2	6.2
기타	0.0	1.6	1.5	5.7	6.5	6.8	0.0	0.0	0.0	0.0	3.1	3.1	0.0	4.1	4.1	0.7	1.3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3)	(69)	(70)	(15)	(30)	(29)	(3)	(6)	(6)	(19)	(36)	(36)	(24)	(26)	(26)	(2,541)	(4,249)	(4,289)
전국추정수	12,978	26,787	27,181	5,716	11,515	11,008	1,085	2,158	2,158	7,127	13,759	13,759	8,925	9,751	9,751	971,144	1,625,717	1,641,036

주: 1) 비 해당 2,924명 및 무응답 1명 제외

2) 비 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 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정보통신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향후에 정보통신기기를 보유 또는 사용할 계획이 있는 지를 질문한 결과, 정보통신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구입·사용 계획 없음’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던 반면, ‘꼭 구입·사용하겠다’의 응답률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정보통신기기 종류별 응답률을 살펴보면, ‘구입·사용계획 없음’의 경우에는 휴대폰 76.3%, 컴퓨터 81.8%, 인터넷 81.1%로 나타났으며,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의 경우에는 휴대폰 21.6%, 컴퓨터 16.6%, 인터넷 17.1%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도 향후 정보통신기기의 ‘구입·사용 계획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휴대폰의 경우 청각장애(88.6%), 뇌병변장애(80.1%)가, 컴퓨터(PC)는 청각장애(90.5%), 호흡기장애(89.9%), 뇌병변장애(88.7%)가, 그리고 인터넷은 청각장애 및 호흡기장애(90.0%), 뇌병변장애(88.4%)가 가장 많았다.

〈표 6-3-9〉 정보통신기기 향후 보유·사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꼭 구입·사용하겠다	2.7	2.0	2.1	2.8	0.8	0.8	1.0	0.6	0.9	1.3	1.6	1.8	2.8	0.0	0.0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	26.7	21.2	21.6	17.2	10.5	10.8	21.5	14.4	14.7	10.1	7.9	8.2	18.3	21.4	21.4
구입·사용 계획 없음	70.6	76.8	41.6	80.1	88.7	88.4	77.6	85.0	84.4	88.6	90.5	90.0	78.9	78.6	7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10)	(1,889)	(1,907)	(510)	(629)	(630)	(219)	(444)	(448)	(369)	(503)	(505)	(30)	(43)	(43)
전국추정수	308,100	720,043	726,642	195,690	241,723	242,103	83,873	170,718	172,224	146,040	192,996	193,729	11,732	16,754	16,754

주: 1) 비해당 2,924명 및 무응답 3명 제외 2) 비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표 6-3-9〉 계속

(단위: %, 명)

구분	정신지체			발달(자폐)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꼭 구입·사용하겠다	0.7	1.0	2.0	5.6	6.0	8.4	0.7	0.7	1.3	0.0	0.0	0.0	1.9	2.1	2.1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	20.7	14.0	17.7	35.8	51.0	48.4	23.7	17.7	18.7	28.6	20.5	20.5	22.2	12.7	12.7
구입·사용 계획 없음	78.5	84.9	80.3	58.6	43.1	43.2	75.6	81.6	80.0	71.4	79.5	79.5	75.9	85.2	8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9)	(206)	(219)	(56)	(34)	(34)	(139)	(168)	(170)	(28)	(75)	(75)	(45)	(91)	(91)
전국추정수	91,295	78,078	83,498	22,029	13,461	13,422	53,343	64,392	65,225	10,784	28,559	28,559	12,978	35,023	35,023

주: 1) 비해당 2,924명 및 무응답 3명 제외 2) 비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표 6-3-9〉 계속

(단위: %, 명)

구분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휴대폰 ¹⁾	PC ²⁾	인터넷 ³⁾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휴대폰	PC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0.0	1.6	1.5	0.0	6.7	7.0	0.0	13.9	13.9	0.0	3.3	3.3	7.1	0.0	0.0	2.1	1.6	1.8
꼭 구입·사용하겠다	39.8	8.6	8.4	41.2	17.0	17.8	35.2	36.7	36.7	21.9	11.0	11.0	40.0	28.3	28.3	21.6	16.6	17.1
여건이 되면 구입·사용	60.2	89.9	90.0	58.8	76.3	75.2	64.8	49.4	49.4	78.1	85.7	85.7	52.9	71.7	71.7	76.3	81.8	81.1
구입·사용 계획 없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계	(33)	(69)	(70)	(15)	(30)	(29)	(3)	(6)	(6)	(19)	(36)	(36)	(24)	(26)	(26)	(2,539)	(4,249)	(4,289)
전국추정수	12,978	26,787	27,181	5,716	11,515	11,008	1,085	2,158	2,158	7,127	13,759	13,759	8,925	9,751	9,751	970,413	1,625,717	1,641,036

주: 1) 비해당 2,924명 및 무응답 3명 제외 2) 비해당 1,21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3) 비해당 1,175명 및 무응답 2명 제외

제 4 절 보육·교육

9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68.9%가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9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에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로는 장애전담보육시설이 15.3%로 가장 많았고, 일반보육시설 13.3%, 일반보육시설 내 특수반 2.5%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이용률이 25.9%로 가장 높았고, 청각장애는 일반보육시설 이용률이 51.2%로 가장 높았다.

〈표 6-4-1〉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보육시설	15.8	10.7	-	51.2	-	11.1	14.0	-	-	17.4	-	-	-	-	-	13.3
일반보육시설내특수반	-	-	-	-	-	5.8	4.4	-	-	-	-	-	-	-	-	2.5
장애전담보육시설	-	25.9	-	-	18.3	23.0	11.3	-	-	-	-	-	-	-	-	15.3
다니지 않음	84.2	63.4	100.0	48.8	81.7	60.1	70.3	-	-	82.6	-	100.0	-	-	-	6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	-	-	100.0
(N)	(6)	(19)	(2)	(4)	(5)	(18)	(22)	-	-	(5)	-	(1)	-	-	-	(82)
전국추정수	2,286	7,352	747	1,507	2,047	7,112	8,850	-	-	1,930	-	328	-	-	-	32,159

주: 1) 비해당(10세 이상) 5,384건 제외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7시간 이었고, 전체의 71.9%가 6시간~10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월 평균 비용을 보면, 전체의 61.9%가 무료로 이용하였고, 1~5만원 23.0%, 6~10만원 7.9%, 11~20만원 7.2%를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 비용은 3만원이었다.

〈표 6-4-2〉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하루 평균 이용시간 및 월평균 비용

(단위: %, 명)

하루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	
구분	전체	구분	전체
1~5시간	24.0	무료	61.9
6~10시간	71.9	1~5만원	23.0
11~15시간	4.1	6~10만원	7.9
		11~20만원	7.2
계	100.0	계	100.0
(N)	(25)	(N)	(25)
전국추정수	10,001	전국추정수	10,001

주: 1) 비해당(보육시설 다니지 않음 및 10세 이상) 5,441건 제외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9세 이하 장애 아동이 현재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있어서’가 3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장애가 너무 심해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서 등)’가 33.3%, ‘비용 부담 때문에(11.3%)’의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언어장애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33.1%)’ 다니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6-4-3〉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몰라서 시설이 없어서	-	20.9	-	-	-	-	25.4	-	-	-	-	-	-	-	-	10.6
받지 못해서	-	11.0	-	-	32.3	-	-	-	-	-	-	-	-	-	-	7.2
다른 방법이 있어서	50.7	22.5	-	-	-	75.0	74.6	-	-	31.3	-	-	-	-	-	37.6
비용부담때문에	-	23.1	-	-	33.1	-	-	-	-	-	-	-	-	-	-	11.3
기타	49.3	22.5	100.0	-	34.6	25.0	-	-	68.8	-	100.0	-	-	-	-	33.3
계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	100.0	-	100.0	-	-	-	100.0
(N)	(2)	(9)	(1)	-	(3)	(4)	(4)	-	-	(3)	-	(1)	-	-	-	(27)
전국추정수	802	3,509	366	-	1,190	1,708	1,557	-	-	1,232	-	328	-	-	-	10,692

주: 1) 비해당(보육시설 다님 및 10세 이상) 5,409건 무응답 30건 제외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9세 이하의 장애 아동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89.9%가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하여 9세 이하의 장애아동은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돌보고 있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아동 중에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 형태로는 일반유치원이 7.7%, 그 외 유치원 과정특수학교 2.3%로 매우 적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가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1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발달장애가 8.8%의 순이었다. 그리고 유치원과과정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뇌병변장애가 4.9%로 발달장애(4.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6-4-4〉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유치원	-	5.8	-	-	-	18.0	8.8	-	-	-	-	-	-	-	-	7.7
일반유치원내특수반	-	-	-	-	-	-	-	-	-	-	-	-	-	-	-	-
유치원과과정특수학교	-	4.9	-	-	-	-	4.4	-	-	-	-	-	-	-	-	2.3
특수학교 유치부	-	-	-	-	-	-	-	-	-	-	-	-	-	-	-	-
다니지 않음	100.0	89.3	100.0	100.0	100.0	82.0	86.9	-	-	100.0	-	100.0	-	-	-	8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	-	-	100.0
(N)	(6)	(19)	(2)	(4)	(5)	(18)	(22)	-	-	(5)	-	(1)	-	-	-	(82)
전국추정수	2,286	7,352	747	1,507	2,047	7,112	8,850	-	-	1,930	-	328	-	-	-	32,159

주: 1) 비해당(10세 이상) 5,384건 제외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6시간이었고, 전체의 61.4%가 6시간~10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월 평균 비용을 보면, 전체의 70.9%가 무료로 이용하였고, 5만원 14.9%, 26만원 14.2%를 차지하였다. 전체 평균 비용은 4만원이었다. 특히 장애유형 중에 발달장애의 경우, 유치원 교육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5〉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하루 평균 이용시간 및 월평균 비용

(단위: %, 명)

하루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	
구분	전체	구분	전체
1~5시간	38.6	무료	70.9
6~10시간	61.4	5만원	14.9
계	100.0	26만원	14.2
		계	100.0
(N)	(8)	(N)	(7)
전국추정수	3,232	전국추정수	2,870

주: 1) 하루평균 이용시간: 비해당(유치원 다니지 않음 및 10세 이상) 5,458건 제외
 2) 월평균 비용: 비해당(유치원 다니지 않음 및 10세 이상) 5,458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3)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9세 이하 장애 아동이 현재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보육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이 있어서’가 5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타(장애가 너무 심해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서 등)’가 30.3%, ‘비용 부담 때문에’ 4.6%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보육시설의 경우와 동일하게 언어장애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 때문에(49.7%)’ 다니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6-4-6〉 현재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시설이 없어서 받지 못해서	-	13.6	-	-	-	-	15.2	-	-	-	-	-	-	-	6.6
다른 방법이 있어서	66.1	35.3	-	100.0	23.9	86.9	84.8	-	-	46.0	-	-	-	-	56.3
비용부담 때문에	-	-	-	-	49.7	-	-	-	-	-	-	-	-	-	4.6
기타	33.9	44.0	100.0	-	26.3	13.1	-	-	54.0	-	100.0	-	-	-	3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	-	100.0
(N)	(3)	(14)	(1)	(2)	(4)	(8)	(6)	-	-	(4)	-	(1)	-	-	(43)
전국추정수	1,164	5,407	366	771	1,564	3,265	2,607	-	-	1,568	-	328	-	-	17,040

주: 1) 비해당(유치원 다님 및 10세 이상) 5,422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17세 이하의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이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 형태를 알아본 결과, 전체의 36.2%가 다니지 않음으로 응답하였고, 조기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에 이용하고 있는 조기교육시설 형태로는 언어치료시설이 1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16.3%, 작업치료 9.2%, 미술치료 8.4%, 물리치료 7.7%, 음악치료 5.6%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는 음악치료 및 미술치료시설의 이용률이 높았고, 언어장애는 언어치료시설, 뇌병변장애는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시설의 이용률이 높았다.

〈표 6-4-7〉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음악치료	5.4	2.2	-	-	11.5	6.1	8.3	-	-	-	-	-	-	-	-	5.6
미술치료	-	-	-	-	-	8.8	17.8	-	-	-	-	-	-	-	-	8.4
언어치료	-	13.3	-	21.3	40.9	17.8	20.9	-	-	-	-	-	-	-	-	16.6
물리치료	16.3	27.4	-	-	-	5.3	1.2	-	-	-	-	-	-	-	-	7.7
작업치료	10.8	23.1	-	10.1	-	7.3	6.2	-	-	-	-	-	-	-	-	9.2
기타	5.2	13.7	-	9.9	11.5	15.8	25.0	-	-	-	-	-	-	-	-	16.3
다니지 않음	62.3	20.3	-	58.8	36.1	38.8	20.6	-	-	-	-	-	-	-	-	36.2

주: 1) 중복응답비율임.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현재 다니고 있는 각 조기교육시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물리치료는 2.4시간, 언어치료 2.5시간, 작업치료 1.3시간, 기타 3.5시간으로 나타났다. 각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악치료의 경우 지체장애가 8.0시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미술치료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가 2.4~2.5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었고, 음악치료는 언어장애의 장애특성상 2.6시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물리치료는 뇌병변장애가 2.6시간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작업치료는 정신지체가 1.7시간 이용하고 있었다.

〈표 6-4-8〉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의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음악치료	8.0	5.0	-	-	2.0	1.6	2.1	-	-	-	-	-	-	-	-	2.4
미술치료	-	-	-	-	-	2.5	2.4	-	-	-	-	-	-	-	-	2.4
언어치료	-	2.5	-	1.9	2.6	2.6	2.5	-	-	-	-	-	-	-	-	2.5
물리치료	2.0	2.6	-	-	-	2.2	2.0	-	-	-	-	-	-	-	-	2.4
작업치료	1.0	1.2	-	1.0	-	1.7	1.2	-	-	-	-	-	-	-	-	1.3
기타	2.0	5.9	-	5.0	1.0	3.4	3.0	-	-	-	-	-	-	-	-	3.5

주: 1) 중복응답비율임.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현재 다니고 있는 각 조기교육시설의 월 평균 비용을 보면, 언어치료가 21.9만원으로 그 다음으로 미술치료 18.3만원, 기타 15.4만원, 작업치료 12.6만원, 물리치료 10.5만원, 음악치료 7.9만원의 순이었다. 각 장애유형별로도 살펴보면, 언어장애는 음악치료에 평균 30.0만원을 사용하고 있었고, 정신지체는 미술치료와 언어치료에 각각 30.4만원, 30.1만원을, 뇌병변장애는 물리치료에 14.6만원을 지체장애는 작업치료에 17.2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 6-4-9〉 현재 다니고 있는 조기교육시설의 평균 비용

(단위: %, 만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음악치료	11.0	8.0	-	-	30.0	6.0	5.0	-	-	-	-	-	-	-	-	7.9
미술치료	-	-	-	-	-	30.4	11.0	-	-	-	-	-	-	-	-	18.3
언어치료	-	17.9	-	13.5	20.9	30.1	16.5	-	-	-	-	-	-	-	-	21.9
물리치료	4.0	14.6	-	-	-	5.0	2.0	-	-	-	-	-	-	-	-	10.5
작업치료	17.2	15.4	-	2.0	-	9.3	13.3	-	-	-	-	-	-	-	-	12.6
기타	30.0	23.3	-	6.0	2.0	12.0	16.1	-	-	-	-	-	-	-	-	15.4

주: 1) 중복응답비율임.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와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현재 조기교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17세 이하 장애 아동이 현재 조기교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이유는,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장애가 너무 심해 받아주는 시설이 없어서, 보호자가 데리고 다닐 시간이 없어서)’가 27.8%, ‘다른 방법이 있어서’ 22.2%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가 ‘비용 부담 때문에(72.1%)’ 다니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표 6-4-10〉 현재 조기교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물라서 시설이 없어서	-	10.6	-	19.1	-	10.4	-	-	-	-	-	-	-	-	-	6.1
받지 못해서	-	11.1	13.3	-	-	2.6	5.5	-	-	-	-	-	-	-	-	3.8
다른 방법이 있어서	24.7	22.0	43.1	64.3	33.6	17.4	6.6	-	-	46.5	-	-	-	-	-	22.2
비용부담 때문에	23.9	33.5	-	16.7	-	51.0	72.1	-	-	-	-	-	-	-	-	38.3
기타	51.4	22.9	43.5	-	66.4	13.7	15.9	-	-	53.5	-	100.0	100.0	-	100.0	2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	100.0	100.0	-	100.0	100.0
(N)	(11)	(9)	(7)	(6)	(3)	(39)	(17)	-	-	(4)	-	(1)	(1)	-	(3)	(101)
전국추정수	4,442	3,494	2,742	2,350	1,114	15,052	6,628	-	-	1,592	-	328	382	-	1,257	39,381

주: 1) 비례당(조기교육시설 다닌 및 18세 이상) 5,257건 무응답 108건 제외

2) 응답자 수가 적어 조사결과와 신뢰도가 낮을 수 있음.

전체 재가장애인 중에서 재학, 중퇴, 졸업을 모두 포함하여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은 15.8%였고, 초등학교를 다닌 장애인은 84.2%로 2000년도 조사 당시 77.9%보다 약간 상승하여 장애인의 초등교육 정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대부분인 전체의 81.3%는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특수초등학교에 다닌 장애인은 1.6%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발달장애는 일반학교를 다닌 비율보다 특수초등학교를 다닌 비율이 39.7%로 가장 많았고, 정신지체는 15.1%가 특수초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로 30.2%에 달했다. 또한 언어장애도 28.7%로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일반학교를 다닌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는 정신장애로 97%였으며, 간장애 94%, 신장장애 91%가 일반초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11〉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학교 재학	0.3	0.3	0.3	0.5	2.6	1.3	12.3	-	-	1.8	-	-	-	-	-	0.5
일반학교 중퇴	7.3	7.6	9.6	6.1	2.1	10.6	1.9	6.0	0.7	7.3	13.1	5.8	6.8	-	9.6	7.4
일반학교 졸업	79.0	73.3	73.1	60.5	60.8	40.1	17.9	91.2	90.3	78.5	66.5	88.2	77.4	78.7	77.4	73.4
일반학교내 재학	-	0.3	-	-	-	5.4	21.3	-	-	-	-	-	-	-	-	0.5
일반학교내 중퇴	0.0	-	-	-	-	0.7	-	-	-	-	-	-	-	-	-	0.1
특수학급 졸업	-	0.3	0.3	0.2	1.9	9.6	9.8	0.4	-	-	-	-	-	-	-	0.7
특수학급 재학	-	0.3	-	-	1.9	2.1	7.4	-	-	-	-	-	-	-	-	0.2
특수학교 중퇴	-	-	-	0.3	1.9	0.4	-	-	-	-	-	-	-	-	-	0.1
특수학교 졸업	0.1	0.5	0.6	2.2	-	12.6	22.5	-	-	-	-	-	-	-	-	1.3
다니지 않음	13.3	17.5	16.0	30.2	28.7	17.2	6.9	2.4	9.0	12.4	20.4	6.0	15.7	21.3	13.0	1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89)	(675)	(569)	(593)	(48)	(283)	(52)	(201)	(106)	(105)	(77)	(34)	(12)	(40)	(38)	(5,422)
전국추정수	994,411	259,841	219,551	227,455	18,675	108,105	20,292	77,180	40,286	40,501	29,953	13,069	4,369	15,466	14,555	2,083,709

주: 비례당 44건 제외

중학교에서는 학교를 다닌 장애인이 55%였으며, 45.2%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일반학교를 다닌 장애인은 52.4%로 초등학교 때보다 입학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특수초등학교에 다닌 장애인은 1.5%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이 특수학교를 다닌 비율이 가장 높아서 42.3%가 특수중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발달장애인 중 25.5%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

났으며, 일반학교를 다닌 발달장애인도 19.4%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정신지체인도 17.9%가 특수학교를 다녔으며, 일반학교를 다닌 정신지체인도 28.6%였다. 한편, 중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로 61.6%가 다니지 않았다. 또한, 호흡기장애 57.6%, 언어장애 53.3%, 뇌병변장애 50.0%가 중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그리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친 장애인이 0.1%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12〉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학교	재학	0.1	0.2	0.9	0.7	1.9	0.8	11.0	-	-	1.0	-	-	8.7	-	-	0.4
	중퇴	3.1	3.0	3.1	2.2	2.0	3.3	-	4.4	2.9	3.8	2.7	5.8	-	6.8	5.1	3.1
	졸업	53.6	45.6	47.0	33.3	40.7	24.5	8.4	76.0	71.2	49.7	39.7	62.7	60.0	44.3	59.6	48.9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재학	0.0	0.2	-	-	-	3.6	18.3	-	-	-	-	-	-	-	-	0.3
	중퇴	-	-	-	-	-	-	-	-	-	-	-	-	-	-	-	-
특수학교	졸업	0.0	0.2	0.2	-	2.1	8.2	7.2	-	-	-	-	-	-	-	1.9	0.5
	재학	-	-	-	0.2	-	4.1	21.4	-	-	-	-	-	-	-	-	0.3
	중퇴	0.0	-	-	0.2	-	0.8	3.4	-	-	-	-	-	-	-	-	0.1
검정고시 다니지 않음	졸업	0.1	0.6	0.4	1.7	-	13.0	17.5	-	-	-	-	-	-	-	-	1.1
	재학	0.1	0.3	-	0.2	-	-	-	0.6	-	-	-	-	-	-	-	0.1
계		42.8	50.0	48.5	61.6	53.3	41.8	12.7	19.0	25.9	45.6	57.6	31.6	31.3	48.8	33.4	45.2
(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82)	(668)	(567)	(588)	(45)	(252)	(28)	(201)	(106)	(103)	(77)	(34)	(12)	(40)	(38)	(5,341)
전국추정수		991,428	257,166	218,804	225,556	17,425	95,763	10,776	77,180	40,286	39,754	29,953	13,069	4,369	15,466	14,555	2,051,550

주: 비례당 125건 제외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이 62.0%로 가장 많았고, 일반학교를 다닌 비율은 36.3%, 특수학교 1%,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0.5%로 나타나 교육정도가 초등학교에서 점점 올라갈수록 재가장애인의 교육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28.3%가 특수학교를 다녔으며, 17.1%가 일반학교를 14.7%가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을 다니거나 다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은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가 74.8%로 조사되었다. 일반학교를 다닌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로 65%였다.

〈표 6-4-13〉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형태-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학교 재학	0.2	-	0.5	0.3	-	1.3	9.1	-	-	-	-	-	-	-	5.9	0.3
일반학교 중퇴	2.7	1.1	2.0	1.0	2.3	3.0	-	9.1	3.0	-	1.3	6.1	-	-	1.9	2.4
일반학교내 졸업	36.4	30.9	32.7	22.2	29.7	13.8	8.0	55.7	52.8	30.0	25.4	47.9	58.7	31.5	42.8	33.6
특수학급 재학	-	-	-	-	-	6.2	7.5	-	-	-	-	-	-	-	-	0.3
특수학급 졸업	-	0.2	-	-	-	2.7	7.2	-	-	-	-	-	-	-	-	0.2
특수학교 재학	-	0.2	-	0.2	-	4.9	7.6	-	-	-	-	-	-	-	-	0.3
특수학교 중퇴	-	-	-	-	-	0.9	-	-	-	-	-	-	-	-	-	0.0
특수학교 졸업	-	0.5	0.9	1.2	-	9.3	20.7	-	-	-	-	-	-	-	-	0.7
검정고시 다니지 않음	0.2	0.3	0.2	0.2	-	-	-	0.5	-	-	-	-	-	-	-	0.2
계	60.4	66.9	63.6	74.8	68.0	57.9	40.0	34.7	44.2	70.0	73.3	46.0	41.3	68.5	49.5	62.0
(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2,576)	(665)	(562)	(583)	(44)	(232)	(14)	(201)	(106)	(102)	(77)	(34)	(12)	(40)	(38)	(5,285)
전국추정수	989,226	255,969	216,809	223,614	17,097	88,143	5,305	77,180	40,286	39,375	29,953	13,069	3,987	15,466	14,555	2,030,034

주: 비해당 181건 제외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다니지 않은 재가장애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의 71.4%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라고 응답하여 장애인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응답에는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10.9%)’, ‘본인의 장애 때문에(8.7%)’, ‘다니기 싫어서(3.7%)’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와 호흡기장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고,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는 장애 때문에, 안면장애는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6-4-14〉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으로 어려워 장애 때문에	74.5	75.9	72.1	73.3	56.2	19.7	23.1	56.3	76.1	78.7	86.4	88.5	58.2	71.4	52.0	71.4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4.9	4.0	5.4	8.3	28.5	67.8	54.0	24.6	2.3	-	3.3	-	-	-	32.8	8.7
학교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9	0.4	1.5	0.2	6.3	2.9	-	0.9	-	-	-	5.7	-	3.6	-	0.9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	0.2	-	-	-	-	11.8	-	-	-	-	-	-	-	-	0.1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10.9	12.5	11.9	12.0	6.1	2.9	-	6.8	11.9	15.3	6.8	5.9	41.8	17.4	4.8	10.9
다니기 싫어서	2.3	1.6	1.9	1.2	2.9	0.7	-	-	2.0	1.4	-	-	-	4.0	-	1.8
기타	3.5	3.9	5.4	2.9	-	4.0	11.0	5.7	7.8	4.6	1.7	-	-	-	4.8	3.7
계	3.0	1.5	1.9	2.0	-	2.0	-	5.6	-	-	1.8	-	-	3.6	5.6	2.4
(N)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1,645)	(455)	(372)	(448)	(32)	(149)	(9)	(89)	(50)	(71)	(57)	(18)	(5)	(28)	(20)	(3,448)
전국추정수	624,120	174,335	142,286	170,542	12,431	56,165	3,314	33,820	18,565	27,229	21,925	6,809	1,647	10,598	7,474	1,311,260

주: 비해당 2,018건 제외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정도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7.8%,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는 응답자가 64.5%로 전체의 82.3%가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5%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유형별로는 특히 발달장애와 정신지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각각 28.5%, 23.6%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6-4-15〉 학교생활 적응도(보육시설/유치원 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잘 적응	34.4	15.6	64.6	30.2	24.3	10.4	8.7	-	100.0	24.8	-	-	-	-	-	17.8
잘 적응하는 편	65.6	73.0	35.4	61.7	75.7	66.0	62.8	-	-	75.2	-	-	100.0	-	100.0	64.5
잘 적응 못하는 편	-	11.4	-	8.1	-	16.2	22.1	-	-	-	-	-	-	-	-	13.2
전혀 적응 못함	-	-	-	-	-	7.4	6.4	-	-	-	-	-	-	-	-	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	100.0	100.0
(N)	(20)	(18)	(11)	(13)	(4)	(83)	(45)	-	(1)	(4)	-	-	(1)	-	(2)	(202)
전국추정수	7,744	7,012	4,324	4,997	1,540	32,726	17,967	-	384	1,462	-	-	382	-	853	79,391

주: 비례당 5,264건 제외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이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전체의 23.5%가 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여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나, 그 외 수업내용의 이해(23.2%), 친구들의 이해부족 및 놀림(17.5%), 장애인을 이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교사의 부족(11.0%)의 응답이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의 경우,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수업내용의 이해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의 응답이 높아 학급내 수화통역사의 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 발달장애의 경우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여 발달장애 아동이나 학생이 학급내 있을시 발달장애인의 학습을 도와줄 인력배치 또한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표 6-4-16〉 학교생활의 문제점(보육시설/유치원 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문제가 없음	44.2	21.2	83.1	14.8	-	17.7	13.7	-	100.0	-	-	-	100.0	-	46.8	23.5
등·하교불편	7.5	5.2	-	8.0	23.1	4.7	4.6	-	-	26.3	-	-	-	-	-	5.6
학교내 편의시설 부족	25.1	11.0	-	-	-	-	3.6	-	-	-	-	-	-	-	-	4.2
청소나 학교행사 참여	5.0	-	-	-	-	-	2.0	-	-	-	-	-	-	-	-	0.9
수업내용의 이해	-	5.5	16.9	37.8	21.3	29.1	28.7	-	-	25.9	-	-	-	-	-	23.2
친구들의 이해부족, 놀림	13.6	17.4	-	22.8	-	18.0	23.4	-	-	24.8	-	-	-	-	-	17.5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	-	-	-	-	-	2.2	-	-	-	-	-	-	-	53.2	1.1
전문교사의 부족	-	28.3	-	-	24.3	9.6	16.2	-	-	23.0	-	-	-	-	-	11.0
교육내용의 부적합	-	-	-	-	-	3.2	-	-	-	-	-	-	-	-	-	1.3
특수교육 보조원 미배치	4.7	5.8	-	9.0	-	14.1	63.5	-	-	-	-	-	-	-	-	8.1
기타	-	5.6	-	7.6	31.4	3.7	2.2	-	-	-	-	-	-	-	-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	100.0	100.0
(N)	(20)	(18)	(11)	(13)	(4)	(83)	(45)	-	(1)	(4)	-	-	(1)	-	(2)	(202)
전국추정수	7,744	7,012	4,324	4,997	1,540	32,726	17,967	-	384	1,462	-	-	382	-	853	79,391

주: 비례당 5,264건 제외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들의 통학방법을 살펴보면, 도보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통학버스 24.8%, 자가용(보호자운전) 20.4%, 일반버스 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뇌병변장애는 자가용(보호자 운전), 시각장애는 도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17〉 통학방법(보육시설/유치원 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일반버스	-	-	18.8	38.3	-	9.6	13.3	-	-	25.9	-	-	-	-	100.0	12.0
일반택시	-	5.2	-	-	-	-	2.2	-	-	-	-	-	-	-	-	1.0
지하철·전철	10.5	-	-	9.0	-	3.4	-	-	100.0	-	-	-	-	-	-	3.5
통학버스	5.0	22.1	8.5	7.5	47.3	28.7	38.2	-	-	-	-	-	-	-	-	24.8
복지관버스	-	5.6	-	-	-	-	-	-	-	-	-	-	-	-	-	0.5
자가용(장애인운전)	9.9	-	-	-	-	-	-	-	-	-	-	-	-	-	-	1.0
자가용(보호자운전)	13.7	50.1	-	17.4	-	25.7	11.3	-	-	23.0	-	-	-	-	-	20.4
셔틀형복지버스	-	-	-	-	-	3.7	2.4	-	-	-	-	-	-	-	-	2.0
전동휠체어	14.6	-	-	-	-	-	-	-	-	-	-	-	-	-	-	1.4
도보	36.6	17.1	63.6	27.8	31.4	26.5	30.4	-	-	51.1	-	-	100.0	-	-	30.1
기타	9.6	-	9.2	-	21.3	2.5	2.1	-	-	-	-	-	-	-	-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	100.0	100.0
(N)	(20)	(18)	(11)	(13)	(4)	(83)	(45)	-	(1)	(4)	-	-	(1)	-	(2)	(202)
전국추정수	7,744	7,012	4,324	4,997	1,540	32,726	17,967	-	384	1,462	-	-	382	-	853	79,391

주: 비해당 5,264건 제외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 통학 중인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의 집→학교까지 소요되는 통학시간을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10분 이상~30분 미만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통학시간은 25.8분이 소요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심장장애, 발달장애의 시간이 길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4-18〉 집→학교까지 걸리는 시간(보육시설/유치원 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0분 미만	24.5	11.0	30.5	30.5	-	14.7	18.0	-	-	24.8	-	-	100.0	-	-	18.0
10분 이상~30분 미만	50.8	67.5	60.2	39.7	52.7	58.6	48.7	-	-	75.2	-	-	-	-	46.8	54.7
30분 이상~60분 미만	14.1	21.4	9.3	7.8	23.1	19.3	31.1	-	-	-	-	-	-	-	53.2	20.3
60분 이상	10.5	-	-	22.0	24.3	7.5	2.2	-	100.0	100.0	-	-	-	-	-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	100.0	100.0
(N)	(20)	(18)	(10)	(13)	(4)	(81)	(44)	-	(1)	(4)	-	-	(1)	-	(2)	(198)
전국추정수	7,744	7,012	3,927	4,997	1,540	31,921	17,572	-	384	1,462	-	-	382	-	853	77,794

주: 비해당 5,264건 및 무응답 4건 제외

현재 학교나 보육시설,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들의 낮시간 또는 방과 후의 활동을 알아본 결과, 앞서 일상생활 지원에서도 장애인을 주로 돌보고 있는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었던 것처럼 재가장애 학생들의 낮 시간 또는 방과 후 시간에도 전체의 39.9%가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함께’로 응답하여 장애아동 및 학생의 방과 후 보육도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집에서 혼자 지내거나 복지시설, 학원에서 보내는 응답도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아 장애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6-4-19〉 낮 시간/방과 후의 시간사용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집에서 혼자 지냄	9.3	5.2	17.1	15.3	-	26.5	15.1	-	-	-	-	-	-	-	46.8	18.1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과	56.9	55.2	27.2	25.0	24.3	41.8	32.2	-	-	48.9	-	-	-	-	53.2	39.9
장애부모들이 운영 하는 공동육아시설	-	-	-	-	-	1.2	-	-	-	-	-	-	-	-	-	0.5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	-	-	-	-	-	-	3.2	-	-	-	-	-	-	-	-	0.7
일반보육시설	4.7	-	-	-	-	-	2.4	-	-	-	-	-	-	-	-	1.0
가정에서 방문교사 지도	-	-	-	-	-	2.4	1.5	-	-	-	-	-	-	-	-	1.3
복지시설	9.7	28.6	-	-	44.4	14.5	22.4	-	-	-	-	-	-	-	-	15.4
학원	4.8	11.0	37.0	52.2	31.4	7.4	14.5	-	100.0	51.1	-	-	100.0	-	-	15.6
유치원·학교의 방과후활동참여	9.3	-	9.5	-	-	3.9	4.4	-	-	-	-	-	-	-	-	4.0
기타	5.3	-	9.2	7.5	-	2.3	4.3	-	-	-	-	-	-	-	-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	100.0	100.0
(N)	(20)	(18)	(11)	(13)	(4)	(83)	(45)	-	(1)	(4)	-	-	(1)	-	(2)	(202)
전국추정수	7,744	7,012	4,324	4,997	1,540	32,726	17,967	-	384	1,462	-	-	382	-	853	79,391

주: 비해당 5,264건 제외

학습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의 66.5%가 ‘무료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13.8%는 ‘유료라도 이용하겠다’라고 응답하여, 학습도우미가 재가장애 아동 및 학생의 가정에 방문하여 학습을 도와주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표 6-4-20〉 도우미 가정방문 학습서비스가 있을시 이용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유료라도 이용	15.8	11.5	27.1	14.5	-	11.9	17.7	-	-	-	-	-	-	-	-	13.8
무료라도 이용	59.5	83.2	17.1	58.5	75.7	69.5	69.3	-	-	73.7	-	-	100.0	-	100.0	66.5
이용하지 않음	24.8	5.3	55.8	27.0	24.3	18.6	13.0	-	100.0	26.3	-	-	-	-	-	1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	100.0	-	100.0	100.0
(N)	(20)	(18)	(11)	(13)	(4)	(83)	(45)	-	(1)	(4)	-	-	(1)	-	(2)	(202)
전국추정수	7,744	7,012	4,324	4,997	1,540	32,726	17,967	-	384	1,462	-	-	382	-	853	79,391

주: 비례당 5,264건 제외

제 5 절 취업 및 직업재활

1. 취업률 및 실업률

2000년도 장애인의 취업률 및 실업률 통계와는 적용한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비교에 어려움은 있다.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2%이며 2000년의 47.8%에 비해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2000년의 실업 수준이 28.4%인데 비해 ILO 기준을 적용한 2005년도의 실업률은 10.6%로서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2005년의 경우 34.1%로서 2000년의 34.2%와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2005년 ILO 기준 실업률은 10.6%로써 전체 실업률(2005년 6월) 3.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ILO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실업자 수는 82.2천명으로 추정된다.

〈표 6-5-1〉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계	취업					취업자	비율
15~19세	32,363	2,560	1,728	832	29,803	7.91	67.50	32.50	5.34
20~29세	107,808	51,068	39,923	11,145	56,740	47.37	78.18	21.82	37.03
30~39세	203,035	115,922	99,022	16,900	87,113	57.09	85.42	14.58	48.77
40~49세	383,408	224,166	202,845	21,321	159,242	58.47	90.49	9.51	52.91
50~64세	628,285	275,704	249,580	26,124	352,581	43.88	90.52	9.48	39.72
65세 이상	681,889	107,739	101,857	5,882	574,150	15.80	94.54	5.46	14.94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전국 ¹⁾	38,468,000	23,976,000	23,191,000	785,000	14,511	62.3	96.7	3.3	60.29

자료: 1) 통계청, □ 한국통계월보□, 2005. 10.

한편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관행이라든지 또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망실업자가 많아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미취업하고 있는 원인을 고려하여 실망실업자²⁰⁾가 포함된 실업률을 산정해 보았다. 여기서 미취업 원인은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임금이 너무 낮아서,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작업 환경이 열악해서, 출·퇴근이 힘들어서, 취업정보나 취업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일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이 없어서이다. 이러한 미취업 원인은 장애인 차별이 해소된다거나, 편의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4.1%이며, 실업률은 23.1%로서 2000년의 28.4%에 비해 5.3% 포인트가 감소하여 그동안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4.4%로서 2000년의 47.8%보다 3.4% 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취업률은 표본오차내의 범위에 있어서 유사하나, 실업률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다.

연령별로는 40대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10대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1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고 40대의 실업률이 가장 낮다는 말과 같다. 또한 20대의 실업률이 39.9%로서 매우 높게 나타나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6-5-2〉 재가장애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 명)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15~19세	32,363	3,732	1,728	2,004	28,631	11.53	46.30	53.70	5.34
20~29세	107,808	66,412	39,923	26,489	41,396	61.60	60.11	39.89	37.03
30~39세	203,035	128,822	99,022	29,800	74,213	63.45	76.87	23.13	48.77
40~49세	383,408	252,371	202,845	49,526	131,037	65.82	80.38	19.62	52.91
50~64세	628,285	325,407	249,580	75,827	302,878	51.79	76.70	23.30	39.72
65세 이상	681,889	126,525	101,857	24,668	555,364	18.56	80.50	19.50	14.94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20) 실망실업자란 취업가능성이 적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자리가 생기면 언제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82.2천명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3.5%이고, 여성장애인은 20.2%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6-5-3〉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591,930	528,508	63,422	621,871	48.77	89.29	10.71	43.54
여자	822,987	185,229	166,447	18,782	637,758	22.51	89.86	10.14	20.22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208.3천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정부의 각종 고용정책이나 직업재활정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률은 23.1%로서 2000년의 28.4%에 비해 5.3%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장애인은 21.1%, 여자는 28.8%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7.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ILO 기준 적용시 남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았으나, 미취업 원인 고려시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망실업자가 여성장애인 중에서 많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6-5-4〉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669,565	528,508	141,057	544,236	55.16	78.93	21.07	43.54
여자	822,987	233,704	166,447	67,257	589,283	28.40	71.22	28.78	20.22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통계청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장애(46.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심장장애, 신장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발달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는 빈도가 적어 유의한 결과가 나올 수 없었으며, 실업률이 0%로 나온 것은 이들 장애가 출현

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표본 추출된 장애인 수가 적어서 나타난 결과이므로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조심해야 할 것이다.

〈표 6-5-5〉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991,111	489,160	437,419	51,741	501,951	49.35	89.42	10.58	44.13
뇌병변장애	255,928	24,497	22,257	2,240	231,431	9.57	90.86	9.14	8.70
시각장애	216,809	96,435	83,770	12,665	120,374	44.48	86.87	13.13	38.64
청각장애	224,079	88,653	81,452	7,201	135,426	39.56	91.88	8.12	36.35
언어장애	17,097	8,798	7,959	839	8,299	51.46	90.46	9.54	46.55
정신지체	90,615	21,774	18,973	2,801	68,841	24.03	87.14	12.86	20.94
발달장애	7,303	421	421	0	6,882	5.76	100.00	0.00	5.76
정신장애	77,180	13,473	12,302	1,171	63,707	17.46	91.31	8.69	15.94
신장장애	40,286	9,556	8,037	1,519	30,730	23.72	84.10	15.90	19.95
심장장애	39,754	7,515	5,954	1,561	32,239	18.90	79.23	20.77	14.98
호흡기장애	29,953	5,912	5,912	0	24,041	19.74	100.00	0.00	19.74
간장애	13,069	1,525	1,525	0	11,544	11.67	100.00	0.00	11.67
안면장애	3,987	1,757	1,757	0	2,230	44.07	100.00	0.00	44.07
장루·요루장애	15,466	5,146	5,146	0	10,320	33.27	100.00	0.00	33.27
간질장애	14,151	2,537	2,071	466	11,614	17.93	81.63	18.37	14.64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시,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장애(46.6%)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실업률은 발달장애, 간질장애, 정신지체, 심장장애, 정신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5-6〉 재가장애인의 장애유형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지체장애	991,111	548,311	437,419	110,892	442,800	55.32	79.78	20.22	44.13
뇌병변장애	255,928	36,883	22,257	14,626	219,045	14.41	60.34	39.66	8.70
시각장애	216,809	109,783	83,770	26,013	107,026	50.64	76.31	23.69	38.64
청각장애	224,079	99,851	81,452	18,399	124,228	44.56	81.57	18.43	36.35
언어장애	17,097	9,183	7,959	1,224	7,914	53.71	86.67	13.33	46.55
정신지체	90,615	32,672	18,973	13,699	57,943	36.06	58.07	41.93	20.94
발달장애	7,303	1,541	421	1,120	5,762	21.10	27.32	72.68	5.76
정신장애	77,180	20,510	12,302	8,208	56,670	26.57	59.98	40.02	15.94
심장장애	40,286	12,038	8,037	4,001	28,248	29.88	66.76	33.24	19.95
심장장애	39,754	10,236	5,954	4,282	29,518	25.75	58.17	41.83	14.98
호흡기장애	29,953	7,450	5,912	1,538	22,503	24.87	79.36	20.64	19.74
간장애	13,069	2,338	1,525	813	10,731	17.89	65.23	34.77	11.67
안면장애	3,987	2,156	1,757	399	1,831	54.08	81.49	18.51	44.07
장루·요루장애	15,466	6,315	5,146	1,169	9,151	40.83	81.49	18.51	33.27
간질장애	14,151	4,002	2,071	1,931	10,149	28.28	51.75	48.25	14.64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2. 취업자의 특성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157.48개월로서 따라서 13년 이상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가 273.73개월, 호흡기장애가 258.95개월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이들 장애유형은 주로 고령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청각장애가 220.43개월로 상대적으로 취업기간이 길었으며, 뇌병변장애도 173.97개월로 상당히 길었다. 정신지체, 발달장애, 안면장애가 99.82개월, 30.00개월, 58.29개월로서 상당히 짧은 취업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63시간이며, 주당 근무일수는 평균 5.4일, 그리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62시간이며, 월 평균 수입은 114.88만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주당 평균근무시간은 안면장애가 5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간질장애는 28시간으로 가장 낮았고, 주당 근무일수는 심장장애와 발달장애가 주당 6일으로 가장 많았고 간질장애가 4.6일로 가장 적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안면장애가 9.9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간질장애가 5.3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월평균수입의 경우는 간장애(176만원)와 심장장애(153만원)가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55만원)와 간질장애(44만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7〉 취업장애인의 취업기간,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단위: 시간, 개월, 일, 시간, 만원)

구분	주당 근무시간	취업기간 (개월)	주당 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만원)
지체장애	46.58	150.11	5.40	8.77	125.48
뇌병변장애	46.74	173.97	5.53	8.24	99.87
시각장애	46.35	150.80	5.25	9.09	115.51
청각장애	44.70	220.43	5.58	8.12	83.76
언어장애	44.63	126.39	4.90	7.84	81.40
정신지체	42.71	99.82	5.90	7.43	47.46
발달장애(자폐증)	54.00	30.00	6.00	9.00	70.00
정신장애	40.79	101.45	5.41	8.29	54.84
신장장애	40.60	149.11	4.80	8.33	153.84
심장장애	33.43	273.73	6.02	5.43	74.10
호흡기장애	41.08	258.95	5.14	9.06	81.62
간장애	30.79	121.65	4.80	6.98	176.55
안면장애	57.87	58.29	5.09	9.96	112.21
장루·요루장애	42.36	127.28	5.65	8.13	124.14
간질장애	28.78	16.99	4.65	5.31	43.53
계	45.63	157.48	5.41	8.62	114.88

장애인은 일반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일반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중이 높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정신지체, 신장장애이며,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장애유형은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등이었다.

〈표 6-5-8〉 취업장애인의 직장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영업	40.9	52.6	37.7	51.8	36.4	30.9	-	33.7	39.7	87.0	69.1	54.6	54.7	54.4	20.1	42.2
일반사업체	46.5	34.4	47.4	37.2	40.3	46.6	100.0	50.3	43.5	6.5	17.8	45.4	45.3	23.4	21.7	44.4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	5.0	11.2	4.8	1.4	-	2.2	-	-	8.7	6.5	-	-	-	-	-	4.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0.3	-	-	0.5	9.3	4.1	-	3.2	-	-	-	-	-	-	-	0.5
장애인 관련기관	0.4	-	0.4	1.5	-	2.2	-	3.0	-	-	6.8	-	-	-	-	0.7
기타	6.9	1.8	9.7	7.6	14.0	14.1	-	9.7	8.0	-	6.2	-	-	22.2	58.1	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92)	(57)	(224)	(216)	(22)	(51)	(1)	(32)	(25)	(15)	(16)	(5)	(6)	(13)	(5)	(1,880)
전국 추정수	457,082	21,959	86,307	81,876	8,327	18,610	421	12,302	9,338	5,588	6,309	1,923	2,150	5,146	2,071	719,409

주: 비해당 3,584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취업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는 자영업의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상용근로자의 순이었다.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장애는 안면장애와 호흡기장애였으며, 상용근로자로서 취업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였다.

〈표 6-5-9〉 취업장애인의 종사상의 지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5.2	20.3	26.9	19.2	14.9	13.4	100.0	12.9	33.9	6.5	12.6	26.4	13.9	-	23.5
임시근로자	임시근로자	15.9	21.4	15.1	11.3	21.0	25.7	-	25.0	10.9	-	12.0	0.0	0.0	15.2	15.5
자	일용근로자	18.1	7.4	21.1	18.5	27.7	28.2	-	28.4	19.5	6.5	6.2	19.1	31.3	30.4	18.8
	고용주	3.5	2.8	3.1	0.9	-	-	-	3.9	7.3	6.7	14.2	0.0	9.9	-	3.1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1(노점제외)	28.0	21.8	27.2	37.3	27.2	7.6	-	22.2	28.7	46.4	56.0	40.4	54.7	35.8	28.6
	자영업자2(노점)	2.6	7.0	2.3	1.9	4.9	3.5	-	3.0	0.0	-	6.4	0.0	0.0	-	2.7
	무급가족봉사자	6.8	19.4	4.3	10.9	4.3	21.7	-	8.5	3.0	33.3	-	0.0	0.0	8.7	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92)	(57)	(225)	(216)	(22)	(51)	(12)	(32)	(15)	(16)	(5)	(6)	(13)	(5)	(1,881)
전국추정수		457,058	21,959	86,686	81,876	8,327	18,610	421	12,302	9,338	5,588	6,309	1,923	2,150	5,146	719,764

주: 비해당 3,584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취업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큰 것이 낮은 수입으로, 취업장애인의 45.1%가 문제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업무과다가 16.0%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도 2.2%가 꼽았다.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26.1%에 달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가 업무과다를 얘기하는 비율이 24.7%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심장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직업재활을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5-10〉 취업장애인의 직장생활상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낮은 수입	46.8	35.8	44.1	41.3	39.1	33.5	-	49.8	47.0	35.4	55.9	38.7	53.8	46.9	61.2	45.1
직장 내의 대인관계	1.2	1.8	3.4	5.7	-	7.2	-	15.3	-	-	-	-	-	-	19.7	2.4
승진문제	0.3	1.8	0.5	0.5	-	-	-	-	-	-	-	-	-	-	-	0.4
업무과다	15.4	20.7	14.7	19.0	18.8	10.3	-	18.7	21.3	24.7	24.7	-	-	22.9	-	16.0

〈표 6-5-10〉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무관련기능 부족	1.6	6.6	0.5	1.8	-	3.9	-	3.0	-	-	-	-	-	-	-	1.6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1.4	1.4	1.3	1.9	4.7	1.9	-	-	-	-	-	-	-	-	-	1.4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1.9	5.4	3.3	2.2	4.9	2.1	-	-	-	-	-	-	19.2	-	-	2.2
장애인 편의 시설 미비	2.0	1.8	0.4	0.4	-	-	100.0	-	3.9	6.5	-	-	-	15.2	-	1.7
출퇴근 불편	1.6	1.7	0.5	1.0	5.0	-	-	-	8.4	-	-	-	-	-	-	1.4
어려움 없음	26.3	23.0	30.0	24.3	27.5	39.0	-	10.0	15.3	13.6	19.4	61.3	27.0	15.0	19.1	26.1
기타	1.4	-	1.5	1.9	-	2.1	-	3.3	4.1	19.8	-	-	-	-	-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86)	(57)	(225)	(216)	(21)	(51)	(1)	(32)	(25)	(15)	(16)	(5)	(6)	(13)	(5)	(1,874)
전국추정수	454,628	21,959	86,658	81,876	8,060	18,610	421	12,302	9,338	5,588	6,309	1,923	2,150	5,146	2,071	717,039

주: 비해당 3,585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장애인들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5.6%,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45.7%,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35.0%, ‘매우 불만족스럽다’ 13.8%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만족스럽다는 장애인이 51.3%로 절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100.0%)와 간장애(80.9%)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심장장애(73.5%)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표 6-5-11〉 취업장애인의 현재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4.3	13.1	6.5	7.3	4.4	15.7	-	-	16.2	-	5.9	14.2	-	7.5	-	5.6
대체로 만족	47.5	43.2	43.8	38.9	45.5	50.9	100.0	41.4	40.6	26.5	38.3	66.7	44.7	47.9	59.0	45.7
대체로 불만족	34.9	35.1	34.3	39.0	27.8	29.4	-	30.6	31.2	59.5	44.1	19.1	-	29.3	21.7	35.0
매우 불만족	13.3	8.6	15.4	14.8	22.2	4.0	-	28.0	12.1	14.0	11.7	-	55.3	15.2	19.3	1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86)	(57)	(225)	(215)	(22)	(50)	(1)	(32)	(25)	(15)	(16)	(5)	(6)	(13)	(5)	(1,873)
전국추정수	454,621	21,959	86,613	81,478	8,327	18,255	421	12,302	9,338	5,588	6,309	1,923	2,150	5,146	2,071	716,501

주: 비해당 3,587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3.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였다. 전체 응답자의 45.0%가 심한 장애를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는 24.7%가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였다. 한편,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또는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각각 2.5%, 10.5%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장 많이 응답한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의 경우 간장애(85.5%)와 정신장애(77.1%)가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17.8%)가 가장 적었다. 그외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인 경우는 간질장애(6.5%)가,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는 안면장애(21.7%)가 가장 많았다.

〈표 6-5-12〉 미취업 또는 구직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3.6	1.0	3.0	1.9	4.4	2.3	5.0	1.1
임금이 너무 낮아서	0.3	0.2	-	-	-	-	-	0.6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13.4	5.0	14.4	8.2	4.4	9.8	11.3	9.2
작업환경(편의시설 등) 이 열악해서	0.3	-	0.3	-	-	0.5	-	-
출퇴근이 힘들어서	0.2	0.2	-	-	-	0.5	-	0.7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37.5	69.9	27.3	17.8	42.3	56.5	19.7	77.1
다른 질병 때문에	3.1	0.6	3.2	6.3	4.5	-	-	3.1
나이가 많아서	25.0	18.3	35.2	53.6	25.3	1.6	-	4.0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6.2	1.2	5.9	3.9	9.1	2.1	6.1	1.9
취업정보·취업방법을 몰라서	0.4	-	0.4	0.8	-	1.1	-	-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1.7	-	0.3	1.3	5.2	4.9	-	0.6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5.5	2.9	5.7	3.9	4.8	-	-	0.6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 결혼 등)	0.2	0.2	0.3	0.3	-	-	-	-
재학 중이기 때문에	1.1	0.3	1.8	1.7	-	19.5	57.9	-
기타	1.6	0.5	2.3	0.3	-	1.1	-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89)	(608)	(332)	(363)	(22)	(187)	(18)	(168)
전국추정수	534,110	233,969	128,270	140,230	8,770	71,639	6,882	64,480

〈표 6-5-12〉 계속

구분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	전체
회사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줘서	1.4	2.2	-	-	-	3.9	6.5	2.5
임금이 너무 낮아서	-	-	-	-	-	-	-	0.2
적합한 직종이 없어서	8.0	10.3	6.6	7.3	21.7	7.4	7.2	10.5
작업환경(편의시설 등) 이 열악해서	-	-	-	-	-	-	-	0.2
출퇴근이 힘들어서	-	-	-	-	-	-	-	0.2
심한 장애로 일하기 어 려울 것 같아서	65.6	49.3	63.0	85.5	-	37.7	55.2	45.0
다른 질병 때문에	2.5	3.7	5.0	3.8	-	3.6	6.2	2.9
나이가 많아서	11.4	23.1	18.7	-	58.1	39.5	-	24.7
가사·육아문제 때문에	3.7	4.6	1.6	3.5	20.2	7.9	12.3	4.5
취업정보·취업방법을 몰라서	1.3	-	-	-	-	-	-	0.4
일에 필요한 기술(능)이 없어서	-	-	-	-	-	-	2.3	1.2
굳이 취업할 필요가 없어서	5.4	5.6	5.0	-	-	-	-	4.1
취업 이외의 준비 때문에(진학, 결혼 등)	-	-	-	-	-	-	3.2	0.2
재학 중이기 때문에	-	1.1	-	-	-	-	7.1	2.3
기타	0.9	-	-	-	-	-	-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1)	(88)	(60)	(29)	(5)	(27)	(32)	(3,409)
전국추정수	30,948	34,166	23,278	11,146	1,837	10,320	12,080	1,312,125

주: 비해당 2,044건 및 무응답 13건 제외

4. 직업훈련

장애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받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는 14.6%, 정신지체 8.6%, 정신장애는 6.5%가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직업훈련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6-5-13〉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3.0	1.4	4.3	1.6	4.5	8.6	14.6	6.5	1.0	2.0	1.2	-	-	-	2.9	2.9
훈련 중	0.3	0.2	0.5	-	-	0.9	-	1.5	-	-	-	-	-	-	-	-
아니오	96.7	98.5	95.2	98.4	95.5	90.5	85.4	92.0	99.0	98.0	98.8	100.0	100.0	100.0	97.1	9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71)	(663)	(559)	(584)	(44)	(239)	(20)	(200)	(106)	(102)	(76)	(34)	(11)	(40)	(37)	(5,286)
전국추정수	987,244	255,114	215,516	224,104	17,097	90,615	7,674	76,678	40,286	39,350	29,537	13,069	3,987	15,466	14,151	14,151

주: 비례당 177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장애인이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이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청각장애(57.4%), 발달장애(54.8%)가 가장 많았고,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한 경우는 간질장애(41.2%)가 가장 많았다.

〈표 6-5-14〉 장애를 입은 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직업훈련이 있는지 몰라서	25.7	13.7	29.4	28.7	30.5	17.1	5.8	19.0	15.3	22.0	29.8	20.6	27.5	17.7	41.2	24.1
등록절차를 몰라서	1.2	0.3	1.3	0.7	2.2	2.8	-	0.4	-	-	-	-	-	-	-	1.0
심한 장애로 훈련받기 어려워서	9.2	30.3	9.5	6.9	17.2	42.0	27.7	43.6	22.1	14.9	26.3	24.3	-	8.8	27.0	15.3
직업훈련 비용이 부담되어서	0.5	0.1	-	0.3	-	1.9	-	0.6	-	-	-	-	-	-	-	0.4
직업훈련 내용이 마음에 안들어서	1.0	1.0	0.9	0.2	-	-	-	1.5	3.0	5.3	-	4.8	-	-	-	1.0
직업훈련이 취업에 도움이 안되서	6.9	2.0	5.9	3.9	-	1.9	6.5	3.8	6.9	3.1	2.7	6.7	26.2	-	-	5.3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서	51.8	50.8	50.1	57.4	40.4	27.2	54.8	28.8	51.3	50.4	40.0	43.6	37.0	64.7	23.6	49.8
검 근처에 훈련기관이 없어서	1.9	0.6	1.2	0.9	6.8	3.6	5.2	1.7	-	2.1	-	-	9.3	-	8.2	1.6
기타	1.6	1.3	1.7	1.0	2.8	3.4	-	0.5	1.4	2.2	1.3	-	-	8.7	-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468)	(645)	(531)	(571)	(42)	(215)	(17)	(185)	(104)	(99)	(74)	(34)	(11)	(40)	(35)	(5,071)
전국추정수	947,505	248,061	204,219	219,222	16,323	81,621	6,551	71,039	39,469	38,228	28,860	13,069	3,987	15,466	13,378	1,946,998

주: 비례당 352건 및 무응답 43건 제외

향후 직업훈련 희망여부에서는 전체의 15.2%만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84.8%는 희망안함으로 응답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함으로 응답한 장애유형으로는 간질장애가 34.4%로 비교적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

지체, 발달장애의 순이었다. 반면, 희망안함으로 응답한 장애유형으로는 호흡기장애 9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 간장애, 심장장애의 순이었다.

〈표 6-5-15〉 향후 직업훈련 희망여부

(단위: 명,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장 애	장루· 요루장 애	간질장 애	전체
희망함	17.5	7.8	13.8	11.2	19.6	26.6	25.2	16.3	14.3	9.9	6.5	9.1	16.4	12.8	34.4	15.2
희망안함	82.5	92.2	86.2	88.8	80.4	73.4	74.8	83.7	85.7	90.1	93.5	90.9	83.6	87.2	65.6	84.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9)	(662)	(559)	(584)	(42)	(227)	(16)	(201)	(106)	(101)	(76)	(34)	(11)	(40)	(36)	(5,264)
전국추정수	986,536	254,606	215,610	224,104	16,453	85,993	6,117	77,180	40,286	38,971	29,537	13,069	3,987	15,466	13,752	2,021,667

주: 비해당 193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향후 직업훈련 희망 훈련분야에서는 전체의 24.7%가 컴퓨터·정보처리 분야로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그 외 기타 서비스분야(9.8%), 제과·제빵분야(8.9%), 토목·건축분야(8.6%), 기계분야(8.5%)라는 응답도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장 많이 응답한 컴퓨터·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간장애가 6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정신지체의 순이었다. 그 외 서비스 분야는 심장장애(19.1%)와 정신장애(19.0%)가, 제과·제빵분야는 호흡기장애(41%)가 가장 많았다.

〈표 6-5-16〉 향후 직업훈련 희망분야

(단위: 명,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장 애	장루· 요루장 애	간질장 애	전체
기계분야	8.2	13.6	8.1	11.2	-	5.0	22.3	11.9	11.8	-	-	-	-	21.3	-	8.5
금속분야	1.5	-	2.6	1.4	-	1.7	-	5.9	-	-	-	-	-	-	-	1.6
화학·요업분야	0.4	-	-	-	-	1.5	-	-	-	-	-	-	-	-	-	0.3
전기·전자분야	6.8	7.9	1.4	-	14.4	7.0	-	3.2	7.0	-	-	-	-	-	9.9	5.5
통신분야	1.9	1.5	3.8	1.4	-	1.2	-	-	-	-	-	-	-	-	-	1.7
조선·항공분야	0.9	2.1	-	1.6	-	-	-	-	-	-	-	-	-	-	-	0.8
토목·건축분야	8.8	4.0	12.1	12.3	11.9	6.6	-	8.4	13.2	-	-	-	-	-	-	8.6
섬유분야	2.5	3.3	3.5	3.1	-	1.8	-	2.8	-	10.2	-	-	-	-	-	2.7
광업분야	-	-	-	-	-	-	-	-	-	-	-	32.4	-	-	-	-
컴퓨터·정보처리분야	24.4	28.3	21.4	28.3	10.8	29.9	24.7	16.9	43.0	10.5	59.0	67.6	-	-	8.6	24.7
공예분야	4.7	1.8	4.1	9.2	-	6.9	25.6	3.1	-	10.7	-	-	-	-	15.9	5.1
산업융합분야	0.7	-	-	-	-	-	-	-	-	-	-	-	-	-	-	0.4
철도·안마분야	3.4	4.0	12.2	-	14.1	-	-	-	-	10.4	-	-	-	-	-	3.7
사무분야	6.7	5.8	5.9	6.6	25.1	1.7	27.4	5.3	-	7.9	-	-	-	41.1	17.6	6.6

〈표 6-5-16〉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이·미용분야	4.5	1.9	3.9	11.2	-	5.2	-	14.6	-	10.3	-	-	43.1	19.4	13.5	5.5
제과·제빵분야	9.0	7.9	6.7	7.7	11.3	9.9	-	6.6	18.0	-	41.0	-	-	18.2	17.4	8.9
기타 서비스분야	9.9	7.7	14.1	2.9	-	13.3	-	19.0	-	19.1	-	-	-	-	9.5	9.8
기타	5.8	10.1	-	3.2	12.3	8.1	-	2.4	6.9	21.0	-	-	56.9	-	7.6	5.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50)	(52)	(76)	(65)	(8)	(60)	(4)	(34)	(15)	(10)	(5)	(3)	(2)	(5)	(12)	(801)
전국추정수	173,029	19,811	29,668	25,151	3,222	22,866	1,541	12,610	5,747	3,873	1,929	1,193	652	1,973	4,727	307,992

주: 비해당(희망안함) 4,665건 제외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게 꼽은 것은 임금보조이며, 다음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직업적응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이었다. 이외에도 취업정보 제공(12.8%), 의무고용제준수 유도(8.4%), 취업상담·평가·알선(13.2%) 등을 중요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표 6-5-17〉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국가의 역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16.2	17.8	18.4	20.0	25.3	23.1	19.6	19.1
취업정보 제공	14.5	8.6	12.9	13.0	6.7	8.1	-	8.5
직업능력 개발 (직업적응 훈련)	15.8	14.4	17.0	13.7	11.4	30.2	44.5	29.7
취업상담·평가·알선	13.7	11.6	14.4	14.6	9.3	10.2	10.9	10.8
사후지도	1.9	3.0	2.2	1.9	-	1.5	7.4	2.6
임금보조	22.4	28.9	23.2	24.9	30.3	20.0	3.2	22.5
직장내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5.4	8.5	2.9	4.4	2.4	2.1	9.7	3.0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9.8	6.3	8.6	7.1	12.2	4.3	4.8	3.8
기타	0.2	0.8	0.4	0.4	2.2	0.4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49)	(653)	(557)	(569)	(43)	(236)	(22)	(195)
전국추정수	979,100	251,558	214,960	218,407	16,741	89,685	8,298	74,962

〈표 6-5-17〉 계속

구분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장애	전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23.7	17.8	10.4	38.8	19.9	18.7	11.2	17.8
취업정보 제공	16.0	12.5	14.7	11.1	9.3	20.5	14.2	12.8
직업능력 개발 (직업적응 훈련)	11.4	17.2	17.6	12.2	10.0	7.8	19.5	16.7
취업상담·평가 알선	15.8	16.1	9.8	6.1	9.9	10.3	13.8	13.2
사후지도	1.8	3.0	1.0	-	-	4.4	-	2.1
임금보조	19.5	24.4	36.1	16.7	26.8	17.6	18.8	23.5
직장내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3.9	4.0	6.3	6.6	7.1	2.5	7.9	5.2
의무고용제 준수 유도	7.9	4.0	4.0	8.5	17.0	18.2	14.6	8.4
기타	-	1.1	-	-	-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06)	(100)	(77)	(34)	(11)	(39)	(37)	(5,228)
전국추정수	40,286	38,513	29,953	13,069	3,987	15,110	14,151	2,008,780

주: 비해당 160건 및 무응답 78건 제외

제 6 절 경제상태

장애인들이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61.3%가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고, 32.4%가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장애인 은 0.4%에 불과하였으며, 중상층에 속한다는 응답도 5.9%에 불과하였다.

장애유형별로 하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정신장애(77.9%)였고, 상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언어장애(2.1%)였다. 그외 중상층과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이다.

〈표 6-6-1〉 재가장애인이 느끼는 주관적 소속 계층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상층	0.4	0.5	0.6	0.3	2.1	0.3	-	-	-	-	-	-	-	-	-	0.4
중상층	5.7	6.8	6.1	5.9	2.0	6.3	17.3	2.9	6.2	2.8	5.4	11.9	9.2	-	-	5.9
중하층	34.0	28.6	30.6	37.0	39.9	28.8	41.7	19.2	34.4	32.1	23.3	32.1	31.9	38.1	28.8	32.4
하층	59.9	64.0	62.7	56.7	56.0	64.6	41.1	77.9	59.4	65.1	71.3	56.0	58.9	61.9	71.2	6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 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93

주: 무응답 2건 제외

개인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61.4천명이었으며, 1,013.6천명은 공적이전소득이 있고, 695.0천명은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이 있으며, 사적이전소득은 504.2천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개인소득은 58.2만원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월평균개인소득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장애(86.9%)였고, 월평균 개인소득액은 안면장애(79만원)가 가장 높았다. 반면, 발달장애의 경우 월평균 개인소득(19.2%)이 가장 없는 장애유형이었고, 동시에 월평균소득액(6만원)도 가장 낮은 장애유형이었다.

〈표 6-6-2〉 개인 소득의 수입원

(단위: %, 만원, 명)

구분	근로소득 및 사업·부업소득		개인재산·금융·연금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월평균 개인소득 계	
	있음	평균액	있음	평균액	있음	평균액	있음	평균액	있음	평균액
지체장애	44.3	56.19	5.1	4.93	43.1	10.72	23.0	5.87	83.8	75.59
뇌병변장애	7.6	7.87	7.7	6.64	62.6	13.41	29.6	6.89	76.8	34.81
시각장애	38.5	45.01	5.0	3.66	48.3	8.76	23.4	6.91	82.3	64.31
청각장애	34.1	27.77	6.4	6.12	62.2	8.09	33.7	5.61	86.9	44.29
언어장애	36.8	30.61	6.5	3.82	31.8	8.63	25.3	6.65	71.6	49.71
정신지체	14.9	7.42	-	0.00	33.3	13.65	7.9	2.10	48.1	23.17
발달장애(자폐증)	1.8	1.19	-	0.00	12.9	2.85	7.9	2.02	19.2	6.05
정신장애	16.1	8.41	1.5	0.68	48.7	16.86	10.0	1.84	64.8	22.82
신장장애	22.9	35.78	4.6	12.75	54.7	15.60	23.2	6.03	80.9	70.17
심장장애	11.0	7.94	8.5	6.15	49.7	5.56	34.9	7.53	72.0	27.18
호흡기장애	25.8	22.03	8.7	8.47	67.6	12.77	25.3	4.88	82.1	48.14
간장애	17.6	28.29	18.8	21.31	44.0	8.71	42.3	16.40	83.2	74.71
안면장애	49.2	56.67	-	0.00	42.2	22.58	17.9	0.33	73.6	79.58
장루·요루장애	37.9	38.58	6.2	4.25	69.2	9.72	33.0	9.05	82.2	61.60
간질장애	14.2	7.00	-	0.00	31.5	5.84	13.6	2.42	51.2	15.26
계	33.1	38.17	5.2	4.94	48.2	10.84	24.0	5.77	79.1	58.18
(N)	(5,456)		(5,459)		(5,459)		(5,463)		(5,447)	
전국추정수	694,976		110,096		1,013,571		504,236		1,661,423	

주: 무응답(순서대로) 10건, 7건, 7건, 3건, 19건 제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20.8%이며, 미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66.3%로서 2/3가 연금에 미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와 간질장애의 연금 미가입률이 80%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연금가입을 한 경우, 국민연금에는 지체장애(28.3%)가, 공무원연금에는 언어장애(2.5%)가, 보험연금에는 시각장애(0.2%)가, 개인연금에는 지체장애(3.0%)가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고, 사립학교교원연금에는 어떠한 장애유형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3〉 연금 가입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미가입	61.4	74.7	65.7	73.7	50.1	68.9	17.7	86.1	69.3	72.0	70.4	68.3	66.2	70.4	80.9	66.3
국민연금	28.3	8.0	23.1	14.4	25.8	6.9	1.8	13.1	19.3	13.0	13.3	19.9	25.0	19.1	10.5	20.8
공무원연금	1.1	0.6	1.1	0.4	2.5	-	-	-	1.0	0.9	1.3	-	-	-	-	0.8
사립학교 교원연금	-	-	-	-	-	-	-	-	-	-	-	-	-	-	-	-
군인연금	0.0	-	-	-	-	-	-	-	-	-	-	-	-	-	-	0.0
보훈연금	0.0	0.1	0.2	-	-	-	-	-	-	-	-	-	-	-	-	0.1
개인연금	3.0	1.0	1.4	1.7	-	2.1	1.7	0.5	1.7	2.0	1.3	-	-	-	-	2.1
기타	0.0	-	-	-	-	-	-	-	-	-	-	-	-	-	-	0.0

주: 중복응답 비율임.

장애로 인해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16.6%로서 ‘받은 적이 없는’ 장애인이 전체의 83.4%로 절대 다수가 받지 않은 상태이다. 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받은 연금 또는 일시금은 산재보험으로 37.9%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인의 연금 또는 일시금 수혜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장애인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요 연금 또는 일시금의 유형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는 신장장애(49.7%)가, 공무원연금은 뇌병변장애(2.7%)가, 보훈연금은 안면장애(51.7%)가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간질장애가 각각 47.5%, 52.5%로 가장 많았다. 국가배상과 개인배상은 각각 시각장애(4.3%), 언어장애(100.0%)가 가장 많았고, 그 외 퇴직금은 호흡기장애(40.9%)가 가장 많았다.

〈표 6-6-4〉 장애로 인한 연금 또는 일시금 수혜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고있다	25.3	16.2	8.3	4.1	2.0	1.1	1.7	2.0	17.2	8.7	12.6	21.2	33.7	12.2	6.1	16.6
국민연금	13.4	38.8	22.2	36.9	-	-	-	25.7	49.7	21.8	9.7	33.9	-	21.0	-	18.5
공무원연금	0.3	2.7	-	-	-	-	-	-	-	-	-	-	-	-	-	0.6
사립학교 교원연금	-	-	-	-	-	-	-	-	-	-	-	-	-	-	-	-
군인연금	0.4	-	-	-	-	-	-	-	5.9	-	-	-	-	-	-	0.4
보훈연금	9.6	4.4	20.2	21.9	-	-	-	49.5	17.0	10.0	21.1	-	51.7	19.2	-	10.4
산재보험	45.3	16.7	29.6	20.6	-	-	-	-	6.1	11.3	30.6	-	28.0	-	47.5	37.9
자동차보험	20.7	18.7	8.0	7.0	-	69.8	-	24.8	5.6	-	10.5	-	-	-	52.5	18.7
국가배상	1.3	1.7	4.3	-	-	-	-	-	-	-	-	-	-	-	-	1.4
퇴직금	5.6	6.5	4.1	7.1	-	-	-	-	-	-	40.9	16.1	-	-	-	5.8
개인배상	9.8	7.7	1.8	7.3	100.0	30.2	-	-	-	-	10.5	-	20.3	-	-	8.8
기타	13.2	19.8	24.7	4.9	-	-	100.0	-	16.3	57.0	7.9	53.2	-	59.8	-	15.3

주: 중복응답 비율임

장애인 가구 중 48.9%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2005년 한국의 사회지표(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3만 4천대이며, 전체 자동차수의 71.1%를 차지하는 승용차 등록대수는 1,062만 1천대이고, 이중 자가용 승용차는 1,027만 4천대이고, 가구 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는 0.66대로 10가구 중 7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82.1%)와 안면장애의 차량소유 정도가 가장 높았고, 정신장애와 호흡기장애의 차량소유 정도는 가장 낮았다.

〈표 6-6-5〉 차량소유 여부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계
있다	53.5	46.1	43.4	44.9	50.7	48.3	82.1	24.2	53.9	49.7	29.6	48.5	71.2	34.9	43.3	48.9
없다	46.5	53.9	56.6	55.1	49.3	51.7	17.9	75.8	46.1	50.3	70.4	51.5	28.8	65.1	56.7	5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5)
전국 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2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729

주: 무응답 1건 제외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56.1%, 장애인 가구 중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66.4%가 LP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88.2%, 보호자가 운

전하는 경우 89.0%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6〉 차량소유·연료·표지발급 여부

(단위: %, 대)

구분	자동차 소유	
	활동제한자용	
	본인운전	보호자운전
소유	24.7(416,192)	24.7(318,834)
L P G 차량	56.1(233,279)	66.4(211,605)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88.2(366,969)	89.0(283,757)

재가장애인의 67.4%가 장애로 인하여 월평균 155.4천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구소득의 9.9%, 가구지출의 1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인이 357.0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장장애 343.9천원, 발달장애 323.1천원, 장루·요루장애 283.9천원, 뇌병변장애 272.8천원의 순이었다. 특히, 간장애인의 추가비용 중 의료비가 184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비목이었다.

총 추가비용을 지출비목별로 보면, 의료비가 90.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서 22.9천원이었다. 의료비의 경우 신장장애와 간장애의 추가비용이 20만원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의 경우는 발달장애와 간장애가 4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표 6-6-7〉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총 추가비용	120.5	272.8	78.1	55.8	112.0	156.5	323.1	106.3	343.9	121.8	237.6	357.0	279.0	283.9	115.0	155.4
교통비	23.1	33.5	13.9	7.0	13.5	24.2	49.3	11.6	42.9	15.1	19.4	46.9	9.3	18.0	10.6	22.9
의료비	69.1	159.3	39.3	22.5	44.9	30.6	33.6	84.8	280.2	104.5	184.0	267.0	47.7	178.3	56.2	90.2
교육비	0.2	5.9	0.4	2.7	36.5	47.5	177.6	1.3	0.0	0.0	0.0	0.0	0.0	0.0	0.0	6.1
보호·간병인	8.2	44.7	0.0	0.3	0.0	0.0	0.8	0.0	5.7	0.0	13.9	2.4	0.0	3.1	0.0	11.8
재활·편이용료	0.6	3.1	0.0	0.1	5.1	23.9	22.0	0.2	0.0	0.0	0.0	0.0	0.0	0.0	0.0	2.1
통신비	0.6	0.5	2.9	2.7	0.0	5.9	2.4	0.9	0.8	0.3	0.5	0.2	0.0	0.1	0.0	1.2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5.1	3.2	8.8	17.0	0.1	1.1	0.4	0.0	4.1	0.6	19.6	0.0	1.5	80.7	0.0	6.4
부모사후대비용	10.6	4.1	11.4	2.2	7.7	17.8	33.0	4.5	4.3	1.1	0.0	0.0	220.5	0.0	38.9	8.8
기타	3.1	18.5	1.5	1.5	4.3	5.5	4.1	3.0	5.8	0.3	0.2	40.4	0.0	3.8	9.3	6.0

주: 중복응답 비율임

장애인 가운데 노후생활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86.1%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하였고 응답한 비율이 34.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보험을 들었다 28.6%, 생명보험, 장제보험 등 14.9%, 은행저축 8.9%, 개인연금 3.3%의 순이었다.

〈표 6-6-8〉 노후생활 대책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사회보험을 들었다	36.4	20.7	31.1	22.6	26.4	7.5	1.8	11.3	28.0	20.6	29.8	35.5	25.0	29.6	8.0	28.6
개인연금을 들었다	4.5	1.5	3.3	1.7	2.0	2.4	7.0	0.5	3.7	2.9	1.3	-	9.5	5.9	-	3.3
은행에 저축(저금)을 하였다	10.1	6.6	9.3	8.9	4.1	8.4	5.9	5.4	6.1	9.2	6.4	3.4	6.8	13.5	8.1	8.9
생명보험, 장제보험 등 보험을 들었다	19.0	8.2	19.7	8.3	13.5	7.8	30.5	4.6	8.4	16.3	9.4	11.6	26.0	8.6	13.4	14.9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하였다	37.9	33.4	37.7	36.4	29.7	6.6	3.9	12.7	32.8	39.5	39.9	44.6	36.0	41.4	10.2	34.0
명이나 집 등의 부동산을 따로 사두었다	9.4	9.6	8.7	9.0	4.1	3.3	4.6	1.9	4.2	8.3	10.2	12.3	-	11.5	5.2	8.5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했다	84.5	86.6	82.1	88.6	91.4	93.8	90.6	95.8	84.9	85.4	82.9	81.0	93.2	81.2	92.4	86.1
기타	0.2	0.6	0.2	0.3	-	0.3	-	0.5	0.7	0.9	1.7	-	-	-	-	0.3

주: 중복응답 비율임

제 7 절 결혼생활/여성장애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러한 장애인의 결혼생활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최근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반영되어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먼저, 장애인들의 결혼여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87.1%의 장애인이 ‘결혼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2.8%의 장애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타 즉, 미혼모나

미혼부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0.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결혼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90% 이상으로 높았다. 그 중에서도 내부장애의 결혼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장루·요루장애와 호흡기장애의 결혼정도가 97%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발달장애(89.8%)와 정신지체(70.4%)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의 장애유형이었는데, 정신지체와 정신장애의 경우가 각각 0.4%, 0.5%로 가장 많았다.

〈표 6-7-1〉 결혼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 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0.9	91.0	91.8	94.3	83.6	29.2	10.2	51.7	85.0	96.1	97.6	96.7	83.1	97.7	55.5	87.1
아니오	9.0	9.0	8.0	5.7	16.4	70.4	89.8	47.8	15.0	3.9	2.4	3.3	16.9	2.3	44.5	12.8
기타 (미혼모/부)	0.1	-	0.2	-	-	0.4	-	0.5	-	-	-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76)	(664)	(559)	(582)	(44)	(216)	(11)	(201)	(106)	(102)	(77)	(34)	(11)	(40)	(35)	(5,258)
전국추정수	989,213	255,539	215,626	223,233	17,097	81,786	4,153	77,180	40,286	39,375	29,953	13,069	3,987	15,466	13,298	2,109,261

주: 비해당(18세 미만 장애인) 208건 제외

결혼한 장애인들의 경우 언제 결혼하였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20~29세의 연령대(68.7%)에 가장 많이 결혼하였고, 다음으로 10~19세 연령대(16.8%), 30~39세 연령대(13.4%)의 순이었다. 그외 50세 이상에 결혼한 경우도 0.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10~19세 연령대에는 청각장애(25.5%)가, 20~29세 연령대에는 발달장애(100.0%)가, 30~39세 연령대에는 정신장애(20.6%)가, 40~49세 연령대에는 언어장애(2.8%)가 가장 결혼을 많이 하였고,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지체장애(0.1%)만이 결혼하였다.

장애유형 전반적으로 10~29세 연령대에 가장 많이 결혼하였으나, 언어장애, 정신적 장애 유형, 대부분의 내부장애유형(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은 20~39세 연령대에 결혼을 많이 하였다.

〈표 6-7-2〉 결혼 연령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0~19세	14.1	22.0	19.2	25.5	10.4	7.9	-	6.0	9.0	20.4	10.7	6.3	20.8	23.5	9.7	16.8
20~29세	71.2	66.6	65.7	59.8	75.4	74.6	100.0	72.4	71.2	68.4	74.0	75.6	70.2	62.2	79.7	68.7
30~39세	13.4	11.3	13.3	13.7	11.4	17.5	-	20.6	19.8	9.0	12.7	18.1	9.0	14.4	10.6	13.4
40~49세	1.2	0.2	1.8	0.7	2.8	-	-	1.0	-	2.3	2.7	-	-	-	-	1.1
50세 이상	0.1	-	-	-	-	-	-	-	-	-	-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41)	(599)	(512)	(545)	(37)	(62)	(1)	(102)	(90)	(98)	(75)	(32)	(9)	(39)	(19)	(4,561)
전국추정수	898,210	230,706	197,562	208,990	14,293	23,103	423	39,512	34,257	37,856	29,220	12,383	3,313	15,106	7,382	1,752,316

주: 비해당(만 18세 미만과 결혼안한 장애인) 888건 및 무응답 17건 제외

결혼하지 않은 장애인들의 경우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건강·장애문제 때문에’라고 응답한 경우가 50%로 가장 많았고, ‘결혼 비적령기’(18.9%), ‘집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1.2%),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6.8%)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결혼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장애상태라는 것 자체와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결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전체적인 경향이었던 ‘건강·장애문제’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반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는 ‘결혼하기 이른 나이여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37.0%, 36.1%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장애는 ‘결혼시기를 놓쳐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2.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안면장애인은 ‘건강·장애문제’(58.3%) 이외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41.7%)’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많았다.

〈표 6-7-3〉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집장만, 결혼비용 등 경제적 어려움	18.5	11.1	20.5	13.3	14.2	2.6	-	4.2	6.3	24.2	-	-	-	-	6.8	11.2
결혼생활과 직장일 동시수행 어려움	1.8	-	-	3.2	-	0.7	-	-	-	-	-	-	-	-	-	0.9
결혼 비적령기	17.8	22.0	37.0	36.1	13.6	20.0	30.1	3.8	20.7	25.0	-	-	-	-	17.4	18.9
결혼시기를 놓쳐서	7.8	5.1	2.4	6.7	13.1	-	-	2.0	12.1	-	52.3	-	-	-	6.4	4.7
건강·장애문제	35.3	50.0	26.1	19.4	45.0	65.0	69.9	78.0	55.8	50.8	47.7	-	58.3	100.0	62.9	50.0
결혼생각이 없어서	8.7	5.3	6.9	6.1	-	5.3	-	6.6	5.1	-	-	-	41.7	-	6.5	6.7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8.8	6.5	7.1	11.5	-	6.4	-	5.3	-	-	-	-	-	-	-	6.8
기타	1.2	-	-	3.7	14.1	-	-	-	-	-	-	-	-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N)	(229)	(57)	(44)	(31)	(7)	(149)	(10)	(96)	(16)	(4)	(2)	-	(29)	(1)	(16)	(664)
전국추정수	88,745	21,819	16,907	11,962	2,804	56,791	3,730	36,549	6,029	1,519	733	-	674	360	5,916	254,538

주: 비해당(결혼한 장애인) 4,790건 및 무응답 12건 제외

결혼한 장애인들의 경우 배우자의 장애 여부를 알아 본 결과, 배우자가 ‘장애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86.7%,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3.3%였다.

장애유형별로 정신지체의 45.5%, 간질장애의 32.3%가 배우자가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에 비해 배우자도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6-7-4〉 배우자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12.6	10.7	12.4	17.2	20.0	45.5	-	19.6	5.9	15.7	7.6	11.4	13.5	8.8	32.3	13.3
아니오	87.4	89.3	87.6	82.8	80.0	54.5	100.0	80.4	94.1	84.3	92.4	88.6	86.5	91.2	67.7	86.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759)	(424)	(362)	(342)	(25)	(45)	(1)	(53)	(70)	(73)	(58)	(26)	(6)	(34)	(12)	(3,290)
전국추정수	674,986	163,129	139,691	130,894	9,673	16,781	423	20,330	26,176	28,005	22,542	10,021	2,212	13,133	4,641	1,262,637

주: 비해당(결혼안한 장애인) 889건 및 이혼·사별장애인 1,287건 제외

결혼한 장애인들 중 배우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에게 장애를 가진 배우자의 장애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배우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52.1%), 청각장애(13.9%), 시각장애(11.0%)의 순으로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배우자의 장애유형이 ‘지체장애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정신지체, 정신장애, 안면장애의 경우는 ‘정신지체’가 많았고, 신장장애는 ‘청각장애’가 더 많았다. 전반적으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경우는 배우자의 장애유형이 15개의 장애유형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표 6-7-5>에서 보는 바와같이 내부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경우는 배우자의 장애유형이 특정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7-5〉 배우자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지체장애	61.6	48.0	45.1	34.9	42.7	24.5	-	27.5	46.8	65.0	70.9	36.0	-	36.3	100.0	52.1
뇌병변장애	8.1	12.7	6.3	9.9	-	-	-	-	-	9.1	29.1	-	-	30.7	-	8.2
시각장애	9.3	10.0	13.6	16.5	-	5.2	-	20.9	-	16.5	-	32.0	-	33.0	-	11.0
청각장애	8.7	17.6	19.4	32.9	20.0	-	-	11.7	53.2	9.3	-	-	-	-	-	13.9
언어장애	0.5	2.3	-	-	37.3	-	-	-	-	-	-	-	-	-	-	0.9
정신지체	2.7	2.3	2.3	2.1	-	57.0	-	29.0	-	-	-	32.0	100.0	-	-	5.8
발달장애(자폐증)	-	-	-	-	-	-	-	-	-	-	-	-	-	-	-	-
정신장애	1.3	-	4.8	-	-	9.4	-	11.0	-	-	-	-	-	-	-	1.8
신장장애	0.8	-	-	1.9	-	-	-	-	-	-	-	-	-	-	-	0.7
심장장애	3.4	2.3	4.2	1.8	-	-	-	-	-	-	-	-	-	-	-	2.6
호흡기장애	1.4	2.9	-	-	-	-	-	-	-	-	-	-	-	-	-	1.0
간장애	-	-	2.1	-	-	-	-	-	-	-	-	-	-	-	-	0.2
안면장애	-	-	-	-	-	3.9	-	-	-	-	-	-	-	-	-	0.2
장루·요루장애	0.5	2.0	2.2	-	-	-	-	-	-	-	-	-	-	-	-	0.7
간질장애	1.8	-	-	-	-	-	-	-	-	-	-	-	-	-	-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7)	(46)	(44)	(60)	(5)	(21)	-	(10)	(4)	(12)	(4)	(3)	(1)	(3)	(4)	(444)
전국추정수	85,217	17,488	17,326	22,502	1,935	7,638	-	3,984	1,542	4,400	1,723	1,140	299	1,160	1,500	167,854

주: 비해당(결혼 안하였거나 이혼·사별장애인) 5,022건 제외

배우자가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에 대해 배우자의 장애등급을 물어본 결과, ‘2급’과 ‘3급’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각각 1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급’이 19.1%로 많았다. 배우자의 장애등급을 경증(1급~2급), 중등도(3급~4급), 중증(5급~6급)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배우자의 장애등급은 중등도(36.8%), 중증(33.6%), 경증(29.6%)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배우자의 장애유형이 지체장애, 심장장애인 경우 경증(5급~6급)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장애유형이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의 내부기관 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경우는 중등도(3급~4급)가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의 장애유형이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간질장애인 경우는 중증(1급~2급)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6-7-6〉 배우자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급	8.2	3.7	20.3	12.2	26.4	5.7	-	13.1	-	-	-	-	-	-	26.6	9.7
2급	19.0	16.6	12.5	26.2	47.9	46.8	-	-	25.7	9.5	-	-	-	-	24.1	19.9
3급	20.2	16.6	18.3	19.8	-	17.8	-	44.7	50.9	10.0	-	-	-	-	26.5	19.9
4급	15.8	32.4	17.5	14.1	-	11.9	-	-	23.4	20.3	100.0	52.9	-	100.0	-	16.9
5급	21.5	22.4	23.0	11.5	-	6.3	-	8.6	-	40.4	-	47.1	-	-	-	19.1
6급	15.3	8.2	8.4	16.2	25.7	11.6	-	33.6	-	19.8	-	-	-	-	22.9	1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N)	(192)	(25)	(34)	(50)	(4)	(17)	-	(9)	(4)	(10)	(1)	(2)	-	(1)	(4)	(353)
전국추정수	72,022	9,330	13,519	18,665	1,506	6,288	-	3,560	1,542	3,650	408	775	-	421	1,500	133,186

주: 비해당(결혼 안한 장애인, 이혼·사별장애인, 배우자가 장애없는 장애인) 5,113건 제외

결혼한 장애인들의 경우 자녀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94.8%의 장애인들이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5.2%의 장애인만이 자녀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장애유형별로 보았을 때, 정신지체의 경우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26.5%로 가장 많았다.

〈표 6-7-7〉 자녀의 유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4.2	97.4	85.6	96.7	91.7	73.5	100.0	86.3	95.5	97.8	95.7	100.0	100.0	100.0	88.9	94.8
아니오	5.8	2.6	4.4	3.3	8.3	26.5	-	13.7	4.5	2.2	4.3	-	-	-	11.1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44)	(604)	(514)	(549)	(37)	(64)	(1)	(103)	(90)	(98)	(75)	(32)	(8)	(39)	(19)	(4,577)
전국추정수	899,400	232,601	198,367	210,593	14,293	23,873	423	39,915	34,257	37,856	29,220	12,383	2,900	15,106	7,382	1,758,569

주: 비해당 887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자녀가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몇 명의 자녀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자녀의 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명’이 21.8%, ‘5~9명’이 19.2%의 순으로 많았다. 즉, 장애인들의 55% 정도는 자녀가 ‘2~3명’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뇌병변장애(26.7%), 청각장애(27.6%), 장루·요루장애(37.1%)는 자녀가 ‘2명’인 경우보다 ‘5~9명’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이들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현재 비교적 타 장애유형에 비해 고령이어서 출산율이 높은 시대에 출산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6-7-8〉 자녀의 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명	12.7	8.8	13.1	8.6	18.0	24.7	-	30.8	14.5	8.3	16.7	11.9	20.2	2.8	34.8	12.2
2명	36.8	22.9	28.9	24.7	32.2	44.6	100.0	41.5	41.9	25.9	30.4	33.6	44.6	26.8	42.5	32.4
3명	21.1	24.7	23.3	21.3	29.7	15.1	-	18.1	21.9	27.3	18.1	29.9	11.5	16.1	6.0	21.8
4명	13.5	16.6	13.4	17.7	3.3	4.1	-	8.6	11.6	19.4	15.1	9.6	11.4	17.3	11.3	14.2
5~9명	15.9	26.7	21.3	27.6	16.8	11.4	-	1.0	10.1	19.1	19.7	15.0	12.2	37.1	5.4	19.2
10명 이상	0.1	0.4	-	0.2	-	-	-	-	-	-	-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10)	(588)	(492)	(531)	(34)	(47)	(1)	(88)	(86)	(96)	(72)	(32)	(9)	(39)	(17)	(4,342)
전국추정수	847,244	226,541	189,572	203,680	13,100	17,557	423	34,460	32,718	37,025	27,964	12,383	3,313	15,106	6,563	1,667,649

주: 비해당 1,122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자녀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체적으로 92.5%의 장애인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7.5%였는데,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지체(30.2%), 심장장애(10.5%)의 순이었다.

〈표 6-7-9〉 장애자녀의 유무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6.4	8.2	8.9	9.0	5.4	30.2	-	5.5	4.6	10.5	8.4	6.3	-	7.6	-	7.5
아니오	93.6	91.8	91.1	91.0	94.6	69.8	100.0	94.5	95.4	89.5	91.6	93.7	100.0	92.4	100.0	9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07)	(588)	(491)	(531)	(34)	(46)	(1)	(88)	(86)	(96)	(72)	(32)	(8)	(39)	(17)	(4,336)
전국추정수	846,055	226,541	189,185	203,680	13,100	17,217	423	34,460	32,718	37,025	27,964	12,383	2,900	15,106	6,563	1,665,320

주: 비해당 1,127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에 대해서 그 자녀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지체장애’(44.5%)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지체(14.3%), 정신장애(9.3%)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지체장애’를 가진 자녀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나, 정신지체의 경우 자녀도 ‘정신지체’를, 정신장애의 경우 또한 자녀도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정신지체 자녀의 장애유형이 ‘정신지체’라고 응답한 경우가 75.0%로 매우 높았다.

〈표 6-7-10〉 장애자녀의 장애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지체장애	50.9	41.8	36.6	51.7	-	16.7	-	-	48.5	28.3	50.4	100.0	-	-	-	44.5
뇌병변장애	9.0	6.1	4.4	8.3	-	-	-	-	-	9.1	-	-	-	36.6	-	7.2
시각장애	5.4	7.6	20.1	6.4	-	-	-	19.7	-	10.8	-	-	-	-	-	7.7
청각장애	5.4	4.0	4.4	14.4	49.5	-	-	-	-	10.2	16.4	-	-	-	-	6.6
언어장애	1.4	2.0	-	2.3	-	-	-	-	-	-	-	-	-	33.5	-	1.5
정신지체	12.0	10.5	16.2	6.1	-	75.0	-	19.7	-	21.3	33.2	-	-	-	-	14.3
발달장애(자폐증)	-	-	2.3	-	-	-	-	-	-	-	-	-	-	-	-	0.3
정신장애	7.6	13.7	16.0	4.5	50.5	-	-	40.5	-	10.4	-	-	-	-	-	9.3
신장장애	2.2	6.2	-	-	-	-	-	-	-	-	-	-	-	29.9	-	2.4
심장장애	0.7	-	-	2.2	-	-	-	-	-	9.8	-	-	-	-	-	1.3
호흡기장애	0.7	-	-	-	-	-	-	-	24.1	-	-	-	-	-	-	0.3
간장애	-	2.0	-	2.1	-	-	-	-	27.3	-	-	-	-	-	-	0.6
안면장애	-	-	-	-	-	-	-	-	-	-	-	-	-	-	-	-
장루·요루장애	0.7	-	-	-	-	-	-	-	-	-	-	-	-	-	-	0.3
간질장애	4.1	6.2	-	1.9	-	8.3	-	20.2	-	-	-	-	-	-	-	3.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N)	(141)	(49)	(43)	(48)	(2)	(13)	-	(5)	(4)	(10)	(6)	(2)	-	(3)	-	(326)
전국추정수	54,148	18,538	16,746	18,421	707	4,820	-	1,882	1,514	3,881	2,346	84	-	1,147	-	124,934

주: 비해당 5,136건 및 무응답 4건 제외

장애가 있는 자녀의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 결과, 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이 ‘2급’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2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급’이 20.4%, ‘3급’은 18.0%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은 중증에 해당하는 ‘1급~2급’이 38.6%, 중등도에 해당하는 ‘3급~4급’이 26.4%, 그리고 경증에 해당하는 ‘5급~6급’이 35.0%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이 경증인 ‘1급~2급’이 가장 많이 있었고, 뇌병변장애,

정신지체의 경우 장애자녀의 장애등급이 중등도인 ‘3급~4급’이, 그리고 청각장애, 신장장애, 간장애의 장애자녀 장애등급은 경증인 ‘5급~6급’이 가장 많았다.

〈표 6-7-11〉 장애자녀의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급	19.0	14.1	16.9	14.1	100.0	47.7	-	34.7	23.4	-	-	-	-	52.8	-	17.3
2급	22.8	19.4	25.8	8.0	-	-	-	33.1	-	48.9	51.3	-	-	47.2	-	21.3
3급	16.2	16.5	16.9	21.2	-	52.3	-	-	-	26.2	48.7	-	-	-	-	18.0
4급	7.7	19.5	6.2	5.1	-	-	-	-	27.3	-	-	-	-	-	-	8.4
5급	14.8	17.6	9.6	16.9	-	-	-	-	49.2	11.3	-	49.2	-	-	-	14.6
6급	19.6	12.9	24.7	34.7	-	-	-	32.2	-	13.7	-	50.8	-	-	-	2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N)	(106)	(36)	(30)	(36)	(1)	(4)	-	(3)	(4)	(8)	(6)	(2)	-	(2)	-	(238)
전국추정수	40,506	13,513	11,770	13,748	357	1,455	-	1,149	1,514	3,077	2,346	784	-	727	-	90,946

주: 비해당 5,202건 및 무응답 26건 제외

결혼한 장애인 중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결과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4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가 19.8%, ‘건강·장애문제 때문에’가 10.7%였다. 그 외 ‘친정·시댁식구들이 원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1.4%,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가 4.3%로 본인의 의지 보다는 주위 사람들 즉, 타인의 권유에 의해 자녀를 낳지 않은 경우가 약 5.7% 된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2.9%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대부분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은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안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심장장애의 경우는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51.3%), 호흡기장애는 ‘친정·시댁식구들이 원하지 않아서(35.8%)’로 가장 많았다.

〈표 6-7-12〉 자녀가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44.0	43.5	50.5	49.8	100.0	35.4	-	26.6	50.3	48.7	-	-	-	-	51.3	43.7
학업·직장·경제적 이유로 임신 연기	11.8	6.7	21.8	11.3	-	-	-	-	-	-	-	-	-	-	-	10.0
건강·장애문제	8.4	-	-	11.3	-	34.3	-	19.8	31.4	-	32.5	-	-	-	48.7	10.7
자녀도 장애를 가질까봐	2.9	-	-	5.2	-	6.1	-	6.5	-	-	-	-	-	-	-	2.9
자녀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9.4	-	14.8	-	-	-	-	7.1	-	-	-	-	-	-	-	7.1
배우자가 원치 않아	3.2	6.0	-	5.7	-	5.7	-	13.1	-	51.3	-	-	-	-	-	4.3
친정, 시댁식구들이 원치 않아서	-	-	-	6.1	-	-	-	6.6	-	-	35.8	-	-	-	-	1.4
기타	20.3	43.8	12.9	10.6	-	18.5	-	20.3	-	-	31.7	-	-	-	-	1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N)	(129)	(16)	(21)	(18)	(3)	(17)	-	(15)	(4)	(2)	(3)	-	-	-	(2)	(230)
전국추정수	49,884	6,060	8,405	6,913	1,193	6,316	-	5,455	1,539	831	1,256	-	-	-	819	88,671

주: 비해당 5,227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본인의 장애 때문에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지장있다(23.4%)’, ‘약간 지장있다(21.1%)’, ‘별로 지장없다(17.4%)’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이나 발달에 ‘지장이 있다’는 경우가 44.5%,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5.5%로, 장애인들은 본인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약간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 본인의 장애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이 ‘있다’, ‘없다’로 크게 구분하였을 때,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의 경우 ‘지장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더 많았다. 특히, 정신지체(85.0%), 언어장애(84.5%), 정신장애인(73.5%)의 자녀의 성장·발달에 지장이 ‘있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표 6-7-13〉 장애로 인한 자녀의 성장·발달에의 지장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지장있음	19.0	27.7	20.2	28.3	57.7	61.7	-	44.2	28.9	32.5	36.1	36.7	-	14.4	43.8	23.4
약간 지장있음	19.9	19.7	23.5	22.5	26.8	23.3	-	29.3	20.8	25.1	20.4	17.2	15.3	25.0	20.0	21.1
별로 지장없음	18.9	12.3	15.9	19.1	5.0	5.0	-	2.8	16.7	18.2	12.2	16.4	30.5	-	12.7	17.4
전혀 지장없음	42.1	40.3	40.4	30.1	10.5	10.0	100.0	0.9	33.6	24.2	31.2	29.8	54.2	60.6	23.5	38.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03)	(147)	(300)	(248)	(19)	(40)	(1)	(72)	(42)	(34)	(33)	(17)	(7)	(12)	(16)	(2,291)
전국추정수	502,750	56,293	116,584	94,158	7,275	14,801	423	28,226	15,908	13,054	12,767	6,470	2,496	4,671	6,207	882,083

주: 비례당 3,168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현재 17세 이하 연령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 보았다. 장애인들은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자녀와 동행하는 여가생활의 어려움, 자녀가 본인의 장애를 알게 될까봐 두려움)’가 12.7%, ‘양육과 관련된 정보 부족’이 8.2%,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3.8%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본인의 장애가 자녀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단, 정신지체의 경우만 ‘양육과 관련된 정보 부족’ 때문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다.

〈표 6-7-14〉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없음	67.0	70.2	57.6	51.3	70.4	28.9	100.0	56.5	84.2	62.2	69.1	79.1	61.9	100.0	64.0	64.5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2	2.0	7.3	8.0	-	-	-	5.0	-	-	10.6	9.0	-	-	-	3.8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3.7	10.7	1.6	1.6	-	12.4	-	-	-	-	-	-	16.3	-	-	3.4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부족	2.0	-	6.7	3.2	-	-	-	2.7	5.2	-	-	-	-	-	-	2.5
양육할 충분한 시간부족	0.6	-	1.0	5.0	-	15.9	-	7.4	-	-	-	-	21.8	-	8.4	1.6
양육과 관련된 정보부족	5.4	10.6	7.6	16.6	19.1	31.7	-	17.9	10.7	7.7	9.6	11.9	-	-	19.3	8.2
장애·건강문제	2.8	4.2	2.2	3.1	-	5.7	-	-	-	9.6	-	-	-	-	8.3	2.7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0.5	-	0.9	-	-	-	-	2.4	-	-	-	-	-	-	-	0.5
기타	14.8	2.2	15.3	11.2	10.6	5.5	-	8.0	-	20.1	10.7	-	-	-	-	1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65)	(47)	(103)	(61)	(10)	(18)	(1)	(39)	(19)	(10)	(10)	(8)	(5)	(8)	(11)	(912)
전국추정수	219,213	18,150	40,588	23,257	3,780	6,725	423	15,307	7,107	3,992	3,936	3,039	1,833	1,960	4,392	353,702

주: 비례당 4,554건 제외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자녀 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자녀 교육시 ‘학교 선생님과 관계가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6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자녀와의 대화부족)’가 12.7%, ‘없음’이 9.8%, ‘자녀의 부모차별’이 4.3%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자녀 교육시 ‘학교 선생님과 관계’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많이 응답한 반면, 정신지체만이 ‘없음(34.5%)’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과 관계(25.2%)’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6-7-15〉 자녀교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없음	6.7	13.1	17.2	11.4	13.3	34.5	-	13.6	10.5	19.8	10.6	16.7	-	-	21.5	9.8
학습지도	1.2	-	-	1.7	-	-	-	-	-	-	-	-	-	-	-	0.9
학교 갈 때 통행지도	0.8	2.1	1.5	2.9	-	-	-	-	-	-	-	-	-	-	-	1.0
학교 선생님과 관계	70.2	69.4	59.8	43.4	75.1	25.2	100.0	59.4	78.2	60.4	78.7	83.3	61.9	100.0	78.5	66.5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1.0	8.4	-	18.7	-	12.3	-	15.7	-	-	-	-	-	-	-	3.3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0.6	-	1.2	-	-	11.4	-	-	-	-	-	-	16.3	-	-	0.8
자녀의 부모차별	4.2	-	4.4	11.2	-	-	-	6.1	-	9.6	-	-	21.8	-	-	4.3
학부형 모임에 어울 리지 못함	0.4	2.4	1.0	-	-	10.8	-	-	-	-	-	-	-	-	-	0.7
기타	14.8	4.5	15.0	10.7	11.7	5.8	-	5.2	11.3	10.1	10.7	-	-	-	-	1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515)	(46)	(86)	(54)	(9)	(17)	(1)	(37)	(18)	(10)	(10)	(6)	(5)	(5)	(9)	(828)
전국추정수	199,156	17,687	33,987	20,651	3,423	6,305	423	14,622	6,726	3,992	3,936	2,311	1,833	1,960	3,666	320,678

주: 비례당 4,637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집안에서 식사준비, 청소, 빨래 등 가사일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주로 하고 있다’에 34.0%의 장애인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가 33.8%, ‘가사일을 가끔 도와준다’가 32.2%의 순으로 많았다. 즉, 가사일의 참여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6.2%가 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은 가사일에 주로 내지는 가끔 참여하는 정도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정도보다 높았는데, 특히 발달장애(100.0%), 간질장애(82.9%)의 가사 참여정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가사일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67.6%), 호흡기장애(57.4%), 간장애(55.4%)가 많았다.

〈표 6-7-16〉 집안에서의 가사일(식사준비, 청소, 빨래) 참여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주로 본인이 함	36.6	15.2	36.6	40.8	36.9	33.9	100.0	38.8	26.8	43.8	17.3	24.2	53.3	28.6	77.7	34.0
가끔 도와줌	35.6	17.2	36.6	33.1	37.0	37.5	-	25.8	29.2	31.7	25.2	20.4	23.6	33.8	5.2	32.2
전혀 하지 않음	27.8	67.6	26.9	26.0	26.1	28.5	-	35.4	44.1	24.5	57.4	55.4	23.1	37.6	17.1	3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90)	(582)	(499)	(529)	(35)	(69)	(1)	(101)	(87)	(97)	(71)	(33)	(9)	(38)	(18)	(4,459)
전국추정수	877,342	223,947	192,454	202,804	13,498	25,736	423	39,066	33,212	37,502	27,611	12,644	3,313	14,715	6,962	1,711,229

주: 비해당 1,007건 제외

식사준비, 빨래, 청소 등 가사일을 많이 하지 않는 장애인들의 경우 그 이유가 장애 때문인지 물어보았다. 전체 중 54.7%의 장애인이 ‘장애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여, ‘장애 때문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장애인(45.3%)에 비해 약간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는 장애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 이유라고 83.2%나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 외 정신적 장애인과 내부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가사불참 정도가 많았다. 반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는 장애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 6-7-17〉 장애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인지의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44.0	83.2	43.0	18.4	35.8	74.9	-	72.3	65.5	61.0	77.2	64.3	50.0	30.7	67.9	54.7
아니오	56.0	16.8	57.0	81.6	64.2	25.1	-	27.7	34.5	39.0	22.8	35.7	50.0	69.3	32.1	4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639)	(391)	(133)	(140)	(9)	(20)	-	(36)	(38)	(24)	(40)	(18)	(2)	(14)	(3)	(1,507)
전국추정수	244,776	151,281	51,391	53,175	3,522	7,347	-	13,828	14,632	9,173	15,429	7,007	764	5,540	1,191	579,056

주: 비해당 3,957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임신했을 때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그때는 장애인이 아니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4.9%였고, ‘장애인이었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25.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마지막 임신시 ‘장애인이 아니었다’라고 응답한 장애유형이 많았는데, 특히 뇌병변장애(96.4%)와 내부장애유형(86.3%~100.0%)가 매우 많았다. 반면 마

지막 임신시 ‘장애인이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발달장애(100.0%), 정신지체(86.2%), 간질장애(73.0%), 언어장애(70.6%)의 순이었다.

〈표 6-7-18〉 임신시 본인의 장애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24.2	3.6	40.1	30.1	70.6	86.2	100.0	38.9	-	5.6	13.7	11.1	44.9	-	73.0	25.1
아니오	75.8	96.4	59.9	69.9	29.4	13.8	-	61.1	100.0	94.4	86.3	88.9	55.1	100.0	27.0	74.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80)	(242)	(206)	(256)	(14)	(32)	(1)	(54)	(35)	(51)	(15)	(10)	(4)	(12)	(15)	(1,827)
전국추정수	337,559	93,691	79,220	98,696	5,302	12,025	423	20,911	12,902	19,478	5,844	3,794	1,458	4,748	5,715	701,766

주: 비해당 3,637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2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안일 하기가 힘들었음’이 22.6%, ‘본인의 건강악화’가 17.2%의 순이었다. 그 외 임신기간 중 어려운 점으로 ‘주위의 시선 때문에’라고 2.9%의 장애인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장애유형별로는 임신기간 중 힘들었던 점으로, 지체장애인은 ‘집안일 하기가 힘들었음’에 30.5%의 장애인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심장장애인은 ‘본인의 건강악화’에 63.6%의 장애인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그 외 모든 장애유형에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장애인 본인에게 있어 장애라는 상태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힘든 요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6-7-19〉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본인의 건강악화	21.8	19.9	9.8	12.8	12.1	4.1	-	24.2	-	63.6	49.5	-	-	-	16.9	17.2
집안일 하기가 힘들었음	30.5	20.1	18.7	18.2	-	3.5	-	18.8	-	-	-	-	56.6	-	8.8	22.6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	8.4	9.0	2.7	1.3	26.5	8.9	-	-	-	-	-	-	-	-	-	5.8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17.7	31.3	26.3	31.5	61.4	43.2	100.0	33.5	-	36.4	50.5	100.0	43.4	-	56.6	26.5
병원 다니기가 힘들었음	2.0	-	3.6	5.4	-	-	-	-	-	-	-	-	-	-	-	2.5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었음	7.4	-	13.5	11.0	-	-	-	9.9	-	-	-	-	-	-	-	8.2
가족들의 출산 반대	0.9	-	-	1.6	-	18.8	-	4.4	-	-	-	-	-	-	17.8	2.3
병원의 시설설치 미비	0.5	-	-	1.3	-	-	-	-	-	-	-	-	-	-	-	0.4
병원내의사의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	-	-	-	-	-	-	-	-	-	-	-	-	-	-	-	-
주위의 시선때문에 기타	2.9	9.0	2.4	2.9	-	8.5	-	-	-	-	-	-	-	-	-	2.9
없음	1.6	-	2.5	2.7	-	4.4	-	4.5	-	-	-	-	-	-	-	2.1
없음	6.2	10.7	20.5	11.3	-	8.6	-	4.7	-	-	-	-	-	-	-	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N)	(210)	(10)	(81)	(78)	(10)	(23)	(1)	(21)	-	(3)	(2)	(1)	(2)	-	(11)	(453)
전국추정수	81,005	3,726	31,363	29,675	3,742	8,547	423	8,138	-	1,098	800	420	655	-	4,171	173,763

주: 비해당 5,003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장애인의 86.2%는 마지막 임신으로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마지막 임신으로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는 모두 100.0%의 장애인이 마지막 임신으로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6-7-20〉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8.4	100.0	80.7	85.4	100.0	91.7	100.0	80.9	-	63.6	100.0	100.0	100.0	-	61.9	86.2
아니오	11.6	-	19.3	14.6	-	8.3	-	19.1	-	36.4	-	-	-	-	38.1	1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N)	(212)	(9)	(81)	(79)	(10)	(27)	(1)	(20)	-	(3)	(2)	(1)	(2)	-	(11)	(458)
전국추정수	81,786	3,390	31,363	30,088	3,742	10,003	423	7,776	-	1,098	800	420	655	-	4,171	175,715

주: 비해당 5,005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한 경우 몇 살에 출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26세~30세에 출산하였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3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1세~35세가 28.5%, 21세~25세는 15.5%의 순으로 많았다. 41세 이상에 출산한 장애인도 3.3%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는 21~25세에 출산한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이외 모든 장애유형에서는 전체적인 경향과 동일하게 26~30세 출산한 장애인이 가장 많았다. 41세 이상에 출산한 장애유형 중에는 정신지체가 7.7%로 가장 많았다.

〈표 6-7-21〉 마지막 임신시 출산 연령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21~25세	14.7	11.1	13.4	14.9	20.0	26.9	-	12.5	-	50.0	-	-	50.0	-	14.3	15.5
26~30세	36.3	66.7	40.3	35.8	50.0	57.7	-	43.8	-	50.0	50.0	100.0	-	-	42.9	39.8
31~35세	33.2	11.1	28.4	31.3	10.0	7.7	100.0	25.0	-	-	-	-	-	-	28.6	28.5
36~40세	13.7	11.1	10.4	16.4	20.0	-	-	12.5	-	-	50.0	-	50.0	-	14.3	13.0
41세 이상	2.1	-	7.5	1.5	-	7.7	-	6.3	-	-	-	-	-	-	-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N)	(190)	(9)	(67)	(67)	(10)	(26)	(1)	(16)	-	(2)	(2)	(1)	(2)	-	(7)	(400)
전국추정수	73,039	3,390	26,052	25,696	3,742	9,548	423	6,293	-	698	800	420	655	-	2,583	153,339

주: 비해당 5,066건 제외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에 대해서 왜 출산하지 않았는지에 물어본 결과, ‘인공유산’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8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유산’이 10.2%, ‘현재 임신 중’이 4.9%, 그리고 ‘기타’가 1.5%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와 정신지체만이 ‘자연유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00.0%, 54.0%로 ‘인공유산’ 때문인 경우보다 더 많았다. 그 외 장애유형에서는 모두 임신시 출산하지 않은 이유로 ‘인공유산’ 때문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가장 많았다.

〈표 6-7-22〉 마지막 임신시 비출산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현재 임신 중	12.6	-	-	-	-	-	-	-	-	-	-	-	-	-	-	4.9
자연 유산	8.7	-	13.2	-	-	54.0	-	-	-	100.0	-	-	-	-	-	10.2
인공 유산	78.7	-	80.7	100.0	-	46.0	-	100.0	-	-	-	-	-	-	100.0	83.4
기타	-	-	6.1	-	-	-	-	-	-	-	-	-	-	-	-	1.5
계	100.0	-	100.0	100.0	-	100.0	-	100.0	-	100.0	-	-	-	-	100.0	100.0
(N)	(24)	-	(16)	(12)	-	(2)	-	(4)	-	(1)	-	-	-	-	(4)	(63)
전국추정수	9,457	-	6,057	4,392	-	826	-	1,483	-	400	-	-	-	-	1,588	24,203

주: 비해당 5,400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마지막 임신으로 출산하지 않은 이유가 ‘인공유산’때문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그러한 결정이 본인의 의사였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장애인의 81.5%가 ‘본인의 의사’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는 인공유산이 ‘본인의 의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정신지체는 인공유산이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다.

〈표 6-7-23〉 인공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본인의사	84.6	-	100.0	83.2	-	-	-	51.2	-	-	-	-	-	-	53.2	81.5
주위의 권유	15.4	-	-	16.8	-	100.0	-	48.8	-	-	-	-	-	-	46.8	18.5
계	100.0	-	100.0	100.0	-	100.0	-	100.0	-	-	-	-	-	-	100.0	100.0
(N)	(19)	-	(13)	(12)	-	(1)	-	(4)	-	-	-	-	-	-	(4)	(53)
전국추정수	7,445	-	4,890	4,392	-	380	-	1,483	-	-	-	-	-	-	1,588	20,178

주: 비해당 5,410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출산 후 산후조리는 주로 누가 해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친정식구’가 해주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댁식구’가 25.6%,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음’이 21.3%의 순이었다. 이외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가 해주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5~1.6% 수준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68.7%)와 정신지체(39.9%)의 경우 산후조리를 주로 ‘시댁 식구’가 해주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가장 많았고, 안면장애의 경우 산후조리시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음'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43.4%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의 산후조리시 주로 봐 준 사람은 '친정식구'가 가장 많았다.

〈표 6-7-24〉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남편	13.9	-	14.7	19.1	21.7	19.6	-	12.4	-	-	-	100.0	-	-	29.3	15.3
친정식구	31.1	31.3	39.1	23.7	49.1	32.2	100.0	52.3	-	100.0	50.5	-	56.6	-	57.4	33.6
시댁식구	27.8	68.7	20.0	23.3	9.3	39.9	-	9.8	-	-	49.5	-	-	-	13.3	25.6
복지기관	-	-	-	-	-	-	-	-	-	-	-	-	-	-	-	-
산후 조리원	1.6	-	1.9	1.3	-	-	-	7.4	-	-	-	-	-	-	-	1.6
산후 도우미	1.1	-	1.4	4.2	-	-	-	-	-	-	-	-	-	-	-	1.5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 (혼자 했음)	23.5	-	21.3	28.4	19.9	4.3	-	18.1	-	-	-	-	43.4	-	-	21.3
기타	1.1	-	1.5	-	-	3.9	-	-	-	-	-	-	-	-	-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N)	(192)	(9)	(67)	(67)	(10)	(25)	(1)	(16)	-	(2)	(2)	(1)	(2)	-	(7)	(401)
전국추정수	73,933	3,390	26,091	25,696	3,742	9,158	423	6,293	-	698	800	420	622	-	2,583	153,882

주: 비해당 5,061건 및 무응답 4건 제외

출산 후 산후조리가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산후조리를 '별로 못했음'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잘했음(22.3%)', '전혀 못했음(20.0%)', '충분히 했음(17.0%)'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산후조리 정도를 '잘하였다'와 '못했다'로 구분하였을 때, '잘 하였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39.3%, '못하였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60.7%로, 산후조리를 못한 장애인이 전체의 약 2/3 수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간장애, 안면장애의 장애인들이 산후조리를 '잘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발달장애와 간장애의 경우 산후조리를 '잘 하였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100.0%로 가장 많았다. 반면, 그 외 모든 장애유형은 산후조리를 '못하였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많았는데 특히 심장장애의 경우 산후조리를 '못하였다'고 응답한 장애인 100.0%로 가장 많았다.

〈표 6-7-25〉 출산 후 산후조리의 충분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충분히 했음	17.0	9.9	15.3	16.7	9.6	14.6	100.0	23.7	-	-	-	-	56.6	-	43.3	17.0
대체로 잘 했음	21.6	59.7	19.9	21.7	29.3	33.6	-	6.0	-	-	49.5	100.0	-	-	-	22.3
별로 못했음	40.2	30.4	42.1	36.4	61.0	43.8	-	45.8	-	100.0	50.5	-	-	-	41.4	40.7
전혀 못했음	21.2	-	22.7	25.2	-	8.0	-	24.4	-	-	-	-	43.4	-	15.3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N)	(197)	(10)	(68)	(68)	(10)	(27)	(1)	(16)	-	(2)	(2)	(1)	(2)	-	(7)	(411)
전국추정수	75,837	3,883	26,454	26,093	3,742	9,951	423	6,293	-	698	800	420	655	-	2,583	157,832

주: 비해당 5,052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관련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의 53.4%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38.9%)’, ‘별로 필요 안함(6.7%)’, ‘전혀 필요 안함(1.0%)’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은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발달장애인과 호흡기장애인의 ‘필요하다’는 응답은 100.0%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신장장애(14.3%)와 언어장애(12.3%)였다.

〈표 6-7-26〉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51.7	55.7	52.3	51.5	43.7	66.3	28.3	63.9	45.7	53.7	62.9	55.0	60.6	41.4	57.2	53.4
대체로 필요	40.0	33.8	43.6	40.1	44.0	29.3	71.7	32.2	40.0	41.1	37.1	35.6	39.4	50.5	33.9	38.9
별로 필요 안함	7.6	8.0	3.6	7.0	12.3	2.1	-	3.9	11.7	5.2	-	9.4	-	-	8.9	6.7
전혀 필요 안함	0.7	2.5	0.4	1.4	-	2.3	-	-	2.6	-	-	-	-	8.1	-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3)	(263)	(221)	(268)	(16)	(91)	(4)	(98)	(43)	(52)	(19)	(11)	(5)	(12)	(24)	(2,110)
전국추정수	378,121	101,518	85,035	103,237	6,120	34,405	1,496	37,512	15,810	19,817	7,426	4,122	1,739	4,748	9,112	810,218

주: 비해당 3,337건 및 무응답 19건 제외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여성장애인의 61.8%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를

31.7%, ‘별로 필요 안함’ 5.4%, ‘전혀 필요 안함’ 1.1%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전문병원에 대해서 92.5%의 여성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특히,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필요 정도가 100.0%로 가장 많았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24.5%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6-7-2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61.0	64.4	60.2	58.9	65.9	73.1	22.5	69.3	47.3	62.5	78.4	64.8	22.9	57.0	66.5	61.8
대체로 필요	32.4	28.6	34.5	33.4	28.3	20.3	53.1	24.9	47.5	33.8	16.5	35.2	77.1	43.0	29.2	31.7
별로 필요 안함	5.7	4.6	4.9	6.6	5.8	5.4	24.5	4.8	5.2	3.7	5.1	-	-	-	4.3	5.4
전혀 필요 안함	1.0	2.4	0.4	1.1	-	1.2	-	1.1	-	-	-	-	-	-	-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3)	(264)	(219)	(268)	(16)	(91)	(4)	(98)	(43)	(52)	(19)	(11)	(5)	(12)	(24)	(2,109)
전국추정수	378,064	101,903	84,172	103,237	6,120	34,405	1,496	37,512	15,810	19,817	7,426	4,122	1,739	4,748	9,112	809,683

주: 비해당 3,339건 및 무응답 18건 제외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64.5%가 ‘매우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32.9%)’, ‘별로 필요 안함(1.9%)’, ‘전혀 필요 안함(0.7%)’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7.4%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출산비용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특히, 발달장애,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의 경우는 100.0%가 필요하고 응답하였다.

〈표 6-7-28〉 출산비용 지원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64.6	64.6	64.9	58.5	57.3	72.6	47.3	72.2	56.4	61.9	72.5	54.9	44.3	84.4	64.5
대체로 필요	33.2	30.8	33.3	37.8	36.8	25.1	52.7	26.0	43.6	36.5	27.5	45.1	55.7	15.6	32.9
별로 필요 안함	1.7	2.9	1.4	2.6	5.8	1.1	-	1.8	-	1.5	-	-	-	-	1.9
전혀 필요 안함	0.4	1.8	0.4	1.1	-	1.2	-	-	-	-	-	-	-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3)	(264)	(219)	(269)	(16)	(91)	(4)	(98)	(43)	(52)	(19)	(11)	(5)	(12)	(2,110)
전국추정수	378,086	101,903	84,254	103,703	6,120	34,405	1,496	37,512	15,810	19,817	7,426	4,122	1,739	4,748	810,253

주: 비해당 3,340건 및 무응답 16건 제외

여성장애인의 산후조리서비스 필요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61.2%가 ‘매우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35.4%), ‘별로 필요 안함’(2.7%), ‘전혀 필요 안함’(0.8%)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6.6%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산후조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발달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의 여성장애인들은 100.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산후조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는 간장애의 9.7%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표 6-7-29〉 산후조리 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62.2	59.9	61.6	59.8	56.8	62.9	75.5	65.6	56.4	52.0	56.7	45.3	44.3	65.1	61.2
대체로 필요	35.1	33.3	36.2	36.5	37.4	31.9	24.5	31.7	43.6	46.5	43.3	44.9	55.7	26.1	35.4
별로 필요 안함	2.2	5.0	1.3	2.6	5.8	3.9	-	2.7	-	1.5	-	9.7	-	8.7	2.7
전혀 필요 안함	0.5	1.8	0.9	1.1	-	1.2	-	-	-	-	-	-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3)	(264)	(221)	(269)	(16)	(91)	(4)	(98)	(43)	(52)	(19)	(11)	(5)	(12)	(2,112)
전국추정수	378,086	101,903	85,035	103,703	6,120	34,405	1,496	37,512	15,810	19,817	7,426	4,122	1,739	4,748	811,034

주: 비해당 3,338건 및 무응답 16건 제외

여성장애인의 육아용품 대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46.1%가 ‘매우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43.1%), ‘별로

필요안함’(9.5%), ‘전혀 필요안함’(2.1%)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육아용품 대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9.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육아용품 대여가 ‘필요하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는데, 특히 심장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이 94.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육아용품 대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는 발달장애가 28.3%로 가장 많았다.

〈표 6-7-30〉 육아용품 대여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43.6	48.0	51.4	46.8	43.0	53.8	22.5	49.0	47.0	51.6	31.7	45.3	44.3	32.9	46.6	46.1
대체로 필요	44.9	39.8	39.5	43.8	44.3	39.8	49.3	40.3	44.0	42.7	51.8	35.7	39.4	49.8	45.0	43.1
별로 필요 안함	10.	10.4	8.2	7.9	12.7	5.2	28.3	9.6	9.0	5.7	16.5	18.9	16.3	8.5	8.5	9.5
전혀 필요 안함	1.3	1.8	0.9	1.4	-	1.2	-	1.1	-	-	-	-	-	8.7	-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2)	(264)	(220)	(268)	(16)	(91)	(4)	(98)	(43)	(54)	(19)	(11)	(5)	(12)	(24)	(2,109)
전국추정수	377,724	101,903	84,652	103,332	6,120	34,405	1,496	37,512	15,810	19,817	7,426	4,122	1,739	4,748	9,112	809,918

주: 비해당 3,339건 및 무응답 18건 제외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60.5%가 ‘매우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35.7%)’, ‘별로 필요 안함(3.2%)’, ‘전혀 필요 안함(0.5%)’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6.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는데, 특히 발달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여성장애인들은 자녀양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100.0%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반면,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는 간장애가 9.4%로 가장 많았다.

〈표 6-7-31〉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59.0	61.3	61.8	59.2	56.9	68.3	71.7	72.4	56.5	55.8	57.0	45.3	44.3	56.7	68.4	60.5
대체로 필요	37.4	31.9	35.2	36.9	37.3	29.4	28.3	27.6	38.7	44.2	37.6	45.3	55.7	43.3	23.2	35.7
별로 필요 안함	3.2	5.3	3.0	3.2	5.8	1.1	-	-	4.8	-	5.3	9.4	-	-	8.3	3.2
전혀 필요 안함	0.4	1.4	-	0.7	-	1.2	-	-	-	-	-	-	-	-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1)	(264)	(221)	(269)	(16)	(91)	(4)	(98)	(43)	(52)	(19)	(11)	(5)	(12)	(24)	(2,110)
전국추정수	377,359	101,903	85,035	103,703	6,120	34,405	1,496	37,512	15,810	19,817	7,426	4,122	1,739	4,748	9,112	810,307

주: 비해당 3,339건 및 무응답 17건 제외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54.9%가 ‘매우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36.2%)’, ‘별로 필요 안함(7.9%)’, ‘전혀 필요 안함(1.0%)’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가사도우미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1.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가사도우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는데, 특히 호흡기장애의 경우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94.0%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반면, 가사도우미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는 발달장애가 28.3%로 가장 많았다.

〈표 6-7-32〉 가사도우미 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54.6	60.2	55.2	52.1	56.4	60.3	71.7	54.9	56.8	50.6	50.9	45.3	-	57.1	34.2	54.9
대체로 필요	36.5	30.0	37.6	40.0	31.8	33.1	-	32.0	35.7	40.4	43.1	45.1	78.7	34.2	49.2	36.2
별로 필요 안함	8.2	7.2	5.9	7.5	5.8	4.3	28.3	13.1	7.5	9.0	6.1	9.6	21.3	-	16.6	7.9
전혀 필요 안함	0.8	2.6	1.3	0.4	5.9	2.2	-	-	-	-	-	-	-	8.7	-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2)	(264)	(221)	(269)	(16)	(91)	(4)	(98)	(43)	(52)	(19)	(11)	(5)	(12)	(24)	(2,111)
전국추정수	377,724	101,903	85,035	103,703	6,120	34,405	1,496	37,512	15,810	19,817	7,426	4,122	1,739	4,748	9,112	810,672

주: 비해당 3,338건 및 무응답 17건 제외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이 4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42.7%), ‘별로 필요 안

함(8.4%)', '전혀 필요 안함(1.2%)'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건강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0.4%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건강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는데, 특히 발달장애와 안면장애는 '필요하다'고 100.0%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반면,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는 언어장애(23.0%)로 가장 많았다.

〈표 6-7-33〉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46.5	51.4	47.3	47.2	39.3	55.0	47.3	51.3	47.9	40.9	46.3	55.1	21.3	52.0	43.9	47.7
대체로 필요	48.3	37.9	45.9	41.7	37.7	39.8	52.7	36.8	42.2	49.3	42.2	26.0	78.7	39.3	44.3	42.7
별로 필요 안함	8.1	8.6	5.6	10.4	17.1	4.0	-	12.0	9.9	9.8	11.5	18.9	-	8.7	11.8	8.4
전혀 필요 안함	1.2	2.1	1.3	0.7	5.9	1.2	-	-	-	-	-	-	-	-	-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1)	(263)	(221)	(267)	(16)	(91)	(4)	(98)	(43)	(52)	(19)	(11)	(5)	(12)	(24)	(2,107)
전국추정수	377,324	101,521	85,035	102,866	6,120	34,405	1,496	37,512	15,810	19,817	7,426	4,122	1,739	4,748	9,112	809,053

주: 비해당 3,339건 및 무응답 20건 제외

여성장애인의 기타서비스(양육비지원, 산후관리, 병원에서 장애인 우선 진료, 결혼알선, 여성전용 교통편의 서비스, 여성장애인 상담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장애인의 45.4%가 '매우 필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대체로 필요(38.8%)', '전혀 필요안함(15.8%)' 순이었고, '별로 필요안함'을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들은 기타서비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4.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여성장애인들이 기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는데, 특히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장루·요루장애는 기타서비스가 '필요하다'에 100.0%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반면, 기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는 뇌병변장애가 40.5%로 가장 많았다.

〈표 6-7-34〉 기타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52.4	18.2	46.4	33.5	-	-	-	100.0	-	-	-	-	-	-	-	45.4
대체로 필요	36.6	41.3	19.5	66.5	-	-	100.0	-	-	-	-	-	-	100.0	-	38.8
별로 필요 안함	-	-	-	-	-	-	-	-	-	-	-	-	-	-	-	-
전혀 필요 안함	11.0	40.5	34.0	-	-	-	-	-	-	-	-	-	-	-	-	15.8
계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	-	-	-	-	100.0	-	100.0
(N)	(19)	(5)	(5)	(3)	-	-	(1)	(2)	-	-	-	-	-	(1)	-	(36)
전국추정수	7,291	1,908	1,818	1,178	-	-	421	881	-	-	-	-	-	356	-	13,853

주: 비해당 5,416건 및 무응답 14건 제외

제 8 절 여가 및 사회활동

1. 외출

장애인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을 알아보기 위해 혼자서 외출 가능여부를 알아보았다. 혼자서 집밖으로의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84.0%였고,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6.0%로 많은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 별로 보면,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체장애 등은 독립적인 외출이 가능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호의 필요도와 관련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6-8-1〉 혼자 외출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2.7	50.4	90.0	92.5	92.0	64.2	48.3	78.2	86.4	88.0	74.9	74.4	100.0	96.8	93.3	84.0
아니오	7.3	49.6	10.0	7.5	8.0	35.8	51.7	21.8	13.6	12.0	25.1	25.6	-	3.2	6.7	16.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5)
전국 추정수	996,346	266,070	219,511	227,849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729

주: 무응답 1건 제외

장애인들의 지난 1년간 평균 몇 번 정도 외출하는지 그 빈도를 알아본 결과, 외출을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65.2%로 가장 많고, 1주일에 1~3회가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 1~3회가 7.6%, 년 10회 이내 3.9%, 전혀 외출하지 않음 2.8%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안면장애, 발달장애, 정신지체 등은 비교적 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뇌병변장애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외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6-8-2〉 외출 빈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거의 매일	71.4	40.0	70.0	69.4	72.4	75.2	90.3	49.2	51.3	53.4	43.2	43.6	91.5	69.6	40.4	65.2
주 1~3회	19.9	22.8	18.6	20.2	15.8	13.3	3.5	19.5	43.1	36.7	26.1	28.0	8.5	15.3	39.8	20.6
월 1~3회	5.2	14.0	7.2	6.3	5.8	5.8	1.7	18.1	5.5	8.9	18.1	16.8	-	15.1	10.5	7.6
년 10회 이내	2.3	11.1	3.8	2.7	2.1	4.4	4.6	5.6	-	1.0	8.2	5.7	-	-	7.4	3.9
전혀 외출 않음	1.2	12.1	0.3	1.4	4.0	1.4	-	7.6	-	-	4.3	6.0	-	-	2.0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93

주: 무응답 2건 제외

재가장애인들의 외출의 주된 목적을 알아보면, <표 6-8-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통근·통학을 위한 외출이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산책 22.9%, 병원진료 13.6%, 친구나 이웃 방문 1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재가장애인들의 외출 활동 분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8-3〉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통근·통학	42.8	10.5	37.7	33.1	43.9	47.3	82.5	15.3	17.0	13.4	20.4	18.5	49.0	28.6	23.3	35.4
병원 진료	11.7	29.6	9.8	6.7	10.3	4.2	1.4	16.6	44.8	15.7	23.1	26.5	-	17.6	12.9	13.6
쇼핑(물건사기)	4.6	3.3	5.4	6.3	10.3	3.9	1.6	7.0	2.6	9.6	1.3	3.1	17.6	5.1	13.6	4.9
산책	18.3	36.3	19.8	24.8	23.6	24.7	3.3	35.7	20.8	39.9	36.1	28.0	17.9	24.3	17.3	22.9
친척,친구, 이웃방문	13.3	11.4	15.0	18.1	11.8	8.0	4.5	11.4	7.8	12.1	8.1	14.6	-	19.7	13.8	13.2
여행	0.0	0.2	0.4	0.5	-	-	-	0.7	-	-	-	-	-	-	-	0.2
지역시설 이용/ 행사참여	4.6	3.8	5.3	6.6	-	6.3	3.3	6.5	4.5	4.8	4.1	2.8	-	2.4	8.4	4.9
일자리 구하기	2.0	0.3	2.2	1.2	-	0.4	-	-	-	1.0	-	-	9.0	-	2.8	1.4
기타	2.7	4.8	4.4	2.7	-	5.2	3.3	6.9	2.4	3.6	6.7	6.4	6.5	2.3	7.9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1)	(608)	(567)	(584)	(49)	(286)	(59)	(184)	(106)	(108)	(74)	(33)	(12)	(40)	(37)	(5,308)
전국추정수	983,665	233,772	218,834	224,251	19,043	109,424	23,259	70,953	40,286	41,684	28,652	12,596	4,369	15,466	14,271	2,040,525

주: 비해당 156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전혀 외출하지 않고 있는 재가장애인들의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79.5%가 심한 장애를 이유로 들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와 정신지체의 경우,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각각 100.0%, 24.1%로 많이 나타나 장애특성을 반영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표 6-8-4〉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주된 이유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81.1	89.3	-	65.7	-	75.9	-	42.3	-	-	100.0	100.0	-	-	100.0	79.5
외출도움 도우미가 없어서	6.4	2.4	100.0	-	-	24.1	-	12.8	-	-	-	-	-	-	-	5.7
시간이 없어서	-	-	-	-	-	-	-	-	-	-	-	-	-	-	-	-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	2.4	-	34.3	49.4	-	-	25.1	-	-	-	-	-	-	-	6.4
기타	12.5	5.8	-	-	50.6	-	-	19.8	-	-	-	-	-	-	-	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100.0	-	-	100.0	100.0
(N)	(32)	(83)	(2)	(9)	(2)	(4)	-	(16)	-	-	(3)	(2)	-	-	(1)	(154)
전국추정수	12,282	32,298	717	3,262	784	1,513	-	5,832	-	-	1,301	801	-	-	284	59,074

주: 비해당(외출하는 경우) 5,310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장애인들은 집밖 활동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인보다도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애인들이 집밖 활동시 불편 정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불편하다’ 24.8%, ‘약간 불편하다’가 30.2%로 절반 정도의 장애인이 집밖 활동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주로 뇌병변장애와 호흡기장애가 외출시 가장 불편하였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등은 비교적 외출시 덜 불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8-5〉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불편	20.0	53.7	22.3	15.1	9.9	27.3	34.7	20.7	26.0	24.8	48.6	26.4	21.7	25.1	22.3	24.8
약간 불편	31.2	29.7	30.3	27.8	27.1	30.1	34.0	23.9	22.6	36.7	24.5	35.7	44.8	29.4	37.5	30.2
불편하지 않은 편	33.4	14.8	29.8	43.2	49.0	30.1	22.6	31.1	38.2	31.7	24.3	25.3	26.7	37.6	27.5	31.6
전혀 불편하지 않음	15.4	1.9	17.6	13.9	14.0	12.6	8.7	24.3	13.2	6.7	2.6	12.6	6.8	7.9	12.8	1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0)	(608)	(567)	(583)	(49)	(286)	(59)	(182)	(106)	(108)	(74)	(33)	(12)	(40)	(37)	(5,304)
전국추정수	983,269	233,772	218,834	223,904	19,043	109,424	23,259	70,340	40,286	41,684	28,652	12,596	4,369	15,466	14,271	2,039,169

주: 비해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156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재가장애인의 집밖 활동시 불편한 이유를 알아보면,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 35.6%로 가장 많아 장애인의 집밖 활동을 위해서는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7.9%,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3.9%도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란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정신지체(62.5%), 언어장애(47.8%), 발달장애(47.6%)의 경우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많았고, 안면장애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00.0%)’ 집밖 활동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6-8-6〉 집박 활동시 불편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관련 편의 시설부족	46.2	36.4	33.6	19.4	10.1	10.0	11.5	7.3	27.1	30.9	43.4	25.6	-	25.6	4.7	35.6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15.1	37.5	32.6	38.9	47.8	62.5	47.6	43.7	33.8	25.6	20.2	25.7	-	6.0	40.7	27.9
주위 사람들의 시선때문에	15.7	9.7	8.8	9.9	31.7	21.9	35.8	28.3	1.5	2.9	3.7	4.1	100.0	22.9	12.6	13.9
기타	23.0	16.4	24.9	31.8	10.5	5.6	5.0	20.7	37.0	40.6	32.6	44.5	-	45.5	42.0	2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11)	(529)	(297)	(248)	(19)	(161)	(41)	(84)	(52)	(67)	(55)	(23)	(8)	(22)	(22)	(2,939)
전국추정수	504,631	203,026	114,817	96,443	7,447	62,774	15,984	32,498	19,580	25,664	21,347	8,622	2,905	8,424	8,531	1,132,693

주: 비해당 2,520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2. 교통수단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30.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는 일반버스 26.9%, 도보 19.1%, 일반택시나 지하철·전철 등의 순이었다. 이는 2000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일반버스의 이용이 줄고 대신 승용차가 다소 증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통수단 외에 장애인콜택시, 복지관버스, 셔틀형복지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 지체장애, 신장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다른 장애의 경우 일반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8-7〉 주요 교통수단

(단위: %, 명)

[illegible]

〈표 6-8-7〉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전동휠체어	0.6	0.6	-	-	-	-	-	-	-	-	-	-	-	-	-	0.3
전동스쿠터	0.4	0.6	-	0.2	-	-	-	-	-	-	-	-	-	-	-	0.3
도보	15.3	19.9	21.2	25.4	24.7	31.1	14.6	27.5	12.0	21.2	19.9	5.9	27.1	27.2	18.3	19.1
기타	5.1	5.4	5.0	5.5	7.4	4.3	11.6	2.1	3.6	4.5	4.1	8.8	-	6.6	2.6	5.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56)	(608)	(566)	(584)	(49)	(286)	(59)	(183)	(106)	(108)	(74)	(33)	(12)	(40)	(37)	(5,301)
전국추정수	984,751	243,517	218,864	224,593	19,440	109,779	23,259	72,189	40,286	41,684	29,037	13,397	4,369	15,466	14,271	2,054,902

주: 비해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156건 및 9건 제외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는 <표 6-8-8>과 같이 44.8%의 장애인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장애유형별로는 장애특성에 따라서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가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발달장애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었다.

〈표 6-8-8〉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어려움	15.7	41.4	13.7	8.5	8.1	19.9	14.3	6.4	15.7	10.6	30.3	28.2	18.0	7.3	14.2	17.6
어려운 편	28.2	33.2	28.2	23.5	23.8	17.3	19.6	13.3	25.7	45.0	25.5	14.1	15.2	33.2	19.5	27.2
어려움 없는 편	35.2	19.8	34.3	46.0	43.7	43.5	44.7	48.5	40.9	31.8	34.3	28.2	26.3	43.0	47.7	35.7
전혀 어려움 없음	20.9	5.7	23.8	22.0	24.3	19.4	21.4	31.8	17.7	12.7	10.2	29.6	40.5	16.4	18.6	1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1)	(607)	(567)	(584)	(49)	(285)	(59)	(182)	(106)	(108)	(74)	(33)	(12)	(40)	(37)	(5,304)
전국추정수	986,679	243,120	219,216	224,593	19,440	109,422	23,259	71,853	40,286	41,684	29,037	13,397	4,369	15,466	14,271	2,056,092

주: 비해당(전혀 외출하지 않음) 156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가 58.9%로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의 경우 버스나 택시 이용시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안면장애인들에 대한 승차거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이 20.6%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장애특성에 따라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가 가장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9〉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62.2	60.5	53.3	65.3	71.8	45.0	24.3	44.1	57.1	49.0	46.2	61.8	80.4	52.0	23.3	58.9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24.3	16.4	18.3	16.7	22.1	6.3	3.4	12.0	19.5	33.3	33.4	15.1	19.6	24.7	17.5	20.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	7.4	13.6	10.0	6.8	6.1	12.5	27.2	2.6	11.6	12.7	12.9	7.5	-	6.1	8.3	9.4
장애인자가용보급· 면허증 확보어려워	0.7	0.5	-	-	-	2.0	-	2.7	-	-	-	-	-	-	-	0.6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0.9	1.3	-	-	-	2.0	-	-	-	-	-	-	-	-	-	0.8
기타	4.5	7.7	18.4	11.1	-	32.1	45.1	38.7	11.8	5.0	7.5	15.6	-	17.1	50.8	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19)	(455)	(239)	(186)	(15)	(104)	(21)	(35)	(44)	(60)	(40)	(13)	(4)	(17)	(12)	(2,364)
전국추정수	429,129	174,288	91,757	71,611	5,806	40,306	7,884	13,772	16,682	23,144	15,730	4,859	1,452	6,265	4,805	907,490

주: 비례당 3,090건 및 무응답 12건 제외

3. 주택개조 필요성

재가장애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생활하기에 얼마나 편리한지 알아본 결과, <표 6-8-10>과 같이 74.3%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의 구조가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25.7%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6-8-10〉 현재 집구조의 생활편리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편리하다	9.9	7.6	13.3	11.6	17.1	12.3	14.2	10.7	8.6	6.3	9.2	21.8	9.5	8.7	-	10.3
대체로 편리하다	63.6	53.5	66.3	70.1	71.4	69.2	66.0	70.6	73.1	61.7	60.3	56.0	64.3	62.6	70.6	64.0
약간 불편하다	18.9	25.5	13.8	13.7	5.8	12.6	15.4	11.7	13.1	20.2	20.5	14.2	26.2	17.3	26.9	17.9
매우 불편하다	7.6	13.5	6.7	4.6	5.7	5.9	4.3	7.1	5.1	11.8	10.0	7.9	-	11.5	2.5	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93

주: 무응답 2건 제외

재가장애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개조할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개조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8.3%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장애의 특성상 이동에 불편이 있는 뇌병변장애의 개조 의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6-8-11〉 주택개조 의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반드시 개조 원함	5.0	8.2	4.1	2.4	-	2.9	4.3	3.5	4.6	2.6	5.3	5.4	-	12.5	6.3	4.8
가급적 개조 원함	15.2	24.7	8.2	7.6	1.8	6.6	6.1	3.8	7.1	16.5	15.0	8.9	-	9.4	15.9	13.5
별로 개조원치않음	48.7	43.7	54.3	55.4	50.9	57.1	54.2	55.3	56.5	53.8	48.3	53.8	50.6	49.8	48.9	50.4
전혀 개조원치않음	31.2	23.5	33.4	34.6	47.3	33.4	35.4	37.5	31.8	27.1	31.5	31.9	49.4	28.3	28.8	3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3)	(51)	(290)	(59)	(200)	(106)	(108)	(77)	(35)	(12)	(40)	(38)	(5,463)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6,844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057

주: 무응답 3건 제외

현재 살고 있는 집안 구조를 개조할 의사가 있는 재가장애인 중에 개조를 희망하는 장소를 알아본 결과, 1순위로 선택한 것은 변기로 21.6%가 희망하였다. 다음으로는 문턱낮추기를 18.4%의 장애인이 희망하였고, 이외에도 욕조(12.8%), 부엌(12.4%) 등이 중요한 희망 사항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변기의 경우 간장애가 41.2%가 개조를 희망하였고, 문턱낮추기는 뇌병변장애가 27.7%, 욕조는 장루·요루장애가 36.1%, 부엌은 시각장애가 24.2% 개조를 희망하였다.

〈표 6-8-12〉 주택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 - 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부엌	15.2	3.8	24.2	6.6	-	20.6	15.2	11.4	14.9	3.6	6.7	18.7	-	10.7	13.9	12.4
변기	24.3	18.3	15.2	13.6	-	27.8	11.0	40.8	8.7	18.8	25.2	41.2	-	22.4	10.6	21.6
욕조	10.3	19.4	11.0	5.2	-	15.2	29.9	-	24.4	6.0	18.6	-	-	36.1	23.6	12.8
문턱 낮추기	17.1	27.7	17.1	10.6	-	17.9	-	-	8.8	13.3	15.1	-	-	7.9	11.0	18.4
방문 고치기	1.7	0.8	-	-	-	-	-	-	-	-	4.9	-	-	-	-	1.2
냉·난방	5.3	3.3	1.4	9.0	100.0	7.1	12.3	12.7	-	12.4	-	18.9	-	-	12.5	5.1
채광	1.5	0.9	5.4	-	-	4.6	-	6.8	21.9	6.4	6.3	-	-	-	-	2.1
아파트출입구(계단)	6.9	6.3	5.9	1.6	-	-	-	-	-	14.4	5.9	-	-	-	-	6.0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	0.4	-	46.8	-	-	-	-	-	-	-	-	-	-	-	2.8
현관(계단)	13.0	12.7	9.7	3.4	-	-	13.8	-	21.3	15.4	5.1	-	-	11.6	-	11.4
기타	4.7	6.3	9.9	3.2	-	6.9	17.7	28.3	-	9.8	12.3	21.3	-	11.3	28.4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N)	(522)	(230)	(71)	(57)	(1)	(28)	(7)	(15)	(13)	(21)	(16)	(5)	-	(9)	(8)	(1,003)
전국추정수	199,957	87,359	27,003	21,747	363	10,524	2,427	5,589	4,712	7,983	6,076	1,912	-	3,396	3,238	382,286

주: 비혜당 4,460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2순위로 희망하는 집안 내 개조 장소로는 욕조가 19.5%로 많았다. 또한 문턱낮추기(18.6%), 변기(16.0%), 현관·계단(12.5%) 등이 중요한 2순위 개조 희망사항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욕조의 경우 간장애가 62.8%가 개조를 희망하였고, 문턱낮추기는 간장애 37.2%, 변기는 간질장애가 48.3%, 현관·계단은 심장장애가 22.4% 개조를 희망하였다.

〈표 6-8-13〉 주택개조시 희망 개조 장소 - 2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부엌	6.6	4.6	2.3	3.9	100.0	4.8	-	13.7	-	9.4	-	-	-	17.9	-	5.7
변기	15.2	13.5	28.1	11.0	-	18.8	-	24.8	12.9	20.2	12.1	-	-	30.2	48.3	16.0
욕조	22.5	15.0	13.7	15.3	-	19.8	18.4	32.6	13.1	7.0	23.7	62.8	-	16.8	36.9	19.5
문턱 낮추기	19.2	24.0	14.8	3.5	-	4.6	20.7	-	23.3	8.1	11.9	37.2	-	35.2	-	18.6
방문 고치기	2.8	5.1	5.9	3.5	-	9.4	16.4	-	-	-	-	-	-	-	-	3.7
냉·난방	6.7	4.9	10.7	18.6	-	16.6	21.1	28.9	14.4	10.1	11.3	-	-	-	-	7.6
채광	2.4	1.6	4.8	3.9	-	10.4	-	-	-	7.7	-	-	-	-	-	2.6
아파트출입구(계단)	8.6	8.3	5.5	3.4	-	-	-	-	12.2	6.7	-	-	-	-	14.8	7.5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경광등)	0.3	0.6	2.1	20.6	-	-	-	-	-	-	-	-	-	-	-	1.3
현관(계단)	11.6	16.0	12.1	12.3	-	10.5	-	-	13.2	22.4	10.4	-	-	-	-	12.5
기타	4.1	6.4	-	3.9	-	5.0	23.5	-	10.9	8.5	30.7	-	-	-	-	5.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N)	(343)	(176)	(48)	(26)	(1)	(20)	(5)	(7)	(8)	(13)	(9)	(3)	-	(6)	(6)	(671)
전국추정수	131,426	66,873	18,258	9,793	363	7,552	1,627	2,545	2,752	5,050	3,379	1,144	-	2,149	2,318	255,229

주: 비해당 4,793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4. 종교현황

장애인들의 종교현황에 있어서는 재가장애인 중의 42.9%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불교가 24.3%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는 23.3%, 천주교 8.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의 종교분포(무교 46.1%, 불교 47.0%, 개신교 36.8%, 천주교 13.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통계청, 2004).

장애유형별로는 호흡기장애의 28.5%가 불교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발달장애는 개신교를 39.4%, 안면장애는 천주교를 27.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표 6-8-14〉 종교 분포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없음	44.0	37.9	41.5	43.4	52.5	48.8	37.1	45.6	39.4	41.8	34.5	38.1	42.3	48.4	40.2	42.9
불교	25.7	25.7	26.5	25.8	18.4	12.5	15.0	15.8	21.0	21.2	28.5	24.3	-	27.5	14.5	24.3
개신교	21.0	24.7	22.4	24.1	23.3	31.0	39.4	28.5	27.0	23.2	21.3	34.6	30.6	15.6	37.7	23.3
천주교	7.9	10.3	8.1	5.1	5.8	7.0	6.8	10.1	12.7	12.7	11.6	3.1	27.1	8.5	4.7	8.2
유교	0.6	-	0.5	1.3	-	-	-	-	-	1.1	4.1	-	-	-	-	0.5
기타	0.8	1.3	1.1	0.4	-	0.7	1.7	-	-	-	-	-	-	-	2.9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2)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6)	(35)	(12)	(40)	(38)	(5,461)
전국추정수	995,603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570	13,397	4,369	15,466	14,555	2,099,267

주: 무응답 5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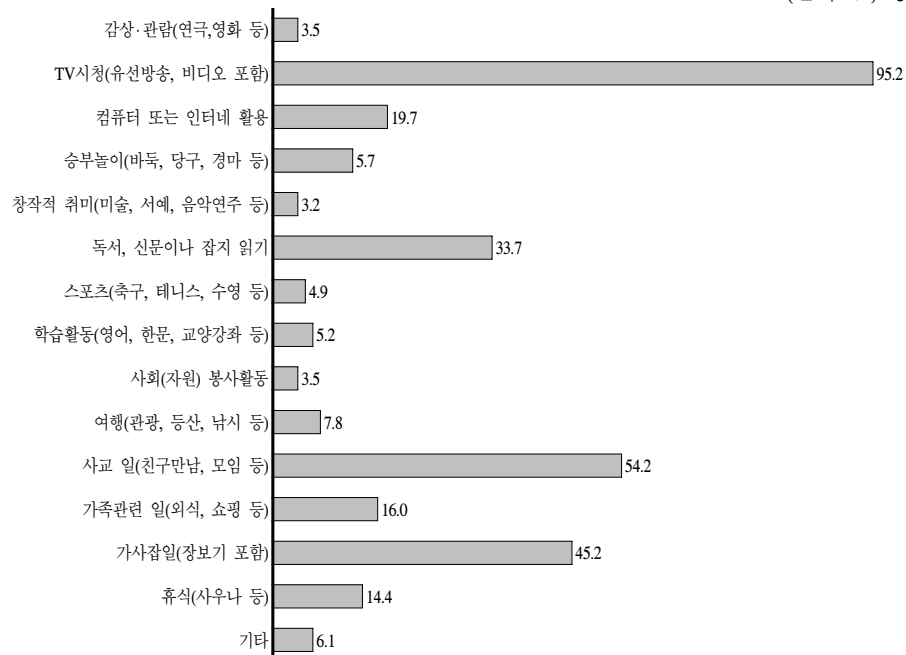
5. 문화 및 여가활동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 유선방송이나 비디오를 포함한 TV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화 및 여가활동 내용은 <표 6-8-15>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95.2%가 TV시청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밖의 문화 및 여가활동으로는 사교 일(친구만남, 모임 등)에 54.2%, 가사잡일 45.2%, 독서, 신문이나 잡지 읽기 33.7% 등이었고, 감상·관람(연극, 영화 등),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음악연주 등), 사회자원봉사활동, 스포츠, 학습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화 및 여가활동을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보면, 일반인도 TV시청이 26.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휴식·수면 16.1%, 가사일 12.1%, 사교관련 11.4%, 가족과 함께 9.3%, 컴퓨터 게임·PC통신 6.9%, 여행 5.2%, 문화예술관람 2.3%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과 일반인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통계청, 2004).

〈표 6-8-15〉 문화 및 여가활동 항목

(단위: %, 명)



주: 중복응답비율임.

장애인들의 평소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절반 이상인 57.4%의 장애인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해보면, 일반인도 불만족이 72.7%로 가장 많았고, 만족은 27.3%에 불과하여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 본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4). 그리고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로 장애인의 연령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8-16〉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2.3	0.7	2.7	3.0	2.2	1.0	1.7	2.9	2.7	1.9	-	-	-	3.3	2.5	2.1
약간 만족	9.9	5.5	10.8	11.9	8.7	10.9	22.7	12.5	9.1	8.0	7.9	9.9	6.5	17.2	13.3	9.9
보통	31.2	20.7	32.8	35.5	37.5	36.7	30.0	31.1	25.1	29.8	24.0	24.7	31.3	37.4	29.0	30.6
약간 불만	36.2	33.4	30.8	31.1	23.9	30.3	28.8	21.5	36.4	33.6	28.6	23.0	26.4	34.5	29.6	33.4
매우 불만	20.5	39.7	22.9	18.6	27.8	21.1	16.8	31.9	26.6	26.7	39.5	42.4	35.9	7.6	25.5	2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0)	(687)	(568)	(591)	(50)	(285)	(59)	(195)	(106)	(108)	(77)	(35)	(12)	(40)	(38)	(5,441)
전국추정수	994,819	264,529	219,157	226,756	19,432	109,084	23,259	75,136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1,882

주: 무응답 25건 제외

문화 및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에 대해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이 39.5%였다. 이는 일반인의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경제적 부담 52.4%, 시간부족 25.0%, 건강·체력 부족 6.5%)와 비슷한 결과(통계청, 2004)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이 일반인 보다 문화 및 여가활동시 건강 및 체력이 부족으로 여가활동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안면장애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의 장애유형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장애유형 중에서는 장애특성상 이동에 불편에 있는 뇌병변장애가 70.4%로 가장 많았다.

〈표 6-8-17〉 문화 및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경제적 부담	51.1	21.9	50.8	39.3	47.0	37.3	33.4	34.0	39.0	32.7	30.5	29.3	86.0	30.7	55.7	42.7
시간의 부족	9.0	1.0	9.4	9.1	15.6	2.3	11.4	1.9	8.8	2.8	2.1	-	-	5.6	-	6.9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의 불편	0.9	0.4	2.9	0.9	-	4.0	-	-	1.6	3.0	-	-	-	-	-	1.1
여가시설의 부족	1.2	2.2	2.0	2.1	-	2.0	2.5	1.7	-	3.6	-	-	-	6.8	4.9	1.6
여가시설내 편의시설의 부족	1.1	0.8	1.0	1.6	-	3.7	-	1.4	-	-	-	-	-	6.6	-	1.2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의 부족	0.6	0.5	2.6	1.0	-	2.1	6.6	-	1.4	1.5	-	9.8	-	-	-	1.0

〈표 6-8-17〉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적당한 취미의 부재	4.1	1.6	5.4	10.5	8.1	16.5	16.2	15.2	1.5	3.1	3.9	-	14.0	6.3	-	5.4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	31.8	70.4	24.2	35.4	29.3	32.0	22.8	43.9	47.7	53.3	63.5	60.9	-	43.9	39.4	39.5
기타	0.2	1.2	1.7	-	-	-	7.2	1.9	-	-	-	-	-	-	-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466)	(504)	(306)	(291)	(26)	(147)	(27)	(104)	(68)	(65)	(52)	(23)	(7)	(16)	(21)	(3,123)
전국추정수	562,478	193,359	117,331	112,129	10,040	56,023	10,607	40,174	25,391	25,156	20,400	8,762	2,719	6,098	8,024	1,198,691

주: 비해당 2,338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재가장애인들에게 지난 1년간 관광목적의 국내여행 경험여부를 알아본 결과, 73.2%의 장애인이 국내여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의 통계와 비교해보면, 일반인의 경우 지난 1년간(2003. 6. 20~2004. 6. 19)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여행을 한 경우가 58.4%라고 응답하여 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4).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국내여행을 해보지 못한 비율이 높았고, 반면 발달장애는 국내여행 경험 비율이 높았다.

〈표 6-8-18〉 지난 1년 동안 관광목적의 국내여행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있다	29.7	15.3	29.4	28.5	28.2	33.9	52.1	10.5	24.5	22.7	16.6	20.9	44.7	28.7	2.8	26.8
없다	70.3	84.7	70.6	71.5	71.8	66.1	47.9	89.5	75.5	77.3	83.4	79.1	55.3	71.3	97.2	73.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3)	(691)	(569)	(593)	(51)	(290)	(59)	(200)	(106)	(108)	(77)	(35)	(12)	(40)	(38)	(5,462)
전국추정수	995,978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6,80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9,645

주: 무응답 4건 제외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이 있는 경우 여행의 형태를 알아본 결과, <표 6-8-19>와 같이 숙박형태로 여행한 경우가 57.8%로 나타났고, 당일형태로 여행한 경우가 42.4%로 숙박형태가 약간 높았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일반인은 전체의 40.4%가 숙박으로 하고 있고, 41.7%가 당일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의 경우 당일여행보다 숙박여행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여행을 하는 데 있어 관광지의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이동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보다는 1박 이상의 숙박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6-8-19〉 국내여행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숙박여행	58.2	54.9	55.2	53.6	57.8	63.3	78.5	66.1	63.0	41.3	52.8	71.7	81.0	38.0	100.0	57.8
당일여행	41.8	45.1	44.8	46.4	42.2	36.7	21.5	33.9	37.0	58.7	47.2	28.3	19.0	62.0	-	4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51)	(101)	(164)	(166)	(4)	(97)	(31)	(21)	(26)	(25)	(13)	(7)	(5)	(11)	(1)	(1,433)
전국추정수	289,985	39,995	63,542	64,109	5,594	37,573	12,120	8,039	9,854	9,446	4,964	2,795	1,952	4,438	405	554,811

주: 비해당 4,012건 및 무응답 21건 제외

지난 해 4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시 장애인들의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6.5%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의 선거 투표율(60.6%)보다 높은 비율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도 많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

투표에 참여했던 장애유형을 보면, 언어장애가 8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장루·요루장애 87.7%, 심장장애 86.2%, 청각장애 81.0%의 순이었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장애유형으로는 발달장애가 6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지체 48.6%, 정신장애 45.7%, 뇌병변장애 42.3%의 순이었다.

〈표 6-8-20〉 지난 해 4월 국회의원선거 투표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1.7	57.7	81.0	83.7	88.3	51.4	33.6	54.3	80.0	86.2	77.4	70.2	74.1	87.7	72.4	76.5
아니오	18.3	42.3	19.0	16.3	11.7	48.6	66.4	45.7	20.0	13.8	22.6	29.8	25.9	12.3	27.6	2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2)	(662)	(552)	(578)	(43)	(194)	(9)	(196)	(105)	(102)	(77)	(34)	(11)	(40)	(32)	(5,197)
전국추정수	983,740	254,777	212,877	221,656	16,717	73,333	3,373	75,407	39,902	39,375	29,953	13,069	3,987	15,466	12,159	1,995,791

주: 비해당(투표권 없음) 255건 및 무응답 14건 제외

지난 해 4월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때, 투표하지 않은 재가장애인 중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47.9%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본인이 원치 않아

서라고 응답한 경우도 32.5%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이동에 불편에 있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표 6-8-21〉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교통불편	2.4	2.3	0.9	4.0	-	1.0	-	-	-	-	-	-	-	-	-	1.9
편의시설 부족	0.4	0.4	-	1.0	-	-	-	-	-	-	-	-	-	-	-	0.3
몸이 불편	36.9	82.7	30.4	27.3	39.6	37.7	48.7	42.9	66.6	58.9	73.2	58.4	-	39.4	20.4	47.9
도우미가 없어서	0.4	0.7	4.2	2.2	-	9.4	14.8	2.1	-	-	-	-	-	-	-	1.8
정보 부족	3.3	1.4	4.4	6.3	20.4	6.2	-	10.0	-	-	-	11.7	-	-	-	3.9
시간이 없어서	11.9	0.4	16.8	5.3	-	2.3	-	-	4.3	6.4	-	-	36.9	-	-	6.9
본인이 원치 않음	42.3	10.2	38.7	40.9	19.7	27.6	-	41.7	23.6	28.1	26.8	19.6	63.1	60.6	67.5	32.5
주위의 시선	0.4	0.3	0.9	1.8	-	4.4	-	1.1	-	-	-	-	-	-	-	0.9
기타	1.9	1.8	3.6	11.2	20.2	11.4	36.5	2.2	5.5	6.6	-	10.3	-	-	12.2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57)	(277)	(103)	(93)	(5)	(92)	(6)	(90)	(19)	(14)	(16)	(10)	(3)	(5)	(9)	(1,199)
전국추정수	178,362	106,966	40,144	36,192	1,962	34,918	2,241	33,974	7,604	5,423	6,368	3,900	1,034	1,897	3,355	464,340

주: 비해당(투표했음 및 투표권 없음) 4,255건 및 무응답 12건 제외

제 9 절 생활만족도 및 폭력·차별경험

장애인들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결과, ‘건강이 나쁜 편이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4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비교적 건강하다’ 34.5%, ‘매우 건강이 나쁘다’ 19.9%, ‘매우 건강하다’ 2.7%의 순이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2.8%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37.2%)에 비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도 실태조사에서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이 나쁘다’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더 많았던 것(58.4%)과 동일한 결과로, 장애인들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장애 유형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많았는데, 특히 호흡기장애(93.6%), 간장애(90.4%), 심장장애(89.6%), 신장장애(86.7%)의 경우에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발달장애가 9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지체(70.6%), 안면장애(55.7%)였다.

〈표 6-9-1〉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건강하다	2.2	0.5	4.5	2.0	9.5	8.3	17.4	2.9	-	-	-	-	6.8	-	2.7	2.7
비교적 건강하다	35.0	16.9	39.7	42.7	39.0	62.3	72.6	36.0	13.2	10.4	6.5	9.6	48.9	43.3	23.7	34.5
건강이 나쁜 편이다	47.0	39.9	41.8	42.7	37.3	24.1	5.1	47.0	44.2	51.7	37.0	24.5	26.3	31.4	50.8	42.9
매우 건강이 나쁘다	15.8	42.7	14.1	12.6	14.2	5.3	4.9	14.1	42.5	37.9	56.6	65.9	18.0	25.3	22.7	1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1)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0)	(35)	(12)	(40)	(38)	(5,461)
전국추정수	995,232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9,279

주: 무응답 5건 제외

장애인들은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가족관계, 현재의 삶, 친구의 수,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월수입, 여가활동, 하는 일, 결혼생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가족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79.4%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0.6%의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만족정도가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100.0%)와 장루·요루장애(89.7%)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간질장애(40.3%)와 정신장애(39.8%)였다.

〈표 6-9-2〉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25.6	22.1	25.7	23.1	30.9	18.5	-	10.4	26.7	17.8	16.3	30.7	33.2	26.0	28.7	24.3
대체로 만족	55.5	50.3	54.7	58.1	55.2	66.0	100.0	49.9	56.5	58.1	54.7	47.8	34.0	63.7	31.1	55.1
약간 불만족	13.3	17.2	13.5	13.1	3.3	9.2	-	25.8	14.7	16.6	18.8	13.3	21.2	7.7	27.8	14.1
매우 불만족	5.7	10.3	6.2	5.7	10.6	6.4	-	14.0	2.1	7.5	10.3	8.1	11.6	2.7	12.5	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46)	(412)	(513)	(421)	(29)	(61)	(3)	(107)	(94)	(95)	(72)	(24)	(9)	(38)	(25)	(4,249)
전국추정수	900,183	156,999	198,101	162,018	11,382	22,627	1,247	41,108	35,637	36,521	28,205	9,353	3,192	14,684	9,803	1,631,060

주: 비해당 1,210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장애인들은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54.9%의 장애인이 현재의 삶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45.0%의 장애인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에서는 불만족이 약간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삶의 만족정도에서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100.0%)와 정신지체(61.8%)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심장장애(74.5%)와 간장애(72.3%)였다.

〈표 6-9-3〉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7.0	4.5	6.9	8.9	-	20.2	-	4.7	2.3	2.0	4.2	-	18.3	8.3	12.0	6.8
대체로 만족	39.8	27.8	38.2	45.8	49.1	41.6	100.0	31.3	37.3	23.5	24.6	27.8	38.0	44.5	32.5	38.2
약간 불만족	36.8	34.9	35.5	30.2	30.2	29.6	-	27.3	37.5	46.7	33.6	42.7	11.1	26.7	31.3	35.4
매우 불만족	16.3	32.8	19.4	15.1	20.7	8.6	-	36.6	22.9	27.8	37.5	29.6	32.6	20.5	24.2	19.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54)	(414)	(514)	(424)	(29)	(61)	(3)	(107)	(95)	(95)	(72)	(24)	(10)	(38)	(25)	(4,265)
전국추정수	903,297	157,730	198,465	163,145	11,382	22,627	1,247	41,108	36,034	36,521	28,205	9,353	3,605	14,684	9,803	1,637,206

주: 비해당 1,195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장애인들은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61.7%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38.3%의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친구 수에 대한 장애인의 만족정도가 불만족정도보다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사귀는 친구수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100.0%)와 안면장애(78.4%)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정신장애(62.0%)와 뇌병변장애(58.7%)였다.

〈표 6-9-4〉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12.8	6.8	13.9	10.4	14.6	15.1	32.2	5.6	5.9	3.3	9.9	8.6	30.0	9.9	16.2	11.6
대체로 만족	53.7	34.4	51.3	53.0	42.2	27.2	67.8	32.3	52.3	58.0	36.8	33.1	48.4	58.0	48.4	50.1
약간 불만족	24.9	34.1	24.2	26.9	23.0	32.2	-	24.4	28.1	26.0	37.6	41.7	10.5	27.2	7.6	26.3
매우 불만족	8.6	24.6	10.6	9.7	20.2	25.5	-	37.6	13.7	12.7	15.7	16.6	11.1	5.0	27.8	1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54)	(414)	(514)	(424)	(29)	(61)	(3)	(107)	(94)	(95)	(72)	(24)	(10)	(38)	(25)	(4,264)
전국추정수	903,297	157,730	198,465	163,145	11,382	22,627	1,247	41,108	35,610	36,521	28,205	9,353	3,605	14,684	9,803	1,636,782

주: 비해당 1,196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장애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67.7%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32.2%의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만족정도가 불만족정도보다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100.0%)와 안면장애(78.8%)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간질장애(40.1%)와 정신장애(38.9%)였다.

〈표 6-9-5〉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12.9	10.8	16.1	13.3	6.9	23.0	32.2	8.0	7.0	7.4	9.8	26.7	10.5	8.0	11.9	12.8
대체로 만족	55.2	52.2	52.5	56.2	68.5	50.2	67.8	53.1	58.9	61.7	57.9	50.0	68.3	58.7	47.9	54.9
약간 불만족	22.3	27.0	22.2	22.5	13.6	22.0	-	22.2	19.1	17.7	17.0	12.1	10.9	23.4	23.8	22.3
매우 불만족	9.6	9.9	9.2	8.0	11.1	4.9	-	16.7	15.0	13.2	15.4	11.3	10.3	9.9	16.3	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54)	(414)	(514)	(424)	(29)	(61)	(3)	(107)	(95)	(95)	(72)	(24)	(10)	(38)	(25)	(4,265)
전국추정수	903,297	157,730	198,465	163,145	11,382	22,627	1,247	41,108	36,034	36,521	28,205	9,353	3,605	14,684	9,803	1,637,206

주: 비해당 1,195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장애인들은 건강상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는 69.6%의 장애인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30.5%의 장애인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에 있어 불만족정도가 약간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정신지체와 발달장애(67.7%)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심장장애(92.7%)와 호흡기장애(93.3%)였다.

〈표 6-9-6〉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3.1	1.7	3.1	3.4	6.9	13.8	33.9	1.0	-	-	-	5.4	10.9	-	-	3.0
대체로 만족	28.0	15.5	35.8	31.7	27.9	53.9	33.8	34.7	16.1	7.3	6.7	7.2	46.00	26.8	24.4	27.5
약간 불만족	40.7	34.2	34.6	37.3	41.4	22.0	32.2	31.1	37.6	34.2	24.8	20.9	21.6	43.35	43.3	37.9
매우 불만족	28.1	48.6	26.5	27.5	23.9	10.2	-	33.3	46.3	58.5	68.5	66.5	21.5	29.7	32.3	3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53)	(414)	(513)	(424)	(29)	(61)	(3)	(107)	(95)	(95)	(72)	(24)	(10)	(38)	(25)	(4,263)
전국추정수	902,915	157,730	198,059	163,145	11,382	22,627	1,247	41,108	36,034	36,521	28,205	9,353	3,605	14,684	9,803	1,636,418

주: 비혜당 1,197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장애인들은 현재 한달 수입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85.6%의 장애인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4.4%의 장애인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한달 수입에 대한 만족정도에 있어 불만족정도가 약간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한달 수입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33.9%)와 정신지체(26.7%)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안면장애(91.7%)와 뇌병변장애(90.2%)였다.

〈표 6-9-7〉 한 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1.0	1.0	1.9	1.9	-	6.4	-	3.6	1.0	1.1	-	-	-	2.7	-	1.3
대체로 만족	13.2	8.8	14.2	15.3	10.4	20.3	33.9	14.7	10.3	10.7	11.1	16.7	8.3	13.3	12.4	13.1
약간 불만족	31.8	23.6	28.4	32.3	31.0	40.4	33.8	29.9	27.4	22.3	22.0	20.6	29.4	28.2	12.0	30.1
매우 불만족	53.9	66.6	55.5	50.5	58.6	32.9	32.2	51.8	61.2	65.9	66.9	62.6	62.3	55.8	75.6	5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30)	(403)	(503)	(421)	(29)	(60)	(3)	(104)	(95)	(94)	(72)	(24)	(10)	(37)	(24)	(4,209)
전국추정수	894,298	153,463	194,293	162,019	11,382	22,223	1,247	40,115	36,034	36,130	28,205	9,353	3,605	14,280	9,404	1,616,051

주: 비혜당 1,247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68.3%의 장애인이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31.8%의 장애인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는 불만족정도가 약간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100.0%)와 정신지체(48.8%)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와 간장애(81.8%)였다.

〈표 6-9-8〉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2.3	0.5	1.3	2.5	-	7.0	-	2.6	3.0	2.1	-	-	7.9	-	12.2	2.1
대체로 만족	30.4	17.6	31.1	36.3	42.0	41.8	100.0	35.8	24.0	21.1	22.0	18.2	18.4	37.3	23.3	29.7
약간 불만족	40.9	40.6	37.6	39.0	24.2	31.0	-	30.0	41.1	39.6	33.3	35.9	40.9	52.5	40.7	39.7
매우 불만족	26.4	41.2	30.0	22.2	33.8	20.3	-	31.6	31.9	37.1	44.7	45.9	32.9	10.2	23.8	2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354)	(414)	(514)	(424)	(29)	(61)	(3)	(107)	(95)	(95)	(71)	(24)	(10)	(38)	(25)	(4,264)
전국추정수	903,297	157,730	198,465	163,145	11,382	22,627	1,247	41,108	36,034	36,521	27,840	9,353	3,605	14,684	9,803	1,636,841

주: 비해당 1,196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현재 직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52.6%의 장애인이 ‘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47.5%의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경우가 약간 더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간장애(100.0%)와 정신지체(73.6%)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심장장애(76.4%)와 언어장애(57.8%)였다.

〈표 6-9-9〉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4.7	12.3	6.1	8.9	6.9	22.8	-	8.0	12.7	-	6.4	17.5	21.6	7.5	-	6.0
대체로 만족	49.0	38.3	44.5	39.2	35.3	50.8	-	38.5	47.0	23.7	35.3	82.5	32.8	55.6	59.0	46.6
약간 불만족	26.8	36.8	30.3	31.2	24.9	26.4	-	25.1	14.8	41.1	47.2	-	-	14.0	21.7	27.9
매우 불만족	19.5	12.6	19.1	20.7	32.9	-	-	28.4	25.5	35.3	11.1	-	45.6	22.8	19.3	1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113)	(49)	(212)	(175)	(14)	(21)	-	(24)	(25)	(17)	(17)	(4)	(5)	(13)	(5)	(1,694)
전국추정수	426,014	18,729	81,670	66,417	5,344	7,383	-	9,330	9,358	6,260	6,673	1,556	1,768	5,146	2,071	647,719

주: 비해당 3,759건 및 무응답 13건 제외

현재 유배우인 장애인의 경우, 현재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86.4%의 장애인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13.7%의 장애인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정도는 불만족에 비해 훨씬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발달장애(100.0%)와 간장애(94.9%)였고, ‘불만족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장애유형은 간질장애(34.3%)와 정신장애(23.4%)였다.

〈표 6-9-10〉 전반적인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만족	31.4	27.2	32.6	31.6	53.6	20.3	-	19.1	30.9	29.0	28.4	24.6	-	30.0	10.9	30.8
대체로 만족	56.4	52.5	53.9	52.6	40.4	58.7	100.0	57.5	62.4	55.0	57.6	70.3	79.7	58.0	54.8	55.6
약간 불만족	10.0	16.5	11.6	13.2	6.0	14.3	-	16.2	5.0	14.7	12.2	5.1	20.3	9.2	34.3	11.3
매우 불만족	2.3	3.8	1.9	2.5	-	6.7	-	7.2	1.7	1.3	1.8	-	-	2.8	-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625)	(273)	(333)	(274)	(17)	(15)	(1)	(26)	(64)	(69)	(55)	(20)	(5)	(33)	(9)	(2,819)
전국추정수	622,904	103,652	128,746	105,274	6,675	5,658	423	9,954	23,908	26,359	21,492	7,731	1,830	12,771	3,538	1,080,915

주: 비례당 2,639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장애인들은 생활하면서 장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로 누구와 상담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장애인들의 76.8%가 ‘가족’과 상담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없다’가 14.6%, ‘친척, 친구, 이웃’과 상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5.4%였다. 결과적으로 전체 장애인의 70% 이상이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주로 가족과 상담하고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이외 주 상담자가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직원’이라고 응답한 장애인은 0.7%로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주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아직도 많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또한 2000년도 실태조사 결과(0.5%)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주 상담자가 ‘행정공무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0.1%에 불과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주 상담자로 ‘가족’을 많이 응답하였는데, 특히 장루·요루장애인(95.0%)과 뇌병변장애인(84.5%)의 경우가 가장 높았고, 안면장애(50.6%)와 언어장애(70.5%)는 가장 낮았다.

〈표 6-9-11〉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가족	74.9	84.5	75.4	76.4	70.5	77.6	76.4	73.6	81.7	78.2	74.7	80.3	50.6	95.0	85.0	76.8
친척, 친구, 이웃	5.8	4.1	5.4	5.6	3.6	4.7	7.1	6.8	2.0	7.8	6.7	-	15.0	-	-	5.4
사회복지관·기관직원	0.5	0.4	1.2	0.3	-	1.2	6.4	2.5	1.0	-	-	-	-	-	-	0.7
종교인	1.3	0.5	0.9	0.5	-	0.4	-	1.1	-	1.8	-	-	-	-	-	0.9
행정공무원	0.1	0.2	-	0.3	-	-	-	-	1.0	-	-	-	-	-	-	0.1
장애인 동료	0.4	0.1	0.8	0.3	1.9	-	1.7	0.6	0.9	-	-	2.7	-	2.5	-	0.5
없다	16.2	9.0	15.1	16.1	24.0	15.1	3.2	13.6	7.3	9.3	18.6	13.5	34.4	2.5	12.3	14.6
기타	0.7	1.1	1.2	0.3	-	1.0	5.1	1.8	6.1	2.9	-	3.4	-	-	2.7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3)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3)
전국추정수	995,978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025

주: 무응답 3건 제외

장애인이 가족들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족내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끔 있다’가 4.5%, ‘자주 있다’가 1.5%로 가족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6.0%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와 정신장애의 가족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각각 19.4%, 24.8%로 가장 많았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의 경우는 가족내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가장 많았다.

〈표 6-9-12〉 장애인에 대한 가족내 차별·폭력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주 있다	1.0	2.2	0.9	1.1	2.0	4.5	-	5.3	-	2.1	2.8	3.0	-	-	2.7	1.5
가끔 있다	2.0	4.8	3.5	5.0	5.8	14.9	12.8	19.5	4.0	2.8	-	6.2	8.5	2.3	15.3	4.5
없다	97.0	93.0	95.5	94.0	92.2	80.6	87.2	75.2	96.0	95.1	97.2	90.8	91.5	97.7	82.0	9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3)	(691)	(569)	(593)	(51)	(290)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3)
전국추정수	995,978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937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025

주: 무응답 3건 제외

가족내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경우, 그 폭력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받는 가족 내 폭력의 유형으로 ‘언어폭력’이 5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폭력(22.9%)’, ‘신체적 폭력(14.4%)’, ‘방임·유기(8.0%)’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 볼 때, 가족내 차별유형 중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유형은 안면장애(100.0%)와 장루·요루장애(100.0%)였고, 언어장애는 ‘신체적 폭력(50.3%)’을, 간질장애는 ‘정신적 폭력(60.1%)’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6-9-13〉 가족내 차별·폭력의 유형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신체적폭력	15.0	6.5	-	10.2	50.3	27.3	23.8	17.2	-	19.9	-	-	-	-	-	14.4
정신적폭력	24.9	17.7	35.6	26.0	-	15.6	27.9	22.9	25.0	22.9	-	-	-	-	60.1	22.9
언어폭력	52.8	55.7	57.2	55.4	25.6	50.5	48.3	55.7	50.6	40.5	-	67.0	100.0	100.0	39.9	53.2
성적학대	1.3	-	-	-	-	-	-	2.0	-	-	-	-	-	-	-	0.6
방임 및 유기	6.1	20.2	3.5	8.4	-	6.7	-	2.2	24.4	16.7	-	33.0	-	-	-	8.0
기타	-	-	3.7	-	24.2	-	-	-	-	-	100.0	-	-	-	-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9)	(48)	(26)	(35)	(4)	(58)	(8)	(48)	(4)	(5)	(1)	(3)	(1)	(1)	(7)	(328)
전국추정수	29,721	18,519	9,843	13,746	1,548	21,564	2,988	18,743	1,598	2,036	466	1,232	371	360	2,619	125,354

주: 비해당 5,132명 및 무응답 6명 제외

가족내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가족이 주로 누구인지를 물어본 결과, ‘배우자’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3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형제·자매(26.5%)’, ‘부모(20.0%)’의 순이었다. 그 외 ‘자녀’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13.9%나 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60.4%)와 청각장애(57.4%)가 ‘배우자’에 의해 차별·폭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발달장애(49.1%)와 정신장애(41.6%)는 ‘형제·자매’에 의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언어장애(51.5%), 정신지체(44.3%), 간장애(34.5%), 안면장애(100.0%)는 ‘부모’에 의한 차별이 가장 많았다.

〈표 6-9-14〉 가족내에서 차별·폭력의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배우자	42.8	47.7	44.2	57.4	-	16.5	-	12.8	25.0	60.4	-	-	-	-	32.3	33.7
부모	10.5	12.8	3.8	3.5	51.5	44.3	37.5	32.8	-	-	-	34.5	100.0	-	13.7	20.0
자녀	18.1	16.7	26.8	16.6	-	1.9	-	10.5	50.3	16.7	-	33.0	-	-	-	13.9
형제·자매	21.6	18.6	25.1	19.6	24.4	31.5	49.1	41.6	24.8	-	-	-	-	-	54.0	26.5
조부모	2.5	2.1	-	-	24.2	2.3	13.4	-	-	22.9	-	-	-	-	-	2.3
손자녀	-	-	-	2.9	-	-	-	-	-	-	100.0	-	-	100.0	-	1.0
기타	4.5	2.0	-	-	-	3.6	-	2.2	-	-	-	32.5	-	-	-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81)	(47)	(26)	(35)	(4)	(57)	(8)	(48)	(4)	(5)	(1)	(3)	(1)	(1)	(7)	(328)
전국추정수	30,470	18,088	9,843	13,746	1,548	21,266	2,988	18,836	1,598	2,036	466	1,232	371	360	2,619	125,467

주: 비해당 5,132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99.3%가 ‘없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성관련 차별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성관련 차별이나 폭력 등을 경험한 장애인은 0.7% 수준으로, ‘가끔 있다’가 0.6%, ‘자주 있다’는 0.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내부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정신장애인들의 경우는 가장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정신장애 4.1%, 정신지체 3.3%, 발달장애 3.2%였다.

〈표 6-9-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자주 있다	0.1	-	-	-	-	0.3	-	1.1	-	-	-	-	-	-	-	0.1
가끔 있다	0.3	0.1	0.3	1.0	-	3.0	3.2	3.0	1.0	-	-	-	-	-	-	0.6
없다	99.6	99.9	99.7	99.0	100.0	96.6	96.8	95.9	9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3)	(691)	(569)	(593)	(51)	(288)	(59)	(198)	(106)	(108)	(77)	(35)	(12)	(40)	(38)	(5,458)
전국추정수	995,978	266,070	219,551	227,513	19,827	110,200	23,259	76,127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8,235

주: 무응답 8건 제외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의 43.3%가 ‘없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가족’(36.0%), ‘친척·친구·이웃’(11.9%) 순이었다. 그 외 ‘사회복지 관련기관 직원’이나 ‘행정공무원’등은 각각 4.8%, 1.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장애인들은 성희롱·성추행·폭력 등을 당하였을 때, 주로 가까이 있는 가족과 상담을 하고 있었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상담한 경우는 아주 미미하였다. 게다가 약 반수 정도의 장애인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상담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고 있다.

〈표 6-9-1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주 상담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가족	18.0	-	-	32.7	-	70.3	-	51.2	-	-	-	-	-	-	-	36.0
친척, 친구, 이웃	18.8	100.0	-	33.2	-	-	-	-	-	-	-	-	-	-	-	11.9
사회복지관련기관직원	-	-	67.4	-	-	-	-	-	-	-	-	-	-	-	-	4.8
종교인	6.5	-	-	-	-	-	-	-	-	-	-	-	-	-	-	1.7
행정공무원	-	-	-	-	-	-	-	-	-	-	-	-	-	-	-	-
장애인 동료	-	-	-	-	-	-	-	-	-	-	-	-	-	-	-	-
없다	56.8	-	32.6	34.1	-	19.9	100.0	48.8	100.0	-	-	-	-	-	-	43.3
기타	-	-	-	-	-	9.8	-	-	-	-	-	-	-	-	-	2.3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N)	(11)	(1)	(3)	(6)	-	(10)	(2)	(8)	(1)	-	-	-	-	-	-	(42)
전국추정수	4,040	370	1,114	2,222	-	3,721	736	3,102	396	-	-	-	-	-	-	15,701

주: 비례당 5,416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장애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상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장애인이 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23.3%),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부족(17.5%)’을 많이 응답하였다. 이외 집 근처 상담기관 부족에 대해서도 9.3%의 장애인들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인들이 이러한 문제발생시 담당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상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44.6%), 발달장애(100.0%), 정신장애(76.6%)는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6-9-17〉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시 상담하지 못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11.8	-	-	52.2	-	25.4	-	23.4	100.0	-	-	-	-	-	-	23.3
상담기관 등에 대한 정보 부족	32.2	-	-	-	-	24.6	-	-	-	-	-	-	-	-	-	17.5
몸이 불편	-	-	-	-	-	-	-	-	-	-	-	-	-	-	-	-
경제적 부담때문	-	-	-	-	-	-	-	-	-	-	-	-	-	-	-	-
집근처에 상담기관 부족	11.5	-	-	-	-	26.0	-	-	-	-	-	-	-	-	-	9.3
가해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	-	100.0	-	-	-	-	-	-	-	-	-	-	-	-	4.4
타인에게 알리기 싫어서	44.6	-	-	-	-	24.1	100.0	76.6	-	-	-	-	-	-	-	41.0
기타	-	-	-	47.8	-	-	-	-	-	-	-	-	-	-	-	4.4
계	100.0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	-	-	100.0
(N)	(9)	-	(1)	(2)	-	(4)	(1)	(4)	(1)	-	-	-	-	-	-	(22)
전국추정수	3,351	-	363	758	-	1,478	366	1,513	396	-	-	-	-	-	-	8,225

주: 비해당 5,435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장애인의 폭력 문제를 상담하고 도와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필요(29.9%)’, ‘별로 필요 없음(6.3%)’, ‘전혀 필요 없음(1.3%)’의 순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간장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97.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인(9.8%)과 신장장애인(9.1%)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았다.

〈표 6-9-18〉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자 또는 시설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필요	63.4	61.9	58.2	56.7	63.8	68.3	72.3	69.6	56.8	55.7	66.8	66.9	74.8	61.0	76.4	62.4
약간 필요	29.3	30.2	34.0	33.5	30.0	25.5	21.0	23.4	34.1	35.6	26.8	30.3	18.4	30.9	18.3	29.9
별로 필요 없음	6.0	6.9	6.2	8.4	6.2	5.0	5.1	6.0	8.4	6.8	5.4	2.8	6.8	2.8	5.3	6.3
전혀 필요 없음	1.3	1.0	1.5	1.4	-	1.3	1.7	0.9	0.7	1.8	1.1	-	-	5.4	-	1.3
계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76)	(682)	(564)	(582)	(49)	(287)	(59)	(198)	(106)	(107)	(75)	(34)	(12)	(39)	(38)	(5,408)
전국추정수	989,351	262,641	217,585	223,345	19,076	109,837	23,259	76,106	40,286	41,337	29,147	13,036	4,369	15,071	14,555	2,079,001

주: 무응답 58건 제외

장애인이 현재의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차별의 영역은 입학·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시, 직장생활, 운전면허제도상(취득시), 보험제도상(계약시), 의료기관 이용시, 정보통신 이용시(방송포함), 지역사회생활로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의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정도를 조사하였는데, 유치원(보육시설)의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7.0%,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3.0%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32.1%), 정신지체(34.2%), 발달장애인(35.8%)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치원 입학·전학시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6-9-19〉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유치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2.9	28.0	2.5	22.4	32.1	34.2	35.8	-	-	-	-	-	-	-	18.9	23.0
안받았다	87.1	72.0	97.5	77.6	67.9	65.8	64.2	100.0	100.0	100.0	100.0	-	100.0	-	81.1	7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N)	(85)	(25)	(35)	(32)	(6)	(100)	(46)	(3)	(1)	(4)	(1)	-	(3)	-	(4)	(345)
전국추정수	33,736	9,772	13,591	12,692	2,304	39,078	18,359	1,598	370	1,462	381	-	1,146	-	1,447	135,936

주: 비해당 5,116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유치원(보육시설)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2.5%는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4.4%)’,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1.9%)’,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1.2%)’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은 유치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6.9%)’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조치를 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3.1%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인(52.0%)과 뇌병변장애인(43.6%)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6-9-2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유치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9.4	-	100.0	45.9	-	9.3	18.0	-	-	-	-	-	-	-	-	14.4
참는다	90.6	56.4	-	54.1	48.0	77.1	69.9	-	-	-	-	-	-	-	100.0	72.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	43.6	-	-	-	13.0	12.1	-	-	-	-	-	-	-	-	11.9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52.0	-	-	-	-	-	-	-	-	-	-	1.2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	100.0	100.0
(N)	(11)	(7)	(1)	(7)	(2)	(35)	(17)	-	-	-	-	-	-	-	(1)	(81)
전국추정수	4,338	2,737	342	2,845	739	13,384	6,571	-	-	-	-	-	-	-	273	31,229

주: 비례당 5,380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장애인이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6.2%,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3.8%였다. 이는 앞의 유치원 입학·전학시 차별받은 정도 보다 약 10% 더 높은 결과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와 안면장애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취학시 차별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간질장애와 심장장애의 경우 50% 정도의 장애인들이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겠다.

〈표 6-9-21〉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31.9	39.5	23.9	29.6	29.7	48.0	30.1	15.7	-	50.8	33.9	-	-	-	56.2	33.8
안받았다	68.1	60.5	76.1	70.4	70.3	52.0	69.9	84.3	100.0	49.2	66.1	-	100.0	-	43.8	6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N)	(449)	(48)	(142)	(125)	(20)	(201)	(47)	(12)	(2)	(6)	(6)	-	(4)	-	(12)	(1,074)
전국추정수	173,811	18,726	55,669	47,536	7,730	77,302	18,507	4,832	754	2,266	2,265	-	1,427	-	4,407	415,232

주: 비례당 4,382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6.0%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1.9%)’, ‘무시한다(11.6%)’,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0.3%)’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은 초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7.6%)’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

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2.2%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이는 유치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과 동일한 결과이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27.0%)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6-9-2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초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2.4	5.4	13.8	18.5	-	7.9	7.2	52.2	-	54.8	-	-	-	-	16.1	11.6
참는다	74.8	67.6	71.6	75.3	100.0	79.2	78.3	47.8	100.0	45.2	-	-	-	-	83.9	76.0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2.7	27.0	14.6	6.2	-	11.0	14.3	-	-	-	-	-	-	-	-	11.9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1.0	-	-	-	-	-	-	-	-	-	0.3
기타	-	-	-	-	-	0.9	-	-	-	-	-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100.0
(N)	(144)	(19)	(35)	(37)	(6)	(95)	(14)	(2)	(3)	(2)	-	-	-	-	(7)	(364)
전국추정수	55,402	7,390	13,299	14,055	2,298	36,312	5,566	758	1,151	768	-	-	-	-	2,475	139,474

주: 비해당 5,090건 및 무응답 12건 제외

장애인이 중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3.0%,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7.0%였다. 이는 초등학교에서의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3.8% 보다는 낮은 결과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100.0%)와 정신장애(91.6%)의 경우 중학교 입학·취학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가장 많았고, 심장장애인의 경우 75.8%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6-9-23〉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장애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25.3	35.6	16.2	20.5	24.7	42.6	26.3	8.4	-	75.8	36.5	-	21.1	-	39.4	27.0
안받았다	74.7	64.4	83.8	79.5	75.3	57.4	73.7	91.6	100.0	24.2	63.5	-	78.9	-	60.6	7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N)	(366)	(39)	(107)	(90)	(12)	(129)	(24)	(11)	(4)	(4)	(3)	-	(5)	-	(15)	(809)
전국추정수	143,113	15,317	42,317	34,646	4,534	49,553	9,406	4,519	1,479	1,519	1,152	-	1,809	-	5,848	315,212

주: 비해당 4,649명 및 무응답 8명 제외

중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5.2%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3.2%)’,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1.2%)’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중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8.4%)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조치를 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1.2%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29.0%)와 시각장애(22.6%)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6-9-2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중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장애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3.6	7.3	22.2	14.3	-	9.9	16.1	100.0	-	-	100.0	-	-	-	-	13.2
참는다	78.3	56.9	55.2	85.7	100.0	75.8	66.8	-	-	100.0	-	-	100.0	-	100.0	75.2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8.1	29.0	22.6	-	-	14.3	17.1	-	-	-	-	-	-	-	-	11.2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6.8	-	-	-	-	-	-	-	-	-	-	-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N)	(93)	(14)	(18)	(19)	(3)	(54)	(6)	(1)	-	(3)	(1)	-	(1)	-	(6)	(219)
전국추정수	36,205	5,460	6,862	7,109	1,120	20,716	2,472	381	-	1,151	421	-	382	-	2,307	84,586

주: 비해당 5,238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장애인이 고등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8.5%,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1.5%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100.0%), 시각장애(88.9%)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취학시 차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가장 많았고, 심장장애의 경우 67.7%가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6-9-25〉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20.4	24.0	11.1	16.9	29.8	31.3	27.7	38.3	-	67.7	26.1	-	33.3	-	32.5	21.5
안받았다	79.6	76.0	88.9	83.1	70.2	68.7	72.3	61.7	100.0	32.3	73.9	-	66.7	-	67.5	78.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N)	(295)	(32)	(93)	(64)	(6)	(87)	(8)	(18)	(4)	(3)	(4)	-	(3)	-	(15)	(632)
전국추정수	115,363	12,667	37,198	24,963	2,235	33,726	3,184	7,232	1,479	1,140	1,611	-	1,146	-	5,874	247,818

주: 비해당 4,827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고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8.7%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3.6%)’,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7.8%)’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고등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2.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7.8%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25.4%)와 간질장애(24.4%)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6-9-2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고등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4.3	-	26.2	9.5	-	7.1	45.2	28.3	-	-	100.0	-	-	-	-	13.6
참는다	78.2	74.6	65.5	90.5	100.0	89.1	54.8	58.5	-	100.0	-	-	100.0	-	75.6	78.7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7.5	25.4	8.2	-	-	3.8	-	13.3	-	-	-	-	-	-	24.4	7.8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N)	(61)	(8)	(11)	(10)	(2)	(27)	(2)	(7)	-	(2)	(1)	-	(1)	-	(5)	(137)
전국추정수	23,584	3,046	4,130	3,839	666	10,569	882	2,768	-	772	421	-	382	-	1,910	52,969

주: 비해당 5,321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장애인이 대학교 입학·전학시 사회적인 차별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차별을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8.8%,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1.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의 100.0%가, 심장장애의 경우는 26.7%가 대학교 입학·취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6-9-27〉 사회적 차별 정도: 입학·전학-대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4.0	6.4	8.0	9.9	100.0	-	-	-	-	26.7	-	-	-	-	-	11.2
안받았다	86.0	93.6	92.0	90.1	-	100.0	-	100.0	100.0	73.3	100.0	-	-	100.0	100.0	88.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N)	(141)	(13)	(53)	(29)	(1)	(10)	-	(6)	(4)	(4)	(1)	-	-	(1)	(4)	(267)
전국추정수	55,882	5,201	20,978	10,949	399	3,803	-	2,145	1,442	1,532	381	-	-	360	1,572	104,644

주: 비해당 5,195건 및 무응답 4건 제외

대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6.7%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9.7%)’,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3.6%)’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대학교 입학·전학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6.4%)’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6%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인만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39.3%가 사용하였다.

〈표 6-9-2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입학·전학-대학교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4.5	-	46.4	-	-	-	-	-	-	-	-	-	-	-	-	9.7
참는다	95.5	100.0	53.6	60.7	100.0	-	-	-	-	100.0	-	-	-	-	-	86.7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	-	-	39.3	-	-	-	-	-	-	-	-	-	-	-	3.6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100.0	-	-	-	-	-	100.0
(N)	(20)	(1)	(4)	(3)	(1)	-	-	-	-	(1)	-	-	-	-	-	(30)
전국추정수	7,799	335	1,681	1,085	399	-	-	-	-	409	-	-	-	-	-	11,708

주: 비해당 5,432건 및 무응답 4건 제외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교사로부터, 또래학생으로부터,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교사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2.5%,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7.5%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100.0%의 장애인이 학교생활에서 교사로부터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언어장애의 38.4%가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6-9-29〉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교사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2.4	24.1	9.7	17.9	38.4	27.9	32.0	25.1	-	25.8	-	-	17.4	-	22.7	17.5
안받았다	87.6	75.9	90.3	82.1	61.6	72.1	68.0	74.9	100.0	74.2	100.0	-	82.6	100.0	77.3	8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	100.0	100.0	100.0
(N)	(517)	(58)	(166)	(135)	(19)	(208)	(52)	(32)	(5)	(8)	(5)	-	(6)	(1)	(17)	(1,229)
전국추정수	200,516	22,893	65,624	51,504	7,492	79,801	20,659	12,219	1,862	2,994	1,977	-	2,191	360	6,675	476,767

주: 비례당 4,222건 및 무응답 15건 제외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8.9%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1.6%)’, ‘무시한다(9.1%)’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교사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8.0%)’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1.6%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24.9%로 가장 많았다.

〈표 6-9-3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교사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7.4	7.2	13.0	16.3	-	10.2	11.6	-	-	-	-	-	-	-	-	9.1
참는다	83.6	76.5	75.5	79.2	86.6	76.5	63.6	76.2	-	100.0	-	-	100.0	-	100.0	78.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9.1	16.3	11.5	4.5	13.4	13.3	24.9	12.0	-	-	-	-	-	-	-	11.6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11.8	-	-	-	-	-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100.0	-	100.0	100.0
(N)	(64)	(14)	(16)	(24)	(7)	(58)	(17)	(8)	-	(2)	-	-	(1)	-	(4)	(215)
전국추정수	24,794	5,514	6,366	9,208	2,876	22,266	6,610	3,069	-	772	-	-	382	-	1,513	83,370

주: 비례당 5,238명 및 무응답 13명 제외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또래 학생으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3.8%,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6.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100.0%의 장애인이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안면장애의 65.1%와 정신지체의 64.4%는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6-9-31〉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43.0	45.6	35.2	43.3	56.8	64.4	41.8	59.8	-	50.5	18.0	-	65.1	-	50.5	46.2
안받았다	57.0	54.4	64.8	56.7	43.2	35.6	58.2	40.2	100.0	49.5	82.0	-	34.9	100.0	49.5	5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N)	(524)	(59)	(168)	(136)	(18)	(212)	(52)	(33)	(5)	(8)	(6)	-	(6)	(1)	(18)	(1,246)
전국추정수	202,980	23,288	66,368	51,868	7,108	81,462	20,659	12,627	1,862	2,994	2,333	-	2,191	360	7,034	483,134

주: 비례당 4,205건 및 무응답 15건 제외

또래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5.8%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2.4%)’,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1.5%)’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또래학생으로부터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8.2%)’하는 경우가 가장 많

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1.5%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다.

〈표 6-9-3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또래학생으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3.7	3.8	17.8	12.9	-	11.2	13.5	5.0	-	-	100.0	-	-	-	10.3	12.4
참는다	75.1	69.7	64.1	78.1	100.0	77.9	72.7	89.7	-	76.1	-	-	100.0	-	89.7	75.8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1.2	26.5	18.0	8.9	-	9.4	13.8	5.2	-	23.9	-	-	-	-	-	11.5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1.5	-	-	-	-	-	-	-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	100.0	-	100.0	100.0
(N)	(227)	(27)	(61)	(60)	(10)	(138)	(22)	(19)	-	(4)	(1)	-	(4)	-	(9)	(582)
전국추정수	87,231	10,619	23,329	22,447	4,035	52,438	8,630	7,555	-	1,513	421	-	1,427	-	3,553	223,198

주: 비해당 4,871건 및 무응답 13건 제외

장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또래 학부모로부터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7.7%,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2.3%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100.0%의 장애인이 학부모로부터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발달장애의 경우 30.6%가 차별받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차별을 많이 받았다.

〈표 6-9-33〉 사회적 차별 정도: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0.2	13.0	6.8	10.6	17.6	19.8	30.6	5.5	-	12.1	-	-	-	-	17.7	12.3
안받았다	89.8	87.0	93.2	89.4	82.4	80.2	69.4	94.5	100.0	87.9	100.0	-	100.0	100.0	82.3	8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N)	(515)	(59)	(166)	(134)	(18)	(205)	(52)	(33)	(5)	(8)	(6)	-	(6)	(1)	(18)	(1,226)
전국추정수	199,677	23,288	65,332	51,152	7,108	78,796	20,659	12,627	1,862	2,994	2,333	-	2,191	360	7,034	475,413

주: 비해당 4,224건 및 무응답 16건 제외

학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3.2%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9.4%)’,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7.4%)’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부모로부터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2.6%)’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7.4%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16.7%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가장 많았다.

〈표 6-9-3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학교생활-학부모로부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6.8	12.9	18.6	6.8	-	8.9	18.4	-	-	-	-	-	-	-	-	9.4
참는다	84.9	87.1	64.7	84.4	100.0	84.3	75.7	100.0	-	100.0	-	-	-	-	100.0	83.2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8.3	-	16.7	8.8	-	6.8	5.9	-	-	-	-	-	-	-	-	7.4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	-	-	100.0	100.0
(N)	(52)	(8)	(11)	(14)	(3)	(41)	(16)	(2)	-	(1)	-	-	-	-	(3)	(151)
전국추정수	20,311	3,019	4,440	5,405	1,250	15,625	6,329	696	-	362	-	-	-	-	1,247	58,684

주: 비례당 5,301건 및 무응답 14건 제외

장애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0.4%,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9.6%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100.0%의 장애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안면장애 65.4%, 언어장애 56.4%였다.

〈표 6-9-35〉 사회적 차별 정도: 결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28.5	31.5	23.8	23.9	56.4	48.0	-	50.1	53.1	11.9	10.2	49.1	65.4	-	54.3	29.6
안받았다	71.5	68.5	76.2	76.1	43.6	52.0	100.0	49.9	46.9	88.1	89.8	50.9	34.6	100.0	45.7	7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724)	(36)	(208)	(179)	(20)	(69)	(2)	(43)	(8)	(7)	(10)	(2)	(6)	(1)	(15)	(1,330)
전국추정수	278,235	14,030	81,491	68,209	7,681	25,231	818	16,394	2,924	2,756	3,901	806	2,240	267	5,893	510,876

주: 비해당 4,128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장애인이 결혼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5.5%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0.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2.8%)’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0.3%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결혼을 하는 데 있어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6.4%)’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1%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10.2%로 가장 많았다.

〈표 6-9-3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결혼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2.0	-	11.3	6.7	-	11.1	-	15.2	-	-	-	-	-	-	36.9	10.9
참는다	84.1	91.1	85.1	91.1	100.0	88.9	-	74.7	100.0	100.0	100.0	100.0	100.0	-	63.1	85.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3.4	-	1.8	2.2	-	-	-	10.2	-	-	-	-	-	-	-	2.8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5	-	-	-	-	-	-	-	-	-	-	-	-	-	-	0.3
기타	-	8.9	1.9	-	-	-	-	-	-	-	-	-	-	-	-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N)	(207)	(11)	(50)	(43)	(11)	(33)	-	(21)	(4)	(1)	(1)	(1)	(4)	-	(8)	(395)
전국추정수	79,218	4,415	19,406	16,291	4,334	12,109	-	8,219	1,552	328	396	396	1,465	-	3,200	151,329

주: 비해당 5,063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장애인이 취업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0.9%,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9.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등의 내부장애인들의 취업시 차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안면장애 86.9%, 정신지체 73.0%로 가장 많았다.

〈표 6-9-37〉 사회적 차별 정도: 취업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36.8	42.4	40.1	32.5	58.8	73.0	34.5	50.9	18.7	58.0	20.5	40.1	86.9	20.3	68.9	39.1
안받았다	63.2	57.6	59.9	67.5	41.2	27.0	65.5	49.1	81.3	42.0	79.5	59.9	13.1	79.7	31.1	6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304)	(90)	(271)	(240)	(24)	(74)	(3)	(83)	(28)	(19)	(29)	(8)	(8)	(11)	(20)	(2,212)
전국추정수	501,968	34,438	105,072	91,663	9,223	27,446	1,225	32,215	10,448	7,353	11,243	3,039	2,900	4,151	7,879	850,263

주: 비해당 3,244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취업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4.9%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0.2%)’,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4.5%)’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0.1%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5.1%)’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4.6%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9.6%로 가장 많았다.

〈표 6-9-3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취업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1.1	13.1	11.0	3.4	13.7	7.1	-	9.6	19.0	-	16.6	37.5	-	-	14.5	10.2
참는다	83.6	84.2	85.3	92.7	77.8	85.7	100.0	80.7	81.0	100.0	83.4	62.5	100.0	100.0	85.5	84.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4.9	2.7	2.9	2.7	8.6	7.2	-	9.6	-	-	-	-	-	-	-	4.5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0.9	-	-	-	-	-	-	-	-	-	-	-	-	0.1
기타	0.5	-	-	1.2	-	-	-	-	-	-	-	-	-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483)	(39)	(109)	(79)	(14)	(53)	(1)	(42)	(5)	(11)	(6)	(3)	(6)	(2)	(14)	(867)
전국추정수	184,782	14,591	42,154	29,790	5,421	19,667	423	16,384	1,951	4,267	2,309	1,220	2,150	841	5,430	331,380

주: 비해당 4,588건 및 무응답 11건 제외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득(임금), 동료와의 관계, 승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득(임금)의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76.3%,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23.7%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득(임금)의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정신지체인이 60.3%로 가장 많았다.

〈표 6-9-39〉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22.6	23.8	21.1	23.7	37.0	60.3	26.0	21.5	20.9	38.6	12.4	16.0	-	10.3	43.4	23.7
안받았다	77.4	76.2	78.9	76.3	63.0	39.7	74.0	78.5	79.1	61.4	87.6	84.0	100.0	89.7	56.6	7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284)	(75)	(267)	(246)	(19)	(59)	(4)	(79)	(29)	(23)	(24)	(6)	(7)	(10)	(16)	(2,148)
전국추정수	496,021	28,839	103,611	93,936	7,215	21,880	1,621	30,899	11,064	9,047	9,325	2,299	2,487	3,785	6,296	828,325

주: 비해당 3,310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소득(임금)의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7.5%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7.4%)’,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4.7%)’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0.2%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4.9%)’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4.9%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는 적극적 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10.8%로 가장 많았다.

〈표 6-9-4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소득(임금)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9.6	-	8.8	1.6	-	3.1	-	5.5	16.0	-	-	-	-	-	14.5	7.4
참는다	86.0	100.0	85.6	89.5	100.0	86.0	100.0	88.6	84.0	100.0	100.0	100.0	-	100.0	85.5	87.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4.4	-	3.8	7.1	-	10.8	-	5.9	-	-	-	-	-	-	-	4.7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1.7	-	-	-	-	-	-	-	-	-	-	-	-	0.2
기타	-	-	-	1.7	-	-	-	-	-	-	-	-	-	-	-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N)	(295)	(18)	(56)	(57)	(7)	(35)	(1)	(18)	(6)	(9)	(3)	(1)	-	(1)	(7)	(514)
전국추정수	111,599	6,871	21,841	22,245	2,673	12,831	421	6,658	2,310	3,491	1,160	367	-	391	2,730	195,588

주: 비해당 4,943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장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1.1%,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8.9%였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정신지체 54.5%, 간질장애 45.8%로 가장 많았다.

〈표 6-9-41〉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5.7	21.3	16.6	28.2	42.9	54.5	24.4	23.5	3.6	13.0	12.5	-	31.2	10.3	45.8	18.9
안받았다	84.3	78.7	83.4	71.8	57.1	45.5	75.6	76.5	96.4	87.0	87.5	100.0	68.8	89.7	54.2	8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1,250)	(73)	(252)	(233)	(18)	(54)	(4)	(77)	(27)	(22)	(23)	(6)	(7)	(10)	(15)	(2,071)
전국추정수	482,980	28,088	97,897	89,144	6,816	20,006	1,621	30,115	10,383	8,633	8,949	2,299	2,487	3,785	5,929	799,132

주: 비해당 3,386명 및 무응답 9명 제외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동료와의 관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83.6%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0.0%)’,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6.4%)’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경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3.6%)’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6.4%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조치를 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22.5%로 가장 많았다.

〈표 6-9-4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동료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0.4	5.7	14.9	10.3	-	-	-	16.0	100.0	-	-	-	-	-	14.6	10.0
참는다	82.3	94.3	82.7	83.7	100.0	93.6	100.0	61.5	-	100.0	-	100.0	100.0	100.0	85.4	83.6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7.3	-	2.4	6.0	-	6.4	-	22.5	-	-	-	-	-	-	-	6.4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N)	(197)	(16)	(42)	(65)	(8)	(30)	(1)	(19)	(1)	(3)	-	(3)	(2)	(1)	(7)	(395)
전국추정수	75,091	5,994	16,254	25,169	2,922	10,907	396	7,071	370	1,125	-	1,118	775	391	2,713	150,296

주: 비해당 5,061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장애인이 직장생활시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3.5%,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5%였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와 안면장애의 경우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발달장애 49.9%, 정신지체 46.3%로 가장 많았다.

〈표 6-9-43〉 사회적 차별 정도: 직장생활-승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5.1	23.3	15.3	20.4	22.0	46.3	49.9	13.7	16.1	18.6	4.9	-	-	16.7	26.6	16.5
안받았다	84.9	76.7	84.7	79.6	78.0	53.7	50.1	86.3	83.9	81.4	95.1	100.0	100.0	83.3	73.4	8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7)	(54)	(198)	(165)	(9)	(33)	(2)	(67)	(25)	(15)	(20)	(5)	(4)	(6)	(14)	(1,604)
전국추정수	380,451	20,815	77,105	62,768	3,533	12,067	844	25,782	9,618	5,997	7,828	1,933	1,431	2,346	5,529	618,047

주: 비해당 3,854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직장생활에서 승진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90.5%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5.8%)’,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3.3%)’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경우는 0.4%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

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6.3%)’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3.7%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청각장애(5.9%)와 지체장애(5.2%)만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하였다.

〈표 6-9-4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직장생활-승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6.1	-	7.2	3.8	-	-	-	10.3	48.5	-	-	-	-	-	-	5.8
참는다	88.7	100.0	92.8	90.3	100.0	100.0	100.0	89.7	51.5	100.0	100.0	-	-	100.0	100.0	90.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4.5	-	-	5.9	-	-	-	-	-	-	-	-	-	-	-	3.3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0.7	-	-	-	-	-	-	-	-	-	-	-	-	-	-	0.4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100.0	100.0	100.0
(N)	(150)	(13)	(30)	(33)	(2)	(16)	(1)	(10)	(4)	(3)	(1)	-	-	(1)	(4)	(268)
전국추정수	56,678	4,840	11,809	12,793	778	5,582	421	3,531	1,544	1,117	381	-	-	391	1,471	101,336

주: 비해당 5,189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하는데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5.7%,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4.3%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한 경우는 정신지체 53.2%, 시각장애 38.0%, 간질장애 28.3%로 가장 많았다.

〈표 6-9-45〉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정도: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10.4	17.0	38.0	11.9	-	53.2	-	14.1	-	-	-	-	20.6	-	28.3	14.3
안받았다	89.6	83.0	62.0	88.1	100.0	46.8	-	85.9	100.0	100.0	100.0	100.0	79.4	100.0	71.7	8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642)	(43)	(120)	(98)	(8)	(6)	-	(14)	(12)	(10)	(11)	(3)	(5)	(2)	(4)	(978)
전국추정수	248,257	16,900	47,341	37,863	3,053	2,354	-	5,650	4,741	3,978	4,348	1,152	1,855	832	1,648	379,972

주: 비해당 4,483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운전면허 취득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8.9%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0.7%)’, ‘무시한다(9.0%)’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1.4%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7.9%)’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2.1%의 장애인이 사용하여, 여러 영역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중 적극적 대처방법의 사용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20.4%로 가장 많았다.

〈표 6-9-46〉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자폐)	발달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1.5	-	8.1	9.5	-	-	-	-	-	-	-	-	-	-	9.0
참는다	68.1	100.0	87.2	82.4	-	100.0	-	100.0	-	-	-	100.0	-	100.0	78.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7.6	-	4.7	8.1	-	-	-	-	-	-	-	-	-	-	10.7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2.8	-	-	-	-	-	-	-	-	-	-	-	-	-	1.4
기타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	-	-	100.0	-	100.0	100.0
(N)	(68)	(7)	(46)	(12)	-	(2)	-	(2)	-	-	-	(1)	-	(1)	(139)
전국추정수	25,936	2,878	17,977	4,492	-	857	-	798	-	-	-	382	-	466	53,786

주: 비해당 5,321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장애인이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60.2%,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39.8%로, 여러 영역의 차별 정도 중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와 언어장애의 경우가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각각 80.4%와 76.4%로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신장장애(76.9%), 간장애(60.4%), 장루·요루장애(59.7%) 등 내부장애인들이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받은 경우가 많았다.

〈표 6-9-47〉 사회적 차별 정도: 보험제도상(계약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36.8	50.0	30.8	39.1	23.6	54.1	32.2	57.3	76.9	59.1	39.5	60.4	19.6	59.7	53.8	39.8
안받았다	63.2	50.0	69.2	60.9	76.4	45.9	67.8	42.7	23.1	40.9	60.5	39.6	80.4	40.3	46.2	6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984)	(127)	(210)	(124)	(17)	(69)	(21)	(33)	(37)	(37)	(22)	(10)	(5)	(7)	(15)	(1,718)
전국추정수	378,977	49,806	81,947	46,971	6,506	26,626	8,337	12,980	14,030	14,236	8,468	3,820	1,952	2,775	5,859	663,290

주: 비해당 3,741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보험제도 계약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1.1%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6.7%)’,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10.7%)’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7.8%)’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0.7%의 장애인이 사용하여, 여러 영역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중 적극적 대처방법의 사용 정도가 비교적 낮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24.5%로 가장 많았다.

〈표 6-9-48〉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보험제도상(계약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7.1	19.3	13.7	17.2	25.0	7.7	43.6	21.6	21.0	18.5	11.6	-	-	-	14.4	16.7
참는다	71.3	68.7	75.4	65.7	75.0	78.7	56.4	49.8	69.8	67.4	88.4	82.2	100.0	100.0	72.2	71.1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0.6	12.1	9.7	15.2	-	13.6	-	24.5	6.3	4.5	-	-	-	-	13.4	10.7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1.1	-	1.2	2.0	-	-	-	4.1	2.8	9.6	-	17.8	-	-	-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357)	(63)	(66)	(47)	(4)	(36)	(7)	(19)	(29)	(22)	(9)	(6)	(1)	(4)	(8)	(678)
전국추정수	138,538	24,906	24,851	17,987	1,537	14,003	2,688	7,441	10,788	8,420	3,346	2,307	382	1,657	3,151	262,002

주: 비해당 4,775건 및 무응답 13건 제외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5.8%,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2%였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100.0%가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발달장애가 13.4%로 가장 많았다.

〈표 6-9-49〉 사회적 차별 정도: 의료기관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3.0	4.9	5.0	5.2	1.9	7.9	13.4	8.1	2.8	1.9	2.9	-	-	-	7.7	4.2
안받았다	97.0	95.1	95.0	94.8	98.1	92.1	86.6	91.9	97.2	98.1	97.1	100.0	100.0	100.0	92.3	9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5)	(674)	(565)	(583)	(51)	(283)	(57)	(196)	(106)	(106)	(74)	(35)	(12)	(40)	(38)	(5,385)
전국추정수	984,376	259,696	218,219	223,498	19,827	108,356	22,478	75,477	40,286	40,943	28,592	13,397	4,369	15,466	14,555	2,069,535

주: 비해당 72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의료기관 이용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6.5%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3.4%)’,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9.2%)’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0.9%였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업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89.9%)’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10.1%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사용한 경우가 100.0%로 가장 많았다.

〈표 6-9-50〉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의료기관 이용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장애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16.8	12.2	21.2	5.5	-	16.3	12.1	6.0	-	-	-	-	-	-	-	13.4
참는다	71.0	76.2	75.5	87.7	-	71.6	87.9	87.2	67.1	100.0	100.0	-	-	-	65.6	76.5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10.8	8.5	3.3	6.8	100.0	12.1	-	6.8	32.9	-	-	-	-	-	34.4	9.2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4	3.1	-	-	-	-	-	-	-	-	-	-	-	-	-	0.9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100.0	100.0
(N)	(78)	(33)	(28)	(32)	(1)	(23)	(8)	(16)	(3)	(2)	(2)	-	-	-	(3)	(229)
전국추정수	29,354	12,715	10,919	11,666	377	8,608	3,020	6,099	1,109	783	824	-	-	-	1,122	86,596

주: 비해당 5,230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장애인이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8.9%,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인과 내부장애인들의 100.0%가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청각장애가 4.8%로 가장 많았다.

〈표 6-9-51〉 사회적 차별 정도: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0.3	0.5	2.6	4.8	2.4	0.4	2.5	-	-	-	-	-	-	-	2.7	1.1
안받았다	99.7	99.5	97.4	95.2	97.6	99.6	9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7.3	98.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456)	(597)	(532)	(543)	(46)	(255)	(50)	(174)	(101)	(96)	(66)	(31)	(12)	(38)	(36)	(5,033)
전국추정수	943,524	229,478	205,561	208,989	17,969	97,968	19,689	67,348	38,467	37,002	25,698	11,816	4,369	14,709	13,906	1,936,493

주: 비해당 426건 및 무응답 7건 제외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7.8%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16.6%)’,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5.6%)’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정보통신 이용시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4.4%)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5.6%의 장애인만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31.6%)와 시각장애(7.4%)만이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적극적 인 조치를 사용하였다.

〈표 6-9-52〉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정보통신이용시(방송포함)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	-	22.6	17.9	100.0	-	-	-	-	-	-	-	-	-	-	16.6
참는다	68.4	100.0	70.1	82.1	-	100.0	100.0	-	-	-	-	-	-	-	100.0	77.8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31.6	-	7.4	-	-	-	-	-	-	-	-	-	-	-	-	5.6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	-	-	-	-	100.0	100.0
(N)	(6)	(3)	(14)	(26)	(1)	(1)	(1)	-	-	-	-	-	-	-	(1)	(53)
전국추정수	2,396	1,198	5,310	10,027	424	381	483	-	-	-	-	-	-	-	377	20,596

주: 비해당 5,407건 및 무응답 6건 제외

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이용시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4.6%,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5.4%였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장애와 장루·요루장애인이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았다고 100.0%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안면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가장 많았다.

〈표 6-9-53〉 사회적 차별 정도: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받았다	2.6	7.5	5.9	5.2	6.1	20.0	24.1	13.8	2.7	0.9	2.8	-	21.7	-	10.7	5.4
안받았다	97.4	92.5	94.1	94.8	93.9	80.0	75.9	86.2	97.3	99.1	97.2	100.0	78.3	100.0	89.3	9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22)	(599)	(552)	(576)	(50)	(270)	(57)	(188)	(104)	(104)	(73)	(33)	(12)	(37)	(38)	(5,215)
전국추정수	968,398	230,809	212,916	220,923	19,472	103,548	22,527	72,451	39,479	40,039	28,197	12,604	4,369	14,327	14,555	2,004,614

주: 비해당 241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이용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인들의 경우, 차별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전체 장애인의 73.6%가 ‘참는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대처방법이었고, 다음으로 ‘무시한다(21.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4.6%)’의 순이었다. 그리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참거나 무시(95.5%)’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

한다' 등의 적극적 대처방법은 4.6%의 장애인이 사용하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5.8%)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는 적극적인 조치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다.

〈표 6-9-54〉 사회적 차별 대처방법: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무시한다	20.3	31.0	13.3	15.5	32.7	18.8	6.7	44.4	-	-	50.5	-	-	-	23.1	21.9
참는다	73.9	66.7	82.8	81.3	67.3	76.0	86.4	47.7	100.0	100.0	49.5	-	100.0	-	76.9	73.6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5.8	2.2	3.9	3.2	-	5.2	6.9	7.8	-	-	-	-	-	-	-	4.6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	100.0	100.0
(N)	(68)	(45)	(32)	(32)	(3)	(54)	(14)	(26)	(3)	(1)	(2)	-	(3)	-	(4)	(287)
전국추정수	24,929	17,227	12,568	11,597	1,179	20,730	5,424	10,027	1,071	378	782	-	947	-	1,553	108,412

주: 비해당 5,169건 및 무응답 10건 제외

현재 장애인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들의 35.7%는 '장애인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64.3%의 장애인은 '장애인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본인의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안면장애와 간질장애가 '장애인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많았던 반면, 내부장애(심장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와 지체장애가 '장애인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가 많았다.

〈표 6-9-55〉 장애인 이유로 본인에 대한 차별인지정도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항상 느낀다	6.7	13.7	9.6	8.5	15.8	20.3	17.8	21.5	2.9	5.5	6.5	-	44.4	6.5	20.2	9.6
가끔 느낀다	24.1	29.6	25.2	29.8	42.9	33.5	37.1	29.7	17.8	11.1	14.1	17.3	22.1	17.2	45.7	26.1
별로 느끼지 않음	36.7	34.6	33.9	34.5	23.0	28.7	27.3	28.4	39.2	41.8	44.5	33.3	33.6	44.3	23.2	35.1
전혀 느끼지 않음	32.5	22.1	31.2	27.1	18.3	17.6	17.8	20.4	40.1	41.5	34.9	49.4	-	32.0	10.9	2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2)	(688)	(569)	(592)	(51)	(288)	(59)	(200)	(106)	(107)	(77)	(35)	(12)	(40)	(38)	(5,454)
전국추정수	995,585	264,909	219,551	227,172	19,827	110,209	23,259	76,802	40,286	41,263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6,603

주: 무응답 12건 제외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86.7%,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3.3%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더 많았다. 이는 앞의 장애인 본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낮았던 것과 비교할 때, 사회조직에 의한 장애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가 51.4%, ‘매우 많다’가 35.3%, ‘별로 없다’가 12.9%, ‘전혀 없다’는 0.4%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언어장애와 간질장애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장애와 청각장애가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각각 19.4%와 17.6%로 가장 많았다.

〈표 6-9-5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많다	33.3	36.6	35.5	34.2	39.1	42.6	54.4	41.3	37.1	26.4	40.2	37.7	68.7	25.9	44.3	35.3
많다	53.3	51.1	52.5	48.2	54.9	48.7	38.6	45.3	49.9	54.2	46.5	50.4	24.5	52.5	50.5	51.4
별로 없다	13.2	12.2	11.5	16.3	4.1	8.4	7.0	13.4	13.1	16.8	13.3	11.9	6.8	21.6	5.1	12.9
전혀 없다	0.2	0.1	0.5	1.3	2.0	0.3	-	-	-	2.6	-	-	-	-	-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87)	(687)	(568)	(591)	(51)	(290)	(58)	(201)	(106)	(108)	(77)	(34)	(12)	(40)	(38)	(5,448)
전국추정수	993,609	264,629	219,173	226,810	19,827	110,937	22,864	77,180	40,286	41,684	29,953	13,036	4,369	15,466	14,555	2,094,378

주: 무응답 18건 제외

제 10 절 등록제도 및 복지서비스

1.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알아본 결과²¹⁾,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은 전체의 79.4%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도 실태조사의 71.7%에 비해 소폭 상승한 수치로서,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인지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등록률이 가장 높은 장애는 신장장애로서 전체의 97.2%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지체(92.0%), 발달장애(81.0%), 지체장애(87.0%)도 장애인등록률이 상

21) 장애인등록 현황은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고 있는 장애인등록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당히 높았다. 반면에 심장장애(34.1%), 안면장애(45.6%), 간장애(51.3%), 호흡기장애(51.7%) 등 내부장애의 등록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장애가 비교적 최근에 장애법주에 포함된 데다가, 내부장애의 경우 외부신체기능, 감각 및 정신장애 등 전통적인 장애와 달리 장애인이라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10-1〉 장애인등록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87.0	76.5	78.4	62.2	76.5	92.0	81.0	68.7	97.2	34.1	51.7	51.3	45.6	61.9	54.9	79.4
아니오	10.8	22.5	20.0	36.9	19.6	7.7	17.3	29.7	1.8	64.1	46.8	46.0	37.0	35.7	43.2	18.8
신청중	0.6	0.5	0.2	0.5	3.9	0.3	1.7	1.0	0.0	1.0	0.0	2.7	0.0	0.0	2.0	0.6
보훈처 등록	1.7	0.6	1.5	0.4	0.0	0.0	0.0	0.5	1.0	0.9	1.4	0.0	17.4	2.3	0.0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4)	(691)	(569)	(594)	(51)	(289)	(59)	(201)	(106)	(108)	(77)	(35)	(12)	(40)	(38)	(5,464)
전국추정수	996,346	266,070	219,551	227,849	19,827	110,570	23,259	77,1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100,362

주: 무응답 2건 제외

등록한 장애인들의 등록장애 등급을 살펴보면, 1급이 9.2%, 2급이 16.9%, 3급이 18.5%, 4급이 14.4%, 5급이 19.3%, 6급이 21.7%였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1, 2급 장애인은 전체의 1/4인 수준인 26.1%로, 2000년도의 35.4%에 비해 10% 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장애유형별로는 중증(1~2급) 등록장애 비율은 발달장애(85.1%)와 신장장애(76.4%)가, 중등(3~4급) 등록장애비율은 안면장애(60%), 심장 및 호흡기장애(59%)가, 그리고 경증(5~6급) 등록장애비율은 시각장애(69.4%), 장루·요루장애(61.2%)가 가장 많은 장애유형이다.

〈표 6-10-2〉 등록 장애등급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급	3.4	24.3	14.1	2.2	10.5	24.4	36.4	11.7	5.0	11.1	20.6	0.0	0.0	0.0	4.7	9.2
2급	7.1	29.1	3.7	25.3	25.5	41.1	48.7	49.1	71.4	20.7	15.0	40.2	19.7	3.7	8.6	16.9
3급	15.3	27.2	8.0	17.2	23.7	34.1	10.6	38.5	1.0	59.5	54.8	27.2	19.2	4.0	35.2	18.5
4급	19.6	9.9	4.8	18.6	35.0	0.0	2.1	0.7	1.0	0.0	4.8	0.0	40.8	31.0	51.5	14.4
5급	28.9	6.0	8.8	17.9	0.0	0.0	0.0	0.0	21.7	5.8	4.7	32.5	20.3	61.2	0.0	19.3
6급	25.7	3.5	60.6	18.8	5.3	0.4	2.2	0.0	0.0	2.8	0.0	0.0	0.0	0.0	0.0	21.7
(N)	(2,256)	(530)	(447)	(369)	(39)	(265)	(48)	(138)	(103)	(37)	(40)	(18)	(5)	(25)	(21)	(4,341)
전국추정수	865,956	203,593	172,044	141,761	15,176	101,732	18,841	53,057	39,157	14,202	15,498	6,869	1,991	9,581	7,987	1,667,445

주: 비례당 1,122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장애인등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1988년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재가장애인의 장애인등록 시기를 1988~1989년, 1990~1995년, 1996~2000년, 2000~2005년 등 네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1989년에는 전체의 5.7%만이 등록을 하였으며, 1990~1995년에는 전체의 9.0%, 1996~2000년에는 전체의 33.0%, 그리고 2000~2005년에는 전체의 52.2%의 장애인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의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각종 혜택에 대한 인지 제고, 장애범주의 지속적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의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는 시기가 지날수록 장애등록 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범주 확대시기와도 연관되고 있다. 즉, 1988년의 장애등록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체장애, 정신지체 중심으로 장애등록 정도가 높았는데, 2000년에는 10개로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 신규로 확대된 해당 장애범주의 장애유형의 등록정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2001년 이후 2005년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장애등록 정도가 높아졌는데, 특히 2005년 신규 확대된 장애유형에서의 장애등록정도가 다른 장애유형에서의 경우보다 매우 높았다.

〈표 6-10-3〉 장애등록 시기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1988년~1989년	6.7	2.9	3.8	8.3	7.3	8.7	-	1.6	2.9	-	2.3	5.8	-	-	4.7	5.7
1990년~1995년	11.4	4.9	6.2	7.9	12.6	14.0	4.4	4.5	0.8	-	5.1	-	-	-	-	9.0
1996년~2000년	34.7	31.4	32.4	26.7	29.2	36.0	50.4	33.8	40.9	35.5	2.3	11.3	20.3	-	14.1	33.0
2001년~2005년	47.2	60.8	57.6	57.1	50.9	41.3	45.2	60.1	55.4	64.5	90.4	82.9	79.7	100.0	81.2	5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50)	(528)	(446)	(368)	(39)	(263)	(48)	(137)	(103)	(37)	(40)	(18)	(5)	(25)	(21)	(4,328)
전국추정수	863,783	202,779	171,687	141,354	15,176	101,011	18,841	52,693	39,157	14,202	15,498	6,869	1,991	9,581	7,987	1,662,609

주: 1) 비 해당 1,122건 및 무응답 16건 제외

2) 음영 부분은 주된 장애의 장애범주 확대 이전에 등록을 한 비율로서,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중 주된 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로 등록을 한 최초 시기를 표기한 데 따른 수치임.

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받은 혜택의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인도 26.2%로, 혜택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69.3%로 전체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약간 받고 있다’는 응답이 28.7%가 있었으며, ‘매우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장애유형별로는 간질장애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불만이 많

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장장애와 시각장애, 청각장애는 각각 55.4%, 48.5%, 47.0%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반면에 비교적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장애유형은 신장장애로 8.0%가 ‘매우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정신장애(7.6%)도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표 6-10-4〉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매우 많이 받음	1.4	2.1	1.1	1.9	0.0	3.5	0.0	7.6	8.0	2.3	0.0	0.0	0.0	4.0	5.3	2.0
약간 받고 있음	28.4	30.1	25.7	24.3	29.0	32.9	33.0	34.6	41.2	20.6	33.9	24.6	38.9	29.3	18.3	28.7
별로 받지 못함	27.0	25.5	24.7	26.9	39.2	26.4	23.7	21.3	22.3	21.7	20.7	36.5	20.7	23.2	19.8	26.2
거의 받지 못함	43.3	42.4	48.5	47.0	31.8	37.1	43.4	36.4	28.6	55.4	45.4	39.0	40.3	43.4	56.7	4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256)	(529)	(447)	(368)	(39)	(265)	(47)	(138)	(103)	(37)	(40)	(18)	(5)	(25)	(21)	(4,338)
전국추정수	866,076	203,264	172,044	141,425	15,176	101,732	18,446	53,057	39,157	14,202	15,498	6,869	1,991	9,581	7,987	1,666,505

주: 비해당 1,123건 및 무응답 5건 제외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32.9%가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000년도 실태조사와 동일한 결과로서 장애인등록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도 28.4%로 상당히 많았다. 이도 또한 일부 장애인의 범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장애인도 13.5%였으며, 7.8%는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등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신장장애(100.0%)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인 경우는 안면장애(59.7%), 간장애(44.1%), 청각장애(44.0%)가 가장 많았다. 그외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인 경우는 간질장애(33.6%)가 가장 많았다.

〈표 6-10-5〉 장애등록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4.3	46.3	27.7	25.4	18.6	18.0	0.0	28.8	100.0	30.0	48.2	43.2	22.9	65.4	18.1	32.9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13.6	12.5	19.9	14.4	29.3	18.3	19.5	6.8	0.0	8.5	5.7	6.4	0.0	11.4	18.7	13.5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1.5	0.7	0.9	1.4	10.3	4.7	0.0	1.7	0.0	1.7	2.7	0.0	0.0	0.0	6.5	1.5
등록과정에서 번거로워서	7.5	7.6	3.6	2.7	0.0	17.8	0.0	0.0	0.0	8.8	8.2	0.0	0.0	0.0	5.8	5.5
장애인이라고 생각 하지 않아서	27.1	19.8	31.4	44.0	9.4	4.3	10.6	12.6	0.0	28.9	24.4	44.1	59.7	16.3	11.8	28.4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5.7	4.5	10.0	5.1	0.0	23.4	31.7	28.4	0.0	3.3	2.5	6.3	0.0	0.0	33.6	7.8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2.8	2.4	3.6	5.1	20.0	3.7	0.0	1.3	0.0	4.0	2.8	0.0	0.0	6.9	0.0	3.4
앞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	1.1	1.9	0.0	0.4	12.4	0.0	38.2	12.0	0.0	4.7	0.0	0.0	0.0	0.0	0.0	2.2
기타	6.4	4.3	3.0	1.4	0.0	9.8	0.0	8.4	0.0	10.1	5.5	0.0	17.4	0.0	5.5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79)	(154)	(112)	(220)	(10)	(22)	(10)	(59)	(2)	(69)	(36)	(16)	(5)	(14)	(16)	(1,024)
전국추정수	107,398	59,755	43,805	84,102	3,886	8,120	4,022	22,539	745	26,707	14,027	6,160	1,617	5,523	6,284	394,690

주: 비해당 4,487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2.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 경험 및 만족도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소득보장 사업, 의료보장 사업,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 각종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수혜자가 가장 많은 장애수당 지급에 대한 인지도가 44.2%로서 타 소득보장 사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16.8%), 장애인자립자금 대여(14.1%),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12.2%)은 비슷한 인지도를 나타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은 타 소득보장 사업에 비해 가장 늦게 도입이 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유형별 소득보장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등의 정신장애인과 신장장애인, 간질장애인 등의 내부장애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24.9%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16.7%),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15.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의료보장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장장애인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장루·요루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인지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타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79.1%의 장애인이 동 사업을 알고 있었으며, LPG 연료사용 허용과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각각 77.5%, 67.3%의 장애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PG 연료 사용 허용 등의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는 보편적 수급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이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사업의 수혜 대상 장애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제도 내적 요소와 아울러 자동차의 보편화라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유형 별로는 안면장애인, 신장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인지율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타 장애인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인지도가 79.9%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도 77.3%로서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다. 또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인지율은 53.0%, 세금공제 및 면제의 인지율은 46.3%로서 역시 높은 인지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서의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보편적이라는 점과 함께 정보화 추세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점차 활성화 되는데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안면장애인, 신장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의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기타 사업은 주거 지원과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의 경우 전체의 19.3%의 장애인이 동 사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낮은 10.6%의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장

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지체장애인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0-6〉 장애인복지사업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수당지급	44.9	44.3	38.7	34.6	47.1	57.7	58.9	56.9	53.8	36.3	37.9	40.5	43.2	40.2	40.5	44.2
장애아동부양수당	13.5	9.9	11.9	8.3	8.0	13.5	30.5	12.7	15.4	7.0	11.9	5.3	9.5	10.8	20.7	12.2
장애인자녀교육비	17.6	14.7	18.4	11.1	11.3	20.8	31.4	16.4	24.7	10.5	13.5	8.2	27.3	12.9	27.0	16.8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17.4	12.2	11.2	7.6	12.6	12.1	18.0	7.9	22.0	9.2	13.6	8.4	26.6	13.6	13.4	14.1
장애인의료비지원	24.5	25.9	25.0	17.8	15.3	28.9	31.3	31.7	41.6	26.8	24.7	27.7	26.2	18.6	38.5	24.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11.5	10.1	10.6	8.5	6.2	15.9	16.4	12.2	15.5	9.9	7.4	8.7	0.0	7.2	13.1	11.1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18.4	16.6	12.9	13.5	4.6	15.5	19.9	15.1	21.4	15.7	19.8	20.5	18.6	18.9	11.2	16.7
재활보조기구 건강 보험(의료급여)실시	17.0	14.4	12.9	19.3	8.3	13.9	16.0	10.6	22.0	12.4	10.5	11.7	9.1	20.9	8.3	15.8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83.8	77.0	75.8	67.8	81.2	77.7	89.7	70.0	92.0	74.9	67.8	74.5	100.0	65.3	74.5	79.1
LPG 연료 사용 허용	83.4	74.0	74.9	64.1	77.1	76.9	91.2	62.9	90.4	70.4	67.9	77.7	93.5	62.1	60.7	77.5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72.6	65.0	62.8	55.1	50.9	70.7	87.6	54.2	86.8	64.0	51.3	68.3	85.0	54.8	39.1	67.3
세금공제 및 면제	49.5	45.3	44.6	37.3	28.5	50.7	76.8	37.9	55.1	43.8	31.9	36.0	68.2	37.2	29.2	46.3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82.6	72.7	75.0	67.3	75.0	76.0	88.9	68.7	89.1	66.4	60.0	66.7	93.5	80.2	58.2	77.3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87.5	73.0	76.4	65.4	77.2	84.3	84.0	70.7	88.7	61.1	63.7	64.1	93.5	70.1	56.9	79.9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59.0	48.6	45.8	44.3	36.3	56.2	77.1	38.9	61.4	48.7	32.6	42.6	59.3	54.7	43.8	53.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21.6	17.2	17.7	12.0	14.1	20.0	27.7	19.6	22.1	17.3	20.0	28.0	32.8	17.3	18.9	19.3
장애인본인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9.0	8.7	9.3	8.6	4.0	31.1	67.1	7.3	11.1	5.0	9.1	4.6	0.0	13.2	1.9	10.6

주: 중복응답비율임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사업 수혜 경험 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의 인지도 순위와 마찬가지로 장애수당 수혜 경험 이 전체의 29.0%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자녀교육비 지급(16.6%), 장애인자립자 금 대여(4.5%),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장애 인 자립대금의 경우 전체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경험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제도의 수혜 요건이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장애유형별 소득보 장 사업에 대한 수혜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정신지체장애인 및 간질장애인의 이용 경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사업에 대한 경험률이 33.5%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23.8%),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19.2%),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15.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의료보장 사업에 대한 경험률을 살펴보면, 언어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의 인지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등 타 복지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의 경우에는 45.0%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LPG 연료사용 허용과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의 경우에도 각각 33.1%, 30.7%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의 경험률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의 특성상 보행 및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장애인이 외출 및 사회활동의 수단으로 차량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의 경우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사업에 비해 사업에 대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우 경험률이 78.9%로서 모든 장애인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경험률을 기록했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도 60.8%로서 높은 경험률을 나타냈다. 또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및 할인의 경험률은 42.8%, 세금공제 및 면제의 경험률은 36.9%로서 역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 중에서는 신장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기타 사업 중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의 경우 전체의 17.3%의 장애인이 동 사업의 수혜를 경험하였으며,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의 경우에는 전체의 23.8%의 장애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지체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0-7〉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수당지급	24.1	33.1	30.4	20.7	27.2	46.7	22.1	61.9	44.2	10.0	13.7	12.1	20.3	6.4	51.3	29.0
장애아동부양수당	2.3	5.7	0.0	0.0	0.0	15.3	15.7	5.0	6.4	0.0	0.0	0.0	0.0	0.0	0.0	3.4
장애인자녀교육비	14.6	14.6	17.6	16.1	43.9	28.3	15.2	21.8	22.3	17.2	8.7	0.0	0.0	0.0	32.4	16.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5.6	3.7	1.6	2.5	0.0	2.7	9.1	0.0	0.0	10.5	0.0	0.0	0.0	0.0	23.9	4.5
장애인의료비지원	19.6	28.3	21.3	24.1	46.2	32.7	19.9	37.8	49.3	17.2	4.7	27.3	0.0	13.8	20.2	23.8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29.2	36.9	36.9	32.7	68.3	47.3	20.1	61.9	33.7	26.9	16.4	0.0	-	0.0	18.5	33.5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14.2	28.7	15.3	21.3	0.0	4.6	0.0	3.4	12.4	0.0	12.0	43.5	0.0	0.0	0.0	15.4
재활보조기구 건강 보험(의료급여)실시	17.9	15.6	12.9	45.3	23.6	14.3	0.0	4.1	7.7	0.0	0.0	0.0	0.0	0.0	32.9	19.2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51.6	43.2	37.3	35.6	39.6	42.2	71.9	16.0	50.0	27.5	30.2	41.7	36.5	28.4	21.2	45.0
LPG 연료 사용 허용	36.6	36.3	24.6	27.5	28.9	33.1	52.6	14.1	39.1	22.7	17.6	38.3	9.9	15.7	21.3	33.1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27.4	44.2	20.8	29.0	36.0	46.5	68.1	22.8	39.7	25.8	33.0	27.0	21.0	4.7	34.3	30.7
세금공제 및 면제	35.1	46.2	30.7	36.3	26.7	48.5	71.2	30.4	36.8	31.5	32.3	13.6	52.5	0.0	11.0	36.9
교통관련요금감면및 할인	66.1	52.3	62.9	53.8	49.0	52.4	68.1	49.8	76.6	41.2	49.1	52.4	48.7	51.1	28.6	60.8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82.8	78.7	81.0	70.1	77.3	75.8	77.0	63.1	82.4	53.9	70.9	58.9	58.0	71.7	50.9	78.9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46.6	34.1	41.3	41.7	32.5	41.0	55.6	25.5	54.2	32.5	28.5	48.3	29.4	28.4	5.9	42.8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17.6	15.7	14.3	15.1	13.0	25.2	5.7	29.5	26.3	5.4	13.2	10.6	26.4	14.5	0.0	17.3
장애인본인의 무상· 의무교육 실시	2.2	15.4	15.1	19.6	48.2	81.1	77.4	0.0	0.0	0.0	0.0	0.0	-	0.0	0.0	23.8

주: 중복응답비율임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수혜를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각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보다 그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먼저 소득보장 사업의 경우 사업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82.8%로서 전체 소득보장 사업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79.6%, 장애수당 54.5%, 장애아동부양수당 4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보장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85.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81.9%,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 81.7%,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7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90.0%로 가장 높았으며, LPG 연료사용 허용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7.9%, 79.7%로 나타났다.

넷째,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 역시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수준의 만족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86.8%였으며,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의 동 비율은 85.0%로 나타났다. 이어서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이 82.5%, 세금공제 및 면제가 80.1%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섯째, 기타 사업 중 주택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90.0%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8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영역별 대표 사업의 장애유형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우선 소득보장사업의 장애수당의 경우 안면장애(100%), 언어장애(84.4%)의 만족정도(만족과 매우만족)가 가장 높았고, 의료보장사업의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 실시의 경우에는 언어장애(100%), 정신장애(100%), 간질장애(100%)의 만족 정도가 가장 높았다.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사업의 LPG 연료사용 허용의 경우 언어장애(100%), 정신장애(100%), 안면장애(100%)의 만족정도가, 그리고 각종 세금 및 요금감면 사업에서는 신장장애(96.4%), 호흡기장애(87.2%)의 세금 공제 및 면제에 대한 만족 정도가 가장 높았다.

〈표 6-10-8〉 장애인복지사업 이용경험자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장애수당	15.6	36.2	34.4	13.8	13.4	42.9	30.0	13.6	12.9	39.8	26.9	20.5	9.6	37.5	41.8	11.1
장애아동부양수당	0.0	25.0	63.8	11.3	25.6	23.0	51.4	0.0	-	-	-	-	-	-	-	-
장애인자녀교육비	44.8	36.5	14.0	4.7	52.2	33.3	14.5	0.0	42.4	41.8	10.7	5.1	17.8	73.3	0.0	8.9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31.6	48.7	11.4	8.3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장애인의료비지원	41.5	43.4	13.7	1.4	33.3	45.4	15.2	6.1	38.2	44.1	11.8	5.9	31.2	34.1	20.4	14.2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37.1	46.2	13.2	3.6	49.4	43.3	7.3	0.0	39.2	45.0	15.8	0.0	48.5	43.4	5.4	5.8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43.4	43.7	12.9	0.0	39.5	24.2	24.9	11.1	43.3	48.2	0.0	8.5	38.0	23.0	6.0	33.0
재활보조기구 건강 보험(의료급여)실시	32.2	52.6	10.1	5.1	17.4	57.4	25.2	0.0	30.9	36.7	21.6	10.9	43.3	36.1	10.5	10.1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27.8	53.7	14.1	4.4	31.3	54.6	9.7	4.5	23.5	54.8	14.6	7.1	29.4	44.4	17.5	8.7
LPG 연료 사용 허용	29.6	56.8	10.5	3.1	33.5	56.9	7.9	1.7	33.3	57.4	7.5	1.8	45.3	45.8	7.9	1.0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35.9	52.2	9.0	2.8	38.9	52.0	7.5	1.7	39.2	45.7	13.7	1.4	40.7	53.1	5.1	1.1
세금공제 및 면제	25.0	53.7	18.1	3.2	25.7	57.5	12.5	4.3	24.9	53.1	17.0	5.0	32.0	52.4	12.9	2.6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33.6	54.0	10.7	1.8	32.1	51.8	12.6	3.5	34.5	49.9	13.8	1.9	35.6	51.1	10.6	2.8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25.2	57.2	15.7	1.9	23.7	58.8	14.7	2.7	25.6	54.1	18.4	1.9	30.5	53.9	12.0	3.6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31.4	54.6	11.5	2.6	34.8	51.0	13.2	1.1	34.1	49.3	14.2	2.3	36.8	48.0	12.4	2.8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46.3	40.9	8.9	3.9	68.9	26.1	5.0	0.0	40.0	46.8	6.6	6.6	59.2	40.8	0.0	0.0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41.5	39.9	18.6	0.0	66.4	0.0	33.6	0.0	68.7	31.3	0.0	0.0	26.4	53.7	19.9	0.0

주: 중복응답비율임

〈표 6-10-8〉 계속

(단위: %, 명)

구분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자폐)				정신장애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장애수당	10.5	73.9	0.0	15.6	21.0	43.8	29.9	5.2	38.8	13.1	26.8	22.1	16.6	37.6	27.7	18.7
장애아동부양수당	-	-	-	-	16.6	16.6	66.7	0.0	0.0	37.6	35.5	26.9	0.0	100.0	0.0	0.0
장애인자녀교육비	63.2	36.8	0.0	0.0	28.4	40.9	23.7	7.0	35.5	37.6	0.0	26.9	9.8	76.7	13.6	0.0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	-	100.0	0.0	0.0	0.0	0.0	100.0	0.0	0.0	-	-	-	-
장애인의료비지원	46.0	54.0	0.0	0.0	27.0	56.2	10.4	6.4	50.4	28.9	0.0	20.7	48.5	50.1	4.4	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54.0	46.0	0.0	0.0	32.1	59.0	4.8	4.1	0.0	0.0	0.0	100.0	52.0	25.7	15.0	7.4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	-	-	54.1	0.0	45.9	0.0	-	-	-	-	0.0	100.0	0.0	0.0
재활보조기구 건강 보험(의료급여) 실시	100.0	0.0	0.0	0.0	69.8	30.2	0.0	0.0	-	-	-	-	0.0	100.0	0.0	0.0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25.6	50.3	24.2	0.0	18.9	50.3	23.6	7.2	21.2	50.4	17.8	10.6	29.6	43.1	27.4	0.0
LPG 연료 사용 허용	63.3	36.7	0.0	0.0	26.8	60.8	11.2	1.3	29.9	53.2	13.9	3.0	19.8	80.2	0.0	0.0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44.7	43.9	11.3	0.0	38.4	54.0	6.6	1.0	34.0	57.8	5.8	2.4	30.1	69.9	0.0	0.0
세금공제 및 면제	24.8	23.5	27.3	24.4	24.2	59.8	15.9	0.0	24.1	53.5	13.7	8.7	28.5	35.1	36.4	0.0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44.8	49.6	5.7	0.0	41.6	47.2	11.2	0.0	32.8	53.8	8.0	5.4	34.9	55.5	6.7	2.9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33.7	56.1	7.1	3.1	31.4	52.4	16.2	0.0	24.4	58.9	16.7	0.0	23.9	58.9	14.9	2.2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68.0	32.0	0.0	0.0	28.9	50.5	15.0	5.5	20.8	47.3	27.9	4.0	53.8	46.2	0.0	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100.0	0.0	0.0	0.0	46.3	53.7	0.0	0.0	0.0	0.0	0.0	100.0	68.7	25.2	0.0	6.1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100.0	0.0	0.0	0.0	39.7	43.1	13.6	3.5	32.5	47.8	13.2	6.4	-	-	-	-

주: 중복응답비율임.

〈표 6-10-8〉 계속

(단위: %, 명)

구분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장애수당	16.3	37.5	35.4	10.7	0.0	50.4	49.6	0.0	0.0	74.5	25.5	0.6	0.0	60.3	0.0	39.7
장애아동부양수당	100.0	0.0	0.0	0.0	-	-	-	-	-	-	-	-	-	-	-	-
장애인자녀교육비	87.7	0.0	12.3	0.0	51.7	48.3	0.0	0.0	0.0	100.0	0.0	0.0	-	-	-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	-	0.0	0.0	0.0	100.0	-	-	-	-	-	-	-	-
장애인의료비지원	45.5	50.1	4.4	0.0	18.8	62.7	18.5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51.8	48.2	0.0	0.0	32.4	67.6	0.0	0.0	100.0	0.0	0.0	0.0	-	-	-	-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0.0	35.3	27.8	36.8	-	-	-	-	50.9	49.1	0.0	0.0	0.0	33.2	34.4	32.3
재활보조기구 건강 보험(의료급여)실시	0.0	55.5	44.5	0.0	-	-	-	-	-	-	-	-	-	-	-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28.8	57.0	8.0	6.1	9.2	63.0	23.0	4.7	43.3	31.0	13.5	12.1	9.3	45.5	36.4	8.8
LPG 연료 사용 허용	24.6	65.0	10.4	0.0	30.9	63.0	6.1	0.0	43.6	44.4	12.0	0.0	30.2	51.8	17.9	0.0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41.5	56.3	2.2	0.0	27.9	72.1	0.0	0.0	38.5	53.4	8.2	0.0	46.6	34.9	18.5	0.0
세금공제 및 면제	36.4	59.9	3.6	0.0	33.1	53.7	13.2	0.0	25.4	61.8	0.0	12.8	58.5	0.0	41.5	0.0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34.0	58.4	5.8	1.8	29.9	32.0	26.9	11.3	21.9	64.3	13.8	0.0	42.6	43.3	14.1	0.0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31.8	50.7	10.6	6.8	24.9	46.6	28.6	0.0	26.4	67.4	6.2	0.0	37.5	45.9	16.7	0.0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33.1	50.0	10.6	6.3	29.2	46.0	24.8	0.0	14.5	68.2	0.0	17.4	27.9	49.8	22.3	0.0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51.0	32.0	0.0	16.9	0.0	100.0	0.0	0.0	50.0	50.0	0.0	0.0	0.0	100.0	0.0	0.0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	-	-	-	-	-	-	-	-	-	-	-	-	-	-	-

주: 중복응답비율임.

〈표 6-10-8〉 계속

(단위: %, 명)

구분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장애수당	0.0	100.0	0.0	0.0	0.0	0.0	100.0	0.0	25.6	38.7	12.1	23.6	15.4	39.1	31.7	13.8
장애아동부양수당	-	-	-	-	-	-	-	-	-	-	-	-	13.2	27.1	52.5	7.3
장애인자녀교육비	-	-	-	-	-	-	-	-	27.7	72.3	0.0	0.0	41.1	41.7	12.6	4.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	-	-	-	-	-	0.0	100.0	0.0	0.0	37.9	41.7	8.3	12.1
장애인의료비지원	-	-	-	-	100.0	0.0	0.0	0.0	0.0	0.0	65.1	34.9	37.8	44.1	13.5	4.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	-	-	-	-	-	-	0.0	100.0	0.0	0.0	40.4	45.2	10.4	4.0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	-	-	-	-	-	-	-	-	-	-	-	39.9	36.4	14.8	8.9
재활보조기구 건강보험(의료급여)실시	-	-	-	-	-	-	-	-	100.0	0.0	0.0	0.0	35.8	45.9	12.2	6.2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25.9	49.1	25.0	0.0	13.9	12.8	46.0	27.3	14.9	49.1	36.0	0.0	27.1	52.6	14.9	5.3
LPG 연료 사용 허용	0.0	100.0	0.0	0.0	75.7	24.3	0.0	0.0	18.3	37.7	24.8	19.2	31.6	56.3	9.7	2.4
승용자동차관련 세금 면제	0.0	100.0	0.0	0.0	0.0	0.0	100.0	0.0	18.5	59.9	21.6	0.0	37.1	52.9	8.1	1.9
세금공제 및 면제	0.0	74.2	25.8	0.0	-	-	-	-	0.0	0.0	0.0	100.0	26.0	54.1	16.4	3.5
교통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20.8	58.9	0.0	20.3	30.2	63.7	6.0	0.0	32.3	48.4	19.3	0.0	34.0	52.8	11.1	2.1
통신관련요금감면 및 할인	0.0	83.0	17.0	0.0	19.6	66.3	14.1	0.0	19.4	50.8	29.8	0.0	26.0	56.5	15.5	2.1
공공시설이용요금 감면 및 할인	50.2	49.8	0.0	0.0	34.2	65.8	0.0	0.0	0.0	100.0	0.0	0.0	32.5	52.5	12.3	2.7
주택관련 분양알선 및 가산점 부여	100.0	0.0	0.0	0.0	100.0	0.0	0.0	0.0	-	-	-	-	50.5	39.5	5.9	4.1
장애인본인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	-	-	-	-	-	-	-	-	-	-	-	41.1	41.0	14.6	3.3

주: 중복응답비율임.

3.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인지, 경험, 만족도 및 이용 희망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용한 경험은 있는지, 이용하면서 만족스러웠는지,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장애인복지기관 인지도와 관련하여, 전체 22개 장애인복지기관의 평균 인지도는 28.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장애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70.2%가 알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특수학교(특수학급)는 63.2%의 장애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0년도 조사와는 순위가 바뀐 것으로 1990년 중반 이후 매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

표적인 장애인복지관련 실시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어서 재활병·의원에 대한 인지도가 45.1%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요양시설 38.6%, 이동지원 서비스센터 38.4%의 인지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동지원서비스센터는 다른 장애인복지기관에 비해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면에서 역사가 오래된 타 기관들을 압도하고 있어 비교적 빠르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장애인계의 운동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및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3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31.2%), 장애인생활시설(31.1%), 수화통역센터(30.0%) 등의 기관이 비교적 장애인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10.9%), 그룹홈(11.5%), 주간·단기보호시설(12.2%) 등의 기관은 장애인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복지기관의 평균 인지도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인지도가 47.4%로서 가장 높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장애인복지사업에 갖고 있는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장애인(35.1%), 안면장애인(32.0%), 신장장애인(31.1%), 정신지체인(30.9%)과 지체장애인(30.4%) 인지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에 장루·요루장애인(20.1%), 언어장애인(21.9%), 청각장애인(22.1%), 심장장애인(22.3%) 등은 상대적으로 타 장애유형 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이들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0-9〉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관	74.6	66.0	66.6	58.4	74.5	74.6	91.7	63.3	73.0	61.7	62.5	72.1	85.0	60.6	77.3	70.2
장애인생활시설	32.7	28.1	27.7	27.6	24.3	40.2	46.0	27.9	34.1	26.9	24.9	46.6	24.7	25.8	21.3	31.1
중증장애인요양시설	41.0	39.8	33.6	30.7	31.4	40.6	62.5	39.6	39.8	32.0	36.0	41.0	24.2	38.7	27.9	38.6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9.5	14.7	17.2	14.2	12.1	21.2	36.2	18.4	21.9	11.4	15.4	23.0	17.2	10.2	11.6	18.0
사회복지시설	20.5	14.4	20.0	12.6	12.2	21.5	25.5	22.9	14.4	12.4	20.6	32.3	0.0	5.5	24.0	18.6
그룹홈	12.0	9.6	8.8	6.7	6.5	24.2	52.4	11.0	10.6	10.3	3.4	20.1	17.8	2.9	0.0	11.5
주간·단기보호시설	11.5	13.5	10.7	9.3	10.3	20.7	47.4	11.9	10.0	7.9	6.4	27.1	9.1	7.4	15.5	12.2
재활병·의원	49.9	45.3	39.1	36.4	33.5	36.8	54.0	37.7	41.3	49.6	36.1	66.3	51.6	43.0	39.3	4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4.8	24.1	25.8	23.1	34.6	37.6	62.3	30.2	25.2	24.8	31.7	49.2	35.3	28.8	35.3	31.2
장애인전용체육관	18.7	13.5	17.5	12.9	4.3	20.8	25.4	14.9	19.6	15.1	14.5	26.7	26.4	7.4	15.7	17.0
특수학교·특수학급	66.5	55.6	60.9	54.4	54.0	72.3	98.2	61.5	66.6	58.5	61.1	65.8	93.2	52.3	58.4	63.2
특수교육지원센터	21.5	16.2	18.4	17.3	12.3	22.6	39.4	14.3	19.6	17.9	13.0	19.9	14.9	15.9	18.4	19.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2.0	10.8	10.6	8.4	8.4	12.6	12.6	7.9	10.9	4.7	10.4	14.2	0.0	8.3	5.1	10.9
점자도서관	30.3	24.6	31.5	22.2	10.1	26.2	46.4	23.3	36.5	20.3	26.3	35.7	41.7	10.7	35.2	28.2
수화통역센터	32.7	25.8	29.4	28.8	23.5	25.4	41.6	24.0	36.2	21.1	28.2	37.8	14.9	15.4	24.8	30.0
심부름센터	24.6	20.0	26.0	15.1	15.8	23.2	31.5	17.7	25.1	16.7	15.6	24.0	17.4	13.1	18.0	22.4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2.8	37.1	35.8	26.8	35.0	38.1	58.6	26.9	49.0	30.9	34.3	40.2	18.2	28.3	24.7	38.4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7.7	13.4	17.0	11.3	11.8	18.4	31.6	12.3	22.8	9.4	9.1	15.8	23.7	10.5	18.5	16.1
장애아동보육시설	27.8	21.4	23.4	17.3	16.1	31.9	53.5	18.7	28.8	15.6	27.6	35.6	50.2	10.8	20.7	25.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7.9	27.6	28.5	24.0	26.4	37.7	54.9	25.9	42.9	20.1	23.1	32.5	52.8	21.8	31.2	33.1
교통안전공단	20.5	16.9	18.8	14.8	14.0	13.0	29.3	12.0	31.9	10.2	15.2	20.9	33.4	8.2	7.9	18.4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9.9	14.7	19.4	13.4	9.9	20.2	42.6	12.8	24.7	12.4	10.3	24.2	52.8	15.7	13.5	18.2

주: 중복응답비율임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이용률은 3.4%로서 인지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앞서의 인지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전체의 13.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재활병·의원과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이 각각 7.9%, 7.2%의 이용률을 보여주었다. 장애인복지관과 재활병·의원이 이용률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한 것은 이들 두 기관이 주로 장애인의 의료재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료재활에 대한 장애인의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취업과 교육부문의 대표적인 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특수학교(특수학급)의 이용률은 각각 6.7%, 5.9%로 나타났다. 순위면에서는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취업과 교육이 장애인의 자립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두 기관의 이용률이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는 여러 모로 아쉬움을 주는 결과이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0.2%), 장애영유아생활시설(0.4%), 중증장애인요양시설(0.7%), 점자도서관(0.9%), 수화통역센터(1.0%) 등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들 시설이 주로 특정 계층(저소득층) 및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복지기관의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앞서의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이용률이 12.3%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이용률이 9.6%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장애인복지기관인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들 장애인의 이용률은 발달장애인 62.3%, 정신지체장애인 36.2%로서 타 장애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발달장애인 및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안면장애(0.0%), 장루·요루장애(0.0%), 간장애(0.5%), 호흡기장애(1.8%), 간질장애(1.3%) 등 2000년 이후 장애범주에 포함된 내부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이용률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내부장애인의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기관의 설치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0-10〉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관	10.7	15.2	11.0	11.9	17.8	36.2	62.3	18.4	8.9	10.1	7.8	0.0	0.0	0.0	14.8	13.7
장애인생활시설	1.5	0.5	2.5	0.0	0.0	5.1	2.5	5.0	2.9	0.0	4.2	0.0	0.0	0.0	0.0	1.7
중증장애인요양시설	0.5	1.2	0.0	0.0	0.0	1.9	1.8	3.6	0.0	0.0	0.0	0.0	0.0	0.0	0.0	0.7
장애영유아생활시설	0.2	0.0	0.0	1.2	0.0	1.8	3.2	0.0	0.0	0.0	0.0	0.0	0.0	0.0	0.0	0.4
사회복지시설	0.2	0.0	0.0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그룹홈	0.6	0.0	0.0	0.0	0.0	4.0	0.0	0.0	0.0	0.0	0.0	0.0	0.0	0.0	-	0.8
주간·단기보호시설	1.1	4.5	0.0	3.6	0.0	17.1	13.4	0.0	0.0	0.0	0.0	0.0	0.0	0.0	0.0	3.5
재활병·의원	9.5	12.5	3.1	3.9	0.0	7.9	2.9	5.5	2.4	3.6	0.0	9.8	0.0	0.0	0.0	7.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	2.5	4.2	1.2	11.3	10.0	8.0	8.5	3.9	0.0	0.0	0.0	0.0	0.0	0.0	2.7
장애인전용체육관	3.5	6.5	3.0	3.9	0.0	10.0	32.3	0.0	0.0	0.0	0.0	0.0	0.0	0.0	0.0	4.3
특수학교·특수학급	0.7	2.8	3.6	5.3	6.7	51.4	67.0	0.7	0.0	0.0	0.0	0.0	0.0	0.0	3.2	5.9
특수교육지원센터	0.5	0.0	0.9	3.9	0.0	24.9	30.7	0.0	0.0	0.0	0.0	0.0	0.0	0.0	0.0	2.9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2.8	0.0	0.0	0.0	0.0	3.0	0.0	0.0	9.0	0.0	0.0	0.0	-	0.0	0.0	1.8

〈표 6-10-10〉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점자도서관	0.1	0.0	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
수화통역센터	0.0	0.0	1.2	7.0	15.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
심부름센터	0.5	1.4	4.1	0.0	0.0	1.2	0.0	2.9	3.6	0.0	0.0	0.0	0.0	0.0	0.0	1.1
이동지원서비스센터	2.5	7.0	5.9	0.0	0.0	1.0	16.9	1.7	13.2	3.2	0.0	0.0	0.0	0.0	0.0	3.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8.0	6.2	10.5	4.6	0.0	6.3	0.0	4.3	12.8	0.0	0.0	0.0	0.0	0.0	0.0	7.2
장애아동보육시설	0.3	2.7	0.7	3.1	0.0	13.5	14.8	2.5	0.0	0.0	0.0	0.0	0.0	0.0	0.0	2.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7.2	4.7	6.0	3.4	8.9	11.7	6.3	5.7	6.3	13.9	5.0	0.0	0.0	0.0	10.3	6.7
교통안전공단	3.4	1.8	0.6	4.5	0.0	0.0	0.0	0.0	0.0	8.6	0.0	0.0	0.0	0.0	0.0	2.5
장애인자립지원센터	3.1	2.0	1.8	1.3	0.0	4.8	8.1	0.0	0.0	0.0	0.0	0.0	0.0	0.0	0.0	2.6

주: 중복응답비율임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장애인복지기관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각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기관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기관보다 많았다.

개별 기관별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은 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사회복지시설 등 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경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47.4%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0%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또한 현재까지는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기관의 운영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곳은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전체의 80.3%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재활병·의원(78.3%), 점자도서관(77.9%), 심부름센터(77.8%), 수화통역센터(75.2%), 이동지원서비스센터(74.1%), 장애인복지관(72.3%),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7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10-11〉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경험자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장애인복지관	20.9	53.0	17.8	8.3	22.7	55.4	17.2	4.7	21.9	56.1	17.2	4.8	27.8	44.5	19.7	7.9
장애인생활시설	39.0	38.9	6.5	15.6	0.0	100.0	0.0	0.0	00.0	24.1	0.0	75.9	15.2	-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0.0	78.4	21.6	0.0	36.8	63.2	0.0	0.0	-	-	-	-	-	-	-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0.0	0.0	0.0	100.0	-	-	-	-	-	-	-	-	0.0	0.0	100.0	0.0
사회복귀시설	0.0	0.0	100.0	0.0	-	-	-	-	-	-	-	-	0.0	0.0	100.0	0.0
그룹홈	47.3	0.0	52.7	0.0	-	-	-	-	-	-	-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0.0	0.0	100.0	0.0	74.2	25.8	0.0	0.0	-	-	-	-	0.0	0.0	100.0	0.0
재활병·의원	33.5	48.3	11.5	6.7	28.1	44.0	27.9	0.0	44.7	55.3	0.0	0.0	38.3	39.0	0.0	22.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9	49.1	17.7	24.3	22.7	25.0	0.0	52.3	16.3	49.5	34.2	0.0	0.0	0.0	100.0	0.0
장애인전용체육관	11.5	46.8	29.4	12.2	33.0	67.0	0.0	0.0	31.8	31.9	36.3	0.0	0.0	30.3	69.7	0.0
특수학교·특수학급	31.7	44.6	23.7	0.0	28.0	43.4	18.8	9.8	42.3	41.8	8.3	7.7	50.2	18.2	19.8	11.8
특수교육지원센터	0.0	33.9	66.1	0.0	-	-	-	-	0.0	100.0	0.0	0.0	23.7	76.3	0.0	0.0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54.1	33.9	12.0	0.0	-	-	-	-	-	-	-	-	-	-	-	-
점자도서관	100.0	0.0	0.0	0.0	-	-	-	-	34.9	41.4	8.7	15.0	-	-	-	-
수화통역센터	-	-	-	-	-	-	-	-	0.0	100.0	0.0	0.0	33.3	33.9	7.9	24.9
심부름센터	33.1	31.6	35.3	0.0	100.0	0.0	0.0	0.0	46.4	20.9	32.7	0.0	-	-	-	-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1.9	42.8	21.6	3.7	36.2	40.5	5.2	18.0	16.0	58.6	16.9	8.4	-	-	-	-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35.2	37.4	21.9	5.5	33.2	31.4	35.4	0.0	21.0	57.6	21.4	0.0	66.3	33.7	0.0	0.0
장애아동보육시설	0.0	47.2	52.8	0.0	0.0	29.5	36.5	34.1	100.0	0.0	0.0	0.0	32.5	67.5	0.0	0.0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1.8	26.7	22.9	38.5	21.9	32.9	11.4	33.7	10.3	42.7	20.2	16.8	22.3	41.5	21.6	14.6
교통안전공단	32.5	27.4	31.1	9.0	52.5	0.0	47.5	0.0	0.0	100.0	0.0	0.0	24.1	23.4	26.6	25.9
장애인자립지원센터	20.0	43.0	6.2	30.9	49.7	50.3	0.0	0.0	47.8	0.0	0.0	52.2	100.0	0.0	0.0	0.0

주: 중복응답비율임.

〈표 6-10-11〉 계속

(단위: %, 명)

구분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자폐)				정신장애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장애인복지관	14.6	69.7	15.7	0.0	30.7	37.6	26.5	5.2	9.1	37.1	40.4	13.5	29.8	55.6	9.3	5.4
장애인생활시설	-	-	-	-	15.2	35.6	49.2	0.0	0.0	0.0	100.0	0.0	67.1	0.0	0.0	32.9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	-	0.0	0.0	50.7	49.3	0.0	0.0	0.0	100.0	32.1	0.0	35.8	32.1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	-	-	0.0	100.0	0.0	0.0	0.0	0.0	0.0	100.0	-	-	-	-
사회복귀시설	-	-	-	-	-	-	-	-	-	-	-	-	-	-	-	-
그룹홈	-	-	-	-	0.0	29.1	0.0	70.9	-	-	-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59.2	10.7	30.1	0.0	25.8	26.0	0.0	0.0	-	-	-	-
재활병·의원	-	-	-	-	11.9	37.3	24.0	26.8	0.0	0.0	100.0	0.0	50.5	22.6	0.0	2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8.6	51.4	0.0	0.0	22.6	35.7	20.9	20.8	34.3	0.0	36.5	29.1	0.0	39.3	40.0	20.7
장애인전용체육관	-	-	-	-	49.0	51.0	0.0	0.0	17.4	20.1	43.1	19.4	-	-	-	-
특수학교·특수학급	0.0	0.0	100.0	0.0	32.8	45.2	15.2	6.9	23.8	39.2	29.4	7.6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11.7	51.3	30.8	6.2	0.0	57.3	27.4	15.3	-	-	-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	-	-	-	0.0	0.0	0.0	100.0	-	-	-	-	-	-	-	-
점자도서관	-	-	-	-	-	-	-	-	-	-	-	-	-	-	-	-
수화통역센터	0.0	100.0	0.0	0.0	-	-	-	-	-	-	-	-	-	-	-	-
심부름센터	-	-	-	-	100.0	0.0	0.0	0.0	-	-	-	-	100.0	0.0	0.0	0.0
이동지원서비스센터	-	-	-	-	100.0	0.0	0.0	0.0	37.0	13.0	17.1	32.9	100.0	0.0	0.0	0.0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	-	-	-	0.0	30.9	0.0	69.1	-	-	-	-	0.0	0.0	100.0	0.0
장애아동보육시설	-	-	-	-	27.9	48.1	15.5	8.6	64.4	0.0	21.0	14.5	0.0	0.0	0.0	100.0
장애인고용촉진공단	0.0	100.0	0.0	0.0	29.3	40.7	22.6	7.4	100.0	0.0	0.0	0.0	35.1	32.3	32.6	0.0
교통안전공단	-	-	-	-	-	-	-	-	-	-	-	-	-	-	-	-
장애인자립지원센터	-	-	-	-	64.9	0.0	35.1	0.0	0.0	100.0	0.0	0.0	-	-	-	-

주: 중복응답비율임.

〈표 6-10-11〉 계속

(단위: %, 명)

구분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장애인복지관	58.5	27.7	13.9	0.0	29.7	70.3	0.0	0.0	27.0	26.9	24.9	21.2	-	-	-	-
장애인생활시설	0.0	100.0	0.0	0.0	-	-	-	-	0.0	0.0	100.0	0.0	-	-	-	-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	-	-	-	-	-	-	-	-	-	-	-	-	-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	-	-	-	-	-	-	-	-	-	-	-	-	-	-
사회복귀시설	-	-	-	-	-	-	-	-	-	-	-	-	-	-	-	-
그룹홈	-	-	-	-	-	-	-	-	-	-	-	-	-	-	-	-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	-	-	-	-	-	-	-	-	-	-
재활병·의원	0.0	100.0	0.0	0.0	100.0	0.0	0.0	0.0	-	-	-	-	0.0	52.7	47.3	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0.0	0.0	0.0	100.0	-	-	-	-	-	-	-	-	-	-	-	-
장애인전용체육관	-	-	-	-	-	-	-	-	-	-	-	-	-	-	-	-
특수학교·특수학급	-	-	-	-	-	-	-	-	-	-	-	-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	-	-	-	-	-	-	-	-	-	-	-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0.0	0.0	0.0	0.0	-	-	-	-	-	-	-	-	-	-	-	-
점자도서관	-	-	-	-	-	-	-	-	-	-	-	-	-	-	-	-
수화통역센터	-	-	-	-	-	-	-	-	-	-	-	-	-	-	-	-
심부름센터	0.0	100.0	0.0	0.0	-	-	-	-	-	-	-	-	-	-	-	-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5.1	28.5	15.5	10.9	0.0	100.0	0.0	0.0	-	-	-	-	-	-	-	-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0.0	67.4	32.6	0.0	-	-	-	-	-	-	-	-	-	-	-	-
장애아동보육시설	-	-	-	-	-	-	-	-	-	-	-	-	-	-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36.3	0.0	27.3	36.4	33.4	0.0	66.6	0.0	100.0	0.0	0.0	0.0	-	-	-	-
교통안전공단	-	-	-	-	0.0	100.0	0.0	0.0	-	-	-	-	-	-	-	-
장애인자립지원센터	-	-	-	-	-	-	-	-	-	-	-	-	-	-	-	-

주: 중복응답비율임.

〈표 6-10-11〉 계속

(단위: %, 명)

구분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전체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매우 만족	대체 로만 족	약간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장애인복지관	-	-	-	-	-	-	-	-	0.0	0.0	72.0	28.0	23.2	49.1	20.4	7.2
장애인생활시설	-	-	-	-	-	-	-	-	-	-	-	-	26.6	34.6	18.4	20.4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	-	-	-	-	-	-	-	-	-	-	15.3	42.6	22.9	19.3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	-	-	-	-	-	-	-	-	-	-	00.0	28.6	25.6	45.7
사회복지시설	-	-	-	-	-	-	-	-	-	-	-	-	0.0	0.0	100.0	0.0
그룹홈	-	-	-	-	-	-	-	-	-	-	-	-	19.6	17.0	21.9	41.5
주간·단기보호시설	-	-	-	-	-	-	-	-	-	-	-	-	43.4	13.6	35.1	7.9
재활병·의원	-	-	-	-	-	-	-	-	-	-	-	-	32.4	45.9	14.9	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	-	-	-	-	-	-	-	-	16.5	36.3	25.4	22.2
장애인전용체육관	-	-	-	-	-	-	-	-	-	-	-	-	21.8	44.9	25.7	7.6
특수학교·특수학급	-	-	-	-	-	-	-	-	0.0	100.0	0.0	0.0	32.2	41.2	19.4	7.1
특수교육지원센터	-	-	-	-	-	-	-	-	-	-	-	-	9.0	55.7	28.6	6.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	-	-	-	-	-	-	-	-	-	-	-	53.0	27.3	9.6	10.0
접자도서관	-	-	-	-	-	-	-	-	-	-	-	-	39.3	38.6	8.1	14.0
수화통역센터	-	-	-	-	-	-	-	-	-	-	-	-	25.2	50.0	6.0	18.9
심부름센터	-	-	-	-	-	-	-	-	-	-	-	-	54.8	23.0	22.2	0.0
이동지원서비스센터	-	-	-	-	-	-	-	-	-	-	-	-	33.4	40.7	14.9	10.9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	-	-	-	-	-	-	-	-	-	-	-	30.1	40.4	21.0	8.6
장애아동보육시설	-	-	-	-	-	-	-	-	-	-	-	-	31.4	36.4	18.6	13.6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	-	-	-	-	-	0.0	0.0	0.0	100.0	18.3	29.1	22.2	30.4
교통안전공단	-	-	-	-	-	-	-	-	-	-	-	-	30.8	29.2	29.7	10.3
장애인자립지원센터	-	-	-	-	-	-	-	-	-	-	-	-	30.9	38.5	7.6	23.0

주: 중복응답비율임.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향후 이용 희망 정도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이용 희망률은 14.3%로 나타났다.

22개 장애인복지기관 중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재활병·의원으로서 전체의 40.2%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관이 재활병·의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40.1%의 이용 희망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두 기관은 다른 기관의 이용 희망률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이들 기관이 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볼 때, 장애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 희망률이 높은 기관은 이동지원서비스센터로서 전체의 31.5%가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심부름센터(24.5%), 장애인자립지원센터(22.1%), 장애인고용촉진공단(20.1%)

도 평균을 상회하는 이용 희망률을 보였다. 이들 기관들이 상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취업 및 원활한 이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용 희망률이 낮은 하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장애영유아생활시설(0.8%), 점자도서관(1.2%), 장애아동보육시설(1.3%), 수화통역센터(1.6%), 특수학교·특수학급(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기관이 주로 특정 연령대(아동기) 및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기관임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 희망이 저조한 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장애유형별로 장애인복지기관의 평균 이용률을 살펴보면,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복지기관 평균 이용 희망률이 36.5%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정신지체장애인의 이용 희망률이 25.8%로 나타났다. 또한 안면장애(22.5%), 간질장애(19.9%), 정신장애(16.8%), 심장장애(16.0%) 등의 장애인복지기관 이용 희망률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용 희망률 면에서 상위를 점하고 있는 장애유형들이 대부분 정신장애인과 내부장애인이라는 결과는 개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10-12〉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이용 희망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관	40.3	37.9	36.9	33.4	43.7	56.4	84.2	35.1	41.8	46.6	37.6	28.8	42.5	24.4	49.3	40.1
장애인생활시설	14.6	19.7	11.3	12.4	21.9	32.1	23.7	29.0	16.0	18.1	18.2	11.8	26.2	4.3	28.1	16.4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4.9	31.5	12.1	13.9	17.5	26.3	14.7	33.5	22.0	25.0	27.4	20.3	17.5	14.7	28.3	18.5
장애영유아생활시설	0.6	0.9	0.2	0.9	3.9	2.3	5.1	1.0	0.0	1.1	0.0	0.0	0.0	0.0	0.0	0.8
사회복지시설	1.6	1.9	1.7	2.7	4.0	19.0	24.6	23.1	0.0	3.0	4.5	3.0	0.0	0.0	8.0	3.8
그룹홈	4.0	5.8	4.8	3.8	7.8	25.0	41.8	13.7	2.7	9.5	8.9	5.7	0.0	0.0	15.3	6.4
주간·단기보호시설	8.3	21.4	8.2	9.9	7.7	22.0	35.5	13.0	17.3	20.7	14.0	5.9	24.0	5.0	18.0	11.9
재활병·의원	44.1	51.5	32.8	30.1	30.1	30.8	38.6	26.7	32.6	43.1	41.6	34.9	44.6	24.7	33.7	40.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5	6.9	11.4	8.5	18.1	36.6	40.6	23.6	12.3	8.8	9.2	2.4	27.3	4.5	29.0	12.7
장애인전용체육관	15.7	13.6	13.7	9.2	6.0	28.9	51.0	13.2	15.0	9.4	6.5	14.7	44.6	4.8	19.2	15.2
특수학교·특수학급	0.9	2.5	1.1	1.9	8.4	33.7	78.2	2.1	0.0	0.9	0.0	0.0	0.0	0.0	2.8	3.9
특수교육지원센터	2.2	2.2	3.1	2.9	6.0	29.9	64.3	4.5	0.0	3.2	0.0	0.0	26.0	0.0	11.1	4.7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10.3	7.7	10.3	7.4	6.3	32.7	38.9	13.9	12.1	13.4	6.5	6.6	33.4	7.4	24.7	11.4

〈표 6-10-12〉 계속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점자도서관	0.4	0.3	7.5	1.0	0.0	0.3	1.8	1.0	0.0	0.9	0.0	0.0	0.0	0.0	0.0	1.2
수화통역센터	0.3	0.7	1.8	8.5	5.6	2.0	1.8	0.5	0.0	0.9	1.4	0.0	0.0	0.0	0.0	1.6
심부름센터	22.9	29.1	25.3	21.2	17.8	25.1	33.1	23.9	25.0	34.4	39.4	28.1	8.7	16.1	28.7	24.5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0.2	44.5	30.6	22.3	25.8	25.9	37.8	25.7	41.2	42.8	48.1	39.4	17.9	21.4	29.7	31.5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18.1	9.0	15.1	12.6	15.9	34.6	60.4	23.4	21.8	13.2	10.5	11.3	60.2	7.2	22.0	17.4
장애아동보육시설	0.5	1.6	1.2	1.7	3.9	5.3	15.2	0.6	0.0	3.0	0.0	0.0	0.0	0.0	2.9	1.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8	11.7	18.8	13.2	21.8	38.9	43.8	26.9	23.3	18.9	12.8	19.5	51.2	17.5	34.5	20.1
교통안전공단	10.7	6.7	8.9	8.4	5.8	13.0	9.3	9.6	9.2	13.2	8.4	8.2	44.6	2.5	13.7	9.8
장애인자립지원센터	21.9	15.7	20.8	14.7	22.1	46.7	59.5	25.3	27.5	22.1	17.5	10.7	26.6	15.0	38.1	22.1

주: 중복응답비율임.

4. 장애인의 복지 욕구

재가장애인의 향후 동거 희망 형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의 83.2%의 장애인이 ‘가족과 살고 싶다’라고 하여 대다수의 장애인이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 수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9.2%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인전문보호시설’(5.4%),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1.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혼자 살고 싶다’의 응답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데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지체장애인, 안면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장애의 특성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들은 대체로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장애유형 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은 ‘장애인 전문보호시설’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장애가 특성상 보호 수발인에 대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의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10-13〉 희망하는 동거 형태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혼자 살고싶다	10.5	6.0	9.5	9.7	2.3	4.7	0.0	12.2	6.1	10.4	7.7	4.9	33.4	2.6	21.1	9.2
가족과 살고싶다	84.3	83.1	86.2	85.3	88.3	75.3	73.0	68.4	88.2	76.3	85.1	92.1	66.6	95.1	63.0	83.2
그룹에서 살고싶다	0.4	0.4	1.1	0.2	1.8	4.4	11.8	2.1	1.0	0.0	1.6	0.0	0.0	2.4	0.0	0.9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1.1	0.9	0.9	1.6	0.0	0.6	3.5	1.9	0.0	1.9	0.0	0.0	0.0	0.0	0.0	1.1
장애인전문보호시설	3.4	9.5	2.4	3.0	7.6	14.2	11.8	14.8	4.7	11.5	5.6	3.0	0.0	0.0	15.8	5.4
기타	0.3	0.2	0.0	0.2	0.0	0.7	0.0	0.5	0.0	0.0	0.0	0.0	0.0	0.0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92)	(690)	(569)	(593)	(51)	(289)	(59)	(199)	(106)	(108)	(77)	(35)	(12)	(40)	(38)	(5,458)
전국추정수	995,694	265,699	219,551	227,513	19,827	110,570	23,259	76,480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8,323

주: 무응답 8건 제외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확충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알아보았다.

우선 1순위로 확충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가장 많이 꼽힌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 24.3%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재활병·의원 21.5%,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4.9%, 장애인자립지원센터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내부장애인들이 재활병·의원에 대한 욕구가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요하는 이들 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발달장애는 장애인복지관(12.3%)이나 재활병·의원(11.1%)보다 특수학교·특수학급(19.7%) 및 특수교육지원센터(15.7%) 확충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학령기에 속해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이 확충을 희망하는 2순위의 시설을 살펴보면, 재활병·의원이 전체의 18.2%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시설로 꼽혔으며, 이어서 장애인생활시설(10.5%), 중증장애인요양시설(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간질장애, 신장장애 등 주로 지속적인 의료적 치료를 요하는 내부장애 유형의 장애인들의 확충욕구가 가장 높았고, 생활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는 안면장애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확충을 희망하는 3순위의 시설에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13.9%), 재활병·의원(11.1%), 장애인복지관(9.0%) 등이 포함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루·요루장애, 언어장애의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확충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표 6-10-14〉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관	25.3	21.4	24.8	25.3	38.1	24.6	12.3	22.0	27.6	19.3	21.7	15.9	22.1	32.2	10.4	24.3
장애인생활시설	6.0	6.3	7.4	6.4	3.8	10.0	8.3	10.3	3.9	5.8	5.4	5.2	15.4	9.1	12.8	6.6
중증장애인요양시설	12.1	22.7	13.4	14.8	15.6	12.9	6.3	24.2	16.0	20.4	27.4	27.3	0.0	12.3	19.6	14.9
장애영유아생활시설	0.8	0.3	0.7	0.7	3.9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
사회복귀시설	2.2	1.6	2.1	1.2	1.8	5.4	3.5	7.5	2.0	1.0	1.4	12.6	0.0	2.5	2.6	2.4
그룹홈	0.4	0.1	0.7	0.0	0.0	0.7	5.1	2.1	0.0	0.0	0.0	0.0	8.5	0.0	0.0	0.5
주간 단기보호시설	1.1	3.5	1.2	2.0	0.0	1.8	3.1	1.0	2.9	6.7	2.7	0.0	0.0	0.0	2.4	1.7
재활병·의원	24.1	25.6	19.1	20.8	10.8	6.1	0.0	11.1	19.3	26.4	26.9	25.4	18.0	20.4	10.5	21.5
보호작업장 등	4.7	2.2	5.9	3.1	2.0	8.5	9.1	2.0	6.7	3.8	1.3	2.7	9.1	7.8	9.2	4.5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장애인 전용체육관	1.7	0.7	0.5	0.3	0.0	2.0	3.3	0.5	2.6	1.0	0.0	0.0	0.0	0.0	0.0	1.2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1.3	0.9	1.4	3.3	0.0	7.3	19.7	0.5	1.7	0.0	0.0	2.7	0.0	0.0	2.6	1.9
특수교육지원센터	0.4	0.4	0.5	1.4	4.2	2.6	15.3	1.7	0.0	0.0	1.2	0.0	0.0	2.6	2.5	0.9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시설	1.8	1.1	1.2	1.9	0.0	4.3	3.3	0.5	2.0	1.8	1.3	0.0	0.0	0.0	2.5	1.7
점자도서관	0.0	0.0	0.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수화통역센터	0.2	0.0	0.0	3.1	4.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심부름센터	2.1	1.6	3.8	3.1	7.9	1.7	0.0	2.2	1.6	0.9	0.0	0.0	0.0	0.0	0.0	2.2
이동지원서비스센터	4.3	5.6	6.2	2.5	0.0	0.0	0.0	0.8	5.1	3.7	8.0	6.2	0.0	2.5	5.2	4.1
장애인정보화교육 기관	2.5	1.5	1.9	1.8	4.4	2.2	0.0	1.6	0.0	1.9	0.0	0.0	17.4	2.6	5.7	2.1
장애아동보육시설	1.0	0.3	0.4	0.5	0.0	1.5	1.8	0.5	0.9	1.8	0.0	0.0	0.0	0.0	2.9	0.8
장애인자립지원센터	7.5	3.9	6.7	6.1	3.2	7.8	8.8	10.6	7.4	4.6	2.8	1.9	9.5	5.4	11.0	6.7
기타	0.2	0.3	0.5	0.0	0.0	0.3	0.0	1.0	0.0	0.0	0.0	0.0	0.0	0.0	0.0	0.2
없음	0.4	0.0	1.0	1.4	0.0	0.0	0.0	0.0	0.0	0.8	0.0	0.0	0.0	2.5	0.0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5)	(677)	(556)	(574)	(50)	(282)	(58)	(197)	(104)	(105)	(75)	(35)	(12)	(39)	(38)	(5,367)
전국추정수	985,655	261,019	214,707	220,520	19,471	107,938	22,864	75,746	39,379	40,370	29,163	13,397	4,369	15,099	14,555	2,064,252

주: 무응답 99건 제외

〈표 6-10-15〉 우선적으로 확충해야할 복지시설(2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관	9.1	9.6	9.1	12.5	4.0	4.4	5.3	7.6	4.0	10.3	6.2	5.3	0.0	4.7	5.5	8.9
장애인생활시설	10.4	12.3	8.0	8.9	16.5	14.5	7.8	13.3	8.5	7.2	12.5	2.7	31.0	5.1	11.7	10.5
중증장애인요양시설	9.9	12.0	10.6	9.8	12.2	7.6	0.0	13.1	16.0	11.2	13.4	5.7	18.2	8.5	10.9	10.3
장애영유아생활시설	1.6	0.6	1.2	1.4	3.9	0.0	4.7	0.5	0.0	1.8	1.3	0.0	0.0	2.7	3.0	1.3
사회복지시설	3.2	2.1	2.2	2.3	12.2	4.9	1.9	9.2	4.5	2.8	1.4	0.0	9.0	2.5	2.7	3.2
그룹홈	0.7	0.5	1.3	0.5	1.9	3.4	5.3	3.9	0.0	0.9	1.6	3.4	0.0	0.0	2.7	1.1
주간·단기보호시설	2.3	5.4	2.1	2.9	3.2	3.8	1.7	3.4	4.0	3.8	2.6	2.9	0.0	9.1	0.0	2.9
재활병·의원	18.6	25.3	17.1	18.2	11.7	7.3	13.0	11.7	20.2	10.2	21.6	17.1	6.4	23.7	21.5	18.2
보호작업장 등 장애 인 직업재활시설	5.7	2.6	6.1	4.4	4.0	8.5	7.3	5.9	3.7	5.9	5.3	9.0	8.7	8.1	6.1	5.4
장애인전용체육관	2.5	2.5	1.3	1.8	1.7	2.7	1.5	0.0	1.0	1.8	0.0	0.0	0.0	0.0	0.0	2.1
특수학교 또는 특수 학급	2.2	1.2	1.8	1.8	2.5	5.7	12.1	0.5	1.8	3.1	0.0	0.0	0.0	2.6	3.0	2.2
특수교육지원센터	1.7	1.1	1.8	1.5	0.0	7.3	7.4	1.0	0.9	1.9	1.4	2.7	8.7	0.0	5.6	2.0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시설	4.1	1.6	3.1	2.5	5.6	5.5	9.3	6.0	1.0	2.9	1.5	10.6	0.0	2.3	2.0	3.6
점자도서관	0.2	0.1	1.4	0.1	0.0	0.0	0.0	0.0	0.0	0.9	0.0	0.0	0.0	0.0	0.0	0.3
수화통역센터	0.2	0.2	0.4	2.6	0.0	0.0	0.0	0.5	1.0	0.0	1.2	0.0	0.0	0.0	2.7	0.5
심부름센터	5.5	5.2	4.4	5.5	4.1	2.3	0.0	5.6	8.0	6.4	10.3	8.5	0.0	9.7	5.5	5.3
이동지원서비스센터	7.4	8.5	10.1	7.9	5.9	3.8	0.0	2.7	8.4	14.3	11.9	17.1	0.0	7.5	0.0	7.6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4.2	1.1	4.4	3.2	1.9	5.4	6.9	3.2	4.2	3.0	0.0	0.0	0.0	2.7	0.0	3.6
장애아동보육시설	1.5	0.9	2.2	1.5	2.2	1.1	1.7	0.0	1.1	2.9	0.0	0.0	0.0	3.0	5.5	1.4
장애인자립지원센터	7.3	5.1	8.7	6.9	6.5	10.3	14.3	9.4	8.8	4.6	6.6	11.8	18.0	5.1	8.9	7.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없음	1.7	2.1	2.8	3.9	0.0	1.4	0.0	2.6	3.1	4.1	1.4	3.1	0.0	2.5	2.6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9)	(678)	(557)	(578)	(50)	(283)	(58)	(197)	(106)	(107)	(75)	(35)	(12)	(39)	(36)	(5,380)
전국추정수	986,942	261,049	215,079	221,890	19,471	108,299	22,864	75,746	40,286	41,278	29,163	13,397	4,369	15,099	13,821	2,069,113

주: 무응답 86건 제외

〈표 6-10-16〉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복지시설(3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장애인복지관	8.9	11.2	8.9	9.1	5.9	7.9	8.6	7.4	5.1	7.9	10.4	2.6	17.5	7.8	7.5	9.0
장애인생활시설	7.3	8.7	5.8	6.1	4.3	8.0	3.4	9.4	6.8	7.9	9.3	8.4	8.7	2.6	13.2	7.3
중증장애인요양시설	7.0	9.6	7.0	7.4	4.0	6.1	2.9	6.7	5.8	6.3	8.1	3.0	6.5	9.2	2.6	7.2
장애인영양아생활시설	1.5	0.8	1.3	1.5	2.0	0.3	0.0	1.5	0.9	2.0	1.5	3.8	0.0	0.0	0.0	1.3
사회복지시설	2.8	2.6	1.8	2.5	4.2	3.5	1.7	6.7	4.8	2.7	1.3	5.7	9.5	5.6	2.6	2.9
그룹홈	1.0	1.5	0.5	0.7	3.8	2.7	1.7	2.0	1.0	2.0	1.7	0.0	0.0	0.0	2.4	1.2
주간·단기보호시설	2.3	6.5	1.8	3.0	0.0	2.1	6.5	2.0	2.0	0.9	5.2	5.5	14.9	2.7	2.6	2.9
재활병·의원	11.2	10.4	15.3	11.4	10.8	7.8	5.2	7.0	10.9	19.0	8.0	2.9	0.0	13.2	5.9	11.1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9	3.1	5.1	5.8	5.9	5.7	8.8	7.7	6.9	2.4	5.4	9.1	9.0	0.0	2.9	5.5
장애인전용체육관	2.9	2.3	2.9	1.8	0.0	1.6	9.2	2.6	3.8	2.8	0.0	5.6	9.2	0.0	2.7	2.6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1.9	0.8	1.5	2.6	0.0	4.4	1.6	0.5	1.0	0.0	2.7	5.8	0.0	0.0	0.0	1.8
특수교육지원센터	1.7	1.63	1.2	2.2	2.0	4.4	8.9	2.5	0.0	1.8	2.6	2.0	0.0	2.4	2.7	1.9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시설	4.3	3.2	3.8	3.0	1.8	4.5	8.6	6.3	2.0	3.8	5.2	0.0	0.0	2.7	6.1	4.0
점자도서관	0.2	0.1	1.6	0.2	0.0	0.4	0.0	0.5	0.0	0.0	0.0	0.0	0.0	0.0	0.0	0.3
수화통역센터	0.5	0.1	0.7	1.6	0.0	0.0	1.9	0.0	0.0	1.9	0.0	0.0	0.0	0.0	0.0	0.5
심부름센터	6.7	8.3	7.8	8.1	9.1	5.1	1.4	2.5	5.3	6.3	13.6	16.0	0.0	7.5	6.0	7.0
이동지원서비스센터	8.3	9.5	8.5	10.0	10.2	4.4	0.0	3.3	7.6	8.2	7.9	3.0	0.0	10.9	6.0	8.1
장애인정보화교육기관	6.0	3.7	3.5	3.5	3.7	7.2	6.9	7.1	11.0	3.0	1.4	8.8	16.0	2.3	8.8	5.3
장애아동보육시설	1.8	1.5	3.0	2.1	8.1	1.0	1.7	2.5	3.0	1.0	0.0	0.0	0.0	2.6	2.9	1.9
장애인자립지원센터	14.3	10.1	13.4	11.5	20.5	18.5	18.5	16.8	17.3	15.0	9.2	14.9	8.7	25.6	14.4	13.9
기타	0.1	0.3	0.0	0.0	0.0	1.0	2.5	0.5	0.0	0.0	0.0	0.0	0.0	0.0	0.0	0.2
없음	3.5	4.3	4.6	6.0	3.8	3.6	0.0	4.6	4.8	5.0	6.6	3.1	0.0	4.9	10.7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6)	(677)	(557)	(578)	(50)	(283)	(58)	(197)	(106)	(107)	(75)	(35)	(12)	(39)	(36)	(5,376)
전국총정수	985,842	261,010	215,079	221,890	19,471	108,299	22,864	75,746	40,286	41,278	29,163	13,397	4,369	15,099	13,821	2,067,614

주: 무응답 90건 제외

다음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1순위로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장애인소득보장으로서 전체의 33.1%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취업알선(14.7%), 활동보조서비스(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능력과 자유로운 이동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2순위로 꼽은 것을 살펴보면, 취업알선이 전체의 19.1%로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교통편의제공(13.3%), 장애인소득보장(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3순위로 꼽은 것에는 장애인소득보장(14.4%), 취업알선(12.2%), 교통편의제공(10.1%) 등이 포함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소득 보장사업에 호흡기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2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취업알선에 대해서는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언어장애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3순위에서의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언어장애, 장루·요루장애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6-10-17〉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활동보조서비스	9.7	14.6	10.9	13.0	14.0	10.3	16.9	7.8	15.5	12.6	9.2	11.3	0.0	11.1	14.1	11.1
동료상담	0.4	0.3	0.7	0.6	4.1	0.4	0.0	2.6	0.0	2.0	0.0	3.1	0.0	0.0	0.0	0.6
자립생활 인식교육	8.2	6.6	6.9	10.9	12.7	16.1	11.5	7.9	11.5	9.8	6.9	6.1	23.7	7.8	13.0	8.8
권익옹호(대변)	1.1	1.2	0.8	1.0	2.3	2.1	3.4	2.0	1.6	0.9	1.3	0.0	0.0	0.0	0.0	1.2
정보제공	4.7	3.2	3.6	2.9	3.8	3.0	3.5	3.9	3.0	1.8	1.2	3.3	0.0	5.4	2.8	3.9
취업알선	17.0	10.8	17.2	13.3	11.4	8.7	1.6	10.7	11.3	14.9	9.9	26.4	0.0	7.6	18.5	14.7
교통편의제공	8.1	10.4	8.7	7.9	3.9	6.3	4.8	5.5	9.5	9.8	9.3	7.9	0.0	8.1	0.0	8.2
자립생활기술훈련	5.7	4.4	6.1	5.8	4.5	12.1	8.3	9.9	4.5	5.7	5.4	8.5	8.7	2.3	10.8	6.1
주택수리 및 관리	3.9	3.7	4.6	3.3	2.0	1.5	0.0	2.5	2.8	3.7	2.6	0.0	9.2	8.3	2.5	3.6
서비스연계 및 의뢰	0.3	0.6	0.0	0.3	0.0	0.0	1.7	0.5	0.9	1.0	0.0	0.0	0.0	0.0	2.7	0.3
직업교육	5.2	3.8	5.0	5.6	9.9	7.2	11.4	5.4	2.7	4.9	2.6	6.1	8.7	2.6	8.1	5.2
재활보조기구관리	1.1	1.8	0.2	0.9	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
성폭력상담	0.3	0.1	0.0	0.6	2.3	1.0	0.0	1.1	0.9	2.1	0.0	0.0	0.0	0.0	2.7	0.4
법률지원	1.7	0.9	1.7	0.6	0.0	0.3	1.7	4.2	2.0	1.9	5.3	2.1	9.1	5.5	0.0	1.6
장애인소득보장	32.3	37.4	32.9	32.7	27.1	30.7	33.3	35.5	33.8	26.8	46.2	25.1	40.5	38.7	24.8	33.1
기타	0.1	0.3	0.0	0.0	0.0	0.0	1.8	0.6	0.0	0.0	0.0	0.0	0.0	0.0	0.0	0.1
없음	0.2	0.0	0.8	0.7	0.0	0.3	0.0	0.0	0.0	1.9	0.0	0.0	0.0	2.6	0.0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7)	(674)	(560)	(575)	(50)	(282)	(59)	(197)	(106)	(105)	(76)	(33)	(12)	(38)	(37)	(5,371)
전국추정수	986,334	259,633	216,251	220,875	19,471	107,965	23,259	75,788	40,286	40,451	29,548	12,576	4,369	14,743	14,188	2,065,737

주: 무응답 95건 제외

〈표 6-10-18〉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2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활동보조서비스	6.7	9.5	8.9	7.7	2.1	8.0	6.6	5.6	10.0	5.5	12.5	0.0	6.4	5.2	11.6	7.5
동료상담	1.1	1.7	1.0	1.5	0.0	0.6	0.0	1.9	0.0	2.7	1.3	0.0	0.0	0.0	2.6	1.2
자립생활 인식교육	4.2	4.0	4.5	3.6	7.9	8.8	18.2	7.8	3.7	5.0	2.5	2.8	8.7	5.2	5.8	4.7
권익옹호(대변)	2.1	2.8	3.0	2.1	2.0	4.4	1.7	4.0	0.0	0.8	0.0	0.0	0.0	0.0	0.0	2.3
정보제공	5.0	3.7	4.0	3.5	5.3	2.3	1.1	4.4	4.8	2.9	2.6	8.8	0.0	0.0	6.0	4.3
취업알선	21.2	13.9	16.8	20.6	24.6	16.8	6.5	17.3	18.1	15.5	17.4	22.9	26.4	25.9	23.9	19.1
교통편의제공	13.3	18.3	13.2	14.2	10.0	7.0	8.8	6.7	15.9	12.4	10.3	9.1	0.0	13.2	10.8	13.3
자립생활기술훈련	10.0	7.9	9.7	9.0	23.7	17.0	24.2	14.1	13.1	12.0	12.0	3.9	31.9	10.7	8.3	10.5
주택수리 및 관리	8.3	7.9	7.5	7.2	4.2	4.1	2.6	6.9	4.5	8.6	9.1	3.2	8.5	12.9	2.8	7.6
서비스연계 및 의뢰	1.4	1.9	1.3	1.5	1.8	1.9	1.7	0.6	2.8	2.7	0.0	3.0	0.0	0.0	0.0	1.5
직업교육	7.9	6.5	9.3	9.3	4.3	10.7	10.1	11.1	10.1	5.6	10.6	12.0	0.0	2.6	13.2	8.3
재활보조기구관리	1.7	4.4	1.0	2.1	0.0	0.4	0.0	0.0	0.0	1.9	0.0	3.1	0.0	5.3	1.9	1.8
성폭력상담	0.5	0.4	0.5	0.7	0.0	1.1	1.7	1.5	1.1	0.8	1.4	0.0	0.0	2.9	0.0	0.6
법률지원	3.6	1.2	4.4	3.1	4.1	1.1	6.0	2.0	1.6	5.7	2.7	3.5	0.0	2.7	5.5	3.2
장애인소득보장	11.8	14.1	12.9	11.0	8.1	14.5	9.1	14.2	12.4	14.9	15.1	24.5	18.0	10.9	5.2	12.5
기타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없음	1.1	1.9	2.1	2.5	2.0	1.4	1.7	2.0	1.9	2.9	2.5	3.2	0.0	2.6	2.5	1.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9)	(675)	(561)	(578)	(50)	(283)	(59)	(197)	(106)	(106)	(76)	(34)	(12)	(38)	(37)	(5,381)
전국추정수	986,876	260,118	216,594	221,889	19,471	108,326	23,259	75,788	40,286	40,876	29,548	12,986	4,369	14,743	14,188	2,069,317

주: 무응답 85건 제외

〈표 6-10-19〉 장애인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3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활동보조서비스	8.3	9.3	7.6	8.1	3.8	7.9	10.0	10.6	8.0	7.0	8.2	10.2	9.1	2.7	5.2	8.3
동료상담	0.7	0.8	0.5	1.4	2.1	1.1	1.7	0.5	0.0	2.0	1.2	3.1	0.0	0.0	3.2	0.9
자립생활 인식교육	4.7	4.6	5.1	4.9	5.7	11.3	4.9	8.5	5.0	3.9	1.3	2.6	17.4	0.0	5.3	5.2
권익옹호(대변)	2.1	3.0	1.5	2.7	0.0	2.0	7.3	1.5	2.7	1.9	1.4	0.0	0.0	2.9	2.9	2.2
정보제공	4.7	3.0	6.6	4.8	6.3	3.5	3.4	5.8	5.2	2.8	1.3	8.6	17.2	7.8	3.0	4.7
취업알선	12.0	13.0	13.0	10.5	8.5	9.6	12.1	13.1	15.7	12.1	22.5	6.0	6.8	11.3	21.0	12.2
교통편의제공	10.8	10.6	11.2	8.6	10.0	8.2	6.3	4.2	10.9	9.4	10.4	14.7	0.0	12.5	11.6	10.1
자립생활기술훈련	8.9	6.8	8.9	10.2	9.1	17.5	20.7	9.5	10.6	11.8	11.6	14.6	9.0	15.4	14.0	9.6
주택수리 및 관리	6.5	8.3	5.3	6.7	3.8	4.8	4.9	4.2	8.2	3.5	9.3	3.1	0.0	0.0	5.6	6.3
서비스연계 및 의뢰	2.8	3.0	3.8	3.1	3.8	1.4	1.9	3.9	0.9	4.5	1.4	3.0	9.2	5.4	5.4	3.0
직업교육	7.9	4.7	6.5	5.6	7.7	9.8	13.1	7.6	5.7	11.4	2.6	3.0	16.0	9.6	7.6	7.2
재활보조기구관리	5.0	8.1	3.0	6.9	6.3	1.4	0.0	2.4	3.1	4.1	9.8	5.7	8.7	6.5	2.7	5.1
성폭력상담	0.9	0.1	0.8	1.3	0.3	1.0	1.1	2.9	0.0	0.0	0.0	0.0	0.0	0.0	0.0	0.8
법률지원	7.5	5.3	7.2	6.1	5.2	4.7	1.7	6.1	8.1	4.1	4.9	9.2	6.4	5.2	0.0	6.6
장애인소득보장	14.4	15.4	15.2	14.3	20.1	12.6	9.1	13.2	12.1	17.7	10.5	13.1	0.0	18.2	7.8	14.4
기타	0.0	0.0	0.0	0.3	0.0	1.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없음	2.6	4.0	3.8	4.2	7.9	2.1	1.7	6.1	3.9	3.9	3.8	3.2	0.0	2.6	4.9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69)	(675)	(560)	(578)	(50)	(283)	(59)	(197)	(106)	(106)	(76)	(34)	(12)	(38)	(37)	(5,380)
전국추정수	986,876	260,116	216,204	221,889	19,471	108,326	23,259	75,788	40,286	40,876	29,548	12,986	4,369	14,743	14,188	2,068,925

주: 무응답 85건 제외

다음으로 장애인들에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 소득보장으로 48.9%가 희망하였다. 다음으로는 의료보장으로 19.0%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 2000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소득보장은 1.4% 포인트 낮아진 반면, 의료보장은 1.1% 포인트 높아진 수치이다. 이외에도 주택보장(4.0%),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3.8%),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3.7%) 등이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료보장(8.3%)보다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17.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11.9%), 특수교육의 확대·개선(9.1%)을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간장애인의 경우에는 소득보장(34.2%)보다 의료보장(42.8%)을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각 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2순위로는 의료보장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또한 생계보장(9.9%), 주택보장(8.3%),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5.9%),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5.2%) 등이 중요한 2순위 요구사항이었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의료보장에 대해서는 안면장애, 호흡기장애, 신장 및 심장장애의 요구 정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들 장애유형의 경우 지속적인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3순위로는 주택보장(14.9%),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개선(9.7%), 의료보장(9.5%), 장애의 조기발견·조기치료(8.1%),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3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주택보장에 대해 장루·요루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뇌병변장애의 요구 정도가 가장 높았고, 안면장애와 발달장애의 요구 정도가 가장 낮았다.

〈표 6-10-20〉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소득보장	50.8	47.9	50.4	45.5	51.0	44.3	31.9	53.9	47.4	43.8	40.1	34.2	57.9	51.3	42.0	48.9
의료보장	17.9	22.9	18.6	20.9	13.5	10.1	8.3	14.2	22.5	26.4	39.5	42.8	0.0	33.6	18.1	19.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7	2.6	4.2	4.0	6.4	6.0	11.9	3.0	3.4	0.9	2.8	2.7	8.7	2.5	5.1	3.8
세제지원 확대	1.9	1.1	1.1	0.7	1.8	1.0	0.0	0.5	1.8	1.0	1.0	0.0	0.0	0.0	0.0	1.4
편의시설 확대	3.4	2.5	1.8	1.2	2.3	1.1	0.0	2.1	2.8	2.8	0.0	6.6	8.7	2.6	2.7	2.6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2.9	3.4	2.0	2.1	0.0	0.7	1.7	1.0	1.7	2.7	0.0	0.0	0.0	0.0	2.4	2.4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1.8	3.5	1.7	3.1	3.7	2.1	1.6	2.0	3.8	6.5	1.6	2.7	0.0	0.0	0.0	2.3
주택보장	4.2	3.4	3.4	3.7	6.0	6.0	1.6	5.3	5.6	3.8	2.5	3.0	0.0	0.0	0.0	4.0
결혼상담 및 알선	0.6	0.7	0.5	0.5	2.0	1.6	0.0	0.5	0.0	0.9	0.0	0.0	6.5	0.0	1.9	0.7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4	2.1	2.6	3.0	0.0	2.5	5.3	2.6	0.0	1.8	1.1	0.0	9.5	0.0	0.0	2.4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보급	1.2	1.2	1.6	2.3	1.8	0.0	0.0	0.0	1.0	0.0	2.6	5.9	0.0	0.0	2.7	1.3
특수교육의 확대· 개선	0.2	0.0	0.4	0.2	0.0	5.6	9.1	0.0	0.0	0.0	0.0	0.0	0.0	0.0	0.0	0.6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0.5	0.3	0.0	0.7	0.0	0.0	0.0	0.0	2.8	0.9	0.0	0.0	0.0	0.0	0.0	0.4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개선	2.0	3.2	1.5	1.9	2.0	6.3	5.2	2.3	1.7	0.8	1.3	0.0	0.0	2.7	0.0	2.3
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0.8	0.3	0.8	0.6	5.7	1.5	3.2	0.5	0.0	0.0	0.0	0.0	0.0	0.0	2.3	0.8
장애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2.6	2.9	3.4	5.5	0.0	6.4	17.5	8.1	1.8	3.0	4.9	1.9	0.0	4.8	11.1	3.7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2.3	1.4	4.1	2.6	0.0	3.7	1.4	3.1	1.7	1.9	1.2	0.0	8.7	0.0	11.6	2.5
기타	0.3	0.3	0.2	0.2	0.0	0.4	1.3	0.5	1.0	0.0	0.0	0.0	0.0	0.0	0.0	0.3
없음	0.4	0.4	1.8	1.4	3.8	0.6	0.0	0.5	1.0	2.8	1.3	0.0	0.0	2.5	0.0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88)	(686)	(565)	(586)	(51)	(285)	(59)	(199)	(106)	(108)	(77)	(35)	(12)	(40)	(38)	(5,435)
전국추정수	990,077	264,152	218,057	224,928	19,827	109,081	23,259	76,449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98,540

주: 무응답 31건 제외

〈표 6-10-21〉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2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소득보장	9.4	11.4	9.6	10.8	5.7	7.9	6.4	9.9	13.4	11.8	19.7	5.6	8.7	8.3	11.1	9.9
의료보장	35.4	37.7	38.7	37.0	35.3	29.3	20.4	36.7	37.1	37.6	40.2	37.5	50.1	28.7	34.0	35.9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4	2.2	3.6	2.9	1.9	3.9	8.2	3.5	2.0	2.9	1.4	5.7	0.0	0.0	5.5	3.2
세제지원 확대	4.1	4.5	3.3	4.6	0.0	3.4	0.0	3.0	0.9	0.0	0.0	5.4	0.0	5.5	2.8	3.8
편의시설 확대	4.2	3.7	3.8	2.2	1.9	1.3	0.0	0.8	3.6	6.2	1.3	2.7	9.2	0.0	2.4	3.5
교통수단 이용편의 확대	6.3	5.9	6.6	6.6	6.1	1.6	1.6	3.3	3.9	9.1	2.6	2.7	6.5	19.8	5.6	5.9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2.8	3.9	3.1	2.7	0.0	1.7	6.7	2.1	2.0	3.9	6.6	0.0	0.0	10.7	0.0	3.0
주택보장	9.4	7.7	7.7	7.1	9.0	6.7	4.6	8.9	10.6	5.5	5.0	0.0	0.0	4.6	13.2	8.3
결혼상담 및 알선	1.0	0.6	0.7	0.7	2.3	2.8	0.0	4.6	0.0	0.0	0.0	0.0	0.0	0.0	0.0	1.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2.9	2.7	3.3	2.0	1.9	7.2	8.4	5.6	3.8	2.6	0.0	5.9	0.0	0.0	6.8	3.2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보급	2.6	3.4	1.4	4.0	2.1	0.6	1.7	0.5	2.9	0.9	5.3	0.0	0.0	10.3	0.0	2.5
특수교육의 확대·개선	1.0	1.2	0.5	0.8	0.0	7.4	15.3	0.9	0.9	0.9	0.0	0.0	0.0	0.0	8.1	1.5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1.4	0.6	1.1	1.1	2.3	0.4	0.0	1.5	2.8	1.9	1.3	5.8	0.0	0.0	0.0	1.2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개선	4.5	4.0	2.3	3.7	7.7	5.3	11.0	5.6	4.2	3.0	3.9	8.0	0.0	4.8	8.0	4.3
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3.4	4.4	5.0	4.3	5.8	8.9	5.2	1.5	0.0	0.8	1.2	0.0	0.0	0.0	0.0	1.6
장애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5.6	2.8	5.2	5.5	10.3	7.1	9.0	4.5	4.3	6.5	5.0	8.8	0.0	2.5	2.5	4.3
취업지원서비스확대	1.0	2.0	2.1	2.7	5.7	0.6	1.5	5.9	4.6	3.7	3.9	8.8	25.4	2.4	0.0	5.2
기타	0.1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없음	1.0	2.0	2.1	2.7	5.7	0.6	0.0	1.0	3.0	2.8	2.7	3.1	0.0	2.5	0.0	1.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87)	(687)	(565)	(587)	(51)	(285)	(59)	(199)	(106)	(108)	(77)	(35)	(12)	(40)	(38)	(5,436)
전국추정수	93,682	264,542	218,045	225,307	19,827	109,081	23,259	76,449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466	14,555	2,089,902

주: 무응답 30건 제외

〈표 6-10-22〉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3순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소득보장	7.0	7.2	7.5	8.6	5.8	11.7	9.1	6.5	6.9	10.6	7.6	4.8	0.0	0.0	5.1	7.5
의료보장	10.1	9.6	5.9	9.9	7.4	11.2	10.1	11.3	10.0	7.5	9.2	2.7	9.1	8.0	12.8	9.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3.8	3.2	4.3	3.9	6.2	4.9	5.6	2.3	3.8	4.7	2.6	0.0	8.5	0.0	5.8	3.8
세제지원 확대	4.7	3.8	6.0	4.4	5.7	2.9	4.5	2.5	2.7	2.7	3.9	11.7	25.5	2.5	0.0	4.5
편의시설 확대	4.1	3.9	5.3	2.3	0.0	1.7	0.0	2.1	4.8	3.5	1.2	3.0	6.4	2.6	0.0	3.6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8.7	9.6	7.3	5.3	9.6	3.1	8.4	4.7	10.7	13.2	7.9	3.2	8.7	14.0	4.8	8.0
가사지원서비스 (간병인,도우미)	5.0	8.9	4.9	4.5	1.8	5.2	3.4	4.1	2.0	5.4	8.9	16.8	0.0	4.9	8.4	5.4
주택보장	15.2	14.2	17.3	13.1	11.7	12.6	6.2	15.9	12.9	20.0	18.2	14.9	0.0	21.7	10.6	14.9
결혼상담 및 알선	1.2	0.6	1.1	1.6	2.0	0.6	0.0	2.0	0.0	2.0	0.0	3.0	0.0	0.0	2.9	1.1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4.5	3.4	3.5	4.9	0.0	3.8	5.8	7.3	5.5	2.8	1.3	0.0	26.5	2.6	2.8	4.3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개발·보급	3.2	3.7	1.9	5.0	1.9	0.7	0.0	0.0	4.4	3.7	8.0	0.0	0.0	7.5	5.2	3.1
특수교육의 확대· 개선	1.0	1.1	0.6	1.2	3.6	4.7	3.1	1.0	0.0	0.8	0.0	3.0	0.0	0.0	0.0	1.2
문화 및 여가생활 기회의 확대	2.5	2.4	2.7	1.9	0.0	2.9	3.5	2.6	3.8	2.0	0.0	0.0	0.0	5.1	0.0	2.4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개선	9.6	11.6	8.6	8.1	8.2	10.4	17.9	12.6	8.4	2.6	12.2	5.5	6.5	5.0	15.8	9.7
장애아 보육시설 및 서비스 확충	2.8	1.9	2.1	1.0	0.0	6.1	3.4	3.2	1.9	1.8	0.0	2.0	0.0	2.3	5.1	2.5
장애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6.8	7.3	8.7	10.2	22.1	9.8	8.7	8.0	9.5	5.8	11.3	17.8	8.7	16.5	10.5	8.1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7.1	3.8	4.3	5.5	7.5	2.4	8.7	10.0	4.1	5.5	2.6	3.0	0.0	0.0	2.9	6.6
기타	0.1	0.0	0.3	0.4	0.0	0.3	1.7	0.0	2.0	0.7	0.0	2.7	0.0	0.0	0.0	0.2
없음	2.5	3.8	4.3	5.5	7.5	2.4	0.0	3.9	6.7	4.8	5.1	5.8	0.0	7.5	7.4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586)	(687)	(565)	(586)	(51)	(285)	(59)	(199)	(106)	(108)	(77)	(35)	(12)	(39)	(38)	(5,433)
전국추정수	993,319	264,542	218,045	224,951	19,827	109,081	23,259	76,449	40,286	41,684	29,953	13,397	4,369	15,099	14,555	2,088,816

주: 무응답 33건 제외

제 7 장 조사결과 Ⅲ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²²⁾

제 1 절 지체장애

1. 출현율

재가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을 지체장애가 있는 모든 사례 건수로 집계하면 <표 7-1-1>과 같이 인구 천명당 22.23건으로서, 이를 전국 일반인구에 적용하면 재가 지체장애 인구는 1,038,392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15종의 법정 장애유형 중 약 1백만 건으로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단위는 사람(person)이 아니라 건수(spell)로서 지체장애를 가진 모든 장애인, 즉, 단순 지체장애 또는 중복장애로서 지체장애를 갖는 사람의 합계로서 계산되었다.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 출현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55세 이후에서는 50.49건, 60대 중반 이후부터는 54.79건, 70대 중반 이상에서는 73.29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이 27.96건으로 여자(16.74)의 출현율 보다 훨씬 높다.

이 결과를 과거의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1995년도의 16.86건, 2000년도의 13.3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 출현율이 감소한 것은 2000년부터 뇌병변장애가 기존의 지체장애에서 분리됨에 따른 것으로서 2005년도 조사의 경우 2000년도에 비해 인구 천명당 출현율은 8.9건이 증가하였고, 장애건수로는 413천건 정도가 늘어나 지체장애의 증가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인구 천명당 약 11건 정도 높아 5년전 조사 결과와 유사한 출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특징적인 점은 5년전에 비해 연령구간별로 고르게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남자의 경우 50대 이후에서의 출현율이 5년전에 비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2) 본 장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장애출현율, 장애정도, 장애부위, 발생시기, 장애의 주된 원인 등 장애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알아본다.

〈표 7-1-1〉 성별·연령별 지체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0~ 4세	0.57	(2)	0.00	(0)	0.29	(2)
5~ 9세	0.66	(3)	0.52	(2)	0.59	(5)
10~14세	1.93	(9)	0.59	(2)	1.31	(11)
15~19세	2.62	(10)	1.27	(5)	1.96	(15)
20~24세	8.46	(28)	1.97	(9)	4.82	(37)
25~29세	13.72	(60)	3.13	(14)	8.33	(74)
30~34세	13.49	(70)	5.98	(31)	9.75	(101)
35~39세	21.13	(109)	7.19	(38)	14.17	(147)
40~44세	33.39	(179)	13.71	(74)	23.54	(253)
45~49세	50.92	(259)	19.80	(100)	35.25	(359)
50~54세	59.37	(222)	27.82	(106)	43.48	(328)
55~59세	66.83	(200)	34.67	(107)	50.49	(307)
60~64세	63.81	(157)	45.98	(128)	54.29	(285)
65~69세	73.35	(152)	58.14	(147)	64.99	(299)
70~74세	73.68	(100)	67.24	(132)	69.86	(232)
75~79세	93.35	(72)	62.12	(83)	73.29	(155)
80세 이상	61.39	(32)	48.93	(62)	52.57	(94)
계	27.96	(1,664)	16.74	(1,040)	22.23	(2,704)
전국추정수	638,868		399,524		1,038,392	

2. 장애 부위

장애부위는 <표 7-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지의 장애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지가 22.8%, 척추 22.0%, 상·하지 7.9%, 척추+상·하지의 장애가 3.1%의 순으로, 2000년의 조사에 비해 척추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하지 한쪽과 상지 한쪽이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는 척추 부위의 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지 장애에 있어서도 양쪽이 불편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성별로도 지체장애의 부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2〉 지체장애인의 장애부위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상지	상지 한 쪽	26.5	11.7	20.6
	상지 양 쪽	2.6	1.8	2.2
하지	하지 한 쪽	33.6	28.1	31.5
	하지 양 쪽	9.3	17.7	12.5
상·하지	상·하지 한 쪽	4.6	4.2	4.5
	상·하지 양 쪽	2.5	3.3	2.8
	상지 한 쪽+하지 양 쪽	0.4	0.7	0.5
	상지 양 쪽+하지 한 쪽	0.1	0.1	0.1
	척추	17.9	28.5	22.0
척추 + 상·하지	척추+상지 한 쪽	0.2	0.1	0.2
	척추+하지 한 쪽	1.4	2.4	1.8
	척추+하지 양 쪽	0.4	1.3	0.8
	척추+상·하지 한 쪽	-	0.1	0.0
	척추+상·하지 양 쪽	0.4	0.1	0.3
계		100.0	100.0	100.0
(N)		(1,664)	(1,040)	(2,704)
전국추정수		638,868	399,524	1,038,392

지체장애인의 장애형태를 절단, 마비, 관절장애, 변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7-1-3>과 같다. 지체장애인의 장애형태는 관절장애가 5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마비(18.3%), 절단(15.3%), 변형(9.0%)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5년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관절장애가 16% 포인트 높아진 반면, 마비와 절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 절단이 많고, 여자는 변형이 상대적으로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3〉 지체장애인의 장애형태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절단	19.9	8.1	15.3
마비	21.0	14.0	18.3
관절장애	51.2	67.1	57.3
변형	7.9	10.8	9.0
계	100.0	100.0	100.0
(N)	(1,662)	(1,040)	(2,702)
전국추정수	683,079	399,524	1,037,603

주: 무응답 2건 제외

지체장애의 4가지 형태를 <표 7-1-4>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절단의 경우에는 손목미만이 절단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마비 중에서는 하지 한쪽이나 하지 양쪽의 마비가 많아 2000년도의 조사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관절장애는 척추(20.9%), 무릎(15.9%), 고관절(11.2%) 등에서 장애가 많았으며, 2000년에 비해 척추(디스크)의 장애가 크게 늘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변형의 경우에는 하지변형과 하지길이 단축 등이 있었으며, 척추후만증은 1.4%, 왜소증은 전체 지체장애 건수의 0.6%를 차지하고 있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4〉 지체장애의 장애형태 - 손상부위별

(단위: %, 건)

구분	손상부위	남자	여자	전체
절단	팔꿈치 이상	1.4	0.4	1.0
	팔꿈치 미만-손목	0.7	0.8	0.7
	손목 미만(손등, 손가락)	14.4	5.2	10.8
	무릎 이상	1.1	0.5	0.9
	무릎 미만-발목	1.4	0.6	1.1
	발목 미만	0.5	0.5	0.5
	양 쪽 발가락	0.3	0.1	0.2
마비	상지한 쪽	4.0	1.3	2.9
	상지양 쪽	0.5	0.1	0.4
	하지 한 쪽	7.7	5.7	6.9
	하지 양 쪽	4.2	2.8	3.6
	상하지 한 쪽	2.6	2.5	2.6
	상하지 양 쪽	1.7	1.4	1.6
	전신(전신마비)	0.3	0.3	0.3
관절장애	어깨	2.1	1.6	1.9
	팔꿈치	2.0	1.2	1.7
	손목	1.3	0.7	1.0
	손가락	1.4	1.5	1.4
	고관절(엉덩이)	10.5	12.3	11.2
	무릎	11.7	22.6	15.9
	발목	4.3	1.8	3.4
변형	척추(디스크)	17.9	25.5	20.9
	척추후만증	0.5	2.8	1.4
	척추측만증	0.6	1.4	0.9
	하지길이 단축(5cm이상)	2.1	1.3	1.8
	상지변형	1.9	1.6	1.8
	하지변형	2.2	2.1	2.1
	상하지 변형	0.2	0.5	0.3
	왜소증	0.4	1.1	0.6
계		100.0	100.0	100.0
(N)		(1,662)	(1,040)	(2,702)
전국추정수		638,079	399,524	1,037,603

주: 무응답 2건 제외

3. 장애 발생시기

지체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표 7-1-5>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 만 1세 이후에 발생되고 있어 지체장애의 특성상 후천적 원인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돌 이후에 발생하는 지체장애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6>과 같다.

〈표 7-1-5〉 지체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구분	(단위: %, 건)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6	1.5	1.6
돌 이전	1.4	1.8	1.5
돌 이후	97.0	96.7	96.9
계	100.0	100.0	100.0
(N)	(1,662)	(1,040)	(2,702)
전국추정수	638,068	399,524	1,037,592

주: 무응답 2건 제외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는 <표 7-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20대 이후 다소 많아지기는 하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성별 장애 발생시기에 있어서는 남자의 경우에는 20대~40대의 발생비율이 비교적 높은데 비해 여자는 30대 이후에 들어 증가하기 시작하여 50대 이후에는 남자에 비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의 경우 여자에 비해 사회활동 중 장애를 갖게 되는데 비해서, 여자의 경우는 평균수명의 차이 등으로 고령과 관련된 지체장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1-6〉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8.1	9.5	8.6
만 5~9세	4.7	6.6	5.4
만 10~19세	10.7	5.1	8.5
만 20~29세	18.0	5.0	13.0
만 30~39세	18.6	10.2	15.4
만 40~49세	18.2	12.7	16.1
만 50~59세	11.2	20.4	14.7
만 60~69세	7.6	19.4	12.1
만 70세 이상	2.9	11.2	6.1
계	100.0	100.0	100.0
(N)	(1,613)	(1,006)	(2,619)
전국추정수	619,488	386,440	1,005,928

주: 비해당(출생전 또는 돌 이전) 84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4. 장애의 주된 질환명

지체장애가 발생된 원인을 주된 질환명에 따라서 분류하면, 주된 질환으로는 전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27.0%)이 가장 많았고, 골절(21.5%), 절단(15.0%), 관절염(1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체의 10.6%를 차지하는 기타 질환으로는 골수염, 하지길이 단축, 나병, 사고에 의한 신경손상 등의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었다. 이 결과를 2000년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절단과 소아마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근골격계질환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골절과 절단이 여자에 비해 많고, 여자의 경우는 근골격계질환 다음으로 관절염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표 7-1-7> 참조).

〈표 7-1-7〉 지체장애의 주된 질환명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소아마비	6.8	7.3	7.0
척수손상	2.3	1.1	1.9
경수	(0.5)	(0.3)	(0.4)
흉수	(0.8)	(0.4)	(0.7)
요수	(1.0)	(0.4)	(0.8)
관절염	5.0	19.5	10.6
종양(암)	0.8	0.7	0.8
절단	19.5	7.8	15.0
신경근육질환	4.4	2.1	3.5
근골격질환	23.0	33.5	27.0
골절	23.9	17.6	21.5
미상	2.2	2.3	2.2
기타	12.1	8.2	10.6
계	100.0	100.0	100.0
(N)	(1,663)	(1,039)	(2,702)
전국추정수	638,524	399,130	1,037,654

주: 무응답 2건 제외

5. 장애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및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표 7-1-8>과 같다. 전체 지체장애인의 96.7%가 질병이나 사고 등의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선천적이거나 출생시 원인에 의한 지체장애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1995년 및 2000년의 조사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7-1-8〉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 자	여 자	전 체
선천적 원인	1.8	1.8	1.8
출생시 원인	0.3	-	0.2
후천적 원인	27.4	56.1	38.4
질환	69.5	40.4	58.3
사고	1.0	1.7	1.3
원인불명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N)	(1,663)	(1,038)	(2,701)
전국추정수	638,524	398,750	1,037,274

주: 무응답 3건 제외

지체장애의 후천적 원인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표 7-1-9>와 같은데, 질환과 사고로 나누어 보면 질환이 39.7%, 사고가 60.4%로서 각종 사고가 지체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결과는 2000년의 조사(질환 27.4%, 사고 71.0%)와 비교하여 질환이 약 12% 포인트 늘어난 반면 사고는 비슷한 비율로 줄어들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등의 감소추세와 함께 만성질환이나 고령화 등에 의한 지체장애의 발생이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질환에 의한 원인 중에서는 근골격계질환이 2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원인에 있어서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는 1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질환이 28.1%인데 비해, 여자의 경우에는 질환(근골격계질환 등)에 의해 지체장애를 갖게 되는 비율이 58.3%로 여자가 30.2% 포인트나 높아서 성별로 지체장애의 원인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고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기타 사고나 외상, 교통사고에 있어 훨씬 높고 여자는 가정내 사고가 다소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의 원인이 사고뿐만 아니라 질환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는지를 별도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비해당(70.5%)을 제외하고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2.2%(남자 17.6%, 여자 3.6%)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17.3%)보다 낮았다.

〈표 7-1-9〉 지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질환	신경계질환	1.7	1.3	1.5
	심혈관 질환	0.2	0.5	0.3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4	0.6	0.5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0.1	-	0.1
	근골격계 질환	15.3	43.8	26.2
	신생물(종양)질환	0.6	0.5	0.6
	중독성 질환	0.1	-	0.1
	감염성 질환	8.6	9.6	9.0
	미상	1.1	2.0	1.5
	기타	-	-	-

〈표 7-1-9〉 계속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	0.3
	가정내 사고	6.7	4.1
	교통사고(탑승자)	6.4	10.8
	교통사고(보행자)	4.8	6.2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1.1	2.1
	화상	1.3	1.3
	약물 사고	-	0.1
	기타 사고 및 외상	20.6	33.1
	전상	0.5	2.1
	미상	0.2	0.2
	기타	0.2	0.1
계	100.0	100.0	100.0
(N)	(1,612)	(1,002)	(2,614)
전국추정수	618,743	384,786	1,003,529

주: 비해당(장애발생 원인 중 선천적, 출생시 원인, 원인미상) 87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제 2 절 뇌병변장애

1. 출현율

뇌병변장애는 뇌졸중,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장애로서 1999년 이전까지 지체장애에 포함되어 있었다. 재가 뇌병변장애인의 출현율을 알아보면, <표 7-2-1>과 같이 인구 천명당 6.31건으로 전체 294천여명으로 추정되어 뇌병변장애가 처음 포함된 2000년 (5.13건) 보다 인구 천명당 1.18건의 증가를 보였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는 인구 천명당 7.02건으로 약 176천명, 여자는 인구 천명당 4.97건인 118천명으로 남자의 출현율이 여자에 비해 평균 2.05건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뇌병변장애의 출현율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의 출현율과 함께 비교적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것은 고령층이 주를 이루는 뇌졸중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 출현율에 있어서는 장애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병변장애의 출현율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55세 이후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천명당 12.63건, 60대 중반 이후에는 27.84건, 75세 이후에는 40.26건의 높은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60대 중반 이후 급증하는 반면 남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55세 이후 출

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 출현율의 변화를 2000년도의 조사와 비교해보면, 출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연령층은 비슷하나 본 조사에서는 70대 이후의 중고령층의 뇌병변장애 출현율이 이전 조사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구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뇌병변 장애를 포함한 신체적 장애영역에 있어 일정 시점까지는 고령자 비중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 7-2-1〉 성별·연령별 뇌병변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0~ 4세	1.54	(5)	2.15	(7)	1.83	(12)
5~ 9세	1.57	(7)	0.48	(2)	1.06	(9)
10~14세	0.87	(4)	0.73	(3)	0.80	(7)
15~19세	0.00	(0)	0.56	(2)	0.28	(2)
20~24세	2.96	(10)	0.68	(3)	1.68	(13)
25~29세	2.11	(9)	0.17	(1)	1.12	(10)
30~34세	1.30	(7)	0.90	(5)	1.10	(12)
35~39세	3.12	(16)	2.08	(11)	2.60	(27)
40~44세	2.88	(15)	1.09	(6)	1.98	(21)
45~49세	6.72	(35)	2.55	(13)	4.62	(48)
50~54세	9.47	(35)	3.37	(12)	6.40	(47)
55~59세	16.54	(49)	8.84	(27)	12.63	(76)
60~64세	25.92	(62)	12.81	(35)	18.92	(97)
65~69세	35.49	(73)	25.58	(55)	27.84	(128)
70~74세	47.75	(65)	26.00	(50)	34.85	(115)
75~79세	54.70	(41)	32.21	(43)	40.26	(84)
80세 이상	46.33	(24)	25.87	(33)	31.84	(57)
계	7.02	(457)	4.97	(308)	6.31	(765)
전국추정수	176,019		118,654		294,673	

2. 장애부위 및 마비정도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부위를 <표 7-2-2>에서 알아보면 장애의 특성상 상·하지에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전체적으로 77.3%를 차지하고 있어 지체장애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지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3.2%로 하지에 있어 장애가 있는 비율 15.9%보다 적었으며, 남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해보면, 상·하지 한쪽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5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뇌병변장애의 하위장애 중 뇌졸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인 편마비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뇌졸중의 경우 뇌경색이나 뇌출혈에 의해 장애를 갖는데 운동장애와 함께 감각장애, 인지·언어장애 등을 복합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표 7-2-2〉 뇌병변장애의 장애부위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상지	상지 한 쪽	2.8	2.7	2.8
	상지 양 쪽	0.3	0.7	0.4
하지	하지 한 쪽	9.3	6.4	8.2
	하지 양 쪽	7.1	8.4	7.7
상·하지	상·하지 한 쪽	59.2	57.5	58.5
	상·하지 양 쪽	13.2	16.4	14.5
	상지 한 쪽+하지 양 쪽	4.0	3.7	3.9
	상지 양 쪽+하지 한 쪽	0.7	-	0.4
척추		0.5	1.4	0.8
척추 + 상·하지	척추+상지 한 쪽	-	-	-
	척추+하지 한 쪽	-	0.4	0.1
	척추+하지 양 쪽	-	-	-
	척추+상·하지 한 쪽	0.5	1.0	0.7
	척추+상·하지 양 쪽	2.4	1.3	2.0
계		100.0	100.0	100.0
(N)		(434)	(291)	(725)
전국추정수		166,913	112,045	278,958

주: 무응답 40건 제외

뇌병변장애의 마비정도를 알아보면 <표 7-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 불완전 마비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86.6%), 완전마비는 12.0%를 차지하고 있어 2000년의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완전마비의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2-3〉 뇌병변장애의 마비정도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완전마비	10.6	14.2	12.0
불완전마비	88.0	84.5	86.6
미상	1.4	1.3	1.4
계	100.0	100.0	100.0
(N)	(431)	(288)	(719)
전국추정수	165,895	110,837	276,732

주: 무응답 46건 제외

3. 동반증상 및 동반장애

뇌병변장애인 중 뇌성마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동반증상과 동반장애를 조사한 결과는 각각 <표 7-2-4>와 <표 7-2-5>에 제시되어 있다. 뇌성마비의 동반증상으로는 경직·불수의운동이 가장 많아서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절구축이 42.6%, 기타 배변장애를 갖는 경우도 23.6%로 대부분 경직·불수의운동과 관절구축이 가장 많은 동반증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4〉 뇌성마비의 동반증상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경직·불수의운동	59.6	56.2	58.2
관절구축	43.2	41.8	42.6
배변장애	23.6	23.6	23.6
기타	7.9	6.8	7.5

주: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인의 중복응답 결과임.

뇌성마비의 주 특성은 장애의 중복을 들 수 있는데, 주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아서 38.1%를 차지하고 있고, 청각장애 13.5%, 시각장애 12.2%, 정신지체장애 12.1%의 순으로 정신지체와 시각이나 청각장애 동반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동반장애를 갖는 비율이 높아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동반장애로는 치매, 기억력감퇴 등이 있었다.

〈표 7-2-5〉 뇌성마비의 동반장애

(단위: %)

구분	남 자	여 자	전 체
시각장애	12.1	12.2	12.2
청각장애	14.7	11.7	13.5
언어장애	42.7	31.2	38.1
정신지체장애	14.4	8.7	12.1
간질장애(경기)	4.4	1.6	3.3
기타	6.3	6.1	6.2

주: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의 중복응답 결과임.

4. 장애 발생시기

뇌병변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뇌성마비와 뇌졸중 등 세부 장애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표 7-2-6>에 나타나듯이 전체적으로 남녀 모두 장애 발생시기가 거의 대부분 만 1세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2000년의 조사와 거의 동일하며, 지체장애와 비교해서 출생전이나 1세 이전의 발생비율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표 7-2-6〉 뇌병변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3.8	3.8	3.8
돌 이전	3.6	2.6	3.2
돌 이후	92.7	93.6	93.1
계	100.0	100.0	100.0
(N)	(457)	(308)	(765)
전국추정수	176,019	118,654	294,673

돌 이후에 발생하는 뇌병변장애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7>과 같은데, 절반정도의 뇌병변장애인은 60대 이후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뇌병변장애 중 뇌졸중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발생이 두드러진 것과 관련지어 대표적인 고령에 의한 장애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만 4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3.4%인데 여기에는 뇌성마비와 같이 주로 유아기에서 발생하는 장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2000년과 비교해 다소 줄었는데, 이는 상대적

으로 고령장애의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뇌병변장애의 경우에는 세부 장애종류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장애 발생시기에 있어서는 여자는 50대 이후로 뇌병변장애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남자는 상대적으로 장년층에서의 발생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2-7〉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3.7	3.1	3.4
만 5~ 9세	-	1.8	0.7
만 10~19세	2.0	0.3	1.3
만 20~29세	3.6	3.5	3.5
만 30~39세	6.6	2.7	5.0
만 40~49세	17.2	11.5	14.9
만 50~59세	24.6	21.6	23.4
만 60~69세	28.8	29.8	29.2
만 70세 이상	13.5	25.6	18.4
계	100.0	100.0	100.0
(N)	(423)	(289)	(712)
전국추정수	162,725	111,457	274,182

주: 비해당(출생전 또는 돌 이전) 53건 제외

5. 장애의 주된 질환명

뇌병변장애의 발생원인을 응답자의 연령별로 질환명에 따라서 분류하면, <표 7-2-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질환명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볼 수 있는 대표적 장애라 할 수 있는 뇌졸중이 73.0%로 가장 많고, 그 밖의 뇌병변장애로는 뇌손상이 11.8%, 뇌성마비가 8.3%로 2000년에 비해 뇌졸중과 뇌손상은 각각 2.3% 포인트 증가한 반면, 뇌성마비는 3.3% 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2순위 질환이 뇌성마비였으나 본 조사는 뇌손상이 뇌성마비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까지는 뇌병변장애중 뇌성마비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50대 이상의 응답자에서는 뇌졸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70세 이상의 경우 90.2%가 뇌졸중으로 드러나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의 뇌병변장애의 질환으로는 파킨슨씨병, 결핵성 뇌막염, 소뇌위축증 등이 조사되었다.

〈표 7-2-8〉 뇌병변장애의 주된 질환명 - 연령별

(단위: %, 건)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체
뇌성마비	61.3	76.9	46.3	45.8	14.6	2.6	0.4	-	8.3
뇌졸중	-	-	8.9	20.7	48.9	74.3	85.9	90.2	73.0
뇌손상	19.7	11.9	23.3	23.8	26.2	16.4	8.8	4.5	11.8
뇌막염	-	-	4.5	-	4.5	0.9	-	0.8	1.0
뇌종양(암)	-	-	12.8	-	2.9	1.6	0.4	0.4	1.2
미상	-	-	-	7.4	-	0.8	0.4	0.8	0.9
기타	19.0	11.2	4.3	2.2	2.9	3.4	4.0	3.2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	(21)	(9)	(23)	(39)	(69)	(123)	(223)	(255)	(762)
전국추정수	8,165	3,607	8,935	15,059	26,436	47,709	85,846	97,774	293,531

주: 무응답 3건 제외

본 조사에서는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출산장소와 출산방법을 조사하였는데, 뇌성마비인의 출생장소를 알아보면 병원과 자택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택이 48.1%, 종합병원과 병·의원이 48.7%이며 조산원은 3.2%로서 2000년 조사와 비교하여 자택이 6% 포인트 늘었으나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병원 등 시설에서의 분만을 99% 이상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뇌성마비인의 조사대상 사례수나 연령분포(응답자가 주로 30대 28.5%, 10대 미만 20.6%, 20대 17.0% 이상)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반인과는 출생장소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2-9> 참조).

〈표 7-2-9〉 뇌성마비장애의 출산장소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종합병원	27.9	27.5	27.7
병·의원	22.0	19.4	21.0
조산원	-	8.0	3.2
자택	50.1	45.1	48.1
계	100.0	100.0	100.0
(N)	(38)	(26)	(64)
전국추정수	14,937	9,778	24,715

주: 비혜당(뇌병변장애 중 질환명이 뇌성마비가 아닌 경우) 701건 제외

다음으로는 뇌성마비인의 출산방법이 어떠한지를 조사한 결과 <표 7-2-10>에 나타나 있듯이 자연분만이 82.4%, 제왕절개가 17.6%로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왕절

개 분만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자연분만의 응답비율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분만장소로 자택이 많은 결과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자연분만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2-10〉 뇌성마비장애의 출산방법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자연분만	81.0	84.5	82.4
제왕절개	19.0	15.5	17.6
계	100.0	100.0	100.0
(N)	(38)	(26)	(64)
전국추정수	14,937	9,778	24,715

주: 비혜당(뇌병변장애 중 질환명이 뇌성마비가 아닌 경우) 701건 제외

6. 장애원인

뇌병변장애의 장애원인을 선천적, 출생시,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해서 <표 7-2-11>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의 뇌병변장애는 후천적인 것(93.3%)으로 조사되었다. 선천적이거나 출생시 원인은 매우 적었으며, 후천적 원인 중에는 질환이 81.2%로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의 장애발생 시기와 연관을 지어 볼 수 있으며, 2000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후천적 원인이 3.0% 포인트 높아졌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사고가 다소 많고 여자가 질환이 많았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2-11〉 뇌병변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2.2	2.2	2.2
출생시 원인	2.2	2.2	2.2
후천적 원인	77.8	86.4	81.2
질환	15.8	6.6	12.1
사고	2.0	2.6	2.2
원인불명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N)	(456)	(307)	(763)
전국추정수	175,630	118,298	293,928

주: 무응답 2건 제외

뇌병변장애의 장애원인 중 후천적 원인을 세분해서 보면 <표 7-2-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크게 질환과 사고로 구분했을 때 질환이 전체의 8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에 의한 원인은 13.0%이다. 질환 가운데서는 심혈관질환이 가장 많은 74.0%인데, 이는 뇌병변장애의 상당수(73.0%)를 차지하는 뇌졸중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000년의 조사에 비해 심혈관질환의 비율은 약 5% 포인트 높아져 뇌졸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신경계 질환이 7.0%로 뇌성마비 등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고 등에 의한 장애(뇌손상 등)는 교통사고가 6.6%, 기타 사고나 외상이 4.2%였으며,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각종 질환(후천적 원인 중 93.2%)에 의한 장애발생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자는 사고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7-2-12〉 뇌병변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질환	신경계질환	5.4	9.5	7.0
	정신질환	-	0.7	0.3
	심혈관 질환	73.1	75.4	74.0
	소화기계 질환	-	0.4	0.1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0.5	3.2	1.5
	신생물(종양)질환	1.2	1.8	1.4
	중독성 질환	0.5	-	0.3
	감염성 질환	0.5	1.8	1.0
	미상	2.1	0.4	1.4
	기타	-	-	-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0.5	0.4	0.4
	가정내 사고	0.7	1.1	0.8
	교통사고(탑승자)	3.7	1.4	2.8
	교통사고(보행자)	4.9	2.1	3.8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5	-	0.3
	약물 사고	0.2	0.4	0.3
	기타 사고 및 외상	5.9	1.8	4.2
	미상	0.2	-	0.1
	기타	0.2	-	0.1
계		100.0	100.0	100.0
(N)		(427)	(285)	(712)
전국추정수		164,355	109,961	274,316

주: 비해당(장애발생 원인 중 선천적, 출생시 원인, 원인미상) 51건 및 무응답 2건 제외

제 3 절 시각장애

1. 출현율

재가시각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5.94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가구에 적용했을 때 전국의 재가시각장애인은 277,807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출현율은 2000년도의 결과인 인구 천명당 출현율(4.68건)에 비해 약 1.2건 높아진 것이며, 장애인구수는 219,284명에 비해 약 5만8천명 많아진 것이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 인구 천명당 7.18건으로 여자의 4.75건보다 2.43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시각장애 출현율이 여자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 출현율을 보면, 시각장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출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50대 이후에 출현율이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출현율의 증가가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50세 이후 지속되다가 80세 이상의 연령대부터는 대폭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남자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

〈표 7-3-1〉 성별·연령별 시각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0~ 9세	0.36	(3)	0.70	(5)	0.52	(8)
10~19세	1.21	(10)	0.49	(4)	0.87	(14)
20~29세	2.91	(23)	0.91	(8)	1.84	(31)
30~39세	4.04	(42)	2.53	(27)	3.29	(69)
40~49세	6.96	(72)	2.07	(22)	4.50	(94)
50~59세	14.57	(98)	7.67	(53)	11.08	(151)
60~69세	21.52	(98)	14.30	(75)	37.42	(173)
70~79세	32.79	(67)	20.21	(67)	25.09	(134)
80세 이상	24.76	(13)	27.42	(34)	26.65	(47)
계	7.18	(426)	4.75	(295)	5.94	(721)
전국추정수	164,303		113,504		277,807	

2. 장애정도

재가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본인의 시력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본인의 시력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7%, ‘모른다’고 응답한 경

우는 41.3%로 시각장애인들은 본인의 시력을 알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남녀별로 구분하여 시력을 알고 있는지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66.0%가, 여자장애인은 44.7%가 시력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장애인에 비해 남자장애인의 시력 인지정도가 훨씬 더 높았다. 즉, 남녀별로 시력인지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표 7-3-2〉 시각장애의 시력인지 여부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안다	66.0	47.8	58.7
모른다	34.0	52.2	41.3
계	100.0	100.0	100.0
(N)	(413)	(277)	(690)
전국추정수	159,277	106,444	265,721

주: 비해당 31건 제외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시력검사의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즉, 시력검사 결과 나타난 양안의 교정시력을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좌안시력과 우안시력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교정시력 기준으로 0.02미만을 중도 시각장애로 간주하고, 0.1 이하를 중등도, 0.2 이상을 경도로 간주하여 알아보면, 좌안(왼쪽 눈)의 시력이 0.02 미만인 중도 시각장애인은 10.3%, 시력이 0.02 이상 0.1 이하인 중등도 시각장애인은 20.0%, 시력이 0.2 이상 경도 시각장애인은 24.5%였다. 그리고 전맹은 45.3%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인의 좌안시력정도는 전맹을 포함한 총 중증시각장애인이 약 55.6%로 반 수 이상이었고, 다음으로 경도, 중등도의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좌안이 전맹인 경우 남자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 더 많았다.

〈표 7-3-3〉 시각장애의 좌안 시력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2	24.5	24.4	24.5
0.1	5.6	5.2	5.5
0.05-0.09	4.5	7.8	5.9
0.04	3.9	3.6	3.7
0.02	4.1	6.1	4.9
0.02 미만	9.0	12.2	10.3
전맹(전혀 안 보임)	48.3	40.7	45.3
계	100.0	100.0	100.0
(N)	(406)	(274)	(680)
전국추정수	156,461	105,198	261,659

주: 비해당 33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시각장애인의 우안(오른쪽 눈) 장애정도도 좌안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사한 결과, 우안시력이 0.02 미만인 중도 시각장애인은 9.4%, 시력이 0.02 이상 0.1 이하인 중등도 시각장애인은 21.2%, 시력이 0.2 이상 정도 시각장애인은 27.7%였다. 그리고 전맹은 41.7%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각장애인의 우안시력 정도는 전맹을 포함한 총 중증시각장애인이 약 51.1%로 좌안시력과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의 반 정도되었고, 다음으로 정도, 중등도의 순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우안 전맹의 경우 여자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 더 많아 좌안 전맹이 남자시각장애인이 많았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표 7-3-4〉 시각장애의 우안 시력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2	29.7	24.8	27.7
0.1	6.8	5.2	6.2
0.05-0.09	5.4	5.7	5.5
0.04	5.6	6.0	5.7
0.02	3.2	4.6	3.8
0.02 미만	9.1	9.8	9.4
전맹(전혀 안 보임)	40.2	43.9	41.7
계	100.0	100.0	100.0
(N)	(402)	(274)	(676)
전국추정수	154,962	105,198	260,160

주: 비해당 36 건 및 무응답 9건 제외

3. 점자해독 가능여부

시각장애인이 점자해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았는데, 전체 시각장애인의 96.9%가 불가능하였고, 2.4%만이 가능하였다. 그 외 현재 점자해독을 배우는 경우는 0.7%였다. 이를 2000년도 실태조사에서의 점자해독 불가능 비율이 85.9%였던 것과 비교할 때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점자해독을 배우는 경우도 2000년의 1.2%에 비해 더 줄었다. 이와 같이 점자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시각장애인 중 저시력자인 경우 목자에 의한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전맹 등의 경우에는 점자습득이 필요하나 학습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녀별로는 ‘점자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동일하게 모두 가장 많았고,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자장애인이 약간 더 많았다.

〈표 7-3-5〉 시각장애의 점자해독 여부 - 성별

구분	(단위: %, 건)		
	남자	여자	전체
가능하다	2.1	2.7	2.4
불가능하다	96.9	96.9	96.9
배우는 중이다	1.0	0.4	0.7
계	100.0	100.0	100.0
(N)	(413)	(277)	(690)
전국추정수	159,277	106,444	265,721

주: 비해당 31건 제외

4. 장애 발생시기

시각장애의 장애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돌(만 1세) 이후가 95.1%로 가장 많았고, 출생전에 발생한 경우는 2.6%,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돌 이후 장애발생 비율이 더 높았고, 출생전 장애발생 비율은 여자가 더 높았다.

〈표 7-3-6〉 시각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7	4.0	2.6
돌 이전	2.1	2.6	2.3
돌 이후	96.2	93.5	95.1
계	100.0	100.0	100.0
(N)	(419)	(281)	(700)
전국추정수	161,695	107,972	269,667

주: 비해당 21 건 제외

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해 보면, 대체로 전 연령층에 걸쳐 고르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로 보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장애인의 경우는 1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발생률이 더 높았는데 반해, 여자장애인은 50대 이후 발생률이 남자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높았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남녀 모두 발생 감소경향을 보였다.

〈표 7-3-7〉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8.2	5.2	7.0
만 5~ 9세	10.6	9.8	10.3
만 10~19세	13.0	11.5	12.4
만 20~29세	17.3	8.1	13.6
만 30~39세	9.9	6.7	8.7
만 40~49세	13.6	10.7	12.5
만 50~59세	12.0	13.6	12.6
만 60~69세	9.1	18.1	12.6
만 70세 이상	6.3	16.3	10.2
계	100.0	100.0	100.0
(N)	(403)	(262)	(665)
전국추정수	155,618	100,605	256,223

주: 무응답 56건 제외

5. 장애원인

시각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천적 원인이 86.1%로 가장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면 질환이 51.7%, 사고가 34.4%였다. 그리고 원인 불명이 7.7%, 선천적 원인이 5.4%, 출생시 원인이 0.6%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후천적 원인이, 여자의 경우는 선천적 원인과 원인불명이 더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의 경우 남자는 사고에 의한 경우가, 여자는 질환에 의해 시각장애가 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7-3-8〉 시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4.1	7.2	5.4
출생시 원인	0.7	0.4	0.6
후천적 원인	질환	64.7	51.7
	사고	17.2	34.4
원인불명	6.0	10.4	7.7
계	100.0	100.0	100.0
(N)	(419)	(279)	(698)
전국추정수	161,695	107,260	268,955

주: 무응답 23건 제외

시각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후천적 원인(86.1%)의 경우 그 원인을 질환과 사고, 원인 미상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시각장애의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는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화기계질환 8.0%, 질환미상 6.9%, 심혈관질환 5.4%, 감염성질환 3.9%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사고에 의한 경우는 기타사고 및 외상이 2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내 사고가 3.8%,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3.4%, 교통사고(탑승자)가 2.8%의 순이었다.

후천적 장애원인을 성별로 보면, 질환의 경우 여자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고의 경우는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7-3-9〉 시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질환	신경계질환	4.7	3.4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	39.3	30.1
	심혈관질환	6.4	5.4
	호흡기질환	1.0	0.4
	소화기계질환	9.5	8.0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	-	0.2
	신장·비뇨·생식기계질환	-	0.2
	근골격계질환	0.4	0.2
	신생물(종양)질환	1.7	1.2
	중독성질환	0.4	0.3
	감염성질환	4.7	3.9
	미상	10.8	6.9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0.5	1.5
	가정내 사고	2.9	3.8
	교통사고(탑승자)	1.2	2.8
	교통사고(보행자)	0.4	1.5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9	3.4
	약물 사고	1.0	0.5
	기타 사고 및 외상	13.3	22.9
	전상	0.4	2.5
	미상	0.4	0.5
	기타	-	0.6
계	100.0	100.0	100.0
(N)	(374)	(229)	(603)
전국추정수	144,249	87,944	232,193

주: 비해당 95건 및 무응답 23건 제외

제 4 절 청각장애

1. 출현율

재가청각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6.42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가구에 적용했을 때 전국의 재가청각장애인은 300,223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출현율은 2000년도의 청각장애출현율 결과인 인구 천명당 출현율(4.15건)에 비해 약 2.27건 높아진 것이며, 장애인구

수는 194,521명에 비해 약 105천명 많아진 것이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 인구 천명당 6.95건으로 여자의 5.92건보다 0.67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청각장애 출현율이 여자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 출현율을 보면, 청각장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출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50대 이후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현율이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연령 증가에 따라 출현율의 증가폭이 매우 컸다.

〈표 7-4-1〉 성별·연령별 청각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0~9세	0.33	(3)	0.55	(4)	0.61	(7)
10~19세	0.69	(6)	0.76	(6)	0.72	(12)
20~29세	2.25	(18)	0.62	(5)	1.38	(23)
30~39세	1.24	(13)	1.34	(15)	1.29	(28)
40~49세	4.02	(42)	3.89	(42)	3.95	(84)
50~59세	9.58	(65)	6.14	(42)	7.84	(107)
60~69세	22.61	(103)	11.01	(58)	34.71	(161)
70~79세	51.41	(106)	29.05	(96)	37.72	(202)
80세 이상	113.52	(60)	79.53	(98)	89.46	(158)
계	6.95	(416)	5.92	(366)	6.42	(782)
전국추정수	158,910		141,313		300,223	

2. 보조기구 - 보청기

청각장애인들의 주된 재활보조기구인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청각장애인의 44.7%가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55.3%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았다. 성별로도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것은 동일하였는데, 남자가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표 7-4-2〉 보청기 사용유무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43.8	45.7	44.7
아니오	56.2	54.3	55.3
계	100.0	100.0	100.0
(N)	(404)	(355)	(759)
전국추정수	154,391	137,096	291,487

주: 비해당 23건 제외

3. 장애정도

청각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두 귀가 70dB 이상의 청력손실도를 갖는 경우 중도, 양쪽 귀가 60dB 이상의 청력 손실도를 갖거나 한 쪽 귀가 80dB 이상 그리고 다른 한쪽이 40dB 이상의 청력 손실도를 갖는 경우를 중등도, 그리고 양쪽 귀가 40dB 이상의 청력손실도를 갖는 경우를 경도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조사결과에 의한 청각장애 정도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알아보면, 청각장애인의 왼쪽 귀의 청각장애정도는 전체적으로 중도가 7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등도(17.0%), 경도(10.2%)의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중등도와 경증이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중증이 많았다.

〈표 7-4-3〉 청각장애의 정도 구분 - 왼쪽

(단위: %, 건)

구분	판별기준	남자	여자	전국추정수	비율
중도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90dB 이상)	31.2	30.6	89,931	30.9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큰 소음만 느낄 뿐이다(80dB 이상)	11.2	14.4	36,923	12.7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다(70dB 이상)	28.1	30.4	84,785	29.2
중등도	40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의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한다(60dB 이상)	18.3	15.5	49,305	17.0
경도	작은 말소리 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는 경우(40dB 이상)	11.2	9.1	29,748	10.2
	계(N)	100.0(402)	100.0(355)	290,692(757)	100.0

주: 비해당 25건 제외

청각장애인의 오른쪽 귀의 청각장애정도는 전체적으로 중도가 7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등도(17.9%), 경도(11.9%)의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중증도와 경증이 많았고, 여자의 경우는 중증이 더 많았다. 결과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양쪽 귀는 왼쪽 귀의 중증도가 더 심했다.

〈표 7-4-4〉 청각장애의 정도 구분 - 오른쪽

(단위: %, 건)

구분	판별기준	남자	여자	전국추정수	비율
중도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90dB 이상)	27.9	27.6	80,577	27.8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큰 소음만 느낄 뿐이다(80dB 이상)	12.2	12.5	35,781	12.3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다(70dB 이상)	27.9	32.6	87,342	30.1
중등도	40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의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한다(60dB 이상)	18.9	16.8	51,907	17.9
경도	작은 말소리 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는 경우(40dB 이상)	13.0	10.5	34,415	11.9
	계(N)	100.0(403)	100.0(353)	290,022(756)	100.0

주: 비해당 26건 제외

4. 의사소통방법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조사하였는데, 청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은 ‘말’이었다. 즉, ‘말’을 사용한다고 87.2%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몸짓’이 4.1%, ‘수화’가 3.9%, ‘구화’가 3.7%였다.

성별로도 모두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자는 ‘몸짓’을, 여자는 ‘수화’를 많이 사용하였다.

〈표 7-4-5〉 청각장애의 의사소통방법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수화	3.9	3.9	3.9
구화(입모양)	4.7	2.6	3.7
필담(글로쓰기)	1.7	0.3	1.0
말	84.8	89.8	87.2
몸짓	4.9	3.1	4.1
기타	-	0.3	0.1
계	100.0	100.0	100.0
(N)	(404)	(355)	(759)
전국추정수	154,391	137,096	291,487

주: 비해당 23건 제외

청각장애인 중 주된 의사소통방법이 ‘수화’가 아닌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를 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청각장애인의 96.2%가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수화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3%수준이었다. 그 외 현재 배우는 중인 경우는 0.5%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수화가능 정도가 더 높았다.

〈표 7-4-6〉 청각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3.8	2.6	3.3
아니오	95.2	97.4	96.2
배우는 중임	1.0	-	0.5
계	100.0	100.0	100.0
(N)	(397)	(345)	(742)
전국추정수	151,826	133,217	285,043

주: 비해당 40건 제외

5. 장애 발생시기

청각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돌(만 1세) 이후가 96.7%로 가장 많았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경우는 1.5%,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녀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돌 이후, 출생 전 장애발생 비율이 더 높았고, 돌 이전 장애 발생률은 여자가 더 높았다.

〈표 7-4-7〉 청각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4	1.6	1.5
돌 이전	2.5	0.9	1.8
돌 이후	96.0	97.5	96.7
계	100.0	100.0	100.0
(N)	(405)	(356)	(761)
전국추정수	154,799	137,443	292,242

주: 비해당 20건 및 무응답 1건 제외

청각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세분해 보면, 대체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30대에 약간 감소하였다가 다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청각장애 발생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장애 발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60대 이후 장애발생률은 전체 청각장애인 발생률보다 훨씬 높아 노령층에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표 7-4-8〉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9.7	7.8	8.8
만 5~ 9세	7.2	5.4	6.4
만 10~19세	8.3	7.5	7.9
만 20~29세	12.2	5.3	8.9
만 30~39세	4.6	5.5	5.0
만 40~49세	10.0	10.2	10.1
만 50~59세	13.2	9.5	11.5
만 60~69세	13.6	16.1	14.8
만 70세 이상	21.2	32.7	26.7
계	100.0	100.0	100.0
(N)	(390)	(347)	(737)
전국추정수	148,962	133,989	282,951

주: 비해당 45건 제외

6. 장애원인

청각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천적 원인이 86.3%로 가장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면 질환이 68.5%, 사고가 17.8%였다. 그리고 원인 불명이 9.5%, 선천적 원인이 3.9%, 출생시 원인이 0.2%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모두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선천적 원인이, 여자의 경우는 출생시 원인과 원인불명이 더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질환 의해 청각장애가 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7-4-9〉 청각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4.6	3.1	3.9
출생시 원인	0.2	0.3	0.2
후천적 원인	61.4	76.5	68.5
	24.9	9.8	17.8
원인불명	8.9	10.3	9.5
계	100.0	100.0	100.0
(N)	(405)	(356)	(761)
전국추정수	154,799	137,443	292,242

주: 비해당 21건 제외

청각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후천적 원인(86.3%)의 경우 그 원인을 질환과 사고, 원인 미상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청각장애의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는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염성 질환(19.1%), 미상(14.2%)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사고에 의한 경우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에 의한 사고(3.9%), 전상(2.7%)의 순이었다.

후천적 장애원인을 성별로 보면, 질환의 경우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고의 경우는 남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표 7-4-10〉 청각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질환	신경계질환	2.6	2.8
	정신질환	0.3	0.1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	44.8	37.0
	심혈관 질환	4.1	4.4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	0.3	0.2
	신장·비뇨·생식기계질환	-	0.2
	근골격계질환	0.3	0.1
	신생물(종양)질환	1.3	0.9
	중독성질환	-	0.4
	감염성질환	19.6	19.1
	미상	15.2	14.2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2.3	3.9
	가정내 사고	1.6	1.7
	교통사고(탑승자)	0.6	1.3
	교통사고(보행자)	0.3	1.5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3	0.5
	화상	0.4	0.2
	약물 사고	0.3	0.6
	기타 사고 및 외상	3.8	7.7
	전상	1.4	2.7
	미상	0.3	0.1
	기타	-	0.3
계	100.0	100.0	100.0
(N)	(350)	(307)	(657)
전국추정수	133,652	118,630	252,282

주: 비해당 125건 제외

제 5 절 언어장애

1. 출현율

재가언어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5.00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가구에 적용했을 때 전국의 재가언어장애인은 233,903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출현율은 2000년도의 결과인 인구 천명당 출현율(4.29건)에 비해 약 0.71건 높아진 것이며, 장애인구수는 201,329명에

비해 약 32천명 많아진 것이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 인구 천명당 6.63건으로 여자의 3.44건보다 2.89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의 언어장애 출현율이 여자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 출현율을 보면, 언어장애는 20대~30대 연령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연령대에 다시 증가함에 따라 장애출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50대 이후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현율이 급격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연령 증가에 따른 출현율의 증가폭이 매우 컸다.

〈표 7-5-1〉 성별·연령별 언어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N)	여자(N)	전체(N)
10세 미만	4.55(35)	2.45(17)	3.55(52)
10~19세	6.54(55)	2.91(23)	4.80(78)
20~29세	5.76(44)	1.61(15)	3.55(59)
30~39세	2.89(31)	2.54(28)	2.71(59)
40~49세	3.56(38)	2.68(28)	3.12(66)
50~59세	8.15(55)	4.09(28)	6.10(83)
60~69세	16.99(75)	5.77(31)	23.21(106)
70~79세	21.03(44)	10.53(34)	14.60(78)
80세 이상	26.19(14)	7.65(9)	13.06(23)
계	6.63(391)	3.44(213)	5.00(604)
전국추정수	151,718	82,185	233,903

2. 장애형태

재가언어장애인의 장애형태는 말은 하지만 발음이 이상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조음장애가 3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언어장애, 실어증이 29.1%,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15.6%, 말더듬이 12.0%, 음성장애가 4.7%의 순이었다.

성별 언어장애의 형태를 보면, 남자의 경우 조음장애, 음성장애가 많았고, 여자는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 말더듬, 언어장애, 실어증이 많았다.

〈표 7-5-2〉 언어장애의 장애형태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N)	여자(N)	전체(N)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	14.0	18.4	15.6
조음장애	41.0	34.4	38.7
말더듬	11.2	13.4	12.0
음성장애	5.0	4.1	4.7
언어장애, 실어증	28.8	29.6	29.1
계	100.0	100.0	100.0
(N)	(391)	(213)	(604)
전국추정수	151,718	82,158	233,903

3. 의사소통방법

언어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조사를하였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방법은 ‘말’이었다. 즉, 주로 ‘말’을 사용한다고 67.5%가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몸짓’ 21.7%, ‘수화’ 4.7%, ‘구화’ 1.9%였다. 성별로도 차이가 없었으나, 수화의 경우 여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표 7-5-3〉 언어장애의 의사소통방법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수화	3.7	6.6	4.7
구화(입모양)	2.6	0.5	1.9
필담(글로 쓰기)	2.5	0.9	2.0
말	67.1	68.1	67.5
몸짓	22.3	20.6	21.7
기타	1.7	3.3	2.3
계	100.0	100.0	100.0
(N)	(391)	(213)	(604)
전국추정수	151,718	82,185	233,903

언어장애인 중 주된 의사소통방법이 ‘수화’가 아닌 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를 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언어장애인들은 수화를 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언어장애인의 97.9%가 수화를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수화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4%수준이었다. 그 외 현재 배우는 중인 경우는 0.7%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남자의 수화가능 정도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표 7-5-4〉 언어장애의 수화가능 여부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1.6	1.0	1.4
아니오	97.6	98.5	97.9
배우는 중임	0.8	0.5	0.7
계	100.0	100.0	100.0
(N)	(378)	(199)	(577)
전국추정수	146,803	76,760	223,563

주: 비해당 27건 제외

4. 장애 발생시기

언어장애의 장애발생시기를 알아보면, 돌(만 1세) 이후가 92.5%로 가장 많았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경우는 4.5%, 돌 이전에 발생한 경우는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경우 돌 이후 장애발생률이 여자에 비해 더 높았고, 출생전 또는 출생시, 돌 이전 장애발생 비율은 여자가 더 높았다.

〈표 7-5-5〉 언어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3.6	6.3	4.5
돌 이전	2.2	4.4	3.0
돌 이후	94.2	89.3	92.5
계	100.0	100.0	100.0
(N)	(389)	(210)	(599)
전국추정수	150,924	81,059	231,983

주: 비해당 2건 및 무응답 3건 제외

언어장애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만 1~4세 연령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70세 이후에는 장애발생이 감소하였다. 성별로도 만 1~4

세 연령에 언어장애의 발생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였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장애 발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 5세 이후 20대까지, 그리고 60대 이후에 장애발생이 남자보다 더 많았고 남자는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언어장애 발생이 여자보다도 훨씬 높았다. 언어장애 역시 노령층에서는 여자가 언어장애를 가지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표 7-5-6〉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40.7	37.8	39.7
만 5~9세	8.2	8.5	8.3
만 10~19세	1.8	3.5	2.4
만 20~29세	2.1	3.7	2.6
만 30~39세	4.8	3.7	4.4
만 40~49세	7.5	4.1	6.4
만 50~59세	12.8	5.2	10.2
만 60~69세	13.1	13.3	13.2
만 70세 이상	9.1	20.2	12.8
계	100.0	100.0	100.0
(N)	(368)	(191)	(559)
전국추정수	142,951	73,549	216,500

주: 비해당 45건 제외

5. 장애원인

언어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후천적 원인이 86.1%로 가장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을 세분화하면 질환이 77.1%, 사고가 9.0%였다. 그리고 선천적 원인이 8.4%, 원인 불명이 4.9%, 출생시 원인이 0.7%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모두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 출생시 원인이, 여자의 경우는 선천적 원인과 원인불명이 더 많았는데, 후천적 원인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질환 의해 언어장애가 된 경우가 더 많았다.

〈표 7-5-7〉 언어장애의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5.9	12.9	8.4	
출생시 원인	0.8	0.5	0.7	
후천적 원인	질환	77.4	76.5	77.1
	사고	11.3	4.8	9.0
원인불명	4.6	5.4	4.9	
계	100.0	100.0	100.0	
(N)	(391)	(213)	(604)	
전국추정수	151,718	82,185	233,903	

언어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던 후천적 원인(86.1%)의 경우 그 원인을 질환과 사고, 원인 미상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았다.

언어장애의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한 경우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경우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질환이 30.3%, 신경계질환이 8.7%,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 7.3%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 중 기타 사고 및 외상에 의한 경우가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보행자)가 2.7%, 교통사고(탑승자)가 2.3%의 순이었다.

후천적 장애원인을 성별로 보면, 질환의 경우 여자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사고의 경우는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7-5-8〉 언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질환	신경계질환	7.8	10.4	8.7
	정신질환	29.8	31.2	30.3
	감각기(눈, 귀, 조음기관)질환	7.8	6.4	7.3
	심혈관 질환	33.8	38.7	35.5
	호흡기 질환	0.3	-	0.2
	신생물(종양)질환	2.0	2.3	2.1
	중독성 질환	0.3	0.6	0.4
	감염성 질환	1.2	0.6	1.0
	미상	4.0	4.0	4.0

〈표 7-5-8〉 계속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0.3	0.6	0.4
	가정내 사고	0.6	1.7	1.0
	교통사고(탑승자)	3.5	-	2.3
	교통사고(보행자)	3.8	0.6	2.7
	약물 사고	-	0.6	0.2
	기타 사고 및 외상	4.6	2.3	3.9
	미상	0.3	-	0.2
계		100.0	100.0	100.0
(N)		(346)	(173)	(519)
전국추정수		134,541	66,779	201,320

주: 비해당 85건 제외

제 6 절 정신지체

1. 출현율

재가정신지체인의 출현율은 <표 7-6-1>과 같이 인구 천명당 3.14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정신지체인은 146,588명으로 추정된다. 성별 출현율은 남자가 여자의 1.8배 정도이다. 또한, 연령별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0~19세였다.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10~19세가 7.8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자도 10~19세에서 3.7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6-1〉 성별·연령별 정신지체인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N)	여자(N)	전체(N)
0~ 9세	4.04(31)	2.09(15)	3.11(46)
10~19세	7.89(67)	3.75(30)	5.91(97)
20~29세	6.50(50)	3.08(28)	4.68(78)
30~39세	3.76(41)	2.04(22)	2.90(63)
40~49세	2.34(26)	2.63(28)	2.49(54)
50~59세	1.71(12)	1.44(10)	1.58(22)
60~69세	2.34(11)	1.10(6)	1.67(17)
70~79세	0.99(2)	-	0.38(2)
80세 이상	-	2.20(3)	1.56(3)
계	4.05	2.27	3.14
전국추정수	92,508(240)	54,080(142)	146,588(382)

2. 장애정도

정신지체의 장애정도를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언어능력은 ‘언어발달이 거의 정상적인 수준이다’ 29.0%였으며, 그 외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언어의 발달이 있으나 아주 늦다’ 26.9%, ‘언어발달이 거의 없다’ 24.0%,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야 언어의 발달이 일어난다’ 20.2%로 나타나 전체의 71.1%가 언어능력에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 보면, 남녀 모두 ‘언어발달이 거의 없다’가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최상의 언어능력에서는 다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표 7-6-2〉 정신지체의 언어능력

(단위: %, 건)

구분(언어능력)	남자	여자	전체
언어발달이 거의 정상적인 수준이다	29.2	28.7	29.0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언어의 발달이 있으나 아주 늦다	27.7	25.5	26.9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야 언어의 발달이 일어난다	21.0	18.7	20.2
언어발달이 거의 없다	22.1	27.1	24.0
계	100.0	100.0	100.0
(N)	(240)	(142)	(382)
전국추정수	92,508	54,080	146,588

정신지체인의 학습능력은 ‘가, 나, 다 정도의 학습이 가능하다’ 59.8%로 나타났으며, ‘덧셈이 가능하다’가 24.8%, ‘곱셈이 가능하다’ 15.4%로 학습이 가능한 정신지체인은 40.2%로 절반에 못 미쳤다. 남녀별로는 ‘가, 나, 다 정도의 학습이 가능하다’와 ‘덧셈이 가능하다’의 비율은 여자가 모두 높았고, ‘곱셈이 가능하다’의 비율은 남자가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학습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능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7-6-3〉 정신지체의 학습능력

(단위: %, 건)

구분(학습능력)	남자	여자	전체
가, 나, 다 정도의 학습이 가능하다	57.6	64.0	59.8
덧셈이 가능하다	24.0	26.4	24.8
곱셈이 가능하다	18.5	9.5	15.4
계	100.0	100.0	100.0
(N)	(183)	(98)	(281)
전국추정수	70,519	37,292	107,811

주: 비해당 101건 제외

3. 장애 발생시기

정신지체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표 7-6-4>에서 보여주듯이 정신지체는 돌 이후 (83.7%)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가 8.5%, ‘돌 이전’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별 장애 발생시기를 보면, 여자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발생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6-4> 정신지체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구분	(단위: %, 건)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7.5	10.3	8.5
돌 이전	8.6	6.5	7.8
돌 이후	83.9	83.2	83.7
계	100.0	100.0	100.0
(N)	(240)	(139)	(379)
전국추정수	92,508	52,988	145,496

주: 무응답 3건 제외

정신지체의 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만 1~4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만 5~9세’가 22.6%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만 1~4세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 발생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만 5~9세에 발생한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발생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7-6-5〉 정신지체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연령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64.2	52.6	60.1
만 5~9세	17.5	31.8	22.6
만 10~19세	8.8	6.5	8.0
만 20~29세	4.1	2.0	3.3
만 30~39세	1.5	2.5	1.8
만 40~49세	1.4	-	0.9
만 50~59세	1.0	1.0	1.0
만 60~69세	1.5	1.0	1.3
만 70세 이상	-	2.6	0.9
계	100.0	100.0	100.0
(N)	(196)	(110)	(306)
전국추정수	75,778	41,557	117,335

주: 비해당(출생 전 또는 출생시 및 돌이전) 61건 및 무응답 15건 제외

4. 장애원인

정신지체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것이 33.8%로 가장 높았고, 원인불명이 31.2%, 선천적 원인 19.8%, 후천적 원인 중 사고 11.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후천적 원인 중 질환 및 사고 모두 여자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선천적 원인과 원인 불명에서는 여자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7-6-6〉 정신지체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8.2	22.7	19.8
출생시 원인	3.9	2.8	3.5
후천적 원인	37.6	27.3	33.8
	12.3	10.9	11.8
원인불명	28.1	36.4	31.2
계	100.0	100.0	100.0
(N)	(240)	(142)	(382)
전국추정수	92,508	54,080	146,588

정신지체의 선천적 원인으로는 원인 미상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운증후군이 16.6%, 유전성 13.0%, 기타염색체 이상이 10.8%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도 남자 및 여자 모두 원인 불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유전성의 비율이, 여자는 기타염색체 이상이 가장 많았다.

〈표 7-6-7〉 정신지체의 선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유전성	20.1	3.3	13.0
다운증후군	16.6	16.6	16.6
기타염색체이상	6.8	16.3	10.8
선천성·발육기형	11.4	9.6	10.6
모체의 만성질환	4.3	6.2	5.1
미상	38.6	42.4	40.2
기타	2.3	5.6	3.7
계	100.0	100.0	100.0
(N)	(44)	(32)	(76)
전국추정수	16,799	12,277	29,076

주: 비해당(출생시, 후천적 원인 및 원인불명) 306건 제외

후천적 원인은 질환과 사고로 나뉘는데, 먼저 질환에서는 정신질환이 31.2%로 가장 많았다. 특히 남자는 37.2%로 정신질환이 많았다. 다음으로는 신경계질환이 19.1%로 많았으며, 원인 미상도 16.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사고에서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1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이 7.2%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기타 사고 및 외상이나 교통사고(보행자)에 의한 비율이 높았고, 여자는 폭력의 사고나 가정내 사고로 인한 비율이 높았다.

〈표 7-6-8〉 정신지체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질환	신경계질환	17.8	22.2	19.1
	정신질환	37.2	17.8	31.2
	심혈관 질환	1.7	1.9	1.7
	신생물(종양)질환	-	2.0	0.6
	중독성 질환	0.8	-	0.6
	감염성 질환	4.3	6.1	4.9
	미상	13.7	21.5	16.1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1.5	5.9	2.9
	가정내 사고	2.5	5.9	3.5
	교통사고(탑승자)	1.6	-	1.1
	교통사고(보행자)	7.7	5.9	7.2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0.9	-	0.6
	화상	-	1.9	0.6
	기타 사고 및 외상	10.4	9.0	10.0
계		100.0	100.0	100.0
(N)		(120)	(54)	(174)
전국추정수		46,145	1,852	66,764

주: 비해당(선천적, 출생시 원인 및 원인불명) 208건 제외

제 7 절 발달장애(자폐증)

1. 출현율

재가발달장애(자폐증)인의 출현율은 <표 7-7-1>과 같이 인구 천명당 0.72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발달장애인은 33,671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앞서 분석했던 정신지체와 마찬가지로 10~19세였다.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10~19세에서 각각 4.24건,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자는 0~9세에서도 2.77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성별 출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4~5배나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출현율은 발달장애는 19세 이전에 주로 발생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7-1〉 성별·연령별 발달장애(자폐증)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N)	여(N)	전체(N)
0~9세	2.77(21)	0.59(4)	1.73(25)
10~19세	4.24(35)	1.20(10)	2.79(45)
20~29세	0.97(8)	0.40(4)	0.67(12)
30~39세	0.34(4)	-	0.17(4)
40~49세	-	-	-
50~59세	-	-	-
60~69세	-	-	-
70~79세	-	-	-
80세 이상	-	-	-
계	1.18(68)	0.28(18)	0.72(86)
전국추정수	26,967	6,704	33,671

2. 동반장애

발달장애인의 동반장애 여부를 알아본 결과, <표 7-7-2>와 같이 정신지체가 동반된 경우가 69.4%로 가장 많았고, 정신지체와 경련성 질환이 모두 동반된 경우는 15.6%였고, 동반장애가 전혀 없는 경우도 14.9%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지체만 동반된 경우와 정신지체와 경련성질환이 함께 동반된 경우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7-2〉 발달장애(자폐증)의 정신지체 또는 경련성질환 동반 여부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아니오	17.2	5.9	14.9
정신지체만 동반됨	67.5	77.3	69.4
정신지체와 경련성질환 모두 동반됨	15.3	16.9	15.6
계	100.0	100.0	100.0
(N)	(68)	(18)	(86)
전국추정수	26,967	6,704	33,671

3. 발달상의 특성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정도는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과 정신질환 진단통계편람 제4판(DSM-IV) 및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CARS)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20개 항목의 발달장애 증상 평가척도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개수의 합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 증상 평가척도의 증상 개수의 합이 5 이하인 경우를 경도, 6 이상~10 이하인 경우를 중등도, 11 이상인 경우를 중도로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정도를 성별로 제시한 <표 7-7-3>을 보면, 전체적으로 중도가 49.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중등도가 36.0%, 경도가 14.5%였다. 장애정도에 있어서 남녀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가 경도 및 중도 장애가 다소 많은 반면, 남자는 중등도 장애가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7-3> 발달장애(자폐증)의 발달상의 특성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경도	13.6	18.0	14.5
중등도	51.8	40.2	49.5
중도	34.6	41.8	36.0
계	100.0	100.0	100.0
(N)	(68)	(18)	(86)
전국추정수	26,967	6,704	33,671

4. 장애 발생시기

발달장애의 발생시기를 보면 <표 7-7-4>와 같이 발달장애는 ‘돌 이후’가 87.5%, ‘돌 이전’ 8.5%,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4.0%로 돌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동일하게 돌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여자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그리고 돌 이전에 발생하는 비율이 많았고, 남자는 돌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7-7-4〉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 발생(발견)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3.5	6.0	4.0
돌 이전	7.7	12.1	8.5
돌 이후	88.8	81.8	87.5
계	100.0	100.0	100.0
(N)	(68)	(18)	(85)
전국추정수	26,967	6,309	33,276

주: 무응답 1건 제외

발달장애의 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만 1~4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만 5~9세’가 15.2%였고, 20세 이상에서는 발생 비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녀별로는 남자가 만 1~4세의 비율이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 발생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만 5~9세에 발생한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발생 비율이 훨씬 높았다.

〈표 7-7-5〉 발달장애(자폐증)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88.6	63.1	83.6
만 5~ 9세	9.8	36.9	15.2
만10~19세	1.6	-	1.3
계	100.0	100.0	100.0
(N)	(60)	(16)	(76)
전국추정수	23,956	5,921	29,877

주: 비해당(출생 전 또는 출생 시 및 돌 이전) 10건 제외

5. 장애원인

발달장애는 원인 불명에 의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후천적 원인 28.8%(질환 24.8%, 사고 4.0%), 선천적 원인 12.3%, 출생시 원인 6.2%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원인 불명과 후천적 원인(질환 및 사고)에 의한 발생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남자는 선천적 원인과 출생시 원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7-7-6〉 발달장애(자폐증)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2.5	11.5	12.3
출생시 원인	7.7	-	6.2
후천적 원인	질환	29.2	24.8
	사고	4.6	4.0
원인불명	52.2	54.6	52.7
계	100.0	100.0	100.0
(N)	(60)	(18)	(86)
전국추정수	26,967	6,704	33,671

발달장애의 선천적 원인으로는 원인 미상이 72.8%로 가장 많았고, 기타염색체이상 18.9%, 선천성·발육기형 8.3%의 순이었다. 발견된 발달장애인의 수가 많지 않아 유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성별로 봤을 때, 남자는 원인 미상 및 선천성·발육기형에 의한 경우가 많았고, 여자는 기타염색체이상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표 7-7-7〉 발달장애의 선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 자	여 자	전 체
기타염색체이상	12.0	49.2	18.9
선천성·발육기형	10.2	-	8.3
미상	77.9	50.8	72.8
계	100.0	100.0	100.0
(N)	(9)	(2)	(11)
전국추정수	3,377	773	4,150

주: 비해당(출생시, 후천적 원인 및 원인불명) 75건 제외

발달장애의 후천적 원인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발생률이 사고보다 월등히 높았다. 후천적 원인의 질환에서 보면, 정신질환이 48.4%로 가장 많았고, 신경계질환 21.4%, 원인 불명 12.2%, 감염성질환 4.3%의 순이었다.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질환에 의한 발생률이 67.4%로 가장 많았고, 남자는 신경계질환에 의한 발생률이 높았다.

발달장애의 장애원인 중 후천적 원인에서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응답자 중 발달장애(자폐증)로 정확한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 아닌 자폐증상을 보이는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장애인이 자폐증으로 응답한 경우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표 7-7-8〉 발달장애(자폐증)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질환	신경계질환	22.2	18.9	21.4
	정신질환	42.6	67.4	48.4
	감염성 질환	5.6	-	4.3
	미상	15.9	-	12.2
사고	교통사고(보행자)	5.1	-	3.9
	기타 사고 및 외상	4.9	13.7	6.9
	기타	3.8	-	2.9
계		100.0	100.0	100.0
(N)		(19)	(6)	(25)
전국추정수		7,433	2,268	9,701

주: 비해당(출생시, 선천적 원인 및 원인불명) 61건 제외

제 8 절 정신장애

1. 출현율

재가정신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1.91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표 7-8-1>과 같이 전국의 재가정신장애인은 89,199명으로 추정된다.

성별 출현율은 남녀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남자가 2.11건, 여자가 1.72건으로 남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49세가 3.81건, 30~29세가 3.26건이었다.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40~49세가 각각 4.17건, 3.46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30세~39세도 각각 3.55건, 2.96건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7-8-1〉 성별·연령별 정신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N)	여자(N)	전체(N)
0~ 9세	-	-	-
10~19세	-	0.11(1)	0.05(1)
20~29세	1.12(8)	1.40(13)	1.27(21)
30~39세	3.55(38)	2.96(31)	3.26(69)
40~49세	4.17(44)	3.46(37)	3.81(81)
50~59세	2.54(17)	1.87(13)	2.20(30)
60~69세	3.00(13)	1.78(9)	2.34(22)
70~79세	2.21(5)	0.89(3)	1.40(8)
80세 이상	-	-	-
계	2.11 (125)	1.72 (107)	1.91(232)
전국추정수	48,247	40,952	89,199

2. 장애 발생시기

정신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표 7-6-2>에서 보여주듯이 정신장애는 돌 이후 (99.6%)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출생 전 또는 출생 시’와 ‘돌 이전’에는 발생이 미미하거나 없었다.

남녀별 장애 발생시기를 보면, 남녀간 큰 차이는 없고 남자와 여자 모두 ‘돌 이후’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7-8-2〉 정신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0.7	-	0.4
돌 이전	-	-	-
돌 이후	99.3	100.0	99.6
계	100.0	100.0	100.0
(N)	(125)	(106)	(231)
전국추정수	48,247	40,585	88,832

주: 무응답 1건 제외

정신장애의 발생시기를 연령별로 알아보면, 전반적으로 ‘만 20~29세’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만 30~39세’가 23.4%, ‘만 10~19세’가 22.2%의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의학회에서는 정신장애가 주로 10~20대의 청소년·청년기에 많이 발병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별로는 남자는 만 20~29세의 발생 비율이 여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 10~19세와 만 30~39세의 발생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3〉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0.8	0.8	0.8
만 5~9세	-	0.9	0.4
만 10~19세	21.4	23.2	22.2
만 20~29세	37.3	30.8	34.3
만 30~39세	19.8	27.6	23.4
만 40~49세	11.9	5.9	9.1
만 50~59세	4.1	8.8	6.3
만 60~69세	4.7	1.0	3.0
만 70세 이상	-	1.1	0.5
계	100.0	100.0	100.0
(N)	(120)	(103)	(223)
전국추정수	46,221	39,434	85,655

주: 비해당 1건 및 무응답 8건 제외

3. 장애의 주된 질환명

정신장애의 구체적 질환명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정확한 질환명을 모르고 있는 경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의 증상 중 하나인 우울이나 불안증상이나 의처증 등의 편집증상이 있을 경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편집증 등으로 알거나 정신분열증으로 정확한 질환명을 알고 있어도 사회적 편견이 심한 정신분열증보다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한 우울증, 불안장애(비법정장애) 등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

이다. 따라서 정신장애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오래 입원하고 있는 등 기타 자료에 의해 정신장애로 분류되었으나 구체적 질환명에 대한 응답은 비법정장애인 경우는 정신질환의 구체적 질환명을 미상으로 재분류하였다.

정신장애는 전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발생 비율이 높았고, 그 외 반복성 우울장애가 20.1%,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9.4%를 차지하였다.

정신장애의 구체적 진단명을 제시한 <표 7-8-4>를 보면, 남녀별로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남자(58.3%)가 여자(49.4%)보다 정신분열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반복성 우울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등에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8-4> 정신장애의 주된 질환명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정신분열증	58.3	49.4	54.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8.6	10.3	9.4
반복성 우울장애	16.2	24.6	20.1
분열정동장애	0.9	1.0	0.9
기타 정신병	3.3	6.3	4.7
노이로제	3.9	5.5	4.6
미상	7.9	1.0	4.7
기타	1.0	1.9	1.4
계	100.0	100.0	100.0
(N)	(124)	(107)	(232)
전국추정수	48,247	40,952	89,199

4.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시 겪는 어려움

정신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① 적절한 음식섭취, ② 소변,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유지, ③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④ 규칙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 ⑤ 소지품 및 돈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⑥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의 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7-8-5>를 보면 적절한 음식섭취 및 대소변,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유지 등 개인의 신변처리 면에서는 전체의 71.4%가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혼자 스스로 가능하였

으나, 그 외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 소지품 및 돈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 면에서는 가끔 도움이 필요하거나 때로는 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정신장애인들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 면에서는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8-5〉 어려움의 정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적절한 음식섭취			
전적인 도움이 필요	8.2	2.7	5.7
가끔 도움이 필요	21.6	24.4	22.9
거의 도움이 필요없음	70.2	72.9	71.4
대소변,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유지			
전적인 도움이 필요	9.5	2.6	6.3
가끔 도움이 필요	23.0	27.0	24.9
거의 도움이 필요없음	67.4	70.4	68.8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전적인 도움이 필요	24.1	23.8	24.0
가끔 도움이 필요	44.1	30.4	37.8
거의 도움이 필요없음	31.8	45.8	38.2
규칙적인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			
전적인 도움이 필요	29.1	34.6	31.6
가끔 도움이 필요	27.4	13.9	21.2
거의 도움이 필요없음	43.5	51.5	47.2
소지품 및 돈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전적인 도움이 필요	25.7	32.5	28.8
가끔 도움이 필요	33.2	20.3	27.2
거의 도움이 필요없음	41.1	47.2	43.9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			
전적인 도움이 필요	23.9	35.1	29.0
가끔 도움이 필요	21.7	20.3	21.1
거의 도움이 필요없음	54.4	44.6	49.9
계	100.0	100.0	100.0
(N)	(124)	(107)	(231)
전국추정수	47,980	40,952	88,932

주: 무응답 1건 제외

5. 장애원인

정신장애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질환에 의한 비율이 79.0%로 높았다. 그 외 원인 불명에 의한 경우도 10.3% 정도 있었다.

성별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후천적 원인(질환) 및 원인 불명에 의한 발생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남자는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사고)의 비율이 높았다.

〈표 7-8-6〉 정신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6	0.8	1.2
후천적 원인	질환	79.5	79.0
	사고	7.5	9.4
원인불명	8.7	12.2	10.3
계	100.0	100.0	100.0
(N)	(125)	(107)	(232)
전국추정수	48,247	40,952	89,199

정신장애의 선천적 원인으로는 원인 미상이 63.9%로 가장 많았고, 유전성이 36.1%였다. 발견된 정신장애인의 수가 많지 않아 유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성별로 봤을 때, 남자는 원인 미상 및 유전성에 의한 경우였고, 여자는 원인 미상에 의한 경우였다.

〈표 7-8-7〉 정신장애의 선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유전성	52.4	-	36.1
미상	47.6	100.0	63.9
계	100.0	100.0	100.0
(N)	(2)	(1)	(3)
전국추정수	758	341	1,099

주: 비해당(후천적 원인 및 원인불명) 229건 제외

정신장애의 후천적 원인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발생률이 사고보다 월등히 높았다. 후천적 원인의 질환에서 보면, 정신질환이 79.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질환이나 사고에 의한 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질환에 의한 발생률이 86.1%로

가장 많았고, 남자는 원인 미상에 의한 발생률이 높았다.

〈표 7-8-8〉 정신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질환	신경계 질환	-	0.5
	정신질환	86.1	79.7
	심혈관 질환	1.1	1.6
	중독성 질환	-	0.5
	감염성 질환	1.0	0.5
	미상	3.2	6.7
사고	폭력에 의한 사고	4.4	3.5
	가정내 사고	-	1.0
	교통사고(탑승자)	-	1.5
	교통사고(보행자)	3.1	3.2
	기타 사고 및 외상	-	0.9
	미상	-	0.9
계	100.0	100.0	100.0
(N)	(112)	(93)	(205)
전국추정수	43,273	35,617	78,890

주: 비해당(선천적 원인 및 원인불명) 27건 제외

제 9 절 신장장애

1. 출현율

재가신장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0.88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신장장애인은 약 41,068명으로 추정된다. 성별 출현율을 보면, 남자는 천명당 1.11명으로 여자의 0.66명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연령별 출현율을 보면, 60대가 천명당 2.71명으로 가장 높으며, 70대가 1.82명, 50대가 1.56명, 40대가 1.25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에서는 천명당 0.30명, 30대에서는 0.70명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장장애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연령별 비교를 해보면, 전체 연령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와 60대에서는 남자의 신장장애 출현율이 여자의 신장장애 출현율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30대와 50대에서는 남자의 신장장애 출현율과 여자의 신장장애 출현율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표 7-9-1〉 성별·연령별 신장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	-	-
10~19세	-	-	-
20~29세	0.41	0.19	0.30
30~39세	0.85	0.55	0.70
40~49세	1.82	0.69	1.25
50~59세	1.84	1.29	1.56
60~69세	3.76	1.82	2.71
70세 이상	2.07	1.68	1.82
계	1.11	0.66	0.88
(N)	(65)	(43)	(108)
전국추정수	25,342	15,726	41,068

2. 장애정도

현재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은 신장이식을 받은 경험이 없는 신장장애인 70.3%, 신장이식을 받은 후 다시 투석을 받고 있는 1.7%를 합하여 72.0%이다.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28.0%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현재 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남자가 68.5%인데 비해 여자는 73.0%로 여자가 더 많았다. 반면에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에 있는 신장장애인은 남자가 30.0%로 여자의 25.0%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표 7-9-2〉 신장장애의 투석/신장이식 현황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투석	68.5	73.0	70.3
신장이식 후 투석	1.5	2.0	1.7
신장이식	30.0	25.0	28.0
계	100.0	100.0	100.0
(N)	(65)	(43)	(108)
전국추정수	25,342	15,726	41,068

3. 장애 발생시기

신장장애인의 장애 발생시기를 보면, 남녀 관계없이 돌 이후에 발생한다. 신장장애를 최초로 알게 된 시기를 보면, 40대가 21.9%로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20.4%, 20대가 17.2%,

60대 14.7%, 30대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40대에서 발생한 비율이 24.8%로 가장 높고, 50대가 19.3%, 20대가 17.5%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여자는 50대에서 발생한 비율이 22.3%로 가장 높고 60대에서 17.9%로 두 번째로 높아서 남자보다 늦게 신장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9-3〉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0~19세	9.5	4.3	7.5
만 20~29세	17.5	16.6	17.2
만 30~39세	14.7	14.2	14.5
만 40~49세	24.8	17.3	21.9
만 50~59세	19.3	22.3	20.4
만 60~69세	12.7	17.9	14.7
만 70세 이상	1.6	7.5	3.8
계	100.0	100.0	100.0
(N)	(65)	(43)	(108)
전국추정수	25,342	15,726	41,068

신장장애인이 투석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40대가 24.3%로 가장 높고, 60대 21.7%, 50대 21.1%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대 이후에 투석을 시작하는 신장장애인은 전체의 3/4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40대에서 투석을 시작한 경우가 26.9%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23.6%, 60대 17.9%의 순이었다. 반면에 여자는 60대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20.5% 등이었다.

〈표 7-9-4〉 신장장애의 투석(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 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0~19세	2.4	3.1	2.7
만 20~29세	10.8	12.7	11.5
만 30~39세	11.6	8.9	10.5
만 40~49세	26.9	20.5	24.3
만 50~59세	23.6	17.4	21.1
만 60~69세	17.9	27.4	21.7
만 70세 이상	6.9	10.0	8.1
계	100.0	100.0	100.0
(N)	(45)	(32)	(77)
전국추정수	17,750	11,792	29,542

주: 비해당(출생전 또는 돌 이전) 31건 제외

한편 신장장애인 중 신장이식을 한 장애인이 신장이식을 한 시기를 살펴보면, 37.2%가 40대에 신장이식을 받아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30대가 20.7%, 20대가 18.8%이었던 반면에 50대는 14.4%, 60대는 5.7%에 불과해 신장이식은 중년 이하에서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40대 34.9%, 20대 23.8%, 30대 23.2%로 여자의 40대 41.6%, 50대 25.5%, 30대 16.2%에 비해 젊은 시기에 신장이식을 받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9-5〉 신장장애의 신장이식 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0~19세	4.8	-	3.1
만 20~29세	23.8	9.5	18.8
만 30~39세	23.2	16.2	20.7
만 40~49세	34.9	41.6	37.2
만 50~59세	8.5	25.5	14.4
만 60~69세	4.8	7.2	5.7
계	100.0	100.0	100.0
(N)	(21)	(12)	(33)
전국추정수	7,973	4,244	12,217

4. 장애원인

신장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천적 원인은 1.9%, 후천적 원인 중 사고는 3.8%, 원인불명은 1.7%에 불과하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선천적 원인이 3.0%, 후천적 원인 중 사고가 6.1%였으나 여자는 선천적 원인과 사고가 전혀 없었다.

〈표 7-9-6〉 신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3.0	-	1.9
후천적 원인	89.4	98.1	92.7
	6.1	-	3.8
원인불명	1.5	1.9	1.7
계	100.0	100.0	100.0
(N)	(65)	(43)	(108)
전국추정수	25,342	15,726	41,068

후천적 장애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장·비뇨·생식기계질환이 52.9%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이 26.3%, 심혈관질환이 13.9%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원인은 매우 미미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상대적으로 심혈관질환의 비율이 17.6%로 여자의 8.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으나,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의 비율은 여자가 37.4%로 남자의 19.3%에 비해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는 폭력에 의한 사고, 교통사고, 약물사고 등이 원인인 경우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여자는 사고가 원인은 경우는 전혀 없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9-7〉 신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심혈관질환	17.6	8.1	13.9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19.3	37.4	26.3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53.6	51.9	52.9
	근골격계 질환	1.5	-	0.9
	신생물(종양)질환	1.6	-	1.0
	미상	-	2.6	1.0
	폭력에 의한 사고	1.5	-	0.9
	교통사고(탑승자)	3.2	-	1.9
	약물 사고	1.7	-	1.1
	계	100.0	100.0	100.0
(N)		(62)	(42)	(104)
전국추정수		24,191	15,421	39,612

주: 비해당(장애발생 원인 중 선천적, 출생시 원인, 원인미상) 4건 제외

제 10 절 심장장애

1. 출현율

재가심장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1.24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인구에 적용하면 한국의 재가심장장애인은 약 58,120명으로 추정된다. 성별 심장장애인의 출현율을 보면, 남자는 천명당 1.32명으로 여자의 1.18명보다 약간 높았다. 연령별 출현율을 보면, 70대가 천명당 5.61명으로 가장 높고, 60대가 5.2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심장장애인의 출

현율은 60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높아지고 50대까지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특히 40대가 천명당 0.78명, 30대가 0.39명 등 40대 이하의 심장장애인 출현율은 낮았다. 따라서 심장장애는 노년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연령별 심장장애인 출현율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자의 출현율이 여자의 출현율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0~9세와 30대에서는 여자의 심장장애인 출현율이 오히려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0~9세에서 여자는 천명당 0.41명으로 남자의 0.26명보다 높았다. 또한 30대에서도 여자는 천명당 0.58명으로 남자의 0.19명에 비해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는 심장장애인 출현율이 60대에서 천명당 6.04명, 70대에서 6.56명 등 6명을 넘는 높은 출현율을 나타냈다.

〈표 7-10-1〉 성별·연령별 심장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0.26	0.41	0.33
10~19세	0.23	-	0.12
20~29세	0.38	0.22	0.30
30~39세	0.19	0.58	0.39
40~49세	1.00	0.56	0.78
50~59세	2.17	1.21	1.68
60~69세	6.04	4.67	5.29
70세 이상	6.56	5.06	5.61
계	1.32	1.18	1.24
(N)	(77)	(73)	(150)
전국추정수	30,063	28,057	58,120

2. 장애정도

심장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장애단계가 5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1단계가 가장 정도가 약하며, 4단계가 가장 정도가 심각하다. 5단계는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이다. 1단계는 59.2%로 가장 많으며, 2단계가 19.0%, 3단계가 14.3%, 4단계가 5.1%, 5단계가 2.5%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1단계는 남자가 57.0%인데 비해 여자는 61.5%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에 4단계는 남자가 6.0%인데 비해 여자는 4.1%로 여자의 비율이 더 낮았다. 또한 심장을 이식 받은 5단계는 남자가 3.5%, 여자는 1.4%로 여자의 비율이 더 낮아서 여자보다는 남자의 심장장애정도가 약간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10-2〉 심장장애의 장애정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1단계	57.0	61.5	59.2
2단계	19.4	18.6	19.0
3단계	14.2	14.4	14.3
4단계	6.0	4.1	5.1
5단계	3.5	1.4	2.5
계	100.0	100.0	100.0
(N)	(77)	(73)	(150)
전국추정수	30,063	28,057	58,120

3. 장애 발생시기

심장장애의 발생시기를 보면, 돌 이후가 9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생 전 또는 출생 시가 3.4%, 돌 이전이 2.0%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돌 이후가 94.8%, 여자가 94.5%로 남자가 약간 비율이 높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비율은 남자가 2.5%, 여자가 4.2%로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7-10-3〉 심장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2.5	4.2	3.4
돌 이전	2.7	1.3	2.0
돌 이후	94.8	94.5	94.6
계	100.0	100.0	100.0
(N)	(77)	(73)	(150)
전국추정수	30,063	28,057	58,120

심장장애가 돌 이후 장애가 발생한 구체적 시기를 살펴보면, 60대가 32.3%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가 21.3%, 40대가 17.3%, 70대 이상이 11.6%로 나타나 대부분이 40대 이후에 심장장애가 발생하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60대가 30.0%, 50대가 25.3%, 40대가 18.6%로 40대에서 6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여자는 60대가 34.8%로 가장 비율이 높고 50대가 16.9%, 40대가 16.0%, 70대가 15.0%로

40대, 50대, 70대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4〉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9세	2.8	-	1.5
만 10~19세	4.1	2.8	3.5
만 20~29세	2.7	7.4	4.9
만 30~39세	8.2	7.1	7.7
만 40~49세	18.6	16.0	17.3
만 50~59세	25.3	16.9	21.3
만 60~69세	30.0	34.8	32.3
만 70세 이상	8.4	15.0	11.6
계	100.0	100.0	100.0
(N)	(73)	(69)	(142)
전국추정수	28,496	26,509	55,005

주: 비해당(출생전 또는 둘 이전) 8건 제외

4. 장애원인

심장장애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8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천적 원인이 8.7%로 나타났으며, 후천적 원인 중 사고가 2.5%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질환이 90.0%였던 반면 여자는 86.2%로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약간 낮았다. 반면에 후천적 원인 중 사고의 비율은 남자는 0.9%에 불과하였으나 여자는 4.2%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7-10-5〉 심장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9.1	8.3	8.7
후천적 원인	90.0	86.2	88.2
질환	90.0	86.2	88.2
사고	0.9	4.2	2.5
원인불명	-	1.3	0.7
계	100.0	100.0	100.0
(N)	(77)	(73)	(150)
전국추정수	30,063	28,057	58,120

심장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혈관질환이 89.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의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그 외 발생원인의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후천적 원인에서 성별 차이는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남자는 7.4%인데 비해 여자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0-6〉 심장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심혈관질환	88.9	89.3	89.1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7.4	3.0	5.3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1.4	-	0.7
		근골격계 질환	-	1.7	0.8
		감염성질환	1.4	-	0.7
		미상	-	1.5	0.7
	사 고	가정내 사고	-	1.7	0.8
		교통사고(탑승자)	1.0	1.5	1.2
		교통사고(보행자)	-	1.4	0.7
계		100.0	100.0	100.0	
(N)		(70)	(66)	(136)	
전국추정수		27,340	25,352	52,692	

주: 비해당(장애발생 원인 중 선천적, 출생시 원인, 원인미상) 14건 제외

제 11 절 호흡기장애

1. 출현율

재가호흡기장애인의 출현율은 인구 천명당 0.78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호흡기장애인은 약 36,402명으로 추정된다. 성별 출현율을 보면, 남자는 천명당 1.18명으로 여자의 0.39명에 비해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호흡기장애인의 출현율을 보면, 70대가 천명당 4.5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3.03명이었다. 따라서 노년기에 특히 호흡기장애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0대 이하에서는 호흡기장애인의 출현율이 매우 낮았는데, 20대에서는 인구 10만명당 5명, 30대에서는 인구 10만명당 9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호흡기장애인의 출현율을 보면, 70세 이

상에서 남자는 천명당 10.84명으로 여자의 0.94명에 비해 10배 이상 높았다. 또한 60대에서도 남자는 4.63명으로 여자의 1.68명에 비해 세배 가까이 높았다. 반면에 40대에서는 남자의 호흡기장애 출현율이 0.28명으로 여자의 0.39명보다 오히려 낮았다. 따라서 호흡기장애는 노년기의 남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장애임을 알 수 있다.

〈표 7-11-1〉 성별·연령별 호흡기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0~ 9세	-	-	-
10~19세	-	-	-
20~29세	-	0.10	0.05
30~39세	0.18	0.0	0.09
40~49세	0.28	0.39	0.33
50~59세	2.47	0.92	1.69
60~69세	4.63	1.68	3.03
70세 이상	10.84	0.94	4.54
계	1.18	0.39	0.78
(N)	(70)	(24)	(94)
전국추정수	27,010	9,392	36,402

2. 장애정도

호흡기장애의 장애정도는 4단계로 나뉘어지며, 1단계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있다’는 정도로 가장 장애정도가 심한 단계이다. 4단계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호흡곤란이 있다’는 정도로 가장 장애정도가 약한 단계이다. 3단계의 장애정도가 41.5%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4단계가 29.3%, 2단계 17.9%, 1단계 11.3%로 장애정도 1, 2단계의 중증이 1/4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3단계가 45.6%, 4단계가 28.0%였으나 여자는 오히려 4단계가 32.9%로 3단계 29.7%보다 더 많았다. 따라서 여자는 4단계의 장애정도를 보이는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반면에 1, 2단계의 경우도 남자는 각각 10.7%, 15.7%였으나 여자는 각각 12.8%, 24.5%로 여자의 비율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여자는 중증의 호흡기장애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지만, 중간정도(3단계)의 호흡기장애의 비율은 남자보다 여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2〉 호흡기장애의 장애정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1단계	10.7	12.8	11.3
2단계	15.7	24.5	17.9
3단계	45.6	29.7	41.5
4단계	28.0	32.9	29.3
계	100.0	100.0	100.0
(N)	(70)	(24)	(94)
전국추정수	27,010	9,392	36,402

3. 장애 발생시기

호흡기장애의 발생시기를 보면 모두가 돌 이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돌 이후에 호흡기 장애가 발생한 시기를 살펴보면, 60대가 23.8%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40대가 18.2%, 50대가 18.1%, 70대가 16.1% 등으로 나타났으며, 10대 미만은 3.2%에 불과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60대가 26.5%, 40대가 21.8%, 70대가 18.6%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는 50대가 28.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30대가 25.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대 미만의 발생 비율이 남자는 1.3%에 불과하지만 여자는 8.9%에 이를 정도로 여자의 어린 시절의 호흡기장애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1-3〉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9세	-	5.2	1.3
만 10~19세	1.3	3.7	1.9
만 20~29세	11.1	4.0	9.2
만 30~39세	6.2	25.7	11.2
만 40~49세	21.8	7.9	18.2
만 50~59세	14.6	28.4	18.1
만 60~69세	26.5	16.1	23.8
만 70세 이상	18.6	9.0	16.1
계	100.0	100.0	100.0
(N)	(70)	(24)	(94)
전국추정수	27,010	9,392	36,402

4. 장애원인

호흡기장애의 발생원인을 보면, 질환이 9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사고가 3.4%, 원인불명이 2.3%였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질환인 경우가 남자는 93.8%, 여자는 95.8%로 여자가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7-11-4〉 호흡기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천적 원인	질환	93.8	95.8	94.3
	사고	3.1	4.2	3.4
원인불명		3.1	-	2.3
계		100.0	100.0	100.0
(N)		(70)	(24)	(94)
전국추정수		27,010	9,392	36,402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흡기질환이 63.9%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감염성질환이 21.0%로 호흡기장애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 외에 신생물(종양)질환이 6.1%였으며, 심혈관질환, 원인불명 등은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는 호흡기질환이 65.9%, 감염성질환이 2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여자는 호흡기질환이 58.2%, 감염성질환이 16.8%로 두 질환이 비중이 남자보다는 낮았다. 반면에 여자는 신생물(종양)질환이 8.0%, 근골격계질환이 4.2%, 질환 중 미상이 4.8%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고에서는 교통사고(탑승자)로 인한 장애원인은 남자는 전혀 없으나 여자는 4.2%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던 반면, 기타 사고 및 외상은 남자는 3.1%였으나 여자는 전혀 없어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7-11-5〉 호흡기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질환	1.4	-	1.0
		심혈관질환	1.6	3.7	2.2
		호흡기질환	65.9	58.2	63.9
		근골격계 질환	-	4.2	1.1
		신생물(종양)질환	5.5	8.0	6.1
		감염성질환	22.4	16.8	21.0
		미상	-	4.8	1.3
	사 고	교통사고(탑승자)	-	4.2	1.1
		기타 사고 및 외상	3.1	-	2.3
계		100.0	100.0	100.0	
(N)		(68)	(24)	(92)	
전국추정수		26,166	9,392	35,558	

주: 비해당(장애발생 원인 중 원인미상) 2건 제외

제 12 절 간장애

1. 출현율

재가간장애인의 출현율은 <표 7-12-1>과 같이 인구 천명당 0.33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간장애인은 15,557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69세로 1.13건이었다.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60~69세에서 2.00건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50~59세에서 0.58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별 출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2.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간장애의 연령별 출현율은 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12-1〉 성별·연령별 간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0~29세	-	-	0.12	(1)	0.06	(1)
30~39세	0.17	(2)	0.09	(1)	0.13	(3)
40~49세	0.75	(8)	0.17	(2)	0.46	(10)
50~59세	1.36	(9)	0.58	(4)	0.96	(13)
60~69세	2.00	(9)	0.40	(2)	1.13	(11)
70세 이상	0.41	(1)	0.45	(2)	0.43	(3)
계	0.48	(29)	0.19	(12)	0.33	(41)
전국추정수	11,054		4,503		15,557	

2. 장애정도

간장애의 장애정도를 성별로 제시한 <표 7-12-2>를 보면, 전체적으로 3단계가 가장 많은 38.9%를 차지하였고, 1단계가 32.1%, 2단계가 15.0%, 5단계가 1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정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가 1, 2단계의 비중이 여자보다 더 높은 반면, 여자는 동 비중이 다소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자의 장애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2〉 간장애의 장애정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1단계	43.6	26.1	32.1
2단계	17.5	8.9	15.0
3단계	37.1	43.3	38.9
5단계	10.8	21.7	14.0
계	100.0	100.0	100.0
(N)	(29)	(12)	(41)
전국추정수	11,054	4,503	15,557

3. 장애 발생시기

성별로 장애 발생(발견)시기를 제시한 <표 7-12-3>을 보면, 간장애는 돌 이후에 대부분 (97.9%)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서 인지된 간장애인의 수가 많지 않아 간장애의

발견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여자의 경우 둘 이전에 발생한 사례가 포함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3〉 간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	-	-
둘 이전	0.0	7.3	2.1
둘 이후	100.0	92.7	97.9
계	100.0	100.0	100.0
(N)	(29)	(12)	(41)
전국추정수	11,054	4,503	15,557

연령별 장애 발생(발견)시기를 살펴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41.9%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30대가 21.8%, 40대가 1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생(발견)시기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50대(41.1%)와 30대(27.1%)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50대(43.9%)와 40대(13.5%)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2-4〉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 4세	0.0	7.3	2.1
만 5~ 9세	-	-	-
만 10~19세	-	-	-
만 20~29세	0.0	9.3	2.7
만 30~39세	27.1	8.6	21.8
만 40~49세	20.4	13.5	18.4
만 50~59세	41.1	43.9	41.9
만 60~69세	7.7	8.5	7.9
만 70세 이상	3.7	8.7	5.1
계	100.0	100.0	100.0
(N)	(29)	(12)	(41)
전국추정수	11,054	4,503	15,557

4. 장애원인

성별로 장애원인을 제시한 <표 7-12-5>를 보면, 간장애는 남녀 모두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5> 간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	-	-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100.0	100.0	100.0
질환	-	-	-
사고	-	-	-
원인불명	-	-	-
계	100.0	100.0	100.0
(N)	(29)	(12)	(41)
전국추정수	11,504	4,503	15,557

간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종류별로 살펴보면, 소화기계질환이 가장 많은 64.8%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신생물(종양)질환 15.1%, 중독성질환 11.8%, 감염성질환 3.3%, 심혈관 질환 2.5%, 기타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소화기계질환이 64.8%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신생물종양(18.0%), 심혈관질환(8.7%), 기타 (8.5%)에서 남자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고, 남자는 중독성질환(16.7%)과 감염성질환(4.6%)에서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12-6〉 간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질환	-	-	
		정신질환	-	-	
		감각기질환	-	-	
		심혈관질환	0.0	8.7	2.5
		호흡기질환	-	-	-
		소화기계질환	64.8	64.8	64.8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	-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14.0	18.0	15.1
		중독성질환	16.7	0.0	11.8
		감염성질환	4.6	0.0	3.3
	미상	-	-	-	
	기타	0.0	8.5	2.4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	-	-
가정내 사고		-	-	-	
교통사고(탑승자)		-	-	-	
교통사고(보행자)		-	-	-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	-	-	
기타 사고 및 외상		-	-	-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N)	(29)	(12)	(41)		
전국추정수	11,054	4,503	15,557		

제 13 절 안면장애

1. 출현율

안면장애는 2003년부터 법정장애에 포함된 장애로서 본 조사에서 처음 파악된 장애이다. 안면장애의 출현율은 <표 7-1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 천명당 0.11로서 전국적으로 약 5천 여명으로 추정된다. 안면장애를 포함해서 2003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장애유형의 경우 전반적으로 출현율이 낮다는 점은 등록현황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안면장애는 2005년 9월 기준으로 약 1천4백 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실제 조사 사례수가 많지 않은 제한점과 함께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안면장애의 특성과 조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안면장애의 인구 추정은 가능하나 항목별로 세부적인 분석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안면장애의 연령별 출현율에 있어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경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성별 출현율은 남자의 경우 천명당 0.15건으로 여자의 0.07건에 비해 높았다.

<표 7-13-1> 성별·연령별 안면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0~19세	0.00	-	0.12	(1)	0.06	(1)
20~29세	0.00	-	0.11	(1)	0.06	(1)
30~39세	0.00	-	0.07	(1)	0.03	(1)
40~49세	0.48	(5)	0.10	(1)	0.29	(6)
50~59세	0.27	(2)	0.00	-	0.13	(2)
60~69세	0.23	(1)	0.00	-	0.11	(1)
70세 이상	0.38	(1)	0.16	(1)	0.24	(2)
계	0.15	(9)	0.07	(5)	0.11	(14)
전국추정수	3,399	(18)	1,717	(10)	5,116	(28)

2. 장애정도

안면장애의 장애정도를 <표 7-13-2>에서 보면, 기준에 의해 최중증 안면장애인 2단계(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거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

없어진 사람)부터 6단계(노출된 안면부의 15% 이상~30% 미만의 변형이 있거나 코의 변형이 있는 사람)까지 구분하여 보면, 6단계가 5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는 5단계, 2단계, 3단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장애정도가 다소 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13-2〉 안면장애의 장애정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2단계	22.8	-	15.1
3단계	-	16.4	5.5
4단계	-	-	-
5단계	20.0	23.2	21.1
6단계	57.2	60.4	58.2
계	100.0	100.0	100.0
(N)	(9)	(5)	(14)
전국추정수	3,399	1,717	5,116

3. 장애 발생시기

안면장애의 발생시기를 알아보면, 전체의 92.3%가 만 1세 이후 발생되어 후천적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생 전은 7.7%로 안면기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돌 이전에 발생하는 안면장애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7-13-3> 참조).

〈표 7-13-3〉 안면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11.6	-	7.7
돌 이전	-	-	-
돌 이후	88.4	100.0	92.3
계	100.0	100.0	100.0
(N)	(9)	(5)	(14)
전국추정수	3,399	1,717	5,116

안면장애의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만 1세 이후 발생한 경우를 <표 7-13-4>에서 보면 주로 20대(38.7%)가 가장 많았으며, 5~9세 24.0%, 30대 14.5% 등으로 아

동기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전연령에 걸쳐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50대 이후에는 안면장애는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주로 20대 이후가 많은 반면, 여자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비율이 높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3-4〉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	16.4	5.9
만 5~9세	12.7	43.9	24.0
만 10~19세	13.7	-	8.7
만 20~29세	60.7	-	38.7
만 30~39세	-	39.8	14.5
만 40~49세	12.8	-	8.2
만 50세 이상	-	-	-
계	100.0	100.0	100.0
(N)	(8)	(5)	(13)
전국추정수	3,006	1,717	4,723

주: 비해당(출생전 또는 돌 이전) 1건 제외

4. 장애원인

안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을 알아보면, 후천적 원인이 가장 많아 78.5%이며, 선천적 원인이 14.3%, 원인불명 등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으로는 질환보다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선천성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사고에 의해 발생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7-13-5> 참조).

〈표 7-13-5〉 안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1.1	20.2	14.3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질환	20.0	7.1
	사고	40.0	71.4
원인불명	-	20.0	7.1
계	100.0	100.0	100.0
(N)	(9)	(5)	(14)
전국추정수	3,399	1,717	5,116

안면장애의 발생원인 중 후천적 원인으로 응답한 경우만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후천적 원인 중에는 화상이 36.4%로 가장 많고, 이와 유사하게 기타 사고 및 외상이 27.3%였고, 교통사고나 전상, 기타(의료사고 등)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화상 외에 교통사고, 전상 등이 있었으나 여자의 경우는 질환과 사고, 원인미상 등으로 나타났다(<표 7-13-6> 참조).

〈표 7-13-6〉 안면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미상	-	33.3	9.1
		기타	-	-	-
	사 고	교통사고(탑승자)	12.5	-	9.1
		화상	37.5	33.3	36.4
		기타 사고 및 외상	25.0	33.3	27.3
		전상	12.5	-	9.1
		기타	12.5	-	9.1
계		100.0	100.0	100.0	
(N)		(8)	(3)	(11)	
전국추정수		3,006	1,062	4,068	

주: 비해당(장애발생 원인 중 선천적, 출생시 원인, 원인미상) 3건 제외

제 14 절 장루·요루장애

1. 출현율

재가장루·요루장애인의 출현율은 <표 7-14-1>과 같이 인구 천명당 0.36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간장애인은 16,653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2.73건이었다.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70세 이상에서 각각 4.36건과 1.80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별 출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장루·요루장애의 연령별 출현율은 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14-1〉 성별·연령별 장루·요루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20~29세	0.12	(1)	-	-	0.06	(1)
30~39세	0.10	(1)	0.09	(1)	0.10	(2)
40~49세	0.10	(1)	0.10	(1)	0.10	(2)
50~59세	0.99	(6)	0.31	(2)	0.64	(8)
60~69세	1.78	(8)	0.39	(2)	1.02	(10)
70세 이상	4.36	(12)	1.80	(8)	2.73	(20)
계	0.49	(29)	0.23	(14)	0.36	(43)
전국추정수	11,115		5,538		16,653	

2. 장애정도

장루·요루장애의 장애정도를 성별로 제시한 <표 7-14-2>를 보면, 전체적으로 5단계가 가장 많은 51.6%를 차지하였고, 4단계가 43.5%, 3단계가 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정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장애정도가 약간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2〉 장루·요루장애의 장애정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2단계	-	-	-
3단계	7.1	0.0	4.8
4단계	46.4	37.4	43.5
5단계	46.5	62.6	51.6
계	100.0	100.0	100.0
(N)	(29)	(13)	(42)
전국추정수	11,115	5,155	16,270

주: 무응답 1명 제외

3. 장애 발생시기

성별로 장애발생(발견)시기를 제시한 <표 7-14-3>을 보면, 장루·요루장애는 남녀 모두 돌 이후(100.0%)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4-3〉 장루·요루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	-	-
돌 이전	-	-	-
돌 이후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N)	(29)	(14)	(43)
전국추정수	11,115	5,538	16,653

연령별 장애발생(발견)시기를 살펴보면, 60대가 가장 많은 28.6%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70세 이상 23.7%, 50대가 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발견) 시기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50대(31.3%)와 60대(25.8%)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60대(34.4%)와 70대(29.5%)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일찍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4-4〉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	-	-
만 5~9세	-	-	-
만 10~19세	-	-	-
만 20~29세	6.8	6.9	6.9
만 30~39세	4.0	0.0	2.7
만 40~49세	11.2	22.0	14.0
만 50~59세	31.3	7.2	23.3
만 60~69세	25.8	34.4	28.6
만 70세 이상	20.8	29.5	23.7
계	100.0	100.0	100.0
(N)	(29)	(14)	(43)
전국추정수	11,115	5,538	16,653

4. 장애원인

성별로 장애 원인을 제시한 <표 7-14-5>를 보면, 장루·요루장애는 남녀 모두 후천적 원인 중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4-5> 장루·요루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	-	-
출생시 원인	-	-	-
후천적 원인	100.0	100.0	100.0
질환	-	-	-
사고	-	-	-
원인불명	-	-	-
계	100.0	100.0	100.0
(N)	(29)	(14)	(43)
전국추정수	11,115	5,538	16,653

장루·요루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종류별로 살펴보면, 신생물(종양)질환 가장 많은 83.9%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6.6%, 미상 2.3%, 감염성질환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남자의 경우 신생물(종양)질환(83.0%)에 이어 교통사고(탑승자)(6.2%)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신생물(종양)질환(85.7%)에 이어 미상(6.9%)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4-6〉 장루·요루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질환	-	-		
		정신질환	-	-		
		감각기질환	-	-		
		심혈관질환	-	-		
		호흡기질환	-	-		
		소화기계질환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6.2	7.3	6.6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83.0	85.7	83.9	
		중독성질환	-	-	-	
		감염성질환	3.2	0.0	2.2	
		미상	0.0	6.9	2.3	
기타	-	-	-			
후 천 적 원 인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	-		
		가정내 사고	-	-		
		교통사고(탑승자)	7.6	0.0	5.1	
		교통사고(보행자)	-	-	-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	-	-	
		기타 사고 및 외상	-	-	-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N)		(29)	(14)	(43)
전국추정수		11,115	5,538	16,653		

제15절 간질장애

1. 출현율

재가간질장애인의 출현율은 <표 7-15-1>과 같이 인구 천명당 0.56건이며, 이를 전국 일반 인구에 적용하면, 전국의 재가간장애인은 26,264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출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39세로 0.94건이었다.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30~39세에서 1.33건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는 50~59세에서 1.01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성별 출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간질장애의 연령별 출현율은 전 연령대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7-15-1〉 성별·연령별 간질장애 출현율

(단위: 1/1000, 건)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0~ 9세	0.14	(1)	0.15	(1)	0.15	(2)
10~19세	0.60	(5)	0.89	(7)	0.74	(12)
20~29세	0.76	(6)	0.39	(4)	0.56	(10)
30~39세	1.33	(14)	0.56	(6)	0.94	(20)
40~49세	0.65	(7)	0.50	(5)	0.57	(12)
50~59세	0.48	(3)	1.01	(7)	0.75	(10)
60~69세	0.21	(1)	0.18	(1)	0.19	(2)
계	0.63	(37)	0.50	(31)	0.56	(68)
전국추정수	14,439		11,825		26,264	

2. 장애정도

간질장애의 장애정도를 성별로 제시한 <표 7-15-2>를 보면, 전체적으로 5단계가 가장 많은 75.8%를 차지하였고, 4단계가 14.7%, 3단계가 9.4%를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정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5단계의 비중이 제일 높았으나, 다음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3단계가, 여자의 경우에는 4단계의 비중이 높아 남자가 여자보다 장애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2〉 간질장애의 장애정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3단계	12.0	6.2	9.4
4단계	8.2	22.8	14.7
5단계	79.8	71.0	75.8
계	100.0	100.0	100.0
(N)	(37)	(31)	(68)
전국추정수	14,439	11,825	26,264

3. 장애 발생시기

성별로 장애발생(발견)시기를 제시한 <표 7-15-3>을 보면, 간질장애는 돌 이후 발생하는 비중이 92.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돌 이전에 발생하는 비중이 5.6%로 나타났다.

간질장애의 발생시기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남자의 경우 출생전 또는 출생시에 발생한 사례가 포함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5-3〉 간질장애의 장애 발생시기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전 또는 출생시	2.8	0.0	1.5
돌 이전	5.1	6.1	5.6
돌 이후	92.1	93.9	92.9
계	100.0	100.0	100.0
(N)	(37)	(31)	(68)
전국추정수	14,439	11,825	26,264

연령별 장애발생(발견)시기를 살펴보면, 10대가 가장 많은 32.3%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1~4세가 18.8%, 5~9세가 14.9%, 20대가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발견) 시기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0대(37.8%)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1~4세(16.3%)가 뒤를 잇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10대(25.5%)의 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1~4세(21.9%), 5~9세(19.8%)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일찍 간질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5-4〉 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 발생시기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만 1~4세	16.3	21.9	18.8
만 5~9세	10.9	19.8	14.9
만 10~19세	37.8	25.5	32.3
만 20~29세	12.8	16.9	14.6
만 30~39세	9.5	7.0	13.9
만 40~49세	0.0	3.0	1.3
만 50~59세	2.7	3.0	2.9
만 60~69세	-	-	-
만 70세 이상	0.0	2.9	1.3
계	100.0	100.0	100.0
(N)	(37)	(31)	(68)
전국추정수	14,439	11,825	26,264

4. 장애원인

성별로 장애 원인을 제시한 <표 7-15-5>를 보면, 간질장애는 대부분 후천적 원인(56.9%)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원인불명(32.5%), 선천적 원인(7.8%)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질환과 사고를 합한 후천적 원인의 비중이 각각 63.8%, 48.4%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자의 경우 남자보다 선천적 원인 및 원인불명이 각각 10.2%, 38.5%로 남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7-15-5〉 간질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5.8	10.2	7.8
출생시 원인	2.8	2.8	2.8
후천적 원인			
질환	26.2	35.9	30.6
사고	37.6	12.5	26.3
원인불명	27.6	38.5	32.5
계	100.0	100.0	100.0
(N)	(37)	(31)	(68)
전국추정수	14,439	11,825	26,264

후천적 원인에 의한 간질장애인을 질환 또는 사고의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질환에서는 신경계질환이 23.3%로 가장 높았고, 미상이 19.9%의 순이었고, 사고에서는 기타 사고 및 외상이 2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5.5%의 순이었다. 후천적 원인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기타 사고 및 외상(33.1%)과 신경계질환(20.8%)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신경계질환(27.3%), 미상(26.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5-6〉 간질장애의 후천적 장애원인 - 성별

(단위: %, 건)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후 천 적 원 인	질 환	신경계질환	20.8	27.3	23.3
		정신질환	-	-	-
		감각기질환	-	-	-
		심혈관질환	0.0	6.2	2.4
		호흡기질환	-	-	-
		소화기계질환	-	-	-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 질환	-	-	-
		신장·비뇨·생식기계 질환	-	-	-
		근골격계 질환	-	-	-
		신생물(종양)질환	4.3	-	2.7
		중독성질환	-	-	-
		감염성질환	-	14.4	5.5
		미상	16.0	26.3	19.9
	기타	-	-	-	
	사 고	폭력에 의한 사고	4.1	-	2.6
		가정내 사고	-	-	-
		교통사고(탑승자)	9.0	-	5.5
		교통사고(보행자)	12.7	14.1	13.2
		스포츠 및 놀이 중 사고	-	-	-
		화상	-	-	-
		약물 사고	-	-	-
		기타 사고 및 외상	33.1	11.7	24.9
		전상	-	-	-
		미상	-	-	-
		기타	-	-	-
		계	100.0	100.0	100.0
(N)		(24)	(15)	(39)	
전국추정수	9,208	5,728	14,936		

주: 비해당 29건 제외

참고문헌

- 김태련, 박량규(역),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1996.
- 변용찬 외,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지침□, 2000.
- _____, □장애인복지법령집□, 2005.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Household Projections for Japan by Prefectures: 1995 ~ 2020 Reported on March□, 2000.
-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정기원 외,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2004.
- 통계청, □Household Projec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200 ~ -2020□, 2002.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조사□, 2005.
- _____, □사회통계조사□, 2004.
- _____, □도시근로자가계소득□, 2005.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2005.
- _____, □한국통계월보□, 2005.
- Granger C. V., Albercht G. L., Hamilton B. B., "Outcome of comprehensive medical rehabilitation: Management by pulses profile on the Barthel Index", *Arch phys Med Rehabil.*, Vol.54:145 ~ 154, 1979.
- Schalock, R. L., Stark, J. A., Snell, M. E., Coulter, D. L., Polloway, E. A., Luckasson, R., Reiss, S., & Spitalnick, D. M., "The Changing Conception of Mental Retardation for the Field", *Mental Retardation*, 1994, pp.181 ~ 193.

부 록

[부록 1]	조사지역	429
[부록 2]	장애유형별 장애인 출현율	432
[부록 3]	통계표	442
[부록 4]	가구부문조사 표본오차	601
[부록 5]	장애인 인식개선 전화조사 결과	602
[부록 6]	장애인실태 조사표(3종)	637
[부록 7]	장애인인식개선 조사표(1종)	702